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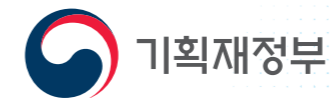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sf.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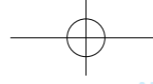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代), www.kipf.re.kr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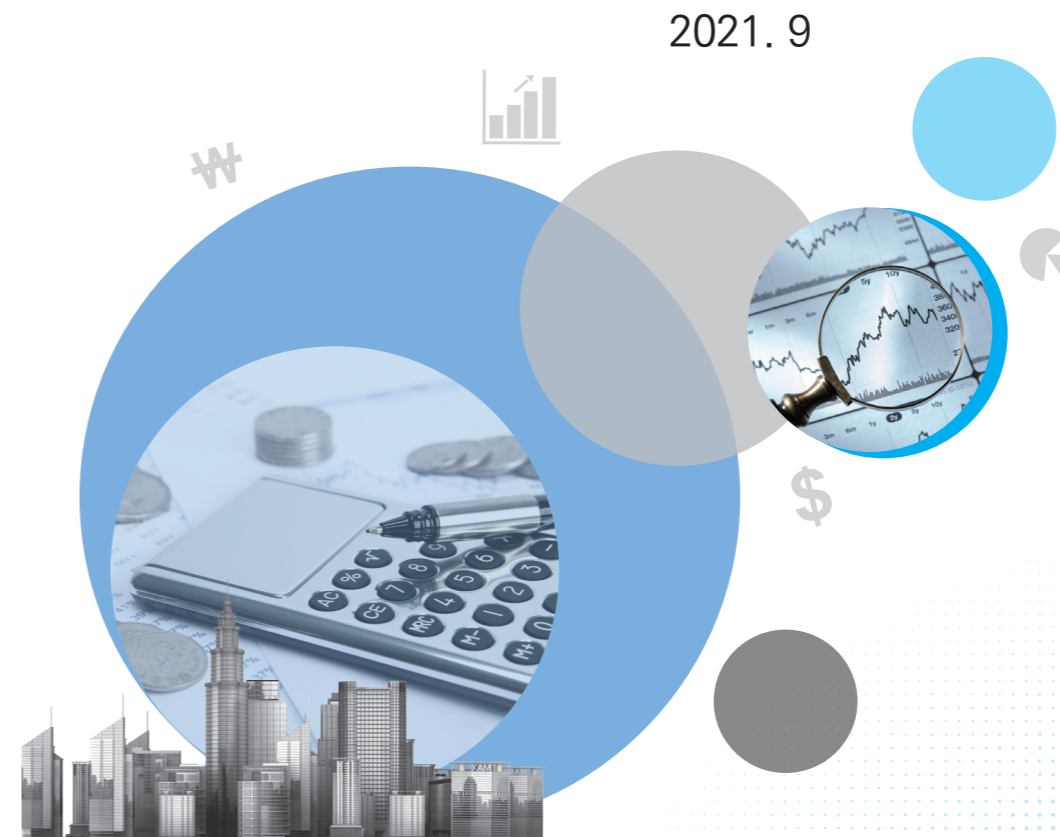
2021. 9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21.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공동연구자: 기은선 강원대학교 교수

2021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요 약

1. 연구개요

- (제도개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 서비스기업 7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 목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 부담 완화
 - 지원규모: 2019년 실적 기준, 조세지출 규모는 1,796억원으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총 9개 항목, 1조 5,577억원) 중 11.5% 차지
 - 2019년 공제기간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지원 허용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대폭 증가함

<표 1>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e ¹⁾	2021e ¹⁾
소득세	82	132	192	249	583	1,126	1,131
법인세	344	382	479	660	1,213	1,949	2,011
합계	426	514	671	909	1,796	3,075	3,142

주: 1. 신고연도 기준

1) 2020년과 2021년은 전망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분석내용 및 결과

가. 해외사례

- 주요국(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분석한 결과,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을 사업주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형태의 지원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나. 타당성 검토

- 일자리 창출 및 고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은 타당하나, 감면혜택에 역진성이 존재하고, 고용증대 효과가 단기적이므로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정부지원의 적절성) 사회보험료 증가는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개입 및 지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의 요인으로 영세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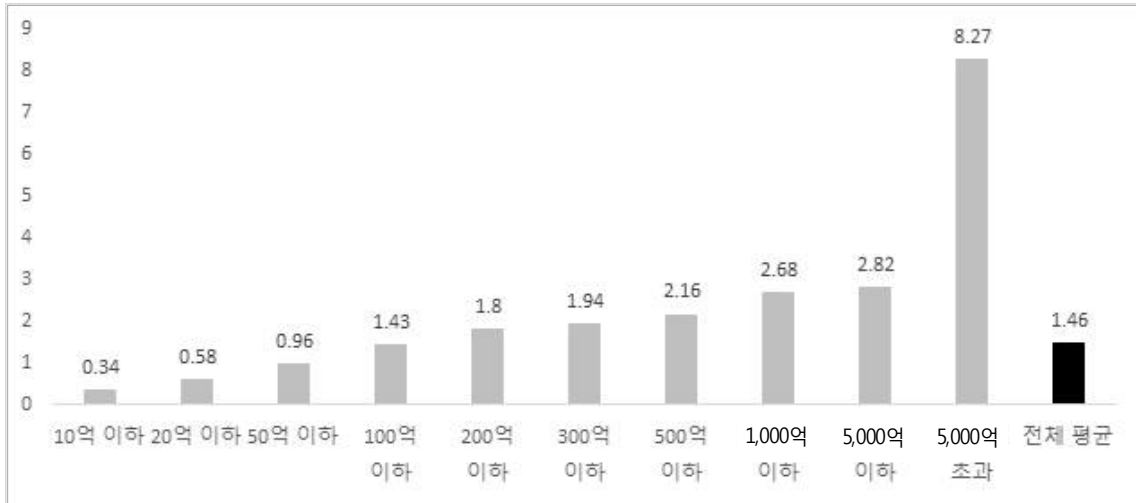
- (수행방법의 적절성) 감면방식, 사후관리, 유사지원제도와 중복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지원방식: 신규채용 시 도움 정도가 재정지원에 비하여 우수하고, 고용여력이 있는 소득발생 기업만을 선별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의 효율성이 높음
 - 대상설정: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인건비 부담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으므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 중소기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63% 규모이며, 중소기업 일자리 증감 규모는 대기업의 4배 수준¹⁾
 - * 기업규모별 일자리 규모 증감(신규-소멸): 대기업 6만개, 중소기업 23만개
 - 감면방식: 급여비례방식은 근로자 평균급여가 낮은 영세중소기업에 일부 불리한 측면이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급여비례방식보다 정액지원이 신규고용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동 제도가 청년과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신규고용에 정액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응답(각각 48.2%와 48.0%)이 급여비례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응답(각각 33.9%와 28.7%)보다 높게 나타남
 - 감면금액: 고용증가인원 1인당 사업주가 받는 혜택이 연평균 146만원(2년간 292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고용증대세제와 중복수혜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준임²⁾

1) 통계청,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2020. 12. 3.

2) 각 연도에 동 과세특례를 신청한 법인 중 한국기업데이터에 재무자료가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분포의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극단치를 제거함

[그림 1] 수입금액 규모별 고용증가인원 1인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단위: 백만원)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에 동 과세특례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분포의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극단치 제거

2. 동 과세특례로 인하여 개별 기업이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연도에 증가한 고용보험 피보험근로자수로 나눈 값의 평균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저자 분석

- 청년·경력단절여성 우대: 청년의 실업률이 타 연령층에 비하여 높고, 30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함³⁾
 - * 실업률: 전체(4.0%) 15~29세 청년층(9.0%)
 - * 경제활동참가율: 전체(62.5%), 남성(72.6%), 여성(52.8%)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신성장서비스업의 고용증대 효과가 타 업종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는 타당함
 - 고용증대효과: 신성장서비스업 1.10명, 그 외 업종 0.53명
- 사후관리: 세액공제 후 1/3 이상의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등(2018년, 34.1%) 고용증대 효과가 단기적임
 - 2018년부터 고용인원 유지 시 감면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였으나, 이러한 인센티브 부여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비율이 오히려 감소

3) 2020년 연간 고용동향,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보도자료, 2021. 1. 13.

<표 2> 세액공제 후 근로자 수 감소기업 비율

(단위: %)

세액공제 귀속사업연도	2년 모두 감소	1년 후 감소, 2년 후 증가	1년 후 증가, 2년 후 감소	2년 모두 증가
2016	15.6	16.6	25.0	42.9
2017	15.3	18.0	25.2	41.6
2018	14.4	19.7	24.0	41.9

주: 1. 각 귀속사업연도에 동 과세특례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
 2. 근로자 수 증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변동을 이용하여 측정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감면기간: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2019년, 3.3년) 및 설문결과⁴⁾ 등을 감안했을 때 현 감면기간(2년)은 부족한 편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유사지원제도와 형평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방안 검토 가능
 - 고용증대세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년
- 타 제도와 중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목표가 유사한 다수의 고용지원제도가 있어 제도의 복잡성 증대됨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고용의 양적 증대를 추구하는 점에서 고용증대세제 및 고용창출장려금과 정책목표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3>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 및 재정지원제도

구분	대상	지원금액	기간	중복	사후 관리	
조세 지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모든 사업주	고용증가인원당 정액공제 (청년 400~1,200만원, 청년 외 0~770만원)	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 중견기업	급여비례방식 (인건비의 30%(중소), 15%(중견))	2년	○	×
재 정 지 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	모든 사업주	고용증가인원당 정액공제 (청년 900만원, 청년 외 360~720만원)	청년 3년, 청년 외 1년	○	△ (청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10인 미만 기업	급여비례방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3년	×	×

자료: 저자 작성

4) 설문결과 현 감면기간이 신규고용 유도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54.5%)이 효과가 없다는 의견(45.5%)보다 높게 나타남

다. 효과성 검토

- 고용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촉진효과가 일부 존재하며, 신규채용에 도움 정도가 고용창출 지원제도 중에는 가장 높지만, 신규채용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고용부담 완화: 고용증가인원 1인당 근속기간 내 부담하는 인건비 총액의 약 2.9%(평균소득 기준)~3.6%(중위소득 기준) 경감 효과
 - 채용에 도움 정도: 동 과세특례를 포함하여 고용창출 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채용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낮으며, 그중에는 동 과세특례의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동 과세특례가 채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로는 ‘채용에 있어 세금혜택이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48.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러한 조세특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20.3%)’로 나타남

<표 4>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제도별 영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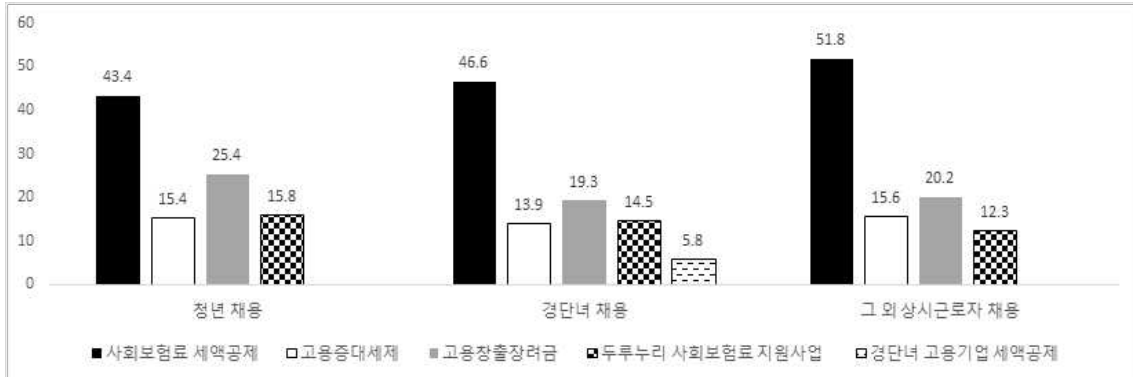
(n=519, 단위: %, 점)

구 분	청년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일반 상시근로자	
	영향 있음	4점 평균	영향 있음	4점 평균	영향 있음	4점 평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4.5	1.91	18.7	1.73	24.1	1.8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5.2	1.92	18.9	1.76	24.3	1.87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25.6	1.92	19.3	1.77	22.9	1.8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8.3	1.79	15.0	1.68	15.6	1.74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8.7	1.74	-	

자료: 설문조사 결과

[그림 2]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제도

(n=519, 단위: %)



주: 1. 2019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0보다 큰 5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제도의 1순위 응답 기준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일자리 창출 촉진: 성향점수매칭방법(PSM)을 이용하여 비교집단을 선정 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 과세특례의 적용기업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총근로자 수, 청년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의 증가, 청년 근로자 수의 증가가 모두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제도개정 효과: 2018년 세법개정은 고용증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지원 허용으로 수직적 형평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형평성 효과: 동 제도의 공제혜택이 중소기업과 수도권 소재기업, 그리고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신고법인의 11.6%를 차지하는 수입금액 200억원 초과 중소기업에 공제혜택의 51.3%가 편중⁵⁾
 - 전체 신고법인의 78.2%, 공제금액의 79.9%가 수도권 기업에 편중⁶⁾
 - 개인사업자 전체 공제금액의 59.1%가 보건의료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업 신청자의 99.8%, 신청금액의 99.9%가 병의원⁷⁾
 - 일반병원과 의원은 고용증가인원 1인당 각각 749만원과 699만원을 세액공제⁸⁾

5) 2018 귀속 사업연도, 법인 기준

6) 2018 귀속 사업연도, 법인 기준

7) 2019 귀속 사업연도, 개인사업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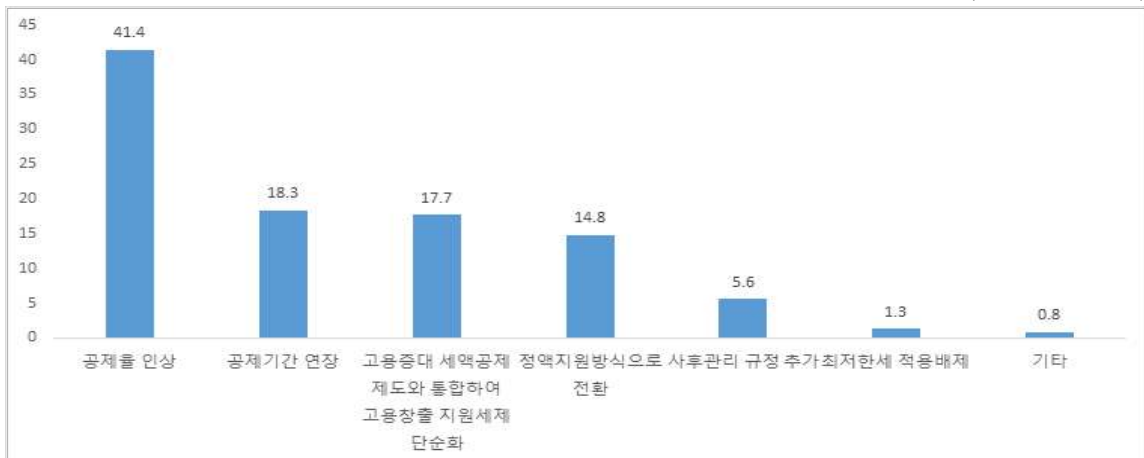
8) 2019 귀속 사업연도, 개인사업자 기준

3. 결론 및 정책시사점

- ‘고용증대세제’와 통폐합으로 고용지원세제를 단순화하고, 지역별·기업규모별 차등지원으로 조세형평성을 높이며, 사후관리규정 추가 및 부정수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도 통폐합: 동 제도와 ‘고용증대세제’의 주된 정책목표는 고용의 양적 증대라는 점에서 중복되며, 현재 급여비례방식은 역진적 성격을 가지므로 ‘고용증대세제’와 통합 후 정액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해외사례를 살펴보다라도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선례를 찾기 어려움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2021년부터 재정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 중임
 -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을 통한 고용창출지원세제 단순화 및 정액지원방식 전환’이 32.5%로 ‘세액공제율 인상(41.4%)’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함
 - 차등지원 방안: 수도권-지방, 중기업-소기업으로 나누어 지원 차등화가 필요함
 - 고용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기업에 공제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 소기업 고용에 수도권, 중기업 고용에 비하여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그림 3] 동 과세특례 관련 개선사항

(n=519,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사후관리 강화: 고용창출 효과가 단기적이므로 사후관리 요건을 추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 강화
 - ‘고용증대세제’와 지원요건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수혜비율이 낮아 고용유지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동 조세특례를 통해 단기고용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에 비하여 세액공제액이 과다한 경우 예외에 의한 관리 필요

목 차

I. 서론	17
II.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현황	23
1. 개요	25
2. 연혁	28
3. 상세 요건	35
4. 근거규정	44
5. 조세지출규모	49
6.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51
III. 설문조사	57
1. 응답기업 특성	60
2. 기업 운영 현황	61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인지도	62
4. 타 조세특례 제도 및 지원사업별 이용 현황(2019)	63
5.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조세특례 제도별 영향 및 도움 정도(2019)	64
6. 향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	66
7. 향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세부 내용 관련 인식	67
IV. 해외사례	71
1. 미국	73
2. 캐나다	73
3. 프랑스	74
4. 독일	75

V. 효과성 검토	77
1. 조세특례의 수혜대상 분석	79
2. 정책목표 달성도 분석	85
3. 세법개정의 효과 분석	93
4. 형평성 효과 분석	97
VI. 타당성 검토	101
1. 정부개입의 타당성	103
2. 수행방법의 적절성	107
3. 다른 조세특례 또는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124
VII.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131
1. 종합평가	133
2. 제도개선방안	143
참고문헌	166
부록	169
<부록 1> 중소기업 규모 기준	171
<부록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173
<부록 3> 설문조사지	175
<부록 4>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188

표 목 차

<표 II-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지출규모	25
<표 II-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개요	26
<표 II-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1)	30
<표 II-4> 신성장 서비스업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공제율 인상(2016)	32
<표 II-5> 상시근로자 수 및 사회보험료 계상방법 명확화(2019)	33
<표 II-6> 제도 연혁	34
<표 II-7> 최저임금액 계산법	36
<표 II-8>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38
<표 II-9>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율	42
<표 II-10>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출 내역	49
<표 II-11>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지출 내역	50
<표 II-1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지출 내역	50
<표 II-13>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55
<표 III-1> 설문조사 세부 항목	59
<표 III-2> 응답기업 특성	60
<표 III-3> 3개년 상시근로자 현황(평균)	61
<표 III-4> 3개년 임시근로자 현황(평균)	61
<표 III-5> 상시근로자 및 대상별 상시근로자 채용 여부	62
<표 III-6> 대상별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 및 세전 월평균 급여	62
<표 III-7> 제도 인지 정도	63
<표 III-8>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	63
<표 III-9> 2019년 제도별 이용 현황	63
<표 III-1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64
<표 III-11>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제도별 영향 정도	65

<표 III-1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65
<표 III-13> 대상별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	66
<표 III-14> 2021년 경영의사결정에 미칠 영향	66
<표 III-15> 2021년 신규 인력 채용규모 및 근로자의 임금에 미칠 영향	67
<표 III-16> 대상별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68
<표 III-17> 혜택기간 연장 사실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	68
<표 III-18> 대상별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의 효과성	69
<표 III-19> 대상별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69
<표 III-20> 동 제도 관련 개선사항	70
<표 V-1> 업태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법인사업자)	80
<표 V-2> 소재지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법인사업자)	81
<표 V-3> 수입금액 규모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법인사업자)	82
<표 V-4> 업태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개인사업자)	83
<표 V-5> 보건의료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자 구성(개인사업자)	84
<표 V-6> 수입금액 규모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개인사업자)	85
<표 V-7> 고용부담 완화효과 분석	86
<표 V-8> 연도별 표본구성	90
<표 V-9>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90
<표 V-10> 수혜그룹과 비수혜그룹의 주요 변수의 평균차이 검증	91
<표 V-11> 회귀분석결과 I: 고용증대효과(종속변수: 종업원 수)	92
<표 V-12> 회귀분석결과 II: 고용증대효과(종속변수: 종업원 수 증감)	93
<표 V-13> 회귀분석결과 III: 2018년 세법개정 효과분석(종속변수: 종업원 수)	95
<표 V-14> 회귀분석결과 IV: 2018년 세법개정 효과분석(종속변수: △종업원 수)	95
<표 V-15> 2018년 전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 현황 비교	96
<표 V-16> 수입금액 규모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인)	97
<표 V-17> 수입금액 규모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개인사업자)	97
<표 V-18>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제 신고법인의 소재지 분포	99
<표 V-19>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 중소기업의 업종별 분포(법인)	100

<표 V-2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 중소기업의 업종별 분포(개인사업자)	100
<표 VI-1> 기업규모별 임금총액	103
<표 VI-2> 연도별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105
<표 VI-3> 규모별 사회보험가입률	106
<표 VI-4>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108
<표 VI-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9
<표 VI-6> 급여비례방식과 정액지원방식 비교	111
<표 VI-7> 수입금액 규모별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	111
<표 VI-8> 고용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112
<표 VI-9> 기업규모별 일자리 규모 및 증감	114
<표 VI-10> 성별·연령별 실업률	115
<표 VI-11> 경력단절여성 규모	116
<표 VI-12>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17
<표 VI-13> 신성장서비스업과 그 외 업종의 고용증대 효과 비교	118
<표 VI-14> 공제 이후 기간의 법인사업자의 고용유지율(전체 근로자)	119
<표 VI-15> 공제 이후 기간의 법인사업자의 고용유지율(청년)	119
<표 VI-16> 공제 이후 기간의 개인사업자의 고용유지율(전체 근로자)	120
<표 VI-17> 고용증대세제 동시 신청기업과의 공제 이후 기간의 고용유지율 비교 (법인사업자)	121
<표 VI-18> 고용증대세제 동시 신청기업과의 공제 이후 기간의 고용유지율 비교 (개인사업자)	121
<표 VI-19> 설문조사 결과: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	123
<표 VI-20> 본 조세특례의 유사지원제도	125
<표 VI-21> 고용증대세제의 주요 내용	127
<표 VII-1>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지원제도의 영향 정도	136
<표 VII-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제 비교	144
<표 VII-3> 업종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48
<표 VII-4> 본 조세특례의 인지도	149

<표 VII-5> 정액지원방식으로 변경 시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안)	151
<표 VII-6> 수입금액 규모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55
<표 VII-7>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본 조세특례의 영향 정도 ...	157
<표 VII-8> 본 조세특례가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158
<표 VII-9>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59
<표 VII-10>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분포	163
<표 VII-11> 고용창출장려금의 규모 및 부정수급 적발 현황	164

그림 목 차

[그림 V-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 및 공제금액	79
[그림 V-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개인사업자 및 공제금액	82
[그림 V-3]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지원제도별 영향 정도	87
[그림 V-4]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제도	87
[그림 V-5] 소재지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법인사업자)	98
[그림 VI-1] 연도별 최저임금(시급)	105
[그림 VI-2] 고용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정책	107
[그림 VI-3] 연령별 실업률	115
[그림 VI-4]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20)	117
[그림 VI-5] 설문조사 결과: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기간의 효과성 ...	122
[그림 VI-6] 기업규모별 평균 근속기간(2019)	123
[그림 VI-7] 설문조사 결과: 고용지원제도의 최대 지원기간	124
[그림 VI-8]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 및 공제금액 ...	126
[그림 VII-1]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고용지원제도	136
[그림 VII-2] 보건의료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자 구성(개인사업자)	142
[그림 VII-3] 업종별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개인사업자) ...	142
[그림 VII-4] 보건의료업의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143
[그림 VII-5] 수입금액 규모별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	145
[그림 VII-6]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146
[그림 VII-7] 동 과세특례 관련 개선사항	147
[그림 VII-8] 본 조세특례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	150
[그림 VII-9] 고용증대세제와 중복수혜 비율	150
[그림 VII-1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제의 지역별 분포	152
[그림 VII-1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제의 지역별 분포 (공제금액 기준)	152

[그림 VII-12] 지역별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153
[그림 VII-13] 수입금액 규모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55
[그림 VII-14] 수입금액 규모별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	156
[그림 VII-15] 세액공제 후 근로자 수 감소기업 비율	161
[그림 VII-16] 본 조세특례와 고용증대세제의 고용유지 효과 비교	162
[그림 VII-17]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유형	164

I. 서론



I. 서론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는 고용인원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50%(75% 또는 100%) 상당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임
 - 지원목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부담 완화
 - 지원규모: 1,796억원(2019년 실적 기준)
 - 지원내용: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50%(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100%, 신성장서비스기업의 경우, 75%) 상당액을 세액공제함
 - 제도일몰: 2021. 12. 31.

-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2004)’가 실효성 저하로 폐지된 후 2010년 고용증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신설되었고, 2011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로 조항명이 개정됨
 -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하여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2004)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2005년 폐지
 -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이후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한 고용증대 세액공제(2010)를 신설
 -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제규모를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 수혜대상의 경우 모든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축소
 - 2011년 조항명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1인당 정액지원방식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기준으로 한 급여비례지원방식으로 변경
 - 계층 구분 없이 지원하던 것을 청년(100%), 청년 외(50%)로 구분하여 지원
 - 2016년 신성장서비스업(75%) 중소기업 및 경력단절여성(100%) 등의 고용 지원을 위하여 이들의 공제율을 인상
 - 2017년 신규고용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최저임금 100~120%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 중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한함
 -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020. 12. 31. 이후로 일몰 종료됨
- 이 연구는 2021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서 동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 그리고 종합평가를 통하여 제도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타당성 분석은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절성과 수행방법의 적절성에 관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제도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봄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가입률 및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변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적절한지 살펴봄
 -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어떤 방식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분석함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건비 부담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한 것이 타당한지 검토함
 - 급여비례방식과 정액지원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고용증대 및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더 우수한지 살펴봄
 -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계산 및 수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감면금액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함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고용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세제상 우대가 타당한지 분석함
 - 신성장서비스업이 타 업종에 비하여 고용증대효과가 더 높은지 살펴봄으로써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가 타당한지 살펴봄
 - 세액공제 후 고용유지비율이 얼마나 장기간 유지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후 관리 규정의 필요성에 관해 검토함
 - 현재의 감면기간이 중소기업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유사지원제도의 감면기간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감면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함

-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을 지원하는 조세 및 재정지원제도를 분석하고, 동 과세 특례와의 중복문제를 검토함
- 효과성 분석은 설문조사와 국세청,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정책효과 달성도를 평가함
 - 동 과세특례가 중소기업이 고용증가인원 1인당 근무기간 내 부담하는 인건비의 몇 %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부담 완화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함
 - 설문조사를 통해 동 과세특례가 중소기업의 채용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및 도움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유사지원제도와 비교함
 - 동 과세특례의 수혜집단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비교집단을 선정한 후, 동 과세특례 적용기업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고용증대 효과가 유의하게 더 큰지 회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동 제도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봄
 - 동 제도의 개정이 고용증대 및 세부담 형평성에 미친 효과를 살펴봄
 - 기업규모별, 지역별, 업종별 공제기업 수 및 공제금액의 분석을 통해 세부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분석함
-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을 대상(519개)으로 본 조세특례의 인지도, 고용지원제도 이용 현황,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지원제도별 영향 및 도움정도, 본 조세특례의 세부내용(감면금액, 감면방식, 감면기간 등)에 대한 인식, 본 조세특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
- 마지막으로 타당성·효과성 분석결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본 제도의 폐지, 축소 또는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 제Ⅱ장은 본 조세특례의 제도 개요 및 그 동안의 변경내용에 관하여 살펴봄
 - 제Ⅲ장은 설문조사 설계 및 주요 설문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함
 - 제Ⅳ장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의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 관하여 검토함

- 제 V 장은 본 조세특례의 효과성을, 제 VI 장은 타당성을 검토함
- 제 VII 장은 결론과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현황



II.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현황

1. 개요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50%(100% 또는 75%) 상당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청년등(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의 100%
 - 신성장서비스기업: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의 75%
 - 청년등 외: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의 50%
- 동 제도와 관련한 최근 세법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2011년 1인당 정액지원방식을 급여비례지원방식으로 변경하였고, 계층 구분 없이 지원하던 것을 청년(100%), 청년 외(50%)로 구분하여 지원
 - 2016년 신성장서비스업 중소기업(75%), 경력단절여성(100%)의 공제율을 인상
 - 2017년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신설하고 공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2020. 12. 31. 이후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폐지
- 조세지출 규모는 2019년 실적 기준으로 1,796억원 규모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총 9개 항목, 1조 5,577억원) 중 11.5%를 차지

<표 II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지출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망)	2021 (전망)
소득세		44	71	82	132	192	249	583	1,126	1,131
법인세	신설	257	301	344	382	479	660	1213	1,949	2,011
합계		301	372	426	514	671	909	1,796	3,075	3,142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표 II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개요

구분	내용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도목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부담 완화	
지원제도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수혜대상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상시근로자가 있는 영세 중소기업
수혜 내용	○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 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 과 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청년등: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 험료의 100% - 청년등 외: 사용자 부담분 사회 보험료의 50% 또는 75%	○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상당액 의 50%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신규 가입한 날부터 2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영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기타	○ 일몰: 2021. 12. 31.	○ 일몰(2020. 12. 31.) 폐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내용에 따라 저자 작성

1)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정책대상자)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해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 실질적 독립성, 주된 사업의 업종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뜻함
 -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임원,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확인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등은 제외

□ (수혜내용)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총세액공제액(① + ②)
-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100%
 - 청년등 상시근로자: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 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50%
 - 단 해당 중소기업이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75%

□ (기타) 동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③항)

- 동 조항이 2017. 12. 19. 신설됨에 따라 공제기간이 확대됨(1 → 2년)

2)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정책대상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저임금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

- 소규모 중소기업 요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⁹⁾
- 저임금 상시근로자 요건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근로자
- 2020. 1. 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20. 12.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 대상

□ (수혜내용)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사회보험료 상당액 계산 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정부 보조금(두루누리 사업 등) 및 건보료 감면금액은 차감함

9)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 해당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

- (기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료 의무 가입대상인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이므로 2020. 12. 31.을 일몰로 하여 적용 종료되었음

2. 연혁

가. 2004년: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신설)¹⁰⁾

-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①에 따라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함
 - 내국인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당해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때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적용시기 및 일몰기한
 - 적용시기: 2004. 7.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적용기한: 2005. 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 고용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실업률 안정화를 위하여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2005년 폐지됨

나. 2010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신설)¹¹⁾

- 고용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고용증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함
 - 중소기업이 2010. 3. 1.~2011. 6. 30.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증가인원 1인당 300만 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10) 기획재정부, 『2004 간추린 개정세법』, 2005. 3., pp. 171~179.

1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 2004년 도입되었던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하여 도입되었으며,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세액공제 규모를 기존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
 -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대신 수혜대상을 모든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함

다. 2011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항명 개정)

-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규고용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
 - 과거 세액공제가 1인당 정액지원방식이었던 반면,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1명당 실제로 부담하는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급여비례지원방식으로 변경함
 - 또한 과거에는 계층의 구분없이 지원하였으나, 청년(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 100%) 및 청년 외(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 50%) 계층을 구분하여 지원
 - 동 세법개정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표 II -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1)

구분	내용
지원대상	전년 대비 고용이 증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세액공제액	<p>○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으로 1)과 2)를 합한 금액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p> <p>1) 청년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100%</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frac{\text{해당과세연도청년상시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료}}{\text{해당과세연도청년상시근로자수}} \times \text{㉑}$ </div> <p style="text-align: center;">㉑: Mn(청년상시근로자증가인원, 상시근로자증가인원)</p> <p>2) 청년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50%</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frac{\text{해당과세연도청년외상시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료}}{\text{해당과세연도청년외상시근로자수}} \times Mn(\text{상시근로자증가인원} - \text{㉑}) \times 50\%$ </div> <p>- ㉑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p>
청년 상시근로자	<p>○ 상시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p> <p>-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5세</p>
상시근로자 수/순증인원 계산	<p>○ 상시근로자 수</p> <p>-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 해당 과세연도 월수</p> <p>○ 청년 상시근로자 수</p> <p>-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 합계 ÷ 해당 과세연도 월수</p> <p>○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p> <p>- 상시근로자 수 - 청년 상시근로자수</p> <p>○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p> <p>- Min(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p> <p>-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p> <p>○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p> <p>-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p> <p>-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p>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p>○ 청년 상시근로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frac{\text{해당과세연도에청년상시근로자에게지급하는총급여}}{\text{해당과세연도의청년상시근로자수}} \times \text{사회보험료율}$ </div> <p>○ 청년 외 상시근로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frac{\text{해당과세연도에청년외상시근로자에게지급하는총급여}}{\text{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text{청년상시근로자수}} \times \text{사회보험료율}$ </div> <p>-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 적용</p>

자료: 기획재정부, 『2011 간추린 개정세법』, 2012, pp. 169~172.

라. 2014년: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인원 계산방식 조정¹²⁾

-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지속적으로 세제지원하기 위하여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인원 계산방식을 조정함
 - 적용기한 연장: 2013. 12. 31. → 2015. 12. 31.(2년)
 - 고용인원 계산방식 변경: (기존) 상시근로자의 경우 1명,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0.5명으로 계산 →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0.75명으로 계산
 -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상용직)
 -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 시간당 임금이 최저금액의 130% 이상일 것
 - 동 세법개정은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마. 2015년: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고용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확대 유도를 위하여 동 조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 12. 31.에서 2018. 12. 31.로 3년 연장함

바. 2016년: 세액공제 확대¹³⁾

- 신성장 서비스업 중소기업 및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인원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하여 공제율을 인상함
 - 경력단절 여성이란, 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일 것 ② 퇴직한 날로부터 3~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12) 기획재정부, 『2013 간추린 개정세법』, 2014, p. 299.

13) 기획재정부, 『2016 간추린 개정세법』, 2017, p. 170.

<표 II -4> 신성장 서비스업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공제율 인상(2016)

종전	개정
(청년)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동일)
(기타)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	(동일)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75%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자료: 기획재정부, 『2016 간추린 개정세법』, 2017, p. 170.

사. 2017년: 세액공제 확대 및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¹⁴⁾

- 신규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공제기간을 확대함
 - 공제기간 확대: 1 → 2년(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 혜택 적용)

- 중소기업 사회보험 가입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함
 - 대상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
 - 대상 근로자: 2018. 1. 1. 현재 고용 중으로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근로자 중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 공제 금액: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
 - 사회보험료 상당액 계산 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정부 보조금(두루누리 사업) 및 건보료 감면금액은 차감함
 - 적용기한: 2018. 12. 31.

14) 기획재정부, 『2017 간추린 개정세법』, 2018, pp. 179~180.

아. 2018년: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고용 촉진 및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 12. 31.까지 연장하고,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9. 12. 31.로 연장함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 2018. 12. 31. → 2021. 12. 31.(3년 연장)
 -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 2018. 12. 31. → 2019. 12. 31.(1년 연장)

자. 2019년: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 및 신규가입자 적용기한 연장¹⁵⁾

-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출과의 중복 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제되는 사회보험료 금액에서 국가 보조금 등은 제외함
 - 사회보험료 계산방법은 2020. 2. 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표 II -5> 상시근로자 수 및 사회보험료 계상방법 명확화(2019)

	중전	개정
상시근로자 수	$\frac{\text{해당기간의매월말현재근로자수의합}}{\text{해당기간의개월수}}$	$\frac{\text{해당과세연도의매월말현재근로자수의합}}{\text{해당과세연도의개월수}}$
사회보험료	$\frac{\text{상시근로자에게지급한총급여액}}{\text{상시근로자수}} \times \text{사회보험료율}$	$\frac{\text{상시근로자에게지급한총급여액}}{\text{상시근로자수}} \times \text{사회보험료율}$ - 국가등이지급한보조금및감면액

자료: 기획재정부, 『2019 간추린 개정세법』, 2020, p. 251.

- 영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함
 - 적용기한 연장: 2019. 12. 31. → 2020. 12. 31.(1년 연장)

15) 기획재정부, 『2019 간추린 개정세법』, 2020, pp. 250~251.

<표 II -6> 제도 연혁

개정 일자	주요 변경사항
2004. 7. 26.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신설) - (공제금액)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만원 - (적용기한) 2005. 12. 31.
2005. 12. 31.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삭제)
2010. 3. 12.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신설) - (공제금액) 고용증가 인원 1인당 300만원 - (적용기한) 2010. 3. 1.~2011. 6. 30.
2011. 12. 31.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신설, 조항명 변경) - (지원방식변경) 정액지원 → 급여비례지원 - (공제금액) 청년: 사용자 사회보험료 상당액 100% 청년 외: 사용자 사회보험료 상당액 50% - (적용기한) 2013. 12. 31
2014. 1. 1.	○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인원 계산방식 조정 - (적용기한) 2015. 12. 31. -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0.75명으로 계산
2015. 12. 15.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8. 12. 31.
2016. 12. 20.	○ 세액공제 확대 - (신성장 서비스업 중소기업 공제율 인상) 75% - (경력단절 여성 공제율 인상) 100%
2017. 12. 19.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공제기간 확대) 1 → 2년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신설) -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 (대상근로자) 최저임금 100~120%를 받는 근로자 중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 (공제금액)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 50% - (적용기한) 2018. 12. 31.
2018. 12. 24.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1. 12. 31.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9. 12. 31.
2019. 12. 31.	○ 상시근로자 수 및 사회보험료 계산방법 명확화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0. 12. 31.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상세 요건

가. 수혜 대상

- 동 특례제도의 수혜대상은 흑자 기업으로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있으며,
 - 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또는 ②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임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에서 고용 증가란,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는 의미이며, 동 특례제도의 간접적인 수혜대상은 근로자 계층임(①)
 - 2021.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 사회보험료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규모 기업에 한정되며,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가 신규 가입한 경우로 한정됨(②)
 - 소규모 기업 요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¹⁶⁾
 - 저임금 근로자 요건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근로자를 말함
 - 2020. 1. 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20. 12. 31.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16)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 해당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

<표 II -7> 최저임금액 계산법

구분	내용
근거규정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계산	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함 -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함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음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 -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 있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한국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자료: 「최저임금법」 내용에 따라 저자 작성

나. 중소기업의 범위

- 동 특례제도 대상인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른 ① 기업 규모 기준 ② 실질적 독립성 기준 ③ 주된 사업의 업종 기준 등을 만족하여야 함¹⁷⁾
- 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부록 1>)
- ②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기준을 충족할 것(계열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것¹⁸⁾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부록 2>)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①항

18)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란, 1)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그 개인의 친족을 말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기업집단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③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호텔업 및 여관업¹⁹⁾
 - 주점업²⁰⁾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 신성장 서비스업 기준

- 동 특례제도에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 제5조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0)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수상·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팔레트 임대업

라. 상시근로자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 판별

- 동 특례제도에서 고용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됨
1.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5. '4'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6.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7.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표 II -8〉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구분	내용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상시근로자 정의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	1.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¹⁾ 2. 단시간근로자 ²⁾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³⁾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⁴⁾ 5. '4'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 ⁵⁾ 인 사람 6.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7.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 주: 1)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제외
2)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판단
3)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5)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내용에 따라 저자 작성

- 이 외에도 동 조세특례 제도 해당 기업은 다음의 지원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단시간 근로자 제외)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단시간 근로자 제외)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²¹⁾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일 것

- 상시근로자 중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함
 - 청년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1. 해당 기업²²⁾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1’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원을 말함
 - 상시근로자 수(A)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 연도의 개월수}}$

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
 22)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

○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B)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A) - (B)

$$\text{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text{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음수(-)인 경우, 0으로 봄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다음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로 계산하고, 0.0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청년등 상시근로자 제외)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²³⁾
4.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일 것

마. 고용증가 인원

□ 청년등 또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text{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text{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음수(-)인 경우, 0으로 봄

-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함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text{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 \text{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 음수(-)인 경우, 0으로 봄

23) ① 임금 ② 상여금 ③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④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을 것

바.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50%)보다 청년등(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가인 경우(100%),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75%)에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큼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A)

$$\frac{\text{해당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 급여액}}{\text{해당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times \text{사회보험료율} \times 100\%$$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B)

$$\frac{\text{해당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 급여액}}{\text{해당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text{해당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times \text{사회보험료율} \times 50\%$$

단,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5%

- 총세액공제액은 (A) + (B) × 0.5(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0.75)
- 이때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5가지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율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함

<표 II -9>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율

(단위: %)

연도	국민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총사회보험
2012년	2.900	0.190	4.5	0.8~1.4	0.7~35.4 (1.77)	9.0900~44.3900 (10.1600~10.7600)
2013년	2.945	0.193	4.5	0.9~1.5	0.6~34.0 (1.70)	9.1379~43.1379 (10.2379~10.8379)
2014년	2.995	0.196	4.5	0.9~1.5	0.6~34.0 (1.70)	9.1912~43.1912 (10.2912~10.8912)
2015년	3.035	0.199	4.5	0.9~1.5	0.7~34.0 (1.70)	9.3338~43.2338 (10.3338~10.9338)
2016년	3.060	0.200	4.5	0.9~1.5	0.7~34.0 (1.70)	9.3604~43.2604 (10.3604~10.9604)
2017년	3.060	0.200	4.5	0.9~1.5	0.7~32.3 (1.70)	9.3604~41.5604 (10.3604~10.9604)
2018년	3.120	0.230	4.5	0.9~1.5	0.85~28.25 ¹⁾ (1.65)	9.6003~37.6003 (10.4003~11.0003)
2019년	3.230	0.275	4.5	0.9~1.5	0.75~22.65 ¹⁾ (1.65)	9.6549~32.1549 (10.5549~11.1549)
2020년	3.340	0.342	4.5	1.05~1.65	0.73~18.63 ¹⁾ (1.56)	9.9624~28.4624 (10.7924~11.3924)
2021년	3.430	0.395	4.5	1.05~1.65	0.7~18.6 ¹⁾ (1.53)	10.0751~28.5551 (10.9051~11.4851)

주: 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용자부담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2012~2017: 6.55%, 2018: 7.38%, 2019: 8.51%, 2020: 10.25%, 2021: 11.25%)을 곱하여 계산(원단위 절사)

2.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요율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회사의 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 0.25~0.85%)을 더한 수치임

1) 2018년부터 산재보험에 출퇴근재해에 대한 산재보상(2018~2019: 1.5%, 2020: 1.3%, 2021: 1.0%)이 포함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20210101,17758,20201229\)/제73조](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20210101,17758,20201229)/제73조), 검색일자: 2021. 3.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1001,17173,20200331\)/제9조](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1001,17173,20200331)/제9조), 검색일자: 2021. 3. 15.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20210101,17758,20201229\)/제88조](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20210101,17758,20201229)/제88조), 검색일자: 2021. 3. 1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20210126,17909,20210126\)/제14조](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20210126,17909,20210126)/제14조), 검색일자: 2021. 3. 15.

사. 기타 사항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받은 중소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함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일정기간’이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 정해진 구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음
 -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그 외의 경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봄
 - ① 창업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함
 - 다만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²⁴⁾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함
 - ② ‘①’의 제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함

24)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②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다음의 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함

- 대상: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계산 방법: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함

4. 근거규정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제도는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규정됨

① 중소기업이 2021.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 12. 24.>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신설 2017. 12. 19.>
 -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 받은 금액 상당액
 -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0. 1. 1.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20. 12. 31.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9.>
 -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사회보험 신규 가입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101,17759,20201229\)/제30조의4](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101,17759,20201229)/제30조의4), 검색일자: 2012. 2. 19.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규정됨

- ① 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6. 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7. 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② 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7. 2. 7.>
1. 청년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
- ③ 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0’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개정 2017. 2. 7.>
- ④ 법 제30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뺀 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0’으로 본다)를 말한다.
- ⑤ 법 제30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0. 2. 11.>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 6. 제5조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 ⑥ 제3항, 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 가. 상시근로자 수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개정 2019. 2. 12.>
1. 창업(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에서 종사하던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⑧ 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급액}}{\text{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times \text{사회보험료율}$$

⑨ 법 제30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⑩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개정 2017. 2. 7.>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 ⑪ 법 제30조의4 제3항에서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 2. 13.>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⑫ 법 제30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20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18. 2. 13.>
 - ⑬ 법 제30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이란 법 제30조의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8. 2. 13.>
 - ⑭ 법 제30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 2. 13.>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210217,31463,20210217\)/제27조의4](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210217,31463,20210217)/제27조의4), 검색일자: 2012. 2. 19.

5. 조세지출규모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2004. 7. 26.~200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05~2007년간 동 제도를 통한 조세지출금액은 약 2,424억원으로, 이 중 소득세는 총 399억원, 법인세는 총 2,025억원 규모임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는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되었음

<표 II -10>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출 내역

(단위: 억원)

조세지출내역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계	계	계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신설	1,055	1,134	235	종료
- 수혜자: 내국인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 수혜내용: 추가고용 1인당 100만원, 고용유지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181	174	44	
- 기타: 2004. 7. 26. 신설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	
		874	960	191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하여 도입된 제도로 2010. 3. 1.~2011. 6. 30.까지 운영되었으며, 동 제도를 통한 조세지출금액은 약 1,938억원으로 이 중 소득세는 320억원, 법인세는 1,618억원 규모임
-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세액공제 규모를 기존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대신 수혜대상을 모든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함

〈표 II -11〉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지출 내역

(단위: 억원)

조세지출내역	2010	2011	2012	2013	2014
○ 고용증대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계	계	계	
- 수혜자: 중소기업		890	861	187	
- 수혜내용: 추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상시근로자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신설	소득세 137	소득세 151	소득세 32	종료
- 2011. 6. 적용기한 종료		법인세 752	법인세 710	법인세 155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 2011. 12. 31.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조항명을 변경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12~2021년 간 동 제도를 통한 조세지출금액은 총 1조 1,206억원임
- 조세지출금액 1조 1,206억원 중 소득세는 3,610억원, 법인세는 7,596억원 규모임
- 기존에는 1인당 정액지원방식이었던 반면,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1명당 실제로 부담하는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급여비례지원방식으로 변경함
- 또한 기존에는 계층의 구분이 없이 지원하였으나, 청년·청년 외 계층을 구분하여 지원함

〈표 II -1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지출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망)	2021 (전망)
소득세		44	71	82	132	192	249	583	1,126	1,131
법인세	신설	257	301	344	382	479	660	1213	1,949	2,011
합계		301	372	426	514	671	909	1,796	3,075	3,142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6.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²⁵⁾

-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2012. 1. 1.~2021. 12. 31.까지 취업하는 경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과세기간별 15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은 다음과 같은 사람임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²⁶⁾
 - 60세 이상인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적용을 받는 자
 -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로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 해당 중소기업체 재취업,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함

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²⁷⁾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또는 2년까지(중소·중견기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
 - 해당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 등이란 다음과 같음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9조의3; 시행령 제27조; 시행령 제26조의3⁴⁾; 시행규칙 제61조

26)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6년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2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27조 제4항; 시행령 제26조의7

○ 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 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 등의 상시근로자 증가 시

$$\text{소득공제금액} = \text{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times \text{일정금액}^{**} \dots (A)$$

*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일반기업: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수도권 내 지역의 중소기업: 1,100만원, 수도권 밖 지역의 중소기업: 1,200만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시

$$\text{소득공제금액} = \text{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times \text{일정금액}^{**} \dots (B)$$

*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일반기업: 0원, 중견기업: 450만원, 수도권 내 지역의 중소기업: 700만원, 수도권 밖 지역의 중소기업: 770만원

○ 이상의 내용에 따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다음의 금액을 공제받음

-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A)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그 외의 경우, (B)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하는 사후관리 제도가 있음

다.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²⁸⁾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계산법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고,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함

○ 고용유지중소기업 요건

- 상시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2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시행령 제27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 고용유지중소기업 공제금액은 다음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 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p>* 공제금액 1천만원 이하</p>
--

- 위기지역 내 위치한 중소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함
- 일몰: 2021. 12. 31.

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²⁹⁾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0. 6. 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을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다음의 근로자를 2021. 12. 31.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됨
 -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 「하도급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포함
 -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함

2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61조

마.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³⁰⁾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귀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2022. 12. 31.까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함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친족관계가 아닐 것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2. 12. 31.까지 복귀시키는 경우를 말함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일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친족관계가 아닐 것

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³¹⁾

- 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또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있는 경우에 각각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임금을 증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2. 12. 3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0)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3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시행령 제26조의4

- (정규직 전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2. 12. 3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을 만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표 II -13>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공제 규모	조세지출 규모 (2019 실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3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취업 후 3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소득세 (6,068억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7)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공제적용기간: 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	중소기업: 수도권 700만원 (청년 1,100만원), 수도권 밖 770만원(청년 1,20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청년 800만원) 그 외: 400만원	소득세 (1,972억원) 법인세 (5,345억원) 총 7,317억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 30의3)	종업원의 근로시간단축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중소기업: 임금삭감액의 10%, 임금보전액의 15% 세액공제 근로자: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공제(연 1천만원 한도)	소득세 (0.7억원) 법인세 (1.7억원) 총 2.4억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 §30의2)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1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세액공제	소득세 (53억원) 법인세 (213억원) 총 266억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 대비 고용인원 증가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년: 100% 청년 외: 50% 신성장서비스업기업: 75%	소득세 (583억원) 법인세 (1,213억원) 총 1,796억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3)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육아휴직 후에도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1) 재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세액공제 2) 육아휴직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	소득세 (1.2억원) 법인세 (1.3억원) 총 2.5억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4)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상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줄지 않은 내국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소득세 (20억원) 법인세 (104억원) 총 124억원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1.

Ⅲ. 설문조사



III. 설문조사

- 동 제도의 성과제해 요인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수혜대상기업을 대상으로 대면-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제Ⅲ장에서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세부 설문조사 결과는 부록으로 작성하였음

<표 Ⅲ-1> 설문조사 세부 항목

구분	세부 항목
기업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형태, 종사자 수, 창업 시기(업력), 사업장 소재지 - 산업분류 및 신성장서비스업 해당 여부 - 2019년도 경영 현황(50인 이하 사업장) - 2018-2020년 3개년 인력 현황 - 대상별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 현황 및 평균 급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인지 정도 -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
조세특례 제도 및 지원사업별 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이용 현황 -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이용 현황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이용 현황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이용 현황 -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이용 현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도 이용 현황
2019년 조세특례 제도별 영향 및 도움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채용규모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제도별 영향 정도 -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제도별 영향 정도 -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제도별 영향 정도 - 제도가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 대상별 신규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향후 영향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경영의사결정에 미칠 영향 - 2021년 신규 인력 채용규모에 미칠 영향 - 2021년 근로자의 임금에 미칠 영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세부 내용 관련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 제도 공제기간 연장 인지 여부 및 효과 - 동 제도의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대상별 신규고용 유도에 미치는 효과 - 대상별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동 제도의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 제도 관련 개선사항

자료: 설문조사 결과

1. 응답기업 특성

-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519개 업체 중 개인사업자는 151개사로 29.1%, 법인사업자는 368개사로 70.9% 비율이며, 직원 수가 1~4명(22.0%), 업력이 12년 이상~22년 미만(30.6%), 수도권 소재지(54.5%)인 기업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표 III-2> 응답기업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519	100.0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151	29.1
	법인사업자	368	70.9
직원 수	1~4명	114	22.0
	5~9명	88	17.0
	10~19명	89	17.1
	20~49명	88	17.0
	50~99명	61	11.8
	100~299명	51	9.8
	300~499명	13	2.5
	500~999명	12	2.3
	1000명 이상	3	0.6
업력	3년 이상~8년 미만	104	20.0
	8년 이상~12년 미만	103	19.8
	12년 이상~22년 미만	159	30.6
	22년 이상	153	29.5
소재지	수도권	283	54.5
	경상권	139	26.8
	전라권	38	7.3
	충청권	48	9.2
	강원권	9	1.7
	제주권	2	0.4
신성장서비스업	해당	127	24.5
	비해당	392	75.5

자료: 설문조사 결과

2. 기업 운영 현황

- 응답기업의 상시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상시근로자 수는 2018~2020년 3개년 간 평균 약 60명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3개년간 평균 13명 내외(전체 상시근로자 중 약 20%)였으며, 여성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18명 내외(약 27~28%)로 나타남

<표 III-3> 3개년 상시근로자 현황(평균)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총상시근로자 수 (A)	청년		여성	
		근로자 수 (B)	비율 (B/A)	근로자 수 (C)	비율 (C/A)
2020년	64.6	13.2	20.4	18.1	28.0
2019년	63.5	13.0	20.5	17.5	27.6
2018년	62.8	12.9	20.5	17.7	28.2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III-4> 3개년 임시근로자 현황(평균)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총임시근로자 수 (A)	청년		여성	
		근로자 수 (B)	비율 (B/A)	근로자 수 (C)	비율 (C/A)
2020년	6.2	0.9	14.5	1.3	21.0
2019년	6.4	0.9	14.1	1.3	20.3
2018년	6.1	0.9	14.8	1.2	19.7

자료: 설문조사 결과

- 2019년에 상시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중 65.5%이며, 대상별로는 청년(67.6%), 그 외 상시근로자(61.2%) 순으로 나타났으며,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 비율은 20.3%로 상대적으로 낮음
 - 청년 상시근로자 채용 경험이 있다는 기업의 평균 청년 고용 인원은 8.3명, 세전 월평균 급여는 221.53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채용 경험이 있다는 기업의 평균 고용 인원은 8.1명, 세전 월평균 급여는 215.91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 경험이 있다는 기업의 평균 청년 고용 인원은 16.8명으로 대상 중 가장 많았으며, 세전 월평균 급여는 역시 271.25만원으로 가장 높음

〈표 III-5〉 상시근로자 및 대상별 상시근로자 채용 여부

(Base1: 전체, Base2: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 여부 ‘예’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상시근로자 채용 여부	사례 수	대상별 채용 여부		
				청년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
전체	(519)	65.5	(340)	67.6	20.3	61.2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III-6〉 대상별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 및 세전 월평균 급여

(Base: 대상별 2019년 채용 여부 ‘있음’ 응답자, 단위: 명, 만원)

구분	청년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	월평균 급여	고용 인원	월평균 급여	고용 인원	월평균 급여
전체	8.3	221.53	8.1	215.91	16.8	271.25

자료: 설문조사 결과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인지도

- 동 제도의 인지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른다’(34.1%), ‘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있다’(14.3%) 순으로 나타남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세무관련 업무는 회계, 세무사에 위임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해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39.0%로 높게 나타남

<표 III-7> 제도 인지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있다	제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른다
전체	(519)	14.3	51.6	34.1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III-8>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

(Base: 제도 비인지 응답자, n=177,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세무관련 업무는 회계, 세무사에 위임하기 때문에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해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도 중 주로 혜택 받는 것들만 알고 있어서	조세특례제도 중 혜택 규모가 큰 것들만 알고 있어서
전체	(177)	46.3	39.0	11.3	3.4

자료: 설문조사 결과

4. 타 조세특례 제도 및 지원사업별 이용 현황(2019)

- 2019년도 타 조세특례 제도 및 지원사업별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용 창출장려금 지원사업’ 이용 비율이 20.2%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18.3%로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제도별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20% 내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이용 비율이 3.7%로 낮음

<표 III-9> 2019년 제도별 이용 현황

(Base: 전체, n=519, 단위: %)

구분	이용 경험 ‘있다’	이용 경험 ‘없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8.3	81.7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3.7	96.3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5.2	84.8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5.6	84.4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20.2	79.8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4.3	85.7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2019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음’이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신청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본 조세특례 존재를 알지 못해서’가 20.0%로 높게 나타남
- 기타 응답으로는 대부분이 ‘동 제도 및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로 조사됨

〈표 III-1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Base: 동 제도 혜택 경험 ‘없음’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2019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음	신청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본 조세특례 존재를 알지 못해서	신청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중복적용 배제로 타 조세특례 신청	신청요건은 충족되었으나, 타 공공기관의 지원금 차감으로 인해	기타
전체	(424)	55.4	20.0	9.0	3.8	11.8

자료: 설문조사 결과

5.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조세특례 제도별 영향 및 도움 정도(2019)

- 2019년도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제도별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제도별로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은 낮은 수준으로 조사된 한편, 전반적으로 대상별 ‘청년’의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제도별로 살펴보면, 청년과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의 영향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상시근로자의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11>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제도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청년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	
	영향 '있음'	4점 평균	영향 '있음'	4점 평균	영향 '있음'	4점 평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4.5	1.91	18.7	1.73	24.1	1.8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5.2	1.92	18.9	1.76	24.3	1.87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25.6	1.92	19.3	1.77	22.9	1.8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8.3	1.79	15.0	1.68	15.6	1.74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18.7	1.74	-	-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로는, 모든 대상별로 ‘채용에 있어 세금혜택은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이러한 조세특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I-1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Base: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대해 동 제도의 ‘영향 없음’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채용에 있어 세금혜택은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	이러한 조세특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인건비에 비하여 세액공제 액이 적어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이익발생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세액 공제기간이 짧아서 (현행 2년)	기타
청년	(392)	42.1	22.2	15.1	12.2	3.8	4.6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422)	45.5	23.0	10.2	12.3	3.8	5.2
그 외 상시근로자	(394)	48.2	20.3	13.5	11.9	2.5	3.6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대상별로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모든 대상별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13〉 대상별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

(Base: 전체, n=519, 단위: %)

구분	청년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3.4	61.8	46.6	60.7	51.8	66.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5.4	68.0	13.9	61.3	15.6	73.8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25.4	45.1	19.3	34.5	20.2	39.9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5.8	25.0	14.5	21.8	12.3	19.5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5.8	21.8	-	-

자료: 설문조사 결과

6. 향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

- 향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경영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54.3%)으로 나타남
 - 채용규모와 근로자 임금이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10.2%로,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I-14〉 2021년 경영의사결정에 미칠 영향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채용규모 증가, 근로자 임금 유지	채용규모 유지, 근로자 임금 증가	채용규모 증가, 근로자 임금 증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	기타
전체	(519)	12.3	21.8	10.2	54.3	1.3

자료: 설문조사 결과

- 향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신규 인력 채용규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46.6%), ‘채용규모 유지’(27.9%)로 나타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함
- 또한 2021년 근로자의 임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음’(41.8%), ‘임금수준 유지’(35.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모두의 채용규모 및 평균임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8.5%, 10.4%로 나타남

〈표 III-15〉 2021년 신규 인력 채용규모 및 근로자의 임금에 미칠 영향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채용규모 유지	청년의 채용규모만 증가	29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규모만 증가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증가	모두의 채용규모 증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채용규모	27.9	8.3	3.1	5.6	8.5	46.6
구분	임금수준 유지	청년의 평균 임금만 증가	29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의 평균 임금만 증가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평균임금 증가	모두의 평균 임금 증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임금	35.3	4.8	2.5	5.2	10.4	41.8

자료: 설문조사 결과

7. 향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세부 내용 관련 인식

- 향후 대상별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으로는, 모든 대상별로 ‘정액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16> 대상별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급여비례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정액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무차별하다
청년 고용	33.9	48.2	17.9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	27.6	51.4	21.0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	28.7	48.0	23.3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동 제도의 세액공제 혜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9.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 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효과 있음’이라는 응답이 60.8%로 나타나 효과 없다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남

<표 III-17> 혜택기간 연장 사실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

(Base1: 전체, Base2: 혜택기간 연장 사실 ‘인지’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인지율	전혀 효과가 없었다	효과가 없었다	효과가 있었다	매우 효과가 있었다	종합		4점 평균
							효과 없음	효과 있음	
전체	(519)	19.7	9.8	29.4	48.0	12.7	39.2	60.8	2.64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대상별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상별로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 청년의 경우 신규고용 유도에 ‘효과 없음’이 과반(50.1%)으로 나타났으며,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경우 ‘효과 있음’이 소폭 더 높게 나타남

<표 III-18> 대상별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의 효과성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청년 신규고용 유도 효과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신규고용 유도 효과		그 외 상시근로자 신규고용 유도 효과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519)	49.9	50.1	50.5	49.5	54.5	45.5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대상별로 신규고용 유도 효과가 없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상별로 ‘5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19> 대상별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Base: 대상별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 효과 ‘없음’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이상
청년	(260)	30.4	8.1	42.3	1.2	3.8	0.0	0.0	4.6	9.6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257)	26.8	7.8	45.1	1.2	2.7	0.4	0.0	5.8	10.1
그 외 상시근로자	(236)	25.8	8.1	44.9	0.8	3.4	0.4	0.0	5.1	11.4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1순위와 1+2순위 응답 모두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0> 동 제도 관련 개선사항

(Base: 전체, n=519, 단위: %)

구분	1순위	1+2순위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	41.4	55.9
세액공제 혜택기간 (공제기간) 연장	18.3	48.7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와 통합하여 고용창출 지원세제 단순화	17.7	34.3
현행 급여비례방식을 정액지원방식으로 전환	14.8	40.1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와 동일하게 사후관리 규정 추가	5.6	13.3
동 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1.3	6.7
기타	0.8	1.0

자료: 설문조사 결과

IV. 해외사례



IV. 해외사례

1. 미국

-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장세를 사업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는 없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의 사회보장세를 면제한 바 있음

-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Payroll Tax)를 면제함
 - HIRE(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에 의거 2010년 3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격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사회보장세 6.2%를 면제함
 - 적격 종업원은 2010년 3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신규 채용된 자로서 직전 60일간 실업상태에 있거나 40시간 이하 근로한 자여야 함
 - 기업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 채용한 종업원 급여가 하반기에 중요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면 적격 종업원 1명당 1천달러까지 추가로 신규채용유지공제(additional new hire retention credit)를 받을 수 있음

2. 캐나다³²⁾

-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장세를 사업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는 없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사회보장세를 경감한 바 있음

32) Government of Canada, Small business Job Credit,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whats-new/small-business-job-credit.html>, 검색일자: 2021. 3. 30.

- 캐나다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그리고 장기적인 번영을 위하여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소기업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감면하여 주는 소기업일자리공제 (Small Business Job Credit)를 운영함
 - 소기업일자리공제는 2015년과 2016년, 소기업 고용보험료를 100달러당 1.88달러에서 1.60달러로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효과가 있음
 - 공제대상은 2015년과 2016년에 납부한 사업주 부담분 고용보험료가 1만 5천달러 이하인 기업임
 - 고용보험료 납부기업의 약 90%가 소기업일자리공제를 적용받아 고용보험료를 15% 경감받음

3. 프랑스³³⁾

-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장세를 사업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는 없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05년 7월 1일 이후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근로자 고용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프랑스는 1993년부터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에 대하여 감면정책을 실시함
-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회보험료를 26% 감면하며, 그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감면율이 선형으로 줄어들어 최저임금의 160% 수준에 도달하면 감면율이 0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함
 - 동 규정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됨
-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적용되는 사회보험료 감면율이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28.49%로 상승하였으며,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는 32.54%의 감면율이 적용됨
 - 종업원 20인 이하 기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28.09%,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는 32.14%의 감면율이 적용됨

33) OECD, "Taxing Wages 2020-France," <https://www.oecd-ilibrary.org/sites/af36344c-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af36344c-en>, 검색일자: 2021. 3. 30.

4. 독일³⁴⁾

-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사업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는 없음
 - 저임금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정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지만, 이는 순전히 근로자를 위한 것이며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는 경감하지 않음

- 독일의 사회보험에 있어 저임금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소득 400유로 이하 근로자와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조정영역 근로자로 구분됨
 - 조정영역 근로자는 월 소득 400.01~1,300유로 사이의 근로자임
 - 조정영역 근로자 범위가 2019년 7월 1일자로 400.01~800유로에서 400.01~1,300유로로 확대됨

- 조정영역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요율로 사회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에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보다 높은 요율의 사회보험료가 부과됨
 - 일반적인 근로자와 사용자들은 각각 사회보험료의 50%씩을 부담하는 반면, 조정영역의 근로자들은 임금수준에 따라 50%보다 낮은 비율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함

34) OECD, "Taxing Wages 2020-Germany", <https://www.oecd-ilibrary.org/sites/08a1335d-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08a1335d-en>, 검색일자: 2021. 3. 30.

V. 효과성 검토



V. 효과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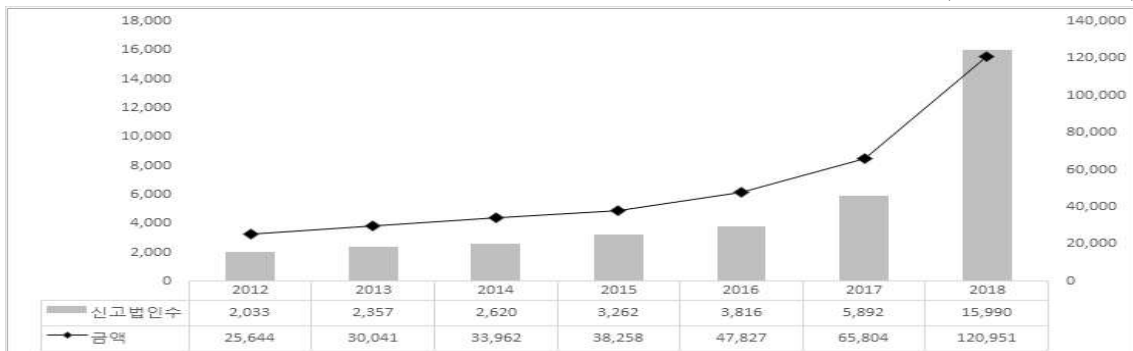
1. 조세특례의 수혜대상 분석

가. 법인사업자

- 2012년 이후 본 조세특례를 신청한 법인사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법인사업자 수는 2,033개(2012년)에서 1만 5,990개(2018년)로 약 7.9배 증가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지원이 허용(2018년) 후 신청기업 수가 5,892개에서 1만 5,990개로 큰 폭(2.7배)으로 증가함
- 신청 법인사업자 수와 더불어 법인사업자 공제액 규모 역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
 - 256억원(2012년)에서 1,209억원(2018년)으로 증가함
- 법인사업자 1인당 평균 공제액은 2017년까지 1,200만원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8년에는 756만원으로 감소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지원 허용 후 영세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편입됨에 따라 법인사업자 1인당 평균 공제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V-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 및 공제금액

(단위: 개, 백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동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법인사업자의 업종은 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
 - 전체 신고 법인사업자(1만 5,990개) 중 업종이 제조업인 법인사업자 수는 4,958개로 전체의 31%를 차지함
 -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26.4%)과 서비스업(24.1%) 업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법인사업자 1인당 평균 공제액이 가장 큰 업종은 보건업(3,576만원)이며, 그 다음은 금융·보험업(1,384만원)으로 나타남

<표 V-1> 업태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법인사업자)

(단위: 백만원, %, 원)

업종	신고법인 수		금액		법인당 평균 공제금액 원
	개	%	백만원	%	
농·임·어업	20	0.1	40	0.0	2,000,000
광업	9	0.1	56	0.0	6,222,222
제조업	4,958	31.0	47,301	39.1	9,540,339
전기·가스·수도업	1	0.0	0	0.0	-
건설업	1,922	12.0	10,083	8.3	5,246,098
도매업	3,469	21.7	17,215	14.2	4,962,525
소매업	754	4.7	4,740	3.9	6,286,472
음식·숙박업	296	1.9	1,779	1.5	6,010,135
운수·창고·통신업	447	2.8	3,556	2.9	7,955,257
금융·보험업	108	0.7	1,495	1.2	13,842,593
부동산업	82	0.5	503	0.4	6,134,146
서비스업	3,851	24.1	32,169	26.6	8,353,415
보건업	54	0.3	1,931	1.6	35,759,259
기타 업종	19	0.1	83	0.1	4,368,421
전체	15,990	100	120,951	100.0	7,564,165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동 조세특례 신청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 대부분(78.3%)이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서울, 경기지역 법인사업자 비중이 각각 36.3%와 36.4%로 대부분을 차지함
 - 법인사업자 1인당 평균 공제액 규모는 울산(909만원)이 가장 크고, 제주(449만원)가 가장 작음

<표 V-2> 소재지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법인사업자)

(단위: 백만원, %, 원)

법인사업자 사업장소재지	신고법인 수		신고금액		1인당 평균 공제금액 원
	개	%	백만원	%	
서울	5,806	36.3	50,111	41.4	8,630,899
인천	887	5.5	5,794	4.8	6,532,131
경기	5,827	36.4	40,788	33.7	6,999,828
강원	157	1.0	1,112	0.9	7,082,803
대전	185	1.2	1,404	1.2	7,589,189
충북	415	2.6	3,719	3.1	8,961,446
충남	500	3.1	3,225	2.7	6,450,000
세종	42	0.3	261	0.2	6,214,286
광주	162	1.0	811	0.7	5,006,173
전북	204	1.3	1,421	1.2	6,965,686
전남	196	1.2	1,160	1.0	5,918,367
대구	221	1.4	1,343	1.1	6,076,923
경북	290	1.8	1,623	1.3	5,596,552
부산	413	2.6	2,541	2.1	6,152,542
울산	162	1.0	1,472	1.2	9,086,420
경남	437	2.7	3,780	3.1	8,649,886
제주	86	0.5	386	0.3	4,488,372
소계	15,990	100	120,951	100	7,564,165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대체로 신청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가 클수록 수혜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동 조세특례 신청 법인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자는 전체의 20.3%를 차지하나, 이들이 공제받은 금액은 2.2%에 불과함
 - 수입금액 5천억 초과인 경우, 법인사업자 1인당 7억 8천만원을 공제받은 반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사업자 1인당 공제액이 83만원에 불과함

<표 V-3> 수입금액 규모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법인사업자)

(단위: 백만원, %, 원)

수입금액	신고법인 수		금액		1인당 평균 공제금액 원
	개	%	백만원	%	
10억 이하	3,242	20.3	2,676	2.2	825,416
20억 이하	2,576	16.1	4,722	3.9	1,833,075
50억 이하	4,019	25.1	14,336	11.9	3,567,056
100억 이하	2,545	15.9	16,953	14.0	6,661,297
200억 이하	1,749	10.9	20,220	16.7	11,560,892
300억 이하	728	4.6	14,253	11.8	19,578,297
500억 이하	594	3.7	16,078	13.3	27,067,340
1,000억 이하	422	2.6	19,388	16.0	45,943,128
5,000억 이하	111	0.7	9,193	7.6	82,819,820
5,000억 초과	4	0.0	3,133	2.6	783,250,000
소계	15,990	100.0	120,951	100.0	7,564,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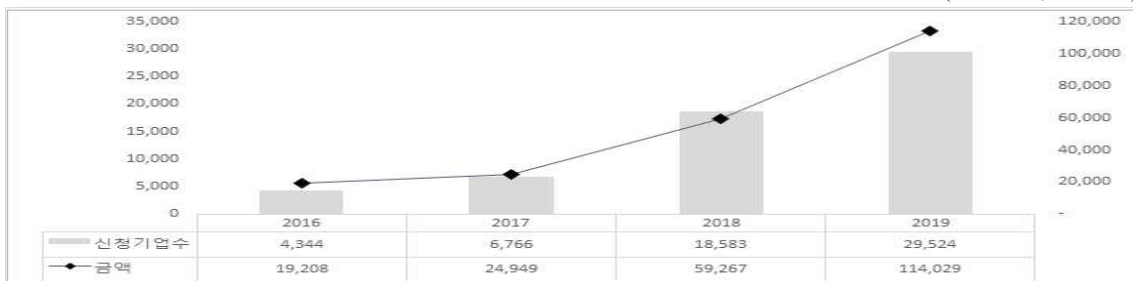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나. 개인사업자

- 2016년 이후 본 조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개인사업자 수는 4,344개(2016년)에서 2만 9,524개(2019년)로 약 6.8배 증가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지원이 허용(2018년)된 후 신청기업 수가 6,766개에서 1만 8,583개로 큰 폭(2.7배)으로 증가함
-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 수와 더불어 개인사업자 공제액 규모 역시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함
 - 공제액은 192억원(2016년)에서 1,140억원(2019년)으로 4년 만에 5.9배가 증가함

[그림 V-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개인사업자 및 공제금액

(단위: 개, 백만원)



주: 1. 2019 귀속사업연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저자가 가공

- 동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개인사업자의 업종은 주로 보건의료업에 집중됨
- 전체 신고 개인사업자(2만 9,524개) 중 업종이 보건의료업인 개인사업자 수는 9,914개로 전체의 33.6%를 차지하며, 이들이 공제받은 금액은 전체의 59.1%를 차지함
 -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18.4%)과 음식·숙박업(16.3%) 업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공제액이 가장 큰 업종은 부동산업(827만원)이며, 그 다음이 보건의료업(680만원)으로 나타남

<표 V-4> 업태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개인사업자)

(단위: 명, 백만원, %, 원)

업태	신청자 수		금액		1인당 평균 공제금액 원
	개	%	백만원	%	
농·임·어업	10	0.0	23	0.0	2,252,026
광업	2	0.0	1	0.0	353,779
제조업	3,976	13.5	12,451	10.9	3,131,57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8	0.2	189	0.2	3,260,975
건설업	551	1.9	1,183	1.0	2,146,737
도·소매업	5,443	18.4	10,644	9.3	1,955,616
음식·숙박업	4,798	16.3	9,530	8.4	1,986,173
운수·창고·통신업	506	1.7	1,136	1.0	2,244,108
금융 및 보험업	19	0.1	21	0.0	1,106,125
부동산업	182	0.6	1,505	1.3	8,268,892
임대(부동산 제외) 및 사업서비스업	345	1.2	978	0.9	2,833,407
교육서비스업	608	2.1	1,041	0.9	1,712,588
보건(의료업)	9,914	33.6	67,379	59.1	6,796,316
기타	3,112	10.5	7,950	7.0	2,554,521
전체	29,524	100.0	114,029	100	3,862,249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개인사업자 중 보건의료업 업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자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신청자의 99.8%, 신청금액의 99.9%가 병의원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업 신청자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의 89.6%를 차지하며, 이들이 공제받은 금액이 전체의 73.1%를 차지함
 - 1인당 평균 공제액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1,784만원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555만원임

<표 V-5> 보건의료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자 구성(개인사업자)

(단위: 명, 백만원, %, 원)

구분	신청자 수		금액		1인당 평균 공제금액 원	
	개	%	백만원	%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608	6.1	14,198	21.1	23,351,240
	치과병원	276	2.8	1,508	2.2	5,464,400
	한방병원	72	0.7	1,579	2.3	21,936,146
	종합병원	23	0.2	230	0.3	9,997,672
	일반병원	34	0.3	563	0.8	16,559,171
	소계	1,013	10.2	18,078	26.8	17,846,090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4,739	47.8	33,847	50.2	7,142,255
	치과의원	2,892	29.2	11,689	17.3	4,041,814
	한의원	1,247	12.6	3,725	5.5	2,987,060
	소계	8,878	89.6	49,261	73.1	5,548,652
유사 의료업	5	0.1	5	0.0	981,430	
그 외 기타 보건업	13	0.1	29	0.0	2,265,874	
보육시설 운영업	5	0.1	5	0.0	1,058,691	
합계	9,914	100	67,379	100	6,796,316	

주: 1. 2019 귀속사업연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 중 63.9%가 수입금액 5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이며, 이들이 공제받은 금액은 전체의 86.8%를 차지함
 -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전체 신청자의 33.8%를 차지하며, 이들이 공제받은 금액이 전체의 67.4%를 차지함
 - 개인사업자 1인당 공제금액은 수입금액 1,700~2,000만원 사이 개인사업자가 1,239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로 770만원임

〈표 V-6〉 수입금액 규모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개인사업자)

(단위: 명, 백만원, %, 원)

수입금액	신청자 수		금액		1인당 평균 공제금액 원
	명	비중	백만원	비중	
0.8천만 이하	79	0.3	495	0.4	6,267,633
1천만 이하	7	0.0	26	0.0	3,698,779
1.2천만 이하	7	0.0	30	0.0	4,345,951
1.7천만 이하	19	0.1	74	0.1	3,914,435
2천만 이하	16	0.1	198	0.2	12,391,511
2.4천만 이하	22	0.1	106	0.1	4,800,717
3.6천만 이하	63	0.2	218	0.2	3,466,333
4천만 이하	14	0.0	15	0.0	1,063,743
4.8천만 이하	27	0.1	76	0.1	2,803,589
6천 이하	91	0.3	124	0.1	1,360,659
8천 이하	166	0.6	214	0.2	1,289,015
1억 이하	218	0.7	185	0.2	846,561
2억 이하	1,981	6.7	1,839	1.6	928,566
3억 이하	2,518	8.5	2,863	2.5	1,136,971
5억 이하	5,420	18.4	8,561	7.5	1,579,464
10억 이하	8,901	30.1	22,165	19.4	2,490,142
10억 초과	9,975	33.8	76,840	67.4	7,703,276
전체	29,524	100.0	114,029	100	3,862,249

주: 1. 2019 귀속사업연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 정책목표 달성도 분석

가. 고용부담 경감 효과

- 통계청 「일자리 행정통계」에 의하면 2019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45만원, 중위소득은 201만원으로 나타남
 -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평균소득은 2,940만원, 중위소득은 2,412만원임
- 2018년 귀속사업연도에 본 조세특례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인원 1인당 평균 146만원을 공제받음
 - 극단치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포의 상하위 1%에 해당하는 값을 제거한 후 평균값을 계산함

- 동 조세특례는 고용증가인원 1인당 근속기간 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 총액의 약 2.9%(평균소득 기준) 또는 3.6%(중위소득 기준)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신규 채용인원이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근속기간(2019년 기준 3.4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며, 해당 기업이 고용인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2년간 고용증가인원 1인당 146만원, 총 292만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치임
- 중소기업은 고용증가인원 1인당 3.4년의 근속기간 동안 총 9,996만원(평균소득 기준) 또는 8,201만원(중간소득 기준)의 인건비를 부담하는바, 동 과세특례로 인하여 2.9% 또는 3.6%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발생함

<표 V-7> 고용부담 완화효과 분석

(단위: 백만원, 년, %)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 (A) ¹⁾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연평균소득 (B)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 (C)	고용부담 완화 효과(%) [(A×2)/(B×C)] ²⁾	
	평균값	중위값		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1.46	29.40	24.12	3.4	2.9	3.6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에 동 과세특례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분포의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극단치 제거

2) 신규 채용한 인원이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근속기간만을 회사에 근무하며, 고용증가가 발생한 해와 그 다음해 2년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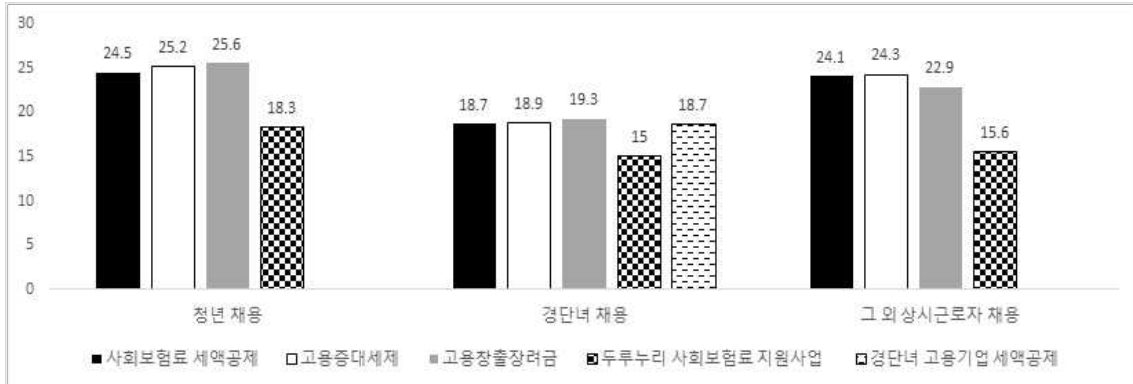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나. 신규채용 도움 정도

-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지원제도별 영향 유무를 조사한 결과, 각 제도가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현 지원제도가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25% 미만으로, 75% 이상이 현 지원제도가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함

[그림 V-3]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지원제도별 영향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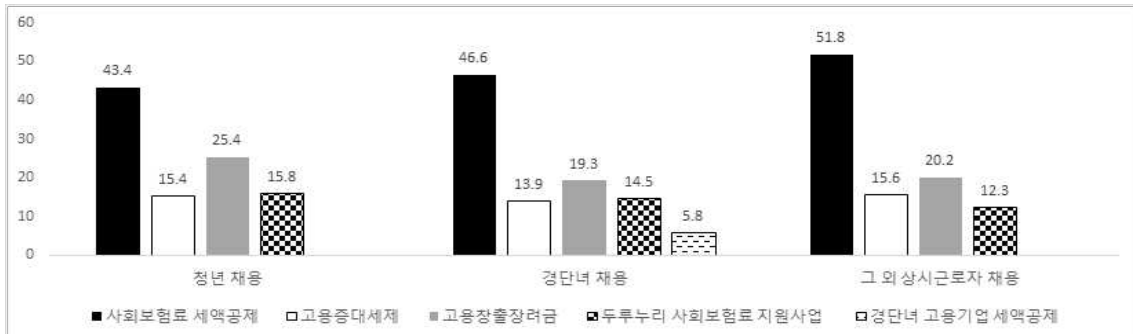


주: 1. 2019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0보다 큰 5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해당 지원제도가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제도를 조사한 결과, 본 조세특례의 도움 정도가 모든 유형의 채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본 조세특례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율(청년 43.4%, 경력단절여성 46.6%, 그 외 상시근로자 51.8%)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고용창출장려금 순이나 응답 비율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4]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제도

(단위: %)



주: 1. 2019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0보다 큰 5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제도의 1순위 응답 기준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현재의 고용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은 낮지만, 지원제도 중에서는 본 조세특례의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영세 사업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도움 정도가 다른 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됨
 - 2021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사회보험 신규가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손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채용 즉시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취업취약계층 채용에 한하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기간이 1년으로 다른 지원제도에 비하여 짧은 편이며, 부정수급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규 채용 시 도움 정도가 본 조세특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창출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를 위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³⁵⁾ 부정수급 적발 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을 제한, 부정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5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변상해야 하며,³⁶⁾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³⁷⁾

다. 고용증대 효과

1) 검증방법

- 본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2017~2019년 귀속사업연도의 국세청 신고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자료,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자료를 이용함
 - 본 조세특례는 고용창출을 주요 정책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제도로 인하여 고용이 창출되었는지 살펴봄

- 고용지원제도의 효과 실증연구가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음³⁸⁾

35) 「고용보험법」 제109조

36)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37)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38) 김재진 외(2015), p. 639.

- 수혜기업의 경우 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때의 종업원 수를 관찰할 수 없으며, 비수혜기업의 경우 본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을 때 종업원 수를 관측할 수 없다는 것임
- 따라서 본 조세특례의 고용창출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혜기업의 종업원 수와 이 기업이 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의 종업원 수의 차이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앞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Propensity Score Matching(이하 “PSM”)을 사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추정함
 - PSM의 기본 개념은 수혜기업이 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 종업원 수를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비수혜기업 중 수혜기업과 가장 유사한 기업을 찾아내어 그 기업의 종업원 수를 대신 사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추정하는 것임
 - 설명변수들을 토대로 각 기업의 성향점수를 추정한 후, 고용지원세제를 하나도 적용받지 않은 비수혜기업 중 수혜기업과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하고, 수혜기업의 종업원 수와 매칭된 비수혜기업의 종업원 수의 차이를 본 조세특례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로 측정함
- 본 연구는 과세소득이 0보다 크고, 본 조세특례를 포함하여 고용과 관련된 어떠한 조세특례제도도 적용받지 않은 기업 중 수혜기업과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기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함
 - 고용여력의 차이가 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과세소득이 0보다 큰 기업 중에서 비교집단을 선정함
 - 본 조세특례 이외의 고용과 관련된 다른 조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은 경우 고용창출효과가 본 조세특례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비수혜기업은 매칭대상에서 제외함
- 본 연구는 김재진 외(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총자산, 매출액, 총자산이익률, 기업연령, 지역, 업종, 연도)을 사용하여 개별 기업의 성향점수를 산출함
 - 총자산과 매출액은 기업규모를 고려하기 위한 설명변수임
 - 기업연령, 즉 창업 후 지속기간은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기 위한 설명변수임

- 총자산이익률(ROA)은 기업의 수익성 또는 기업의 고용여력을 고려하기 위한 설명변수임
- 지역과 업종, 해당 연도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별 더미와 업종별 더미, 연도별 더미를 설명변수로 포함함

2) 회귀분석 결과

- 본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표본의 연도별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수혜그룹(1만 2,343개)과 수혜그룹과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비수혜그룹(1만 2,343개) 총 2만 4,686개 기업, 3개년(2016~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 본 조세특례의 신청기업 수가 급증했던 2018년이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57.01%)이 가장 높음

<표 V-8> 연도별 표본구성

(단위: 개, %)

연도	개수	비중
2016	4,308	17.45
2017	6,304	25.54
2018	14,074	57.01
합계	24,686	100.00

자료: 저자 작성

- 본 회귀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V-9>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중간값	최댓값
ln(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2	1.17	0.00	2.89	6.29
ln(고용보험 청년 피보험자 수)	1.34	1.25	0.00	1.10	4.71
ln(고용보험 청년 외 피보험자 수)	2.74	1.20	0.00	2.64	6.1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4.99	10.58	0.00	1.00	71.00
△고용보험 청년 피보험자 수	1.59	3.53	0.00	0.00	23.00
△고용보험 청년 외 피보험자 수	3.84	8.23	0.00	1.00	56.00
ln(총자산)	15.36	1.28	12.42	15.34	18.14
ln(매출액)	15.97	1.14	13.21	16.00	18.08
총자산이익률	0.11	0.10	0.00	0.08	0.43
ln(창업 후 지속기간)	2.19	0.74	0.69	2.20	3.69
매출액성장률	0.47	1.34	-0.47	0.14	9.93

주: 1. 이상치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포의 상·하위 1%를 벗어나는 값은 제거함

자료: 저자 작성

- PSM 회귀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수혜기업 그룹과 비수혜기업 그룹 간 유사성이 존재해야 하며, 본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두 그룹은 총자산, 매출액, 기업연령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혜그룹과 비수혜그룹의 총자산과 매출액, 창업 후 지속기간의 그룹 간 평균 차이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음

〈표 V -10〉 수혜그룹과 비수혜그룹의 주요 변수의 평균차이 검증

변수명	비수혜그룹	수혜그룹	평균차이(t-test)
ln(총자산)	15.36	15.37	-0.01
ln(매출액)	15.96	15.98	-0.01
ln(창업 후 지속기간)	2.19	2.19	-0.00
표본 수	12,343	12,343	

자료: 저자 작성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자연로그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PSM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혜기업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총근로자 수, 청년 근로자 수, 청년 외 근로자 수가 모두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모형 (1)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자연로그 값을, 모형 (2)는 청년 피보험자 수의 자연로그 값을, 모형 (3)은 청년 외 피보험자 수의 자연로그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 Treat 변수는 본 조세특례의 수혜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로 Treat의 회귀계수가 3개 모형 모두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냄
-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조세특례의 수혜기업이 유사한 성향의 비수혜기업에 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청년 피보험자 수, 청년 외 피보험자 수가 유의하게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함

<표 V-11> 회귀분석결과 I: 고용증대효과(종속변수: 종업원 수)

모형	(1)	(2)	(3)
종속변수	ln(피보험자 수)	ln(청년 피보험자 수)	ln(청년 외 피보험자 수)
Treat	0.404***	0.506***	0.316***
	(39.930)	(41.777)	(30.351)
통제변수	ln(자산총계), ln(매출액), 총자산이익률, ln(창업 후 지속기간), 업종별·연도별·지역별 더미		
N	24,686	24,686	24,686
Adj. R2	0.542	0.424	0.535
F-value	326.223***	203.200***	316.096***

- 주: 1. Treat는 처치집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기업이 동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짐
 2. 2016~2018 귀속사업연도의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 법인세 신고자료(국세청 자료)를 결합한 후 산출세액이 0보다 큰 법인 중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함
 3. 처치집단은 동 과세특례를 받은 기업이고, 비교집단은 고용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기업 중 처치집단과 성향점수(Propensity Score)가 가장 유사한 기업으로 선정함(1:1 매칭, 표본선정 반경 1%)
 4. *** p<0.01, ** p<0.05, *p<0.1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증가분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PSM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수혜기업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총근로자 수의 증가분, 청년 근로자 수의 증가분, 청년 외 근로자 수의 증가분이 모두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모형 (1)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증가분을, 모형 (2)는 청년 피보험자 수의 증가분을, 모형 (3)은 청년 외 피보험자 수의 증가분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 Treat 변수는 본 조세특례의 수혜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로 Treat의 회귀계수가 3개 모형 모두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냄
 -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조세특례의 수혜기업이 유사한 성향의 비수혜기업에 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청년 피보험자 수, 청년 외 피보험자 수 증가분이 유의하게 더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표 V-12> 회귀분석결과Ⅱ: 고용증대효과(종속변수: 종업원 수 증감)

모형	(1)	(2)	(3)
종속변수	△피보험자 수	△청년 피보험자 수	△청년 외 피보험자 수
Treat	2.805***	0.859***	1.880***
	(23.561)	(20.491)	(20.418)
통제변수	ln(종업원 수), ln(창업 후 지속기간), 매출액성장률, 업종별·연도별·지역별 더미		
N	24,686	24,686	24,686
Adj. R ²	0.237	0.148	0.245
F-value	87.142***	49.187***	90.935***

- 주: 1. Treat는 처치집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기업이 동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짐
 2. 2016~2018 귀속사업연도의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 법인세 신고자료(국세청 자료)를 결합한 후 산출세액이 0보다 큰 법인 중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함
 3. 처치집단은 동 과세특례를 받은 기업이고, 비교집단은 고용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기업 중 처치집단과 성향점수(Propensity Score)가 가장 유사한 기업으로 선정함(1:1 매칭, 표본선정 반경 1%)
 4. *** p<0.01, ** p<0.05, *p<0.1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3. 세법개정의 효과 분석

- 본 조세특례와 관련된 주요한 세법개정에는 2018년에 개정된 ‘감면기간 연장’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지원 허용’이 있음
 - 2017. 12. 19. 법 개정 시 신규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
 - 동 개정규정은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고용증가인원에 대하여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 2017. 12. 19. 법 개정 시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본 조세특례와 중복지원 배제대상에서 제외됨
 - 동 개정규정은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함

- 한편 2018년부터 시행된 고용증대세제의 지원 확대가 본 조세특례의 정책목표 달성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2017. 12. 19. 법 개정 시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 2018. 12. 24. 법 개정 시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을 각각 100만원씩 인상하는 한편, 공제기간을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확대함
 - 본 조세특례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증대세제와 지원대상이 겹치며, 고용증대세제와 중복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제의 지원 확대는 본 조세특례의 정책목표 달성도(고용증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2018년 세법개정이 본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을 통해 분석함
 - 다음 식 (1)에서 β_1 은 2018년 제도 변화로 인한 효과를 의미하며, β_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으로 추정된 경우 2018년제도 변화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log(Y_{it}) = \beta_1 (Treat_{it} \times d_t) + \gamma_1 d_t + X_{it} \delta + \epsilon_{it} \dots\dots\dots \text{식 (1)}$$

주: 1. Y_{it} 는 종속변수로 i 기업의 t 시점의 전체/청년고용인원의 자연로그 값 또는 전체/청년고용인원의 증분
 2. $Treat_{it}$ 는 처치집단 더미변수로 본 조세특례신청기업이면 1, 아니면 0
 3. d_t 는 2018년 이후 기간 더미변수로 2018년 이후이면 1 아니면 0
 4. X_{it} 는 통제변수로 총자산, 매출액, 총자산이익률, 기업연령, 매출액성장률, 연도더미, 업종더미, 지역더미

- 회귀분석 결과 2018년 세법개정이 고용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함
 - ‘Treat × 2018년’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는 2018년 세법개정 이후 동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표 V-13> 회귀분석결과Ⅲ: 2018년 세법개정 효과분석(종속변수: 종업원 수)

모형	(1)	(2)	(3)
종속변수	ln(피보험자 수)	ln(청년 피보험자 수)	ln(청년 외 피보험자 수)
Treat	0.491*** (31.782)	0.617*** (33.312)	0.392*** (24.586)
2018년 이후	-0.036** (-2.451)	-0.021 (-1.214)	-0.032** (-2.121)
Treat×2018년 이후	-0.153*** (-7.440)	-0.193*** (-7.862)	-0.132*** (-6.222)
통제변수	ln(자산총계), ln(매출액), 총자산이익률, ln(창업 후 지속기간), 업종별·지역별 더미		
N	24,686	24,686	24,686
Adj. R2	0.543	0.426	0.535
F-value	327.137***	204.189***	316.573***

- 주: 1. Treat는 처치집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기업이 동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짐
 2. 2016~2018 귀속사업연도의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 법인세 신고자료(국세청 자료)를 결합한 후 산출세액이 0보다 큰 법인 중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함
 3. 처치집단은 동 과세특례를 받은 기업이고, 비교집단은 고용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기업 중 처치집단과 성향점수(Propensity Score)가 가장 유사한 기업으로 선정함(1:1 매칭, 표본선정 반경 1%)
 4. *** p<0.01, ** p<0.05, *p<0.1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표 V-14> 회귀분석결과Ⅳ: 2018년 세법개정 효과분석(종속변수: △종업원 수)

모형	(1)	(2)	(3)
종속변수	△피보험자 수	△청년 피보험자 수	△청년 외 피보험자 수
Treat	3.077*** (16.942)	0.968*** (15.131)	2.079*** (14.796)
2018년 이후	-0.891*** (-4.415)	-0.255*** (-3.591)	-0.560*** (-3.589)
Treat×2018년 이후	-0.475** (-1.985)	-0.190** (-2.251)	-0.347* (-1.871)
통제변수	ln(종업원수), ln(창업 후 지속기간), 매출액성장률, 업종별·지역별 더미		
N	24,686	24,686	24,686
Adj. R2	0.237	0.148	0.245
F-value	86.228***	48.705***	89.973***

- 주: 1. Treat는 처치집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기업이 동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짐
 2. 2016~2018 귀속사업연도의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 법인세 신고자료(국세청 자료)를 결합한 후 산출세액이 0보다 큰 법인 중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함
 3. 처치집단은 동 과세특례를 받은 기업이고, 비교집단은 고용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기업 중 처치집단과 성향점수(Propensity Score)가 가장 유사한 기업으로 선정함(1:1 매칭, 표본선정 반경 1%)
 4. *** p<0.01, ** p<0.05, *p<0.1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한편 2018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의 중복지원 허용’으로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영세기업의 수혜비중이 상승하여 수직적 형평성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신청자 수가 2017년 1만 2,658명(개)에서 2018년에는 3만 4,573명(개)으로 2.73배 증가함
 - 세액공제액 역시 2017년 907억원에서 2018년에는 1,802억원으로 1.99배 증가함
 -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의 중복지원 허용으로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영세중소기업의 신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본 조세특례의 신청기업 중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83.6%에서 2018년에는 89.0%로 상승함
 - 전체 공제금액 중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 공제받은 금액의 비중이 2017년 40.8%에서 2018년 50.3%로 상승함

〈표 V-15〉 2018년 전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 현황 비교

(단위: 명, 개, 백만원, %, 배)

수입금액	신청자 수					공제금액				
	2017년		2018년		(마) 배수 (=다/가)	2017년		2018년		(차) 배수 (=아/바)
	(가) 개수	(나) 비중	(다) 개수	(라) 비중		(바) 금액	(사) 비중	(아) 금액	(자) 비중	
10억 이하	5,664	44.7	15,476	44.8	2.73	9,361	10.3	22,638	12.6	2.42
20억 이하	2,153	17.0	6,264	18.1	2.91	7,310	8.1	17,436	9.7	2.39
50억 이하	1,746	13.8	5,994	17.3	3.43	9,528	10.5	26,463	14.7	2.78
100억 이하	1,015	8.0	3,033	8.8	2.99	10,821	11.9	24,044	13.3	2.22
200억 이하	986	7.8	1,889	5.5	1.92	16,564	18.3	23,404	13.0	1.41
300억 이하	411	3.2	756	2.2	1.84	8,728	9.6	15,264	8.5	1.75
500억 이하	370	2.9	617	1.8	1.67	9,463	10.4	18,190	10.1	1.92
1,000억 이하	236	1.9	429	1.2	1.82	11,695	12.9	20,455	11.4	1.75
5,000억 이하	76	0.6	111	0.3	1.46	7,054	7.8	9,193	5.1	1.30
5,000억 초과	1	0.0	4	0.0	4.00	228	0.3	3,133	1.7	13.74
전체	12,658	100	34,573	100.0	2.73	90,753	100.0	180,219	100.0	1.99

주: 1. 귀속사업연도 기준

2. 법인+개인사업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법인);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개인사업자), 각 연도.

4. 형평성 효과 분석

가. 기업규모별 분석

- 수입금액 규모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공제혜택이 편중된 것을 나타냄
 - 법인의 경우 전체 신고법인의 11.6%를 차지하는 수입금액 200억원 초과 중소기업에 공제혜택의 51.3%가 편중되어 있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체 신고자의 33.8%를 차지하는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중소기업에 공제혜택의 67.4%가 편중되어 있음

<표 V-16> 수입금액 규모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인)

(단위: 억원, 개, %)

구분	수입금액										합계
	0~10	10~20	20~50	50~100	100~200	200~300	300~500	500~1,000	1,000~5,000	5,000~	
신고법인 수	3,242	2,576	4,019	2,545	1,749	728	594	422	111	4	15,990
비중	20.3	16.1	25.1	15.9	10.9	4.6	3.7	2.6	0.7	0.0	100
세액공제액	26.8	47.2	143.4	169.5	202.2	142.5	160.8	193.9	91.9	31.3	1,209
비중	2.2	3.9	11.9	14.0	16.7	11.8	13.3	16.0	7.6	2.6	100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V-17> 수입금액 규모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개인사업자)

(단위: 천만원, 개, %)

구분	수입금액										합계
	0~2	2~4	4~6	6~8	8~10	10~20	20~30	30~50	50~100	100~	
신고자 수	128	99	118	166	218	1,981	2,518	5,420	8,901	9,975	29,524
비중	0.4	0.3	0.4	0.6	0.7	6.7	8.5	18.4	30.1	33.8	100.0
세액공제액	8.2	3.4	2.0	2.1	1.9	18.4	28.6	85.6	221.7	768.4	1,140
비중	0.7	0.3	0.2	0.2	0.2	1.6	2.5	7.5	19.4	6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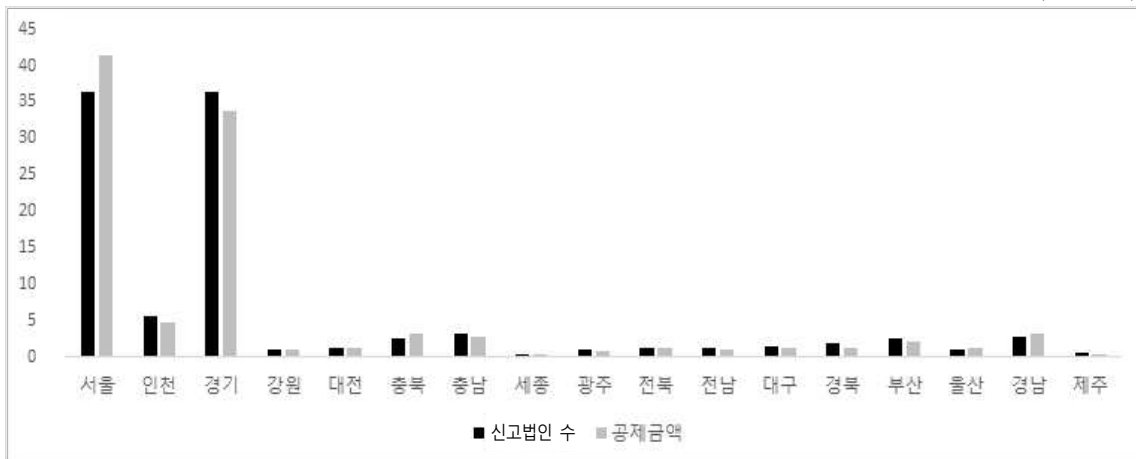
주: 1. 2019 귀속사업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나. 지역별 분석

- 법인소재지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신청법인의 78.20%, 공제금액의 79.90%가 수도권에 편중됨
 -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 소재법인의 수혜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남

[그림 V-5] 소재지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법인사업자)

(단위: %)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본 조세특례 신청법인의 소재지 분포를 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중소기업의 소재지 분포와 비교한 결과, 본 조세특례가 고용증대세제에 비하여 수도권 편중현상이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 신청법인 수 기준 본 수도권 소재법인의 비중은 78.20%이나, 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중 수도권 소재법인 비중은 이보다 낮은 69.26%로 나타남
 - 공제금액 기준 수도권 소재법인의 수혜비중은 79.90%이나, 중소기업이 신청한 고용증대세제 공제금액 중 수도권 소재법인의 수혜비중은 이보다 낮은 70.22%로 나타남
 -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세액공제액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본 과세특례에 비하여 수도권 편중현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표 V-18>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제 신고법인의 소재지 분포

(단위: %)

지역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신고법인 수	공제금액	신고법인 수	공제금액
수도권	서울	36.30	41.40	30.5	32.6
	인천	5.50	4.80	5.1	4.7
	경기	36.40	33.70	33.6	32.9
	소계	78.20	79.90	69.26	70.22
비수도권	강원	1.00	0.90	1.2	1.2
	대전	1.20	1.20	1.7	1.6
	충북	2.60	3.10	2.9	3.4
	충남	3.10	2.70	3.4	4.1
	세종	0.30	0.20	0.4	0.4
	광주	1.00	0.70	1.4	1.1
	전북	1.30	1.20	1.4	1.3
	전남	1.20	1.00	1.9	1.3
	대구	1.40	1.10	2.5	2.7
	경북	1.80	1.30	3.2	2.6
	부산	2.60	2.10	4.7	4.5
	울산	1.00	1.20	1.2	1.0
	경남	2.70	3.10	4.2	4.1
	제주	0.50	0.30	0.7	0.4
	소계	21.70	20.10	30.74	29.78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 기준

2.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중소기업 신청분만을 집계한 것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다. 업종별 분석

- 본 조세특례 신청법인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개인사업자의 보건의료업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법인세 신고법인의 업종별 분포와 동 조세 특례를 신청한 법인의 업종별 분포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소득을 보고한 개인사업장 중 보건의료업의 비중이 1.24%밖에 되지 않는데, 동 조세특례 신청법인의 33.6%, 전체 공제금액의 59.1%가 보건의료업에 편중되어 있음

<표 V-19>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 중소기업의 업종별 분포(법인)

(단위: %)

업태	당기순이익 보고법인 비중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법인 수	공제금액
농·임·어업	1.50	0.10	0.00
광업	0.11	0.10	0.00
제조업	22.89	31.00	39.10
전기·가스·수도업	0.71	0.00	0.00
건설업	15.76	12.00	8.30
도매업	20.78	21.70	14.20
소매업	3.55	4.70	3.90
음식·숙박업	1.14	1.90	1.50
운수·창고·통신업	4.72	2.80	2.90
금융·보험업	4.76	0.70	1.20
부동산업	4.31	0.50	0.40
서비스업	18.46	24.10	26.60
보건업	0.24	0.30	1.60
기타 업종	1.08	0.10	0.10
소계	100.00	100	100.00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표 V-2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 중소기업의 업종별 분포(개인사업자)

(단위: %)

업태	과세소득 보고 개인사업장 비중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자 수	공제금액
농·임·어업	0.25	0.0	0.0
광업	0.01	0.0	0.0
제조업	4.80	13.5	10.9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34	0.2	0.2
건설업	4.59	1.9	1.0
도·소매업	15.52	18.4	9.3
음식·숙박업	10.22	16.3	8.4
운수·창고·통신업	6.08	1.7	1.0
금융 및 보험업	0.28	0.1	0.0
부동산업	17.37	0.6	1.3
임대(부동산 제외) 및 사업서비스업	2.84	1.2	0.9
교육서비스업	1.93	2.1	0.9
보건(의료업)	1.24	33.6	59.1
기타	34.52	10.5	7.0
전체	100.00	100.0	100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Ⅵ. 타당성 검토



VI. 타당성 검토

1. 정부개입의 타당성

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심화

- 김재진 외(2015)와 오종현·강성훈(2018)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로 인하여 우수한 인력의 대기업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본 조세특례가 타당함을 주장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로 우수한 인력들의 대기업으로 몰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며, 이것이 다시 중소기업의 상대적 임금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함

<표 VI-1> 기업규모별 임금총액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영리기업	영리기업		비영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85만원 미만	14.9	15.1	5.3	17.8	14.3	
85만~150만원 미만	10.2	10.6	3.9	12.5	9.0	
150만~250만원 미만	28.5	29.3	14.0	33.6	25.8	
250만~350만원 미만	16.7	17.4	14.6	18.1	14.8	
350만~450만원 미만	9.8	9.8	13.8	8.7	10.0	
450만~550만원 미만	6.3	5.8	12.2	4.1	7.9	
550만~650만원 미만	4.5	3.6	9.7	2.0	7.1	
650만~800만원 미만	4.3	3.4	10.6	1.4	6.9	
800만~1,000만원 미만	2.5	2.5	8.2	0.9	2.5	
1,000만원 이상	2.3	2.5	7.6	1.1	1.6	
평균소득	2018	297	288	501	231	327
	2019	309	303	515	245	327
중위소득	2018	220	212	425	188	253
	2019	234	228	438	201	254

자료: 통계청,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 선행연구(김재진 외, 2015; 오종현·강성훈, 2018)에서 지적한 악순환의 출발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을 지닌다고 판단됨
 - 2019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45만원으로, 대기업 근로자(515만원)의 47.6% 수준에 불과함
 - 2018년 46.1%에 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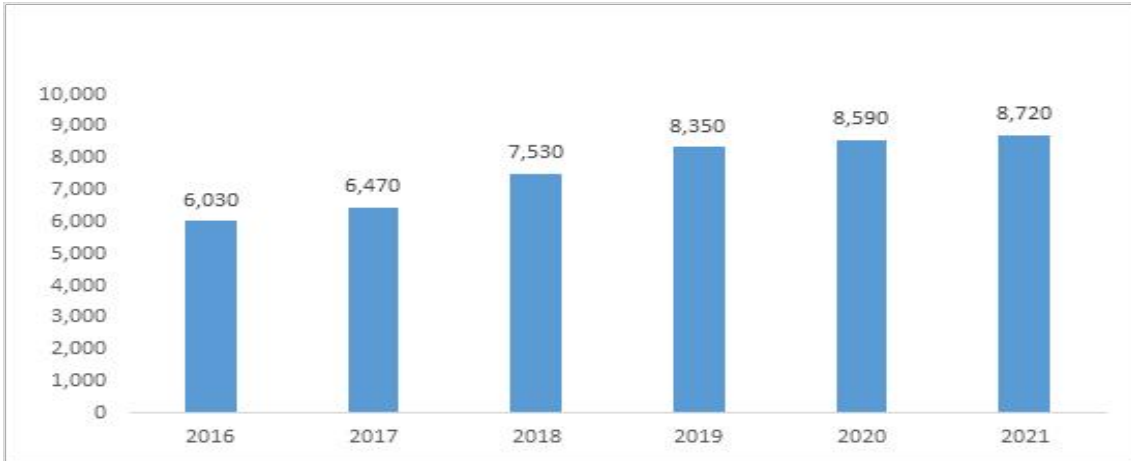
- 다만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이 동 조세특례로 발생한 혜택을 신규 채용인원의 급여인상으로 연결시켰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동 조세특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축소에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조세특례는 전체 중소기업 인력이 아니라 이익이 나는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한정적임
 - 동 조세특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축소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세액공제액만큼 신규 채용인원의 급여를 인상해야 함
 - 설문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가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22.9%에 불과함
 - 응답자의 41.8%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35.3%는 ‘임금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함

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가중

- 사회보험료는 급여에 비례하는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
 -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2021년에는 8,720원으로 최근 6년간 44.6%가 증가함

[그림 VI-1] 연도별 최저임금(시급)

(단위: 원)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 현황」,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검색일자: 2021. 7. 29.

-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의 요인으로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60조원을 돌파함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은 2015년 44조원 수준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 평균 7.5%가 성장하여 2019년 60조원을 돌파함

<표 VI-2> 연도별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단위: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건강보험	182,892	197,464	210,119	227,887	252,169
국민연금	156,169	166,388	176,594	187,504	200,086
고용보험	39,976	42,320	44,325	51,806	57,027
산재보험	56,795	59,187	60,485	69,565	70,793
장기요양	12,010	12,971	13,785	16,686	21,216
총액	447,841	478,330	505,308	553,448	601,291
증가율	6.7	6.8	5.6	9.5	8.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 2015년과 2019년의 사회보험가입률을 비교한 결과, 규모가 큰 사업장은 사회보험 가입률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가입률이 크게 상승하여 영세사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

- 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가입률이 2015년에 비하여 3.3%, 8.4%, 8.4%, 0.2% 상승함
- 반면 근로자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장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가입률은 각각 0.2%와 0.1% 소폭 상승했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가입률은 0.6%와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VI-3> 규모별 사회보험가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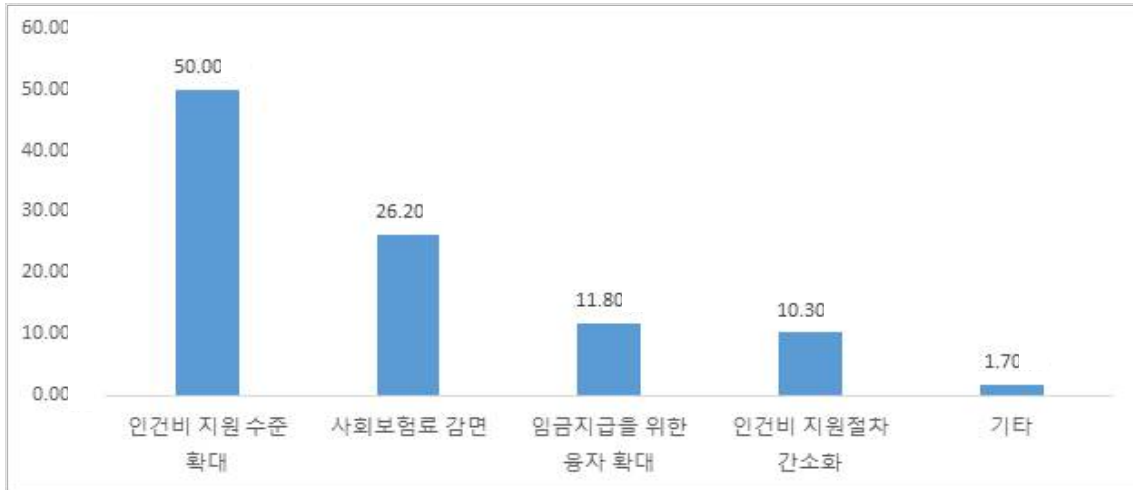
구분	2015년				2019년				증감			
	고용 보험	건강 보험	국민 연금	산재 보험	고용 보험	건강 보험	국민 연금	산재 보험	고용 보험	건강 보험	국민 연금	산재 보험
전체	89.3	88.4	88.7	97.6	90.3	90.9	91.1	97.7	1.0	2.5	2.4	0.1
5인 미만	69.4	68.9	69.5	90.7	72.7	77.3	77.9	90.9	3.3	8.4	8.4	0.2
5~29인	93.5	90.7	90.8	99.4	94.4	91.9	92.1	99.7	0.9	1.2	1.3	0.3
30~299인	97.4	97.2	97.0	99.8	97.8	97.3	96.9	99.9	0.4	0.1	-0.1	0.1
300인 미만	88.2	86.8	87.1	97.4	89.3	89.4	89.7	97.4	1.1	2.6	2.6	0.0
300인 이상	96.8	99.7	99.0	99.5	96.2	99.9	98.9	99.6	-0.6	0.2	-0.1	0.1

주: 1. 특수형태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0.

- 급격한 사회보험료 증가는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개입 및 지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험가입률 상승의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인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타당성을 가짐
-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고용유지를 위해 중점적으로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인건비 지원 수준 확대’ 다음으로 ‘사회보험료 감면’을 꼽음
 - 2020년 5월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유지를 위해 중점적으로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인건비 지원 수준 확대’(50.0%)가 가장 많았고, ‘사회보험료 감면’(26.2%), ‘임금지급을 위한 용자 확대’(11.8%), ‘인건비 지원 절차 간소화’(10.3%)의 순서로 조사됨

[그림 VI-2] 고용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정책

(단위: %)



주: 1.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0년 5월 중소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료: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 조사」, 2020. 5.

2. 수행방법의 적절성

가. 지원방식의 적절성: 조세지원 vs. 재정지원

- 신규 근로자 채용지원제도에는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이 있음
 - 본 조세특례와 유사한 정책목표를 지닌 재정지원사업에는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음

- 고용창출장려금 제도는 통상적 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제도임³⁹⁾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함

39) 고용노동부, 「지원금별 안내」,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6.html, 검색일자: 2021. 7. 29.

〈표 VI-4〉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지원 유형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1. 인건비 지원 - 교대제 도입 확대, 근로 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2. 임금 감소액 보전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 수가 증가	1. 인건비 지원 - (지원 수준) 증가 근로자 수 1명당 월 40만원~월 10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2. 임금 감소액 보전 - (지원 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증가 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은 20명)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 수준) 신규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만~80만원 지원(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 제외: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	(지원 수준) 1년간 신규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만~60만원 지원(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국내복귀 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수준)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60만원(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청년추가 고용	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으로 ②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요건 이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여 ③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하며 ④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 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자료: 고용노동부, 「지원금별 안내」,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6.html, 검색일자: 2021. 7. 29.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임⁴⁰⁾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영세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함

〈표 VI-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자료: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소개」,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검색일자: 2021. 7. 29.

-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의 가장 큰 차이는 재정지원은 이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되나, 조세지원은 이익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용 시점에 수혜 여부가 불확실하여 정책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 다음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점에 세액공제 수혜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채용 의사결정에 세제지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40)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소개」,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검색일자: 2021. 7. 29.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동 조세특례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영향 및 도움 정도를 설문한 결과,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은 동 조세특례와 고용창출장려금 간 큰 차이가 없었고, 도움 정도에 있어서는 동 조세특례가 고용창출장려금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지원제도별 영향 정도를 설문한 결과,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이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25.6%와 19.3%로 가장 높았으나 동 조세특례와의 차이가 1% 내외로 미미했고,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경우 동 조세특례의 영향 정도가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제도를 설문한 결과,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 모두에서 동 조세특례의 도움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본 조세특례는 신규 채용 시 도움 정도가 재정지원에 비하여 우수하면서도 고용여력이 있는 소득발생 기업만을 선별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되고, 지원기간이 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데다 부정수급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본 조세특례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나. 산정방법의 적절성

1) 급여비례방식 vs. 정액지원방식

- 신규고용인원 1인당 정액을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와 달리 본 조세특례는 급여에 비례하여 세액공제액이 증가하는 급여비례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본 조세특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수에 상시근로자 1인당 평균급여액과 사회보험료율, 세액공제율(50%, 75%, 100%)을 곱하여 계산되는바, 상시근로자 1인당 평균급여액이 늘어나면 세액공제액이 그에 비례하여 증가함

<표 VI-6> 급여비례방식과 정액지원방식 비교

구분	급여비례방식	정액지원방식
세액공제액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수 × 상시근로자 1인당 평균급여액×사회보험료율 × 세액공제율(50%, 75%, 100%)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수 ×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액(정액)

자료: 저자 작성

- 급여비례방식은 평균급여액이 높을수록 세액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도 일부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자 평균임금이 낮은 영세중소기업에는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수입금액 규모별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을 살펴본 결과,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당 약 34만원을 공제받은 반면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당 827만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VI-7> 수입금액 규모별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단위: 원)

수입금액	고용증가 인원당 공제액
10억 이하	344,271
20억 이하	579,599
50억 이하	960,858
100억 이하	1,430,835
200억 이하	1,799,391
300억 이하	1,945,376
500억 이하	2,173,262
1,000억 이하	2,683,002
5,000억 이하	2,817,096
5,000억 초과	8,265,786
전체 평균	1,458,288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에 본 조세특례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분포의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극단치를 제거함

2. 동 과세특례로 인하여 개별 기업이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연도에 증가한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수로 나눈 값의 그룹별 평균값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설문결과 중소기업들은 정액지원방식이 급여비례방식보다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액지원방식이 청년,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가에 있어 모두 급여비례방식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청년,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에 있어 정액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급여비례방식에 비하여 각각 14.3%, 23.8%, 19.3% 더 높게 나타남

〈표 VI-8〉 고용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단위: %)

구분	급여비례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정액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무차별하다
청년 고용	33.9	48.2	17.9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	27.6	51.4	21.0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	28.7	48.0	23.3

주: 1. 2019 사업연도에 이익을 보고한 519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151곳, 법인 36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중소기업들은 급여비례방식에 비하여 정액지원방식이 신규고용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바, 정액지원방식으로의 전환, 세액공제액 한도 설정 등과 같이 급여비례방식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
 - 정액지원방식으로 전환 시 근로자 1인당 평균급여액 계산 없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숫자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제도의 단순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됨

2) 실제 납부액 vs. 추정액 사용

- 현 제도는 신규 채용 상시근로자의 총급여액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기업이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추정한 후,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하고 있음
 - 기업이 실제 납부한 사회보험료에 세액공제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보험료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함

- 김재진 외(2018)에서 제시한 기업이 실제 납부한 사회보험료와 동 과세특례 적용 시 추정된 사회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일부 사회보험의 경우 특정 연령 이상 근로자는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를 고려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경감 또는 면제받는 경우가 존재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음
 - 과세기간 중 사회보험료율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음

- 실제 납부액을 사용하더라도 사회보험료 정산절차가 법인세 신고 다음인 경우 실제 납부액이 정산 후 기업의 최종 사회보험료 부담액과 다를 수 있고, 실제 납부액 사용이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행정적 부담을 높이는 것에 비하여 이에 따른 세수증가 등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행 방식 유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4월에 수행됨
 - 실제 납부액 사용을 위해서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신규 채용 근로자 개개인별로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대상설정의 적절성

- 고용중대세제가 전체 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세액공제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반면, 본 조세특례는 지원대상으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부가가치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2019년 기준 부가가치 중 인건비 비중은 중소기업 73.93%, 대기업 47.38%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비중이 대기업보다 높음⁴¹⁾

4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아울러 중소기업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가가 대기업의 4배 수준임
 -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1,514만개로 전체 일자리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 동안 23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기업의 일자리 증가 숫자 6만개의 약 4배에 이룸

〈표 VI-9〉 기업규모별 일자리 규모 및 증감

(단위: 만개, %)

기업규모	일자리형태				소멸 일자리	일자리 증감 (신규-소멸)
	계	지속 일자리	대체 일자리	신규 일자리		
영리기업	1,894 (78.9)	1,397 (77.9)	226 (78.9)	272 (84.4)	243 (92.9)	28
대기업	380 (15.8)	317 (17.7)	43 (15.1)	20 (6.4)	15 (5.7)	6
중소기업	1,514 (63.0)	1,080 (60.2)	182 (63.8)	251 (78.0)	228 (87.2)	23
비영리기업	508 (21.1)	397 (22.1)	60 (21.1)	50 (15.6)	19 (7.1)	32

자료: 통계청,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2020. 12. 3.

-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대기업에 비하여 높고, 규모가 작을수록 사회보험료 납부에 더 큰 부담을 느끼므로 본 조세특례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사회보험가입율이 낮아지는바, 이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사회보험료 납부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방증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크고 규모가 영세한 기업이 사회보험료 납부에 더 큰 부담을 느끼므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라. 청년·경력단절여성 우대의 적절성

- 본 조세특례는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채용 시,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에 비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우대하고 있음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신규 채용 시 사회보험료 부담분 전액을 세액공제함

- 반면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 시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50% 또는 75%(신성장 서비스업)를 세액공제함
- 일반적으로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계층에 대한 노동수요 진작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는 정책은 타당성이 인정됨
- 29세 이하 청년 실업률이 타 연령층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우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기준 15~19세와 20~29세의 실업률은 각각 8.7%와 9.0%로 전체 실업률 4.0%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음

<표 VI-10> 성별·연령별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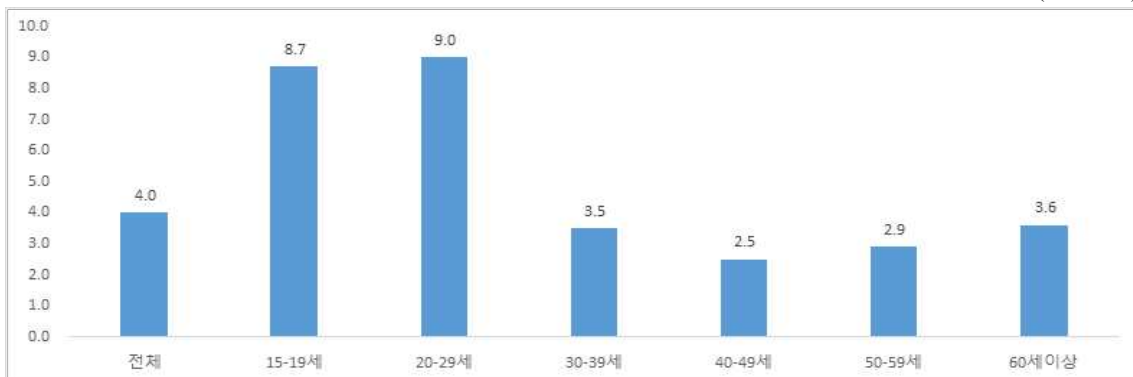
(단위: %)

연령 계층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3.7	3.4	3.2	3.1	3.5	3.6	3.7	3.7	3.8	3.8	4.0
15~19세	11.9	10.8	8.9	10.3	9.3	10.6	10.0	8.7	9.3	8.6	8.7
20~29세	7.7	7.4	7.4	7.8	9.0	9.0	9.8	9.9	9.5	8.9	9.0
30~39세	3.5	3.4	3.0	3.0	3.1	3.1	3.1	3.3	3.4	3.3	3.5
40~49세	2.5	2.1	2.0	2.0	2.2	2.3	2.1	2.1	2.5	2.3	2.5
50~59세	2.5	2.1	2.1	1.9	2.2	2.4	2.3	2.2	2.5	2.5	2.9
60세 이상	2.8	2.6	2.4	1.8	2.3	2.5	2.7	2.9	3.1	3.4	3.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VI-3] 연령별 실업률

(단위: %)



주: 1. 2020년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30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하여 크게 낮으므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우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858만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151만명으로 17.6%를 차지함
- 경력단절여성은 30대가 69만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 58만명의 순서임
- 경력단절여성 숫자 및 비율은 2018년 185만명과 20.5%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돌아섬
- 2020년 기준 20대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1.8%와 60.7%로 여성이 약간 더 높지만, 30대에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반전되어 남성은 91.0%로 상승한 반면 여성은 63.8%에 그쳐 27.2%의 격차를 보임

<표 VI-11> 경력단절여성 규모

(단위: 천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5~54세 이하의 기혼여성(A)	9,376	9,159	9,005	8,844	8,578
비취업여성(B) ¹⁾	3,727	3,574	3,457	3,366	3,420
비취업여성비율(B/A)	39.8	39.0	38.4	38.1	39.9
경력단절여성(C) ^{2),3)}	1,924	1,831	1,847	1,699	1,506
경력단절여성비율(C/A)	20.5	20.0	20.5	19.2	17.6

주: 1) 비취업여성: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함

2) 경력단절여성: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

3) 2014년 조사부터 경력단절여성 범위에 '가족돌봄' 추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표 VI-12>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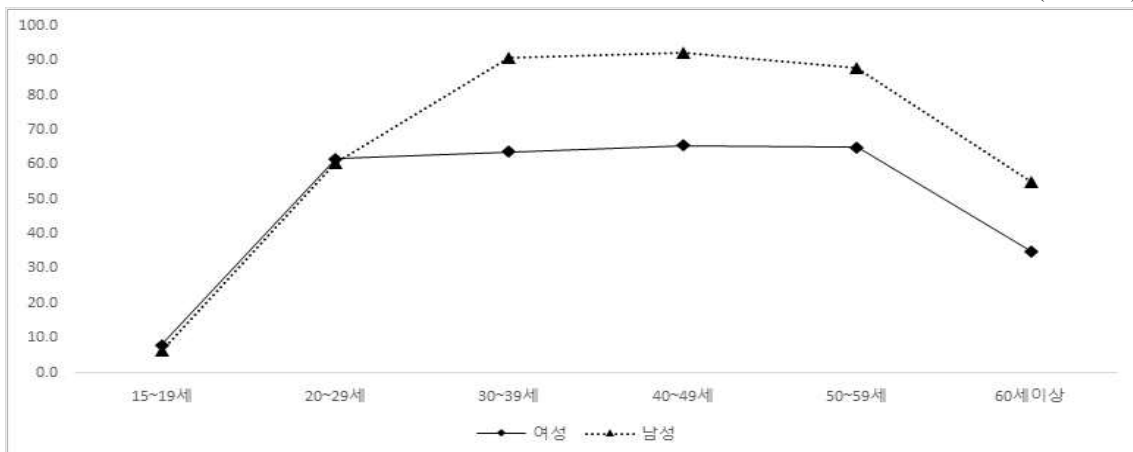
(단위: %)

성별	연령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계	62.9	63.2	63.1	63.3	62.5
	15~19세	8.8	9.2	8.2	8.3	7.2
	20~29세	64.5	63.9	64.0	63.9	61.2
	30~39세	77.1	77.8	78.3	78.6	78.0
	40~49세	81.0	81.1	81.0	80.2	79.1
	50~59세	76.1	77.0	77.1	77.4	76.6
	60세 이상	40.5	41.1	41.4	43.0	44.0
여자	계	52.2	52.7	52.9	53.5	52.8
	15~19세	9.6	10.1	9.2	9.0	8.0
	20~29세	65.3	64.9	65.2	64.3	61.8
	30~39세	59.9	61.4	62.7	64.1	63.8
	40~49세	67.4	67.5	67.4	66.7	65.5
	50~59세	63.0	64.2	65.0	66.3	65.0
	60세 이상	30.6	31.3	31.5	33.6	35.0
남자	계	74.0	74.1	73.7	73.5	72.6
	15~19세	8.1	8.5	7.2	7.6	6.5
	20~29세	63.7	62.9	62.6	63.4	60.7
	30~39세	93.2	93.2	92.8	92.1	91.0
	40~49세	94.2	94.4	94.2	93.3	92.2
	50~59세	89.1	89.7	89.3	88.6	88.0
	60세 이상	53.0	53.3	53.6	54.4	5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VI-4]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20)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마. 신성장서비스업 우대의 적절성

- 일반 업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50%를 공제하나, 신성장서비스업은 75%를 공제함
 -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신성장서비스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50%에서 75%로 인상함
- 산출세액이 0보다 큰 중소기업(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성장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가 기타 업종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신성장서비스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대비 평균 1.10명 증가한 반면, 그 외 업종은 0.53명 증가하여 0.57명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과 청년 외 상시근로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청년과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가 모두 신성장서비스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됨

<표 VI-13> 신성장서비스업과 그 외 업종의 고용증대 효과 비교

(단위: 명)

구분	고용증대효과(평균, ¹⁾ 명)		평균차이 (t-test) ³⁾
	신성장서비스업 (N=11,419)	그 외 업종 (N=74,200)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10	0.53	0.57***
△청년	0.27	0.04	0.23***
△청년 외	0.84	0.49	0.34***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0보다 큰 중소기업(법인)을 대상으로 분석

1) 분포의 상·하위 1%를 벗어나는 극단치 제거

2)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신성장서비스업의 고용증대 효과가 타 업종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바. 사후관리의 적절성

- 본 조세특례는 세액공제 후 고용인원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기 공제받은 금액을 추정하는 사후관리 제도가 없음
 - 단 공제 후 고용인원이 유지되면 다음해에도 당기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후 고용인원이 감소하더라도 페널티(세액추징)는 없지만,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감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

- 본 조세특례 적용 후 고용유지율을 살펴본 결과,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제 후 2년 내내 고용인원이 유지된 비율은 41.9%, 1년 간 고용인원이 유지된 비율은 65.9%로 나타남(2018년 기준)
 - 청년의 경우 공제 후 2년 내내 고용인원이 유지된 비율은 41.5%, 1년 간 고용인원이 유지된 비율은 65.4%로 전체 근로자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

〈표 VI-14〉 공제 이후 기간의 법인사업자의 고용유지율(전체 근로자)

(단위: %)

세액공제 귀속사업연도	2년 모두 감소	1년 후 감소, 2년 후 증가	1년 후 증가, 2년 후 감소	2년 모두 증가
2016	15.6	16.6	25.0	42.9
2017	15.3	18.0	25.2	41.6
2018	14.4	19.7	24.0	41.9

주: 1. 각 귀속사업연도에 동 과세특례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
 2. 근로자 수 증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전체)의 변동을 이용하여 측정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표 VI-15〉 공제 이후 기간의 법인사업자의 고용유지율(청년)

(단위: %)

세액공제 귀속사업연도	2년 모두 감소	1년 후 감소, 2년 후 증가	1년 후 증가, 2년 후 감소	2년 모두 증가
2016	14.2	20.7	26.6	38.5
2017	15.0	21.2	25.8	38.1
2018	12.6	22.0	23.9	41.5

주: 1. 각 귀속사업연도에 동 과세특례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
 2. 근로자 수 증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청년)의 변동을 이용하여 측정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제 후 2년 내내 고용인원이 유지된 비율은 47.5%, 1년 간 고용인원이 유지된 비율은 72.3%로 나타남(2018년 기준)
 -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에 비하여 2년 내내 고용인원이 감소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VI-16〉 공제 이후 기간의 개인사업자의 고용유지율(전체 근로자)

(단위: %)

세액공제 귀속사업연도	2년 모두 감소	1년 후 감소, 2년 후 증가	1년 후 증가, 2년 후 감소	2년 모두 증가
2018	7.3	20.3	24.9	47.5

주: 1. 각 귀속사업연도에 동 과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석
 2. 근로자 수 증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전체)의 변동을 이용하여 측정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세법개정으로 2018년도부터 고용유지 시 감면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1년 후 고용유지율이 오히려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에는 공제 1년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감소한 비율이 33.3%이었으나, 2018년에는 34.1%로 오히려 소폭 증가함
- 본 조세특례와 고용증대세제를 동시에 신청한 기업과 본 조세특례만 신청한 기업의 고용유지율을 비교한 결과, 고용증대세제를 동시에 신청한 기업의 고용유지율이 더 높게 나타남
 - 본 조세특례와 고용증대세제를 동시에 신청한 기업의 경우 공제 후 2년 내내 고용인원이 유지된 비율은 45.1%(법인)과 51.1%(개인사업자), 1년간 고용인원이 유지된 비율은 69.1%(법인)과 75.7%(개인사업자)로 나타남
 - 반면 본 조세특례만 신청하고 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공제 후 2년 내내 고용인원이 유지된 비율은 38.2%(법인)와 40.8%(개인사업자)에 불과하였으며, 1년간 고용이 유지된 비율은 62.1%(법인)과 66.1%(개인사업자)로 나타남
 - 고용증대세제는 공제 후 3년간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사후관리 규정에 의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제를 동시에 신청한 기업의 고용유지율이 본 조세특례만 신청한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됨

<표 VI-17> 고용증대세제 동시 신청기업과의 공제 이후 기간의 고용유지율 비교
(법인사업자)

(단위: %)

구분	2년 모두 감소	1년 후 감소, 2년 후 증가	1년 후 증가, 2년 후 감소	2년 모두 증가
고용증대세제와 동시 신청	12.2	18.8	24.0	45.1
본 조세특례만 신청	17.1	20.8	23.9	38.2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에 동 과세특례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
2. 근로자 수 증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전체)의 변동을 이용하여 측정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표 VI-18> 고용증대세제 동시 신청기업과의 공제 이후 기간의 고용유지율 비교
(개인사업자)

(단위: %)

구분	2년 모두 감소	1년 후 감소, 2년 후 증가	1년 후 증가, 2년 후 감소	2년 모두 증가
고용증대세제와 동시 신청	6.2	18.0	24.6	51.1
본 조세특례만 신청	9.4	24.5	25.3	40.8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에 동 과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석
2. 근로자 수 증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전체)의 변동을 이용하여 측정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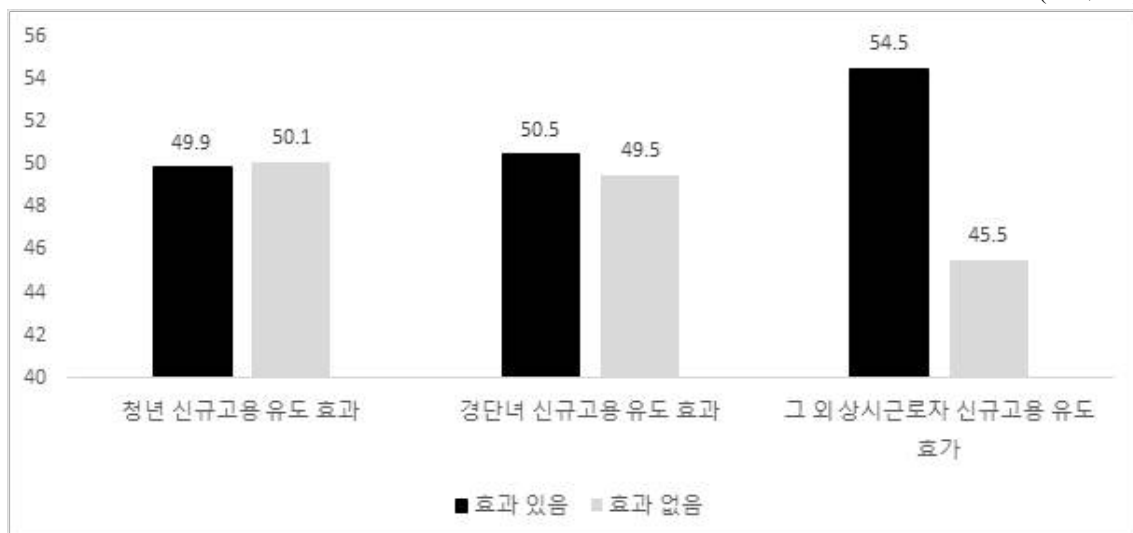
- 세액공제 후 1/3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제 적용기업에 비하여 고용유지율이 낮았으므로, 사후관리요건의 추가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2018년부터 고용인원 유지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율이 세법개정 이전보다 떨어짐
 -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센티브 부여만으로는 고용유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바, 타 지원제도와 동일하게 고용감소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 감면기간의 적절성

- 본 조세특례는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공제가 가능함
 - 2017. 12. 19. 「조특법」 개정 시 신규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과세연도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기간(2년)에 관해 설문한 결과,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고용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는 응답과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에는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소폭 더 높게 나타남
 -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채용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과 ‘효과가 없다’는 응답의 차이가 1% 내외임
 -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한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54.5%로, ‘효과가 없다’는 응답(45.5%)에 비하여 10%가량 높게 나타남

[그림 VI-5] 설문조사 결과: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기간의 효과성 (단위: %)



주: 1. 2019 사업연도에 이익을 보고한 519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151곳, 법인 368곳)을 대상으로 설문 자료: 설문조사 결과

- 현 세액공제 혜택기간(2년)이 신규고용 유도에 ‘효과가 없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제기간이 최소 몇 년 이상일 때 신규고용 유도에 효과가 있을지 질문한 결과, ‘5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최소 5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년으로 나타남

<표 VI-19> 설문조사 결과: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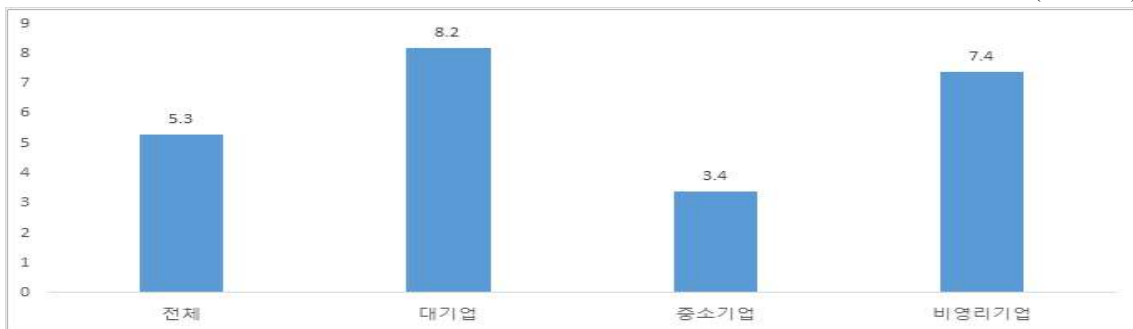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이상
청년	(260)	30.4	8.1	42.3	1.2	3.8	0.0	0.0	4.6	9.6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257)	26.8	7.8	45.1	1.2	2.7	0.4	0.0	5.8	10.1
그 외 상시근로자	(236)	25.8	8.1	44.9	0.8	3.4	0.4	0.0	5.1	11.4

자료: 설문조사 결과

- 2019년 기준 영리 중소기업의 평균 근속기간은 3.4년임
 - 영리 대기업(8.2년)이나 비영리기업(7.4년)에 비하여 평균 근속기간이 짧은 편임

[그림 VI-6] 기업규모별 평균 근속기간(2019)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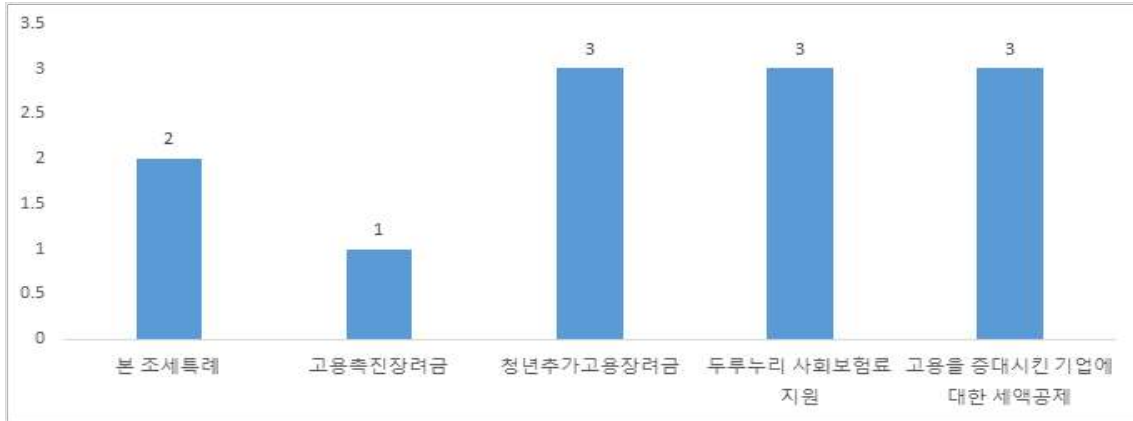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2020. 12. 3.

- 본 조세특례와 유사한 정책목표를 지닌 고용지원제도의 최대 지원기간은 1~3년임
 - 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제도(청년추가고용장려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증대세제)는 최대 3년간 지원함
 -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2019.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감면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림 VI-7] 설문조사 결과: 고용지원제도의 최대 지원기간

(단위: 년)



주: 1. 2019 사업연도에 이익을 보고한 519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151곳, 법인 368곳)을 대상으로 설문 자료: 설문조사 결과

- 현 세액공제 혜택기간(2년)에 대하여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2019년 기준 3.3년)를 감안했을 때 본 조세특례의 감면기간이 짧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지원 제도의 사례를 고려하여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한 유사지원제도의 지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본 조세특례보다 긴 편임
- 다만 유사지원제도는 사후관리 또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병행하고 있는바 지원기간 연장 시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의무를 부여해야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보완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3. 다른 조세특례 또는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가. 유사지원제도

- 동 제도의 정책목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있는바, 동 제도와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진 조세지원제도로는 고용증대세제,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 재정지원제도로는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음

- 고용증대세제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도는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동 제도와 유사함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경력단절여성을 우대한다는 점에서 동 제도와 유사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동 제도와 유사함

<표 VI-20> 본 조세특례의 유사지원제도

구분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중복	사후 관리
조세 지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가 인원당 정액공제 (청년 400~1,200만원, 청년 외 0~770만원)	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	○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급여비례방식 (인건비의 30%(중소), 15%(중견))	2년	○	×
재정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청년 추가 고용)	고용증가 인원당 정액지원 (청년 900만원, 청년 외 360~720만원)	청년: 3년, 청년 외: 1년	○	△ (청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급여비례방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3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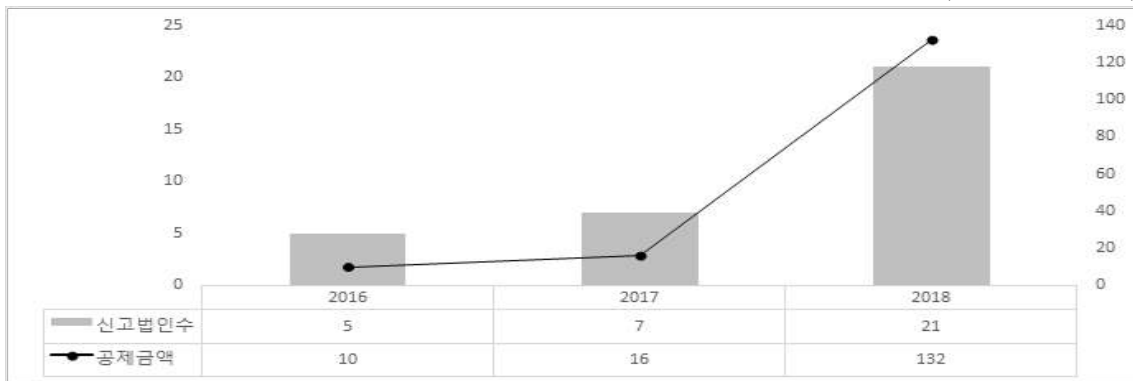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액은 본 조세특례의 세액공제액 산정 시, 차감되기 때문에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 조세특례와 중복 문제가 존재하나, 적용기업 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18 귀속 사업연도 기준 22개 법인이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총 1억 3,200만원을 공제받음
 - 세액공제 신청법인 수가 22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복지원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효성이 낮으면서 고용지원세제의 복잡성만 높이는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다른 공제제도(고용증대세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VI-8]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 및 공제금액

(단위: 개, 백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결과적으로 본 조세특례와 중복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고용지원제도는 고용증대세제와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두 개로 압축될 수 있음

나. 고용증대세제와의 중복성 검토

- 고용증대세제는 동 제도와 정책목적이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 본 조세특례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되나, 고용지원세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용됨
 - 단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대기업이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본 조세특례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우대하나, 고용증대세제는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근로자를 우대함
 - 본 조세특례는 세액공제액이 급여에 비례하는 방식인 데 반해, 고용증대세제는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이 급여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함
 - 본 조세특례는 업종별로 지원수준에 차등을 두고 있는 반면, 고용증대세제는 지역별로 지원수준에 차등을 두고 있음

- 본 조세특례는 신성장서비스업을 그 외 업종에 비하여 우대하고 있는 반면, 고용증대세제는 지방기업을 수도권기업에 비하여 우대하고 있음
- 본 조세특례는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반면, 고용증대세제는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함

<표 VI-21> 고용증대세제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대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세액공제액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상시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청년 외 상시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공제기간	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				
주요 개정사항	'19.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청년정규직 1인당 세액공제액 100만원씩 인상 공제기간 연장: 대기업 1 → 2년, 중소·중견 2 → 3년				
사후관리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간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청년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가공제 미적용 및 공제받은 세액 추징				
중복지원 배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지원 배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허용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본 조세특례는 고용증대세제와 운영방식에 있어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고용의 양적 증대라는 정책목표가 유사하며, 별도 제도로 분리하여 운영할 실익이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이전에는 고용인원 증가뿐 아니라 사회보험 신규가입 역시 지원 대상에 해당했기 때문에 본 조세특례는 고용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함
 - 그러나 2021년부터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목표는 축소되었음
 - 고용의 양적 증대라는 측면에서는 본 조세특례와 고용증대세제의 정책목표가 사실상 동일해짐
 - 근로자 평균급여가 높지 않은 영세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액지원이 급여비례방식보다 유리할 수 있음

- 본 조세특례가 최저임금의 인상과 사회보험가입률 상승으로 사회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급여비례방식보다 정액지원방식인 고용증대세제와 통합 후,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을 인상하는 것이 정책목표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 고용창출장려금과의 중복성 검토

- 고용창출장려금 역시 고용의 양적 증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동 제도와 정책 목적이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 본 조세특례는 이익발생기업을 대상으로 하나, 고용창출장려금은 이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 본 조세특례는 채용 다음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세금공제 효과가 나타나나, 고용창출장려금은 채용 시점부터 바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함
 - 본 조세특례는 세액공제액이 급여에 비례하는 방식인 데 반해,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증가 인원당 장려금 지급액이 급여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함
 - 본 조세특례의 지원기간은 2년이나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가용 예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음
 - 고용창출장려금은 통상적 조건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나, 본 조세특례는 취업취약계층 이외에 일반근로자 신규 채용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 본 조세특례는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고용창출장려금은 부정수급 시 엄격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실사가 가능함
- 고용창출장려금은 손실발생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조세특례의 보완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익보고기업의 경우에는 중복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익보고기업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액은 사회보험료 지원이기 때문에 본 조세특례의 세액공제액 산정 시 차감하고 있지만, 고용창출장려금은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형태의 고용지원이 아니므로 세액공제액 산정 시 차감하지 않음

- 이익보고기업의 경우 본 조세특례와 고용창출장려금 간 중복지원 문제가 존재하나 고용증대세제 또한 본 조세특례와 정책목표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 때문에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익보고기업에 있어 고용창출장려금과 본 조세특례의 중복지원을 허용할 것인지는 실업률 등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고용창출장려금은 통상적 조건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되는바, 본 조세특례와 중복 사용 시 실업률 문제해결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Ⅶ.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VII.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1. 종합평가

가. 효과성 분석

□ 동 제도의 정책목표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고용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1) 고용부담 완화 효과

□ 동 제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사회보험가입률 증가로 늘어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구체적으로 동 조세특례는 고용증가 인원당 근속기간 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 총액의 약 2.9%(평균소득 기준) 또는 3.6%(중위소득 기준)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신규 채용 인원이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2019년 기준 3.4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며, 해당 기업이 고용인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2년간 고용증가 인원당 146만원, 총 292만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치임

-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당 3.4년의 근속기간동안 총 9,996만원(평균소득 기준) 또는 8,201만원(중간소득 기준)의 인건비를 부담하는바, 동 과세특례로 인하여 2.9% 또는 3.6%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발생함

2) 고용증대 효과

□ 성향점수매칭방법(PSM)을 이용하여 비교집단을 선정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 과세특례의 적용기업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총근로자 수, 청년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의 증가, 청년 근로자 수의 증가가 모두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PSM의 기본개념은 수혜기업이 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 종업원 수를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비수혜기업 중 수혜기업과 성향이 가장 유사한 기업을 찾아내어 그 기업의 종업원 수를 대신 사용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추정하는 것임
- 본 연구는 과세소득이 0보다 크고, 본 조세특례를 포함하여 고용과 관련된 어떠한 조세특례제도도 적용받지 않은 기업 중 수혜기업과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기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함
 - 성향점수는 선행연구에 따라 총자산과 매출액(기업규모), 기업연령(기업의 성장단계), 총자산이익률(기업의 수익성), 지역더미, 업종더미, 연도더미를 사용하여 추정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자연로그 값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증감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여 PSM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혜기업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총 근로자 수, 청년 근로자 수, 청년 외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의 증가, 청년 근로자 수의 증가, 청년 외 근로자 수의 증가가 모두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남

3) 세법개정 효과

- 2018년 세법개정(감면기간의 연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의 중복지원 허용)은 고용증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수직적 형평성 개선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회귀분석결과 2018년 세법개정이 고용증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의 중복지원 허용 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영세중소기업의 수혜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4) 정책목표 달성도 설문결과

- 동 제도의 수혜자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를 포함하여 현 고용지원제도의 정책효과는 낮은 편으로 나타남
 - 현 고용지원제도가 청년,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의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25% 내외 수준으로 조사됨

-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20% 내외로 가장 낮았고,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 외 상시근로자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본 조세특례가 청년,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24.5%와 18.7%, 24.1%로, 조사대상 5개제도 중 각각 3위, 3위, 2위 수준으로 나타남
 -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있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이 영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고용증대세제, 본 조세특례의 순이었으나, 1~3위 간 차이는 크지 않았음
 -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역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이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19.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고용증대세제, 본 조세특례의 순이었으나, 1~3위 간 차이는 크지 않았음
 -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고용증대세제가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2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본 조세특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의 순서로 나타남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당 지원금이 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한 수준이나, 지원기간이 짧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의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고용증대세제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 4점 척도로 현 고용지원제도의 영향 정도를 평가한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원제도(본 조세특례, 고용증대세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의 영향 정도의 차이는 미미했음
 - 3개 지원제도의 영향 정도는 청년 1.91~1.92점, 경력단절여성 1.73~1.77점, 그 외 상시근로자 1.86~1.87점 사이로 나타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제한적이어서(근로자 수 10인 미만 영세사업자가 신규 채용한 저소득 근로자) 채용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타 지원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 VII-1〉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지원제도의 영향 정도

(n=519,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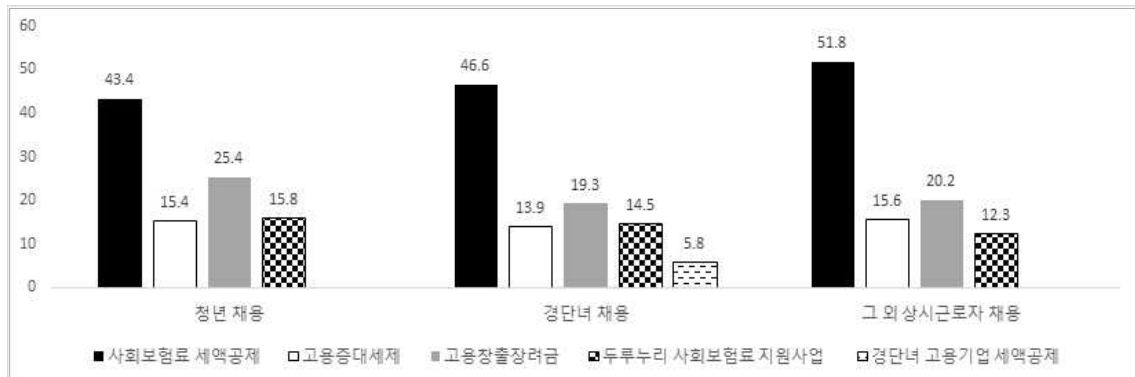
구분	청년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	
	영향 있음	4점 평균	영향 있음	4점 평균	영향 있음	4점 평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4.5	1.91	18.7	1.73	24.1	1.8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5.2	1.92	18.9	1.76	24.3	1.87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25.6	1.92	19.3	1.77	22.9	1.8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8.3	1.79	15.0	1.68	15.6	1.74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18.7	1.74	-	-

자료: 설문조사 결과

- 현 고용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수준은 낮지만, 고용지원제도 중에서는 본 조세특례의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청년,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있어 본 조세특례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43.4%와 46.6%, 51.8%로, 조사대상 5개 고용지원제도 중 가장 높았음

[그림 VII-1]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고용지원제도

(n=519, 단위: %, 점)



주: 1. 2019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0보다 큰 5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제도의 1순위 응답 기준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중소기업의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지만, 고용지원제도 중에서는 도움 정도가 가장 높고, 고용부담 완화 및 고용증대 효과가 일부 입증됐기 때문에 동 지원제도를 폐지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타당성 분석

1) 정부개입의 타당성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험가입률 상승 등의 요인으로 영세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급증했으므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세액공제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함
 - 2019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45만원으로 대기업 근로자(515만원)의 47.6% 수준에 불과함
 -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가입률 상승으로 영세사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함
 - 급격한 사회보험료 증가는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인건비에 대한 정부지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지원방식의 적절성

- 본 조세특례는 신규 채용 시 도움정도가 재정지원에 비하여 우수하면서 고용여력이 있는 소득발생 기업만을 선별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결과 본 조세특례의 도움 정도가 재정지원제도보다 높게 나타남
 - 본 조세특례는 조세지원의 특성상 고용여력이 있는 흑자기업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의 효율성이 높음

3) 세액공제액 산정방법의 적절성

- 급여비례방식의 사용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비례하여 세제혜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평균급여가 낮은 영세중소기업에 불리한 역진적 성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귀속사업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중소기업(법인)은 고용증가인원 1인당 약 34만원을 공제받는 반면,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 중소기업(법인)은 고용증가인원 1인당 827만원을 공제받아 근로자 평균급여가 낮은 영세중소기업에 불리함
 - 설문결과 중소기업들은 정액지원이 급여비례방식보다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험료 실제 납부액을 사용하여 세액공제액 계산 시 실제 납부액이 정산 후 기업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다를 수 있고 실제 납부액 사용이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행정적 부담을 높이는 것에 비하여 이에 따른 세수증가 등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행 방식 유지(추정액 사용)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대상설정의 적절성

-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대기업에 비하여 높고, 규모가 영세한 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에 더 큰 부담을 느끼므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함
 - 2019년 기준 중소기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가가 대기업 일자리 증가의 약 4배에 달함⁴²⁾
 - 기업규모별 일자리 규모 증감(신규-소멸): 대기업 6만개, 중소기업 23만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크고 규모가 영세한 기업이 사회보험료 납부에 더 큰 부담을 느끼므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42) 통계청,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2020. 12. 3.

5) 세계혜택 우대계층의 적절성

- 청년 실업률이 타 연령층에 비하여 높고, 경력단절여성 규모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30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하여 크게 낮으므로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우대는 적절함
 - 2020년 기준 15~19세와 20~20세 실업률은 각각 8.7%와 9.0%로, 전체 연령의 실업률 4.0%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음
 - 2020년 기준 20대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1.8%와 60.7%로 여성이 약간 더 높지만, 30대에는 남성은 91.0%, 여성은 63.8%로 남성이 현저히 높음
 - 다만 고용증대세제와 달리 본 조세특례는 장애인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세계혜택 우대계층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

6) 세계혜택 우대업종의 적절성

- 신성장서비스업의 고용증대 효과가 타 업종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신성장서비스업의 고용에 대한 우대는 적절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변동을 신성장서비스업과 그 외 업종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신성장서비스업의 고용보험 전체 피보험자 수의 증가 및 청년 피보험자 수의 증가가 그 외 업종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남(2018년 기준)

7) 사후관리의 적절성

- 공제 후 1/3 이상의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유지율이 낮으므로 사후관리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세특례만 신청한 기업과 고용증대세제(사후관리 요건 적용)와 본 조세특례를 중복 신청한 기업의 고용유지율을 비교한 결과, 고용증대세제와 본 조세특례를 중복 신청한 기업의 고용유지율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부터 고용유지 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유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 없이 인센티브 부여만으로는 고용유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8) 감면기간의 적절성

- 현 감면기간(2년)에 대하여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2019년 기준 3.4년)를 감안했을 때 본 조세특례의 감면기간이 짧은 편은 아니지만, 유사지원제도와 형평을 고려하여 3년으로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증대세제는 지원 또는 감면기간이 3년으로 본 조세특례보다 장기임
 - 다만 유사지원제도는 사후관리 또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병행하고 있는바 지원기간 연장 시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의무를 부여해야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보완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9) 타 제도와 중복성 검토

- 유사지원제도 중 고용증대세제와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는 본 조세특례와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어 중복지원 문제가 존재하나 상호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업률 등 전반적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통폐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액은 본 조세특례의 세액공제액 산정 시 차감되기 때문에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실효성이 낮으면서⁴³⁾ 제도의 복잡성만 높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다른 공제제도로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용증대세제와 본 조세특례는 고용의 양적증대라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고 두 제도의 분리운영으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고용증대세제로의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용창출장려금은 이익보고기업의 경우 중복지원 문제가 있지만, 손실발생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취약계층 신규 채용에 국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본 조세특례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한다고 판단됨

43) 2018 귀속 사업연도 기준 22개 법인이 총 1억 3,200만원을 공제받음

다. 형평성 분석

1) 기업규모별 분석

-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공제혜택이 편중됨
 - 법인의 경우 2018년 귀속사업연도 기준 전체 신고법인의 11.6%를 차지하는 수입금액 200억원 초과 중소기업에 공제혜택의 51.3%가 편중됨

2) 지역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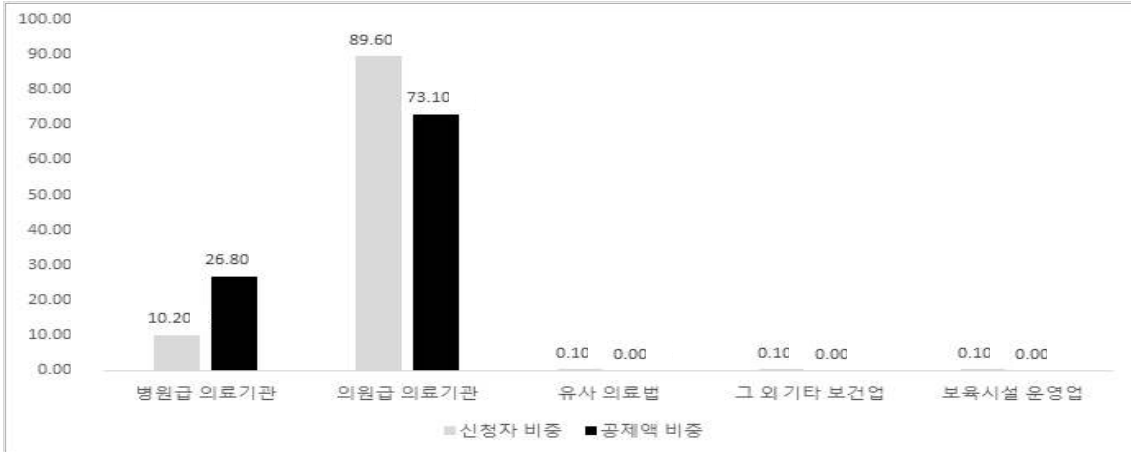
- 고용증대세제와 비교했을 때,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함
 - 신청법인 수 기준 2018 귀속사업연도에 본 조세특례의 신청법인 중 수도권 소재법인의 비중은 78.20%이나, 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중 수도권 소재법인의 비중은 이보다 낮은 69.26%임
 -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수도권 편중현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3) 업종별 분석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건의료업 편중현상이 심한 편임
 - 2019 귀속사업연도 기준 과세소득을 보고한 개인사업장 중 보건의료업의 비중은 1.24%에 불과한데, 동 조세특례 신청법인의 33.6%, 전체 공제금액의 59.1%가 보건의료업에 편중되어 있음
- 보건의료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자 구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 신청자의 99.8%, 신청금액의 99.9%가 병의원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업 신청자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의 89.6%를 차지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제액이 보건의료업 전체 공제액의 73.1%를 차지함

[그림 VII-2] 보건의료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자 구성(개인사업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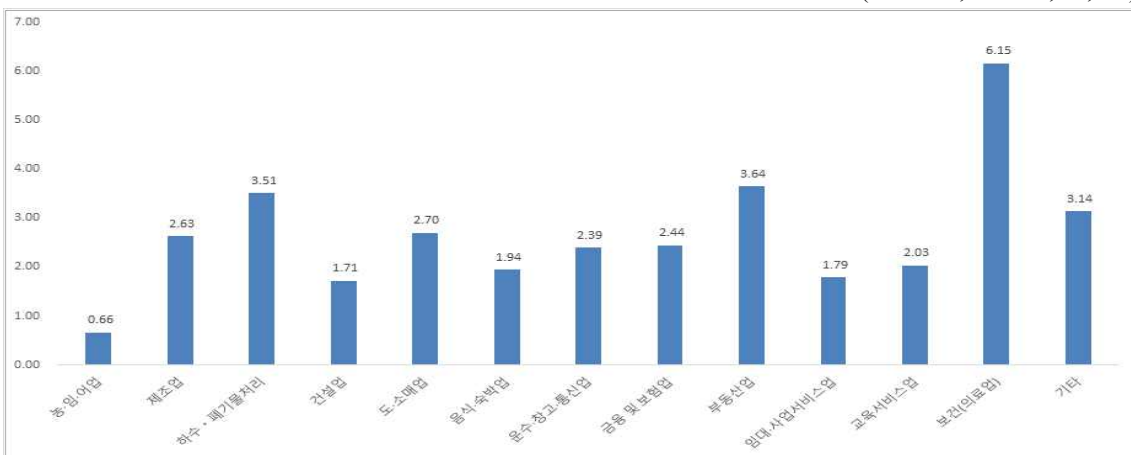


주: 1. 2019 귀속사업연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을 살펴본 결과, 보건의료업이 타 업종에 비하여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19귀속사업연도 기준 보건의료업은 고용증가 인원당 615만원을 공제받아 제조업(263만원)에 비하여 2.3배 이상 높았음

[그림 VII-3] 업종별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개인사업자)

(단위: 명, 백만원, %, 원)



주: 1. 2019 귀속사업연도에 본 조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분포의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극단치를 제거함
 2. 동 과세특례로 인하여 개별 사업자가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연도에 증가한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의 그룹별 평균값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보건의료업의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규모가 작은 일반병원이나 개인의원이 종합병원에 비하여 고용증가 인원당 공제받은 금액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9 귀속사업연도 기준 종합병원은 고용증가 인원당 334만원을 세액공제 받은 반면, 일반병원과 의원은 고용증가 인원당 각각 749만원과 699만원을 세액공제 받음
 -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고연봉의 월급제 의사에게 지급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인하여 보건의료업 편중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그림 VII-4] 보건의료업의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단위: 백만원)



- 주: 1. 2019 귀속사업연도에 본 조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분포의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극단치를 제거함
 2. 동 과세특례로 인하여 개별 사업자가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연도에 증가한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의 그룹별 평균값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2. 제도개선방안

가. 유사지원제도와외의 통폐합

- 본 조세특례는 고용의 양적 증대를 추구하는 점에서 고용증대세제와 정책목표가 유사함
 - 사회보험료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일몰기한 도래로 2020년 폐지됨

- 사회보험 가입은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조세지원을 통해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함
- 2021년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일원화되어 운영 중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의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간 재정지원 받을 수 있음
- 본 조세특례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직접적 정책목표는 인건비 부담 완화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음

〈표 VII-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제 비교

구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지원대상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우대계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60세 이상인 자				
세액공제액	급여비례방식=고용증가인원×근로자 1인당 평균급여×50%(신성장서비스업 75%,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100%)	정액지원=고용증가인원×1인당 공제액(정액)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상시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청년 외 상시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공제기간	2년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				
차등지원	업종별 차등지원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지역별 차등지원 (지방 우대)				
사후관리	없음	있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간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청년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가공제 미적용 및 공제받은 세액 추징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제30조의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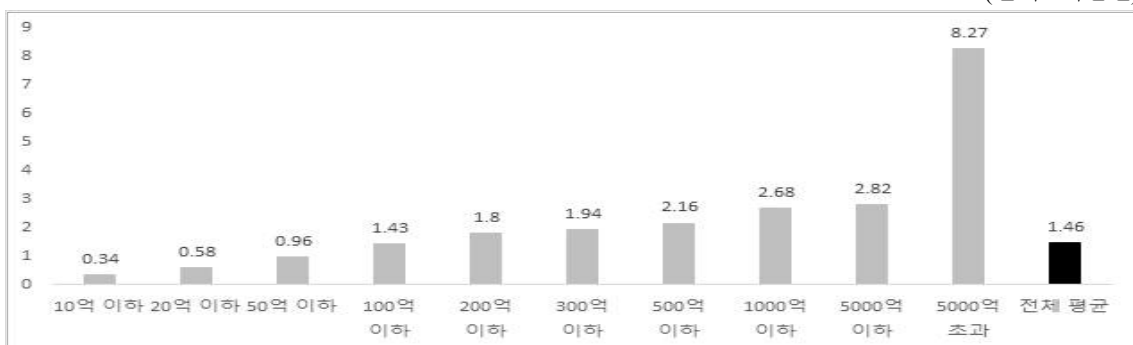
- 해외사례를 살펴보다라도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선례를 찾기 어려우며 고용증대세제 형태가 주를 이룸
 - 해외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당 정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고용증대세제 형태의 지원이 일반적임
 - 사회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사회보험료 감면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뭄

- 본 조세특례와 고용증대세제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본 조세특례는 급여비례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고용증대세제는 정액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임
 - 급여비례방식은 근로자 평균급여가 높을수록 세액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자 평균급여가 낮은 기업의 경우, 정액지원이 급여비례방식보다 유리할 수 있음

- 동 제도가 채택한 급여비례방식은 평균급여가 낮은 영세중소기업에 불리한 역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중소기업(법인)은 고용증가 인원당 34만원을 공제받는 반면,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 중소기업(법인)은 고용증가 인원당 827만원을 공제받음

[그림 VII-5] 수입금액 규모별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단위: 백만원)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에 본 조세특례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분포의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극단치를 제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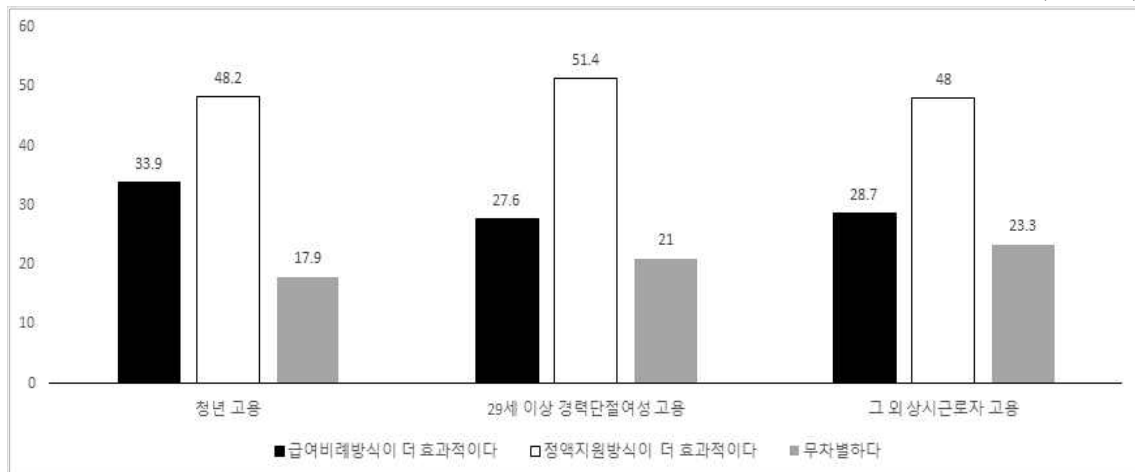
2. 동 조세특례로 인하여 개별 기업이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연도에 증가한 고용보험 피보험근로자 수로 나눈 값의 그룹별 평균값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 평균급여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용 증가 인원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이 중소기업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패턴을 보임
 - 결과적으로 근로자 평균급여가 낮은 영세중소기업은 급여비례방식보다 정책지원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설문결과 중소기업들은 정책지원이 급여비례방식에 비하여 고용증대 효과가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 고용증가,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에 있어 급여비례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정책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보다 많았음
 -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에 있어 급여비례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7%에 불과한 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정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48.0%로 20% 가량 높게 나타남

[그림 VII-6] 고용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단위: %)



주: 1. 2019 사업연도에 이익을 보고한 519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151곳, 법인 36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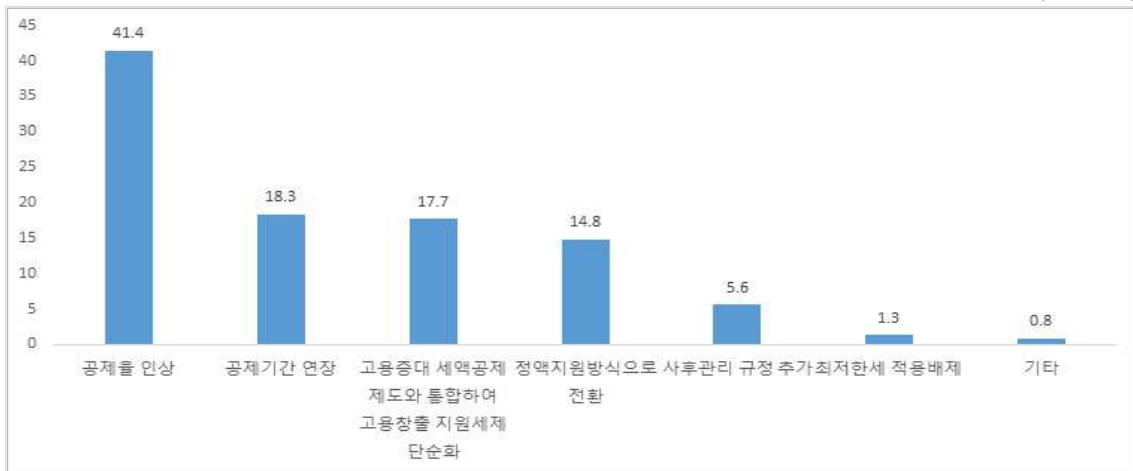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본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역시 고용증대세제와의 통합을 통한 고용창출지원세제의 단순화 및 정책지원방식으로 전환이 32.5%로, 세액공제율 인상(41.4%)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함

- 고용증대세제와 통합하여 고용창출지원세제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17.7%였고, 정액지원방식으로 전환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14.8%로 두 의견을 합치면 32.5%임
- 고용증대세제는 고용증가 인원당 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용증대세제와의 통합은 정액지원방식으로 전환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냄

[그림 VII-7] 동 조세특례 관련 개선사항

(단위: %)



주: 1. 2019 사업연도에 이익을 보고한 519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151곳, 법인 36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본 조세특례와 고용증대세제의 통합 시 예상되는 이점은 다음과 같음
 - 고용증대세제로 통합 시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의 규모에 따라 기업별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수입금액이 적은 영세중소기업이 개정 전보다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청년 또는 그 외 상시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 시, 중소기업이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제고될 수 있음
 - 두 제도의 통합 시 세제혜택 우대계층(동 조세특례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고용증대세제는 청년과 장애인)이 동일해짐으로써 고용증가 인원을 적용규정별로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짐
 - 본 조세특례는 세액공제액 계산을 위해 근로자 평균급여 계산이 필요하나, 고용증대세제로 통합 시 근로자 평균급여 계산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본 조세특례와 고용증대세제의 통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높은 고위험 업종에 속한 기업의 세제혜택이 감소할 수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높은 고위험 업종은 광업, 건설업, 농·임·어업임
 -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금액 중 광업과 건설업, 농·임·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임
 - 법인의 경우 광업과 농·임·어업의 비중은 1% 미만이며, 건설업이 8.3%를 차지함
 - 정책지원방식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연관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동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음

〈표 VII-3〉 업종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단위: %)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4. 건설업	36
○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 식료품 제조업	16	○ 통신업	9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업	58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업	28
○ 출판·인쇄·제본업	10	8. 농업	20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 기타의 각종사업	9
○ 금속제련업	10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 도소매·음식·숙박업	8
○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 부동산 및 임대업	7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 해외파견자: 14/1,000	

자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45호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조세특례는 고용증대세제와 운영방식에 있어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고용의 양적 증대라는 정책목표가 중복되며, 별도 제도로 분리하여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고용증대세제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세특례와 고용증대세제의 가장 큰 차이는 세액공제액의 계산방식(정액지원 vs. 급여비례방식)에서 비롯되는바, 근로자 평균급여가 높지 않은 영세중소기업은 통상적으로 정액지원이 급여비례방식보다 유리함
 - 본 조세특례가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험가입률 상승으로 사회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급여비례방식을 영세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정액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목표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고용증대세제와의 통합을 통한 고용지원세제의 단순화는 고용지원세제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설문결과 동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른다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전체 중소기업의 1/3을 초과함
 - 동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법인사업자 및 직원 수 300인 이상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은 ‘세무관련 업무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 위임하기 때문에’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해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고용증대세제와의 통합을 통한 고용지원세제의 단순화는 복잡한 제도 설계로 인한 이해 가능성 저하를 해소하여 동 제도의 인지도 및 정책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VII-4> 본 조세특례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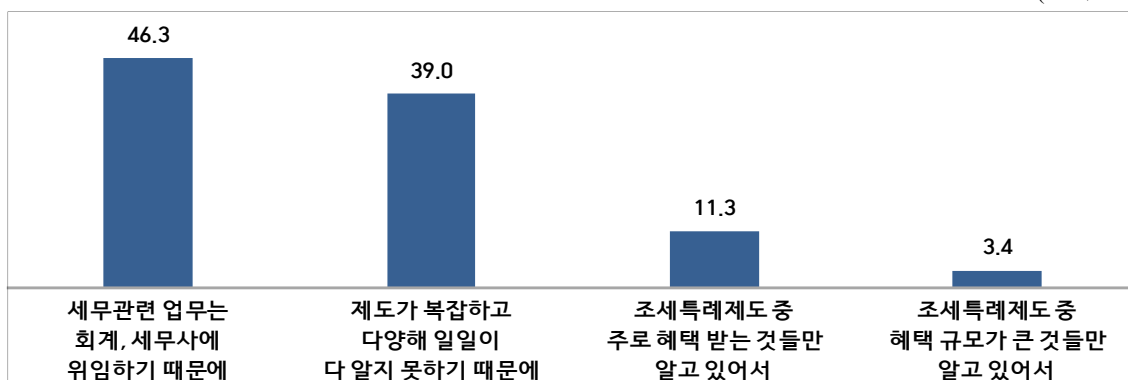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 수	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있다	제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른다
전체		(519)	14.3	51.6	34.1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15.2	62.9	21.9
	법인사업자	(368)	13.9	47.0	39.1
직원수	10인 미만	(202)	9.9	57.9	32.2
	10~50인 미만	(177)	11.9	51.4	36.7
	50~300인 미만	(112)	25.0	39.3	35.7
	300인 이상	(28)	17.9	57.1	25.0

자료: 설문조사 결과

[그림 VII-8] 본 조세특례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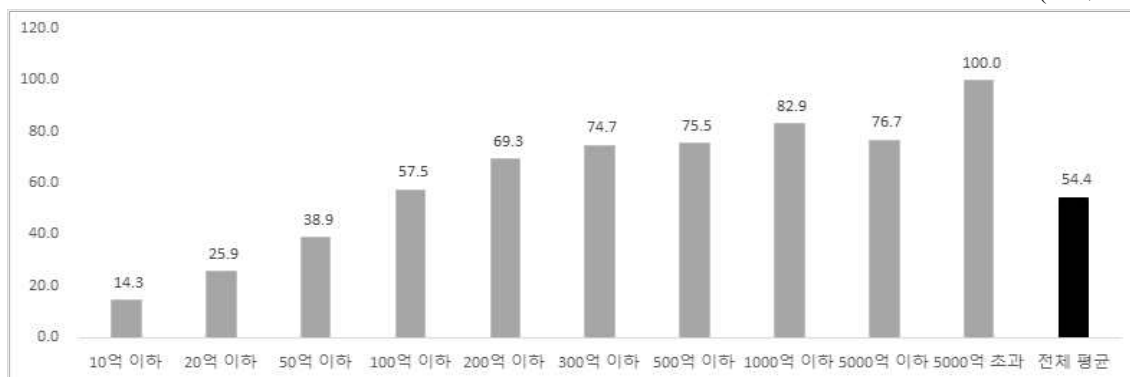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다만 본 조세특례와 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할 경우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진 영세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이 통합 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본 조세특례와 고용증대세제의 공제요건에 사실상 차이가 없고 중복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중복수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본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법인 중 본 조세특례와 고용증대세제를 중복 적용받은 비율은 14.3%에 불과하였음
 - 본 조세특례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고용증대세제는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유지 요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중소기업이 본 조세특례만 신청하고 고용증대세제는 추가적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그림 VII-9] 고용증대세제와 중복수혜 비율

(단위: %)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중소기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또는 평균급여를 이용하여 급여비례방식을 정액지원으로 변경할 시 가산될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을 추정하면 최저 110만원, 최대 420만원이 도출됨
 - 사회보험료 최저요율이 적용되는 산업의 경우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148만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110만원임
 - 사회보험료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산업의 경우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420만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312만원임
 -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고용증가 인원당 정액지원액을 결정할 경우, 평균급여가 낮은 사업체의 경우 실제 부담한 사회보험료에 비하여 세액공제액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⁴⁴⁾

〈표 VII-5〉 정액지원방식으로 변경 시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안)

(단위: 만원, %)

기준	월 급여	총사회보험료율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	
		최저	최고	최저 요율 적용 시 ¹⁾	최고 요율 적용 시 ²⁾
평균급여 기준	245	10.0751	28.5551	148	420
최저임금 기준	182			110	312

주: 1. 평균급여는 2019년 기준, 사회보험료율과 최저임금은 2021년 자료를 이용함

1) 월급여×12개월×총사회보험료율(최저)×50%(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2) 월급여×12개월×총사회보험료율(최고)×50%(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나. 지역별·기업규모별 차등지원

1) 지역별 차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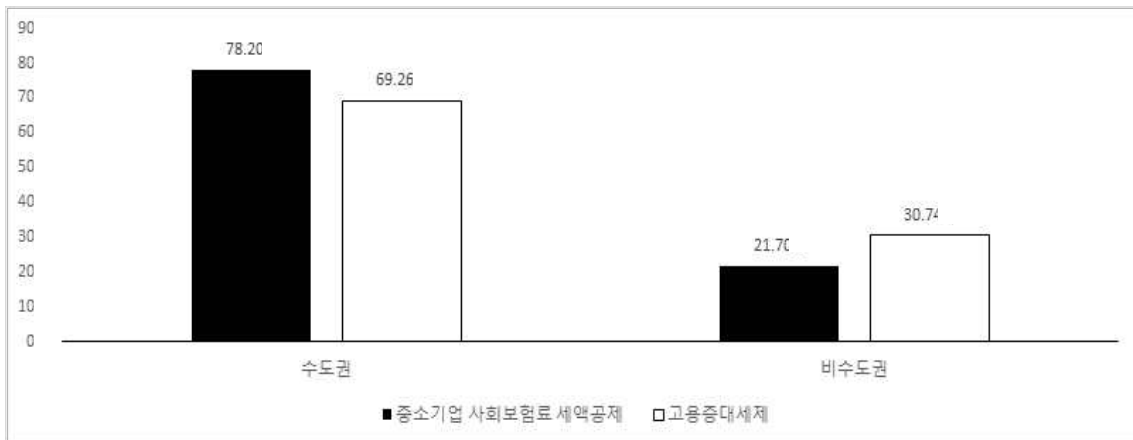
- 본 조세특례는 수도권과 지방기업의 고용 증가에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고용지원세제의 경우 지방기업은 수도권 소재기업에 비하여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인당 1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인당 70만원을 더 공제받음

44)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도 사회보험료 보조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액을 ① ‘고용증가인원 × 인당 정액공제액’과 ② 해당 사업체가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실제 부담한 사회보험료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임

- 본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본 조세특례가 고용증대세제에 비하여 수도권 편중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조세특례를 신청한 중소기업 중 수도권기업의 비중이 78.20%인 반면, 고용증대세제는 이보다 낮은 69.26%로 나타남
 - 본 조세특례의 전체 공제금액 중 수도권기업이 공제받은 금액의 비중이 79.90%로 고용증대세제의 70.22%보다 높음

[그림 VII-1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제의 지역별 분포
(신청법인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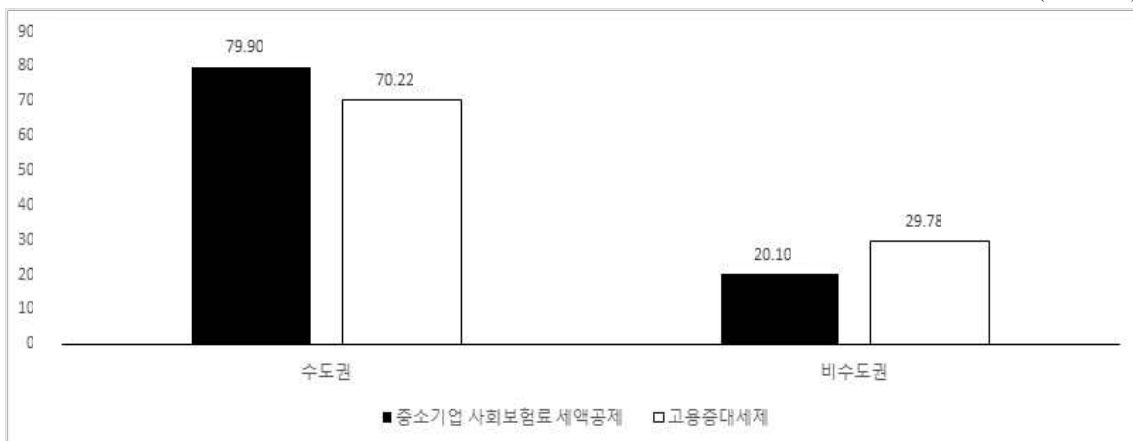
(단위: %)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VII-1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제의 지역별 분포(공제금액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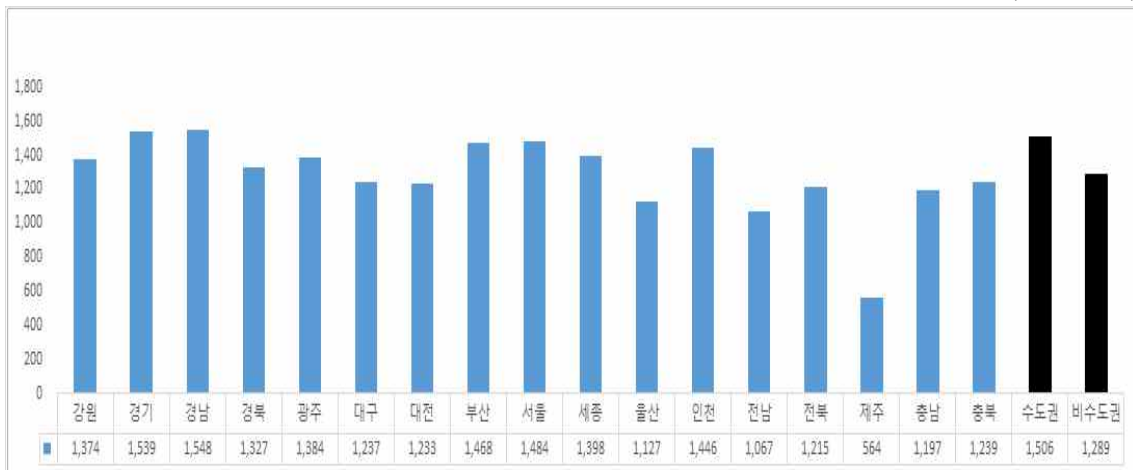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이 지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8 귀속사업연도 기준 수도권은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은 151만원으로, 지방의 129만원에 비하여 22만원 더 많음
 -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으로 155만원이고, 그 다음이 경기(154만원), 서울(148만원), 인천(145만원) 등 수도권은 2~4위를 차지함
 -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56만원이고, 그 다음이 전남(107만원)임
 -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은 급여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역 간 일자리의 질의 차이가 지역 간 고용증가인원당 세액공제액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VII-12] 지역별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단위: 천원)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0보다 큰 중소기업(법인)을 대상으로 분석
 2. 분포의 상·하위 1%를 벗어나는 극단치 제거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고용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하게 지방기업의 고용을 수도권 소재기업의 고용에 비하여 우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고용증대세제에서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우대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지원이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8 귀속사업연도 기준 수도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은 1,506천원이고, 지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은 1,289천원임(법인 기준)
- 2018 귀속사업연도 기준 지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을 수도권 소재기업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이 최소 58.5%(=50%*1.17배) 이상으로 설정돼야 함
 - 수도권의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은 지방의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의 1.17배(=1,506천원/1,289천원) 수준임

2)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 본 조세특례는 모든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에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고용지원세제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눈 후, 기업규모별로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에 차등을 두고 있음
- 수입금액 규모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입금액 50억원 이하 신청자의 비중이 80.2%에 달하나, 이들이 공제받은 금액이 전체 조세지출의 37.0%에 불과함
 -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신청자의 비중은 1.5%에 불과하나, 이들이 공제받은 금액이 전체 조세지출의 18.2%에 달함
 - 규모가 큰 기업이 고용여력이 많고, 근로자 평균급여가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 신청자 수에 비하여 공제금액이 큰 것으로 추정됨

<표 VII-6> 수입금액 규모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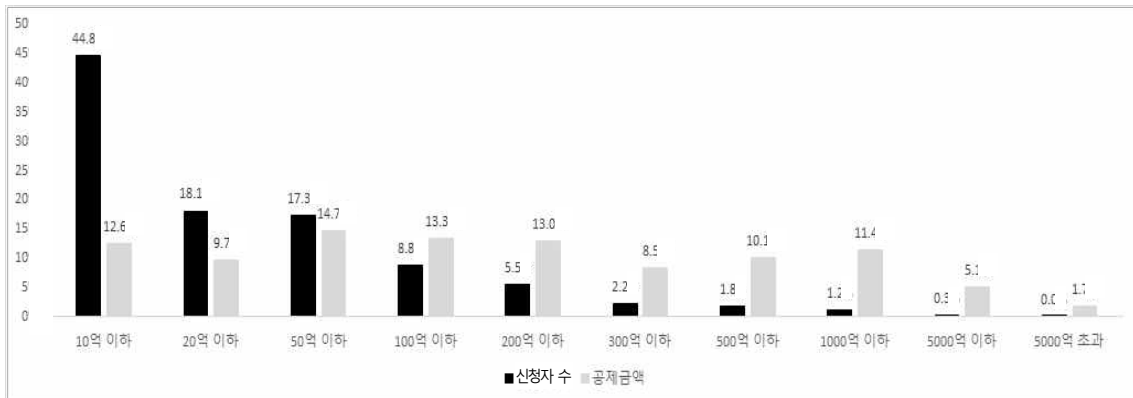
(단위: 개, 명, 백만원, %)

수입 금액	신청자 수				공제금액			
	법인	개인	합계	비중	법인	개인	합계	비중
10억 이하	3,242	12,234	15,476	44.8	2,676	19,962	22,638	12.6
20억 이하	2,576	3,688	6,264	18.1	4,722	12,714	17,436	9.7
50억 이하	4,019	1,975	5,994	17.3	14,336	12,127	26,463	14.7
100억 이하	2,545	488	3,033	8.8	16,953	7,091	24,044	13.3
200억 이하	1,749	140	1,889	5.5	20,220	3,184	23,404	13.0
300억 이하	728	28	756	2.2	14,253	1,011	15,264	8.5
500억 이하	594	23	617	1.8	16,078	2,112	18,190	10.1
1000억 이하	422	7	429	1.2	19,388	1,067	20,455	11.4
5000억 이하	111	-	111	0.3	9,193	-	9,193	5.1
5000억 초과	4	-	4	0.0	3,133	-	3,133	1.7
합계	15,990	18,583	34,573	100	120,952	59,267	180,219	100.0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 기준
 2.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액공제 신청내역을 합산하여 자료 구성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법인);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개인사업자)

[그림 VII-13] 수입금액 규모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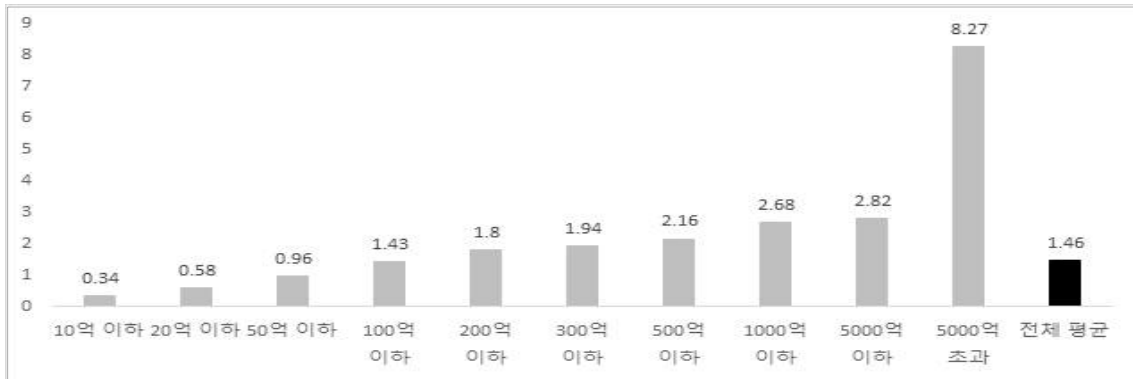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 기준
 2.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액공제 신청내역을 합산하여 자료 구성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법인);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개인사업자)

-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기업규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18 귀속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중소기업(법인)의 고용증가 인원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은 34만원인 데 반해,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 중소기업(법인)의 고용증가 인원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은 827만원으로 24.3배의 차이를 보임

- 수입금액 100억원을 기점으로 100억원 이하 법인은 고용증가 인원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이 전체 평균에 미달하고,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은 고용증가 인원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이 전체 평균을 상회함

[그림 VII-14] 수입금액 규모별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단위: 백만원)



-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에 동 과세특례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분포의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극단치 제거
 2. 동 과세특례로 인하여 개별 기업이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연도에 증가한 고용보험 피보험근로자 수로 나눈 값의 평균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본 조세특례가 채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조세지출이 편중되는 것은 사중손실을 높일 수 있음
 - 본 조세특례가 청년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개인사업자는 30.5%였으나, 법인사업자는 이보다 높은 47.6%로 나타남
 - 직원 수 10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본 조세특례가 청년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41.1%였으나, 직원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자는 50%로 나타남
 - 본 조세특례는 기업규모에 따라 세제혜택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지만 다른 지원제도는 기업규모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규모는 기업규모가 크다고 해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규모가 큰 기업은 상대적으로 자금여유가 있으므로 채용 의사결정에 있어 인건비 부담이 주요한 결정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표 VII-7>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본 조세특례의 영향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침	크게 영향을 미침	종합		4점 평균	
						영향 없음	영향 있음		
전체	(519)	42.6	33.3	19.5	4.6	75.9	24.1	1.86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151)	30.5	34.4	26.5	8.6	64.9	35.1	2.13
	법인사업자	(368)	47.6	32.9	16.6	3.0	80.4	19.6	1.75
직원수	10인 미만	(202)	41.1	32.2	21.3	5.4	73.3	26.7	1.91
	10~50인 미만	(177)	41.8	33.9	21.5	2.8	75.7	24.3	1.85
	50~300인 미만	(112)	44.6	36.6	13.4	5.4	81.3	18.8	1.79
	300인 이상	(28)	50.0	25.0	17.9	7.1	75.0	25.0	1.82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본 조세특례가 채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채용에 있어 세금혜택은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채용에 있어 세금혜택이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라는 응답비율이 29.6%에 불과한 반면, 법인사업자는 54.4%로 나타남
 - ‘인건비에 비하여 세액공제액이 적어서’라는 응답비율이 개인사업자는 24.5%였으나, 법인사업자는 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유사하게 직원 수 10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채용에 있어 세금혜택이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라는 응답비율이 33.8%에 불과한 반면, 직원 수 300인 이상 사업자는 66.7%로 큰 격차를 나타냄
 - 이러한 설문결과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채용에 있어 세금혜택이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며, 세액공제액 인상 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함

<표 VII-8> 본 조세특례가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채용에 있어 세금 혜택은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	이러한 조세 특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인건비에 비하여 세액 공제액이 적어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이익발생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세액 공제 기간이 짧아서 (현행 2년)	기타	
전체	(394)	48.2	20.3	13.5	11.9	2.5	3.6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98)	29.6	19.4	24.5	21.4	1.0	4.1
	법인사업자	(296)	54.4	20.6	9.8	8.8	3.0	3.4
직원수	10인 미만	(148)	33.8	23.0	17.6	18.9	3.4	3.4
	10~50인 미만	(134)	50.7	21.6	12.7	9.7	2.2	3.0
	50~300인 미만	(91)	63.7	15.4	9.9	4.4	2.2	4.4
	300인 이상	(21)	66.7	14.3	4.8	9.5	0.0	4.8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규모가 큰 기업에 조세지출이 집중되어 사중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증대세제와 동일하게 기업규모에 따라 세제혜택에 차등을 두어 중소기업의 고용을 중기업의 고용에 비하여 우대할 필요가 있음
- 고용증가 인원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평균이 수입금액 100억원인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입금액 100억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기준과 유사함

〈표 VII-9〉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2018 귀속사업연도 기준 중기기업의 고용증가 인원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은 1,818천원이고, 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은 948천원임(법인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한 결과임

- 2018 귀속사업연도 기준 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을 중기업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이 최소 96%(=50%×1.92배) 이상으로 설정돼야 함
 - 중기업의 고용증가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은 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의 1.92배(=1,818천원/948천원) 수준임

다. 사후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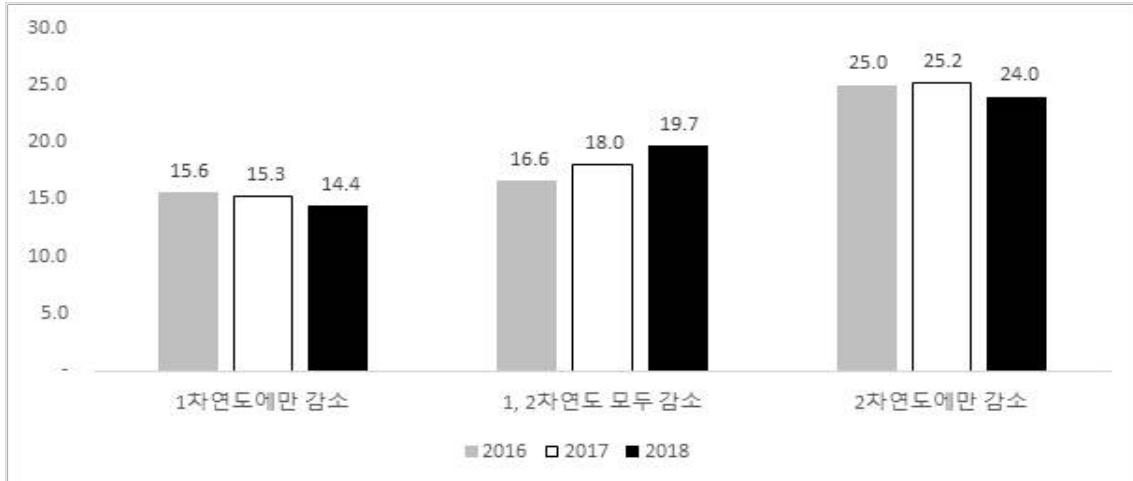
- 본 조세특례는 유사지원제도인 고용증대세제와 달리 사후관리 규정을 미적용함
 - 공제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그 대신 공제 다음 연도에 고용인원이 유지되면 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본 조세특례의 적용기업 중 1/3 이상이 공제 다음연도에 고용이 감소하는 등 고용증대 효과가 단기적임⁴⁵⁾
 - 2018년부터 고용인원 유지 시 전년도 공제세액을 당기에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다음 연도 고용유지율이 2017년에 비하여 하락함
 - 공제 다음 연도에 근로자 수가 감소한 기업비율이 2017년에는 33.3%(=15.3%+18.0%)였으나, 2018년에는 34.1%(=14.4%+19.7%)로 소폭 상승함
 -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센티브 부여만으로는 고용유지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45) 개인사업자의 분석결과도 이와 유사함

[그림 VII-15] 세액공제 후 근로자 수 감소기업 비율

(단위: %)



주: 1. 각 귀속사업연도에 동 과세특례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
 2. 근로자 수 증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변동을 이용하여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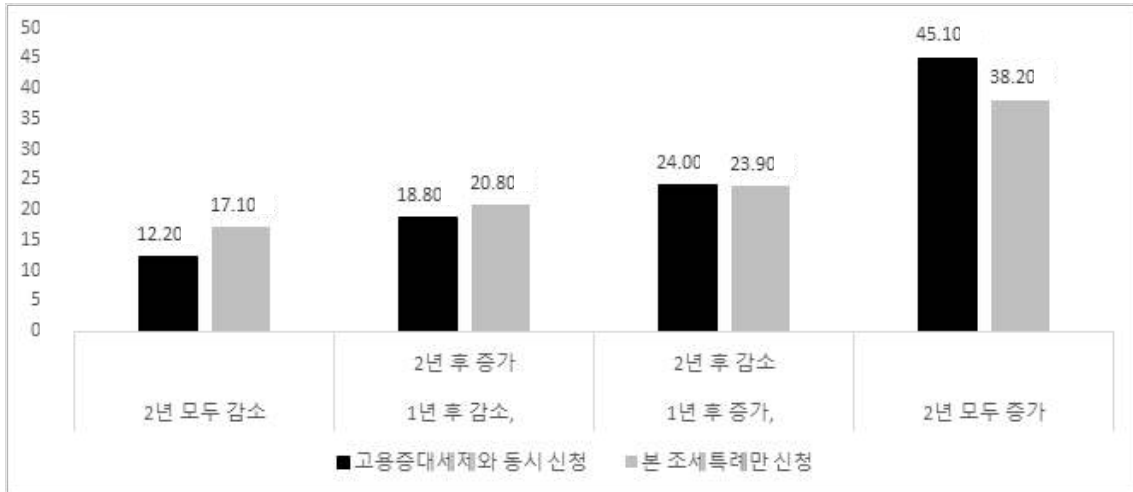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고용증대세제는 감면기간 동안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지만, 본 과세특례는 사후관리 규정이 미적용됨으로써 고용증대세제에 비하여 고용 유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 본 조세특례만 신청한 기업과 본 조세특례와 고용증대세제를 동시에 신청한 기업의 고용유지율을 비교한 결과, 고용증대세제를 동시에 신청한 기업의 고용유지율이 더 높게 나타남⁴⁶⁾
 - 본 조세특례와 고용증대세제를 모두 신청한 중소기업 중 공제 후 2년간 모두 고용인원이 증가한 비율은 45.1%였으나, 본 조세특례만 신청한 중소기업 중 공제 후 2년간 모두 고용지원이 증가한 비율은 38.2%로 더 낮게 나타남

46) 개인사업자의 분석결과도 이와 유사함

[그림 VII-16] 본 조세특례와 고용증대세제의 고용유지 효과 비교

(단위: %)



주: 1. 각 귀속사업연도에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

2. 근로자 수 증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전체)의 변동을 이용하여 측정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본 조세특례와 고용증대세제의 지원요건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수혜 비율이 낮아 고용유지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동 조세특례를 통해 단기고용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2018년 귀속사업연도 기준 본 조세특례를 신청한 기업 중 고용증대세제를 중복 적용받은 기업의 비율은 54.4%임

○ 본 조세특례와 고용증대세제 모두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지원요건으로 하며, 중복지원 가능한 점을 감안했을 때 중복수혜 비율이 50%대인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임

- 산출세액이 충분하지 않아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본 조세특례를 우선 신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50%대의 중복수혜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임

□ 한편 본 조세특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당 세액공제액을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에 비하여 세액공제액이 과다한 극단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부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극단치가 나타난 이유가 반드시 납세자의 부정신청 때문이라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유사한 변동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에 비하여 세액공제액 신청이 과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VII-10>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기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분포

(단위: 천원)

업종	평균	분포						
		최솟값	10%	25%	50%	75%	90%	최댓값
농·임·어업	560	-	-	-	337	1,055	1,696	1,696
광업	917	-	-	-	153	1,750	3,530	3,530
제조업	2,242	-	-	-	1,042	2,461	5,044	99,3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17	-	-	-	3	231	1,853	1,85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04	-	-	249	1,212	2,621	4,604	15,702
건설업	1,526	-	-	-	776	1,959	3,799	39,310
도소매업	1,556	-	-	-	839	1,963	3,439	53,829
운수창고업	1,539	-	-	-	724	1,709	3,623	12,161
숙박음식점업	2,334	-	-	-	483	2,242	5,343	21,433
정보통신업	1,507	-	-	-	520	1,772	3,966	44,609
금융보험업	1,812	-	-	307	976	1,905	5,101	11,490
부동산업	1,368	-	-	-	650	2,086	3,495	8,35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47	-	-	66	749	1,808	3,809	125,558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41	-	-	-	138	723	1,764	9,416
교육서비스업	3,043	-	-	-	481	1,600	3,275	104,9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946	19	19	19	371	8,447	8,447	8,44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27	-	-	28	641	1,241	4,215	4,84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77	-	-	-	325	747	2,046	7,814
전체	1,793	-	-	-	791	2,046	4,149	125,558

- 주: 1. 2018 귀속사업연도에 동 과세특례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
- 2. 근로자 수 증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전체)의 변동을 이용하여 측정
- 3. 분포의 상·하위 1%에 해당하는 극단값을 제거하지 않고 계산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정수급건수와 부정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지원세제 역시 예외에 의한 관리를 통해 부정신청 적발체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고용창출장려금 부정수급건수 및 부정수급액이 연평균 각각 29.1%와 27.9% 증가함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지도점검에 의한 적발건수가 3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기타(24.5%)와 기획수사(19.2%)로, 기타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한 건수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많은 부분이 주로 사업담당자의 지도점검에 의해 적발되고 있음
 - 고용지원세제 확대에 고용 관련 조세지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조세지원 분야에도 부정신청을 적발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VII-11> 고용창출장려금¹⁾의 규모 및 부정수급 적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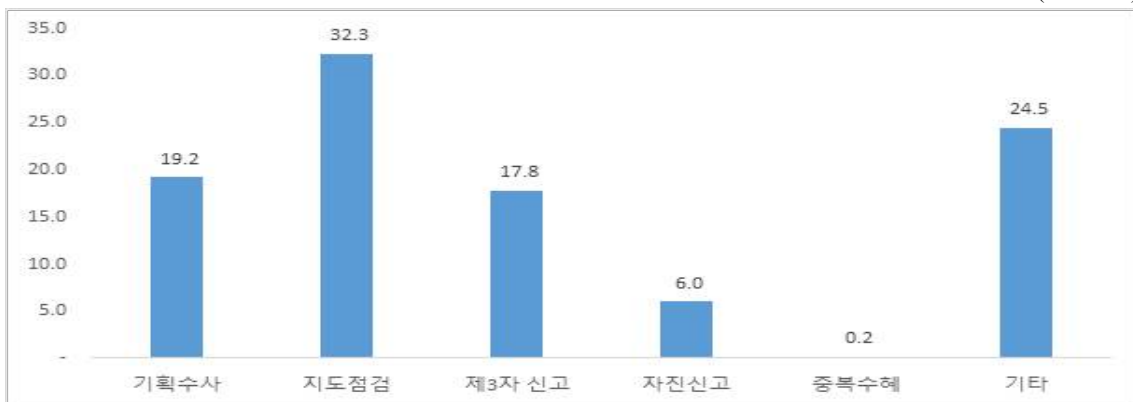
(단위: 명, 건,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연평균증가율
수급자 수	53,276	154,804	251,262	117.2
수급액수	250,732	435,918	985,151	98.2
부정수급건수	368	156	613	29.1
부정수급액	2,751	1,245	4,503	27.9

주: 1) 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험정책 분석 III(고용)』, 2020.

[그림 VII-17]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유형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험정책 분석 III(고용)』, 2020.

- 본 조세특례의 감면기간을 고용증대세제와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되, 고용창출 효과가 단기적이므로 사후관리 요건을 추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 중 일부를 3년간 지원하되,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공제세액을 추징함
 -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창출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를 위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⁴⁷⁾ 부정수급 적발 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5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변상해야 하며,⁴⁸⁾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⁴⁹⁾
 - 타 고용지원제도에 비하여 본 조세특례의 감독 및 고용유지 요건이 약한 편이며, 조세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본 조세특례에 대해 사후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사후관리 및 감독 강화가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수혜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47) 「고용보험법」 제109조

48)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49)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참고문헌

- 김재진 외, 『2015년 조세특례심층평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험정책 분석 Ⅲ(고용)』, 2020.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 _____,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박재혁·정규언,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 오종현·강성훈, 『2018년 조세특례심층평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 조사』, 2020. 5.
- AJILORE, Olugbenga., “Did the Work Opportunity Tax Credit Cause Subsidized Worker Substitutio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Vol. 26 No. 3., 2012, pp. 231~237.
- BARTIK, Timothy J. and BISHOP, John., *The Job Creation Tax Credit: Dismal projections for employment call for a quick, efficient, and effective response*. 2009.
- CHIRINKO, Robert S. and WILSON, Daniel J., *Job creation tax credits, fiscal foresight, and job growth: Evidence from US states*. 2016.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최저임금법」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웹페이지>

고용노동부, 「지원금별 안내」,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6.html, 검색일자: 2021. 7. 29.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소개」,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검색일자: 2021. 7. 29.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 현황」,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검색일자: 2021. 7. 29.

<통계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_____,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각 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세청 신고자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자료.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1. 1. 13.
_____,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_____,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2020. 12.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해외사례>

Government of Canada, “Small business Job Credit,”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whats-new/small-business-job-credit.html>, 검색일자: 2021. 3. 30.

OECD, “Taxing Wages 2020-France,” <https://www.oecd-ilibrary.org/sites/af36344c-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af36344c-en>, 검색일자: 2021. 3. 30.

OECD, “Taxing Wages 2020-Germany,” <https://www.oecd-ilibrary.org/sites/08a1335d-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08a1335d-en>, 검색일자: 2021. 3. 30.

부 록



<부록 1> 중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B	
8. 광업	C10	
9. 식료품 제조업	C12	
10. 담배 제조업	C13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 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주: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9427&lsNm=%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10217&bylEfYdYn=Y>), 검색일자: 2021. 2. 22.

<부록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 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 등의 소유비율
-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ByllInfoPLinkR.do?lsiSeq=200505&lsNm=%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180101&bylEfYdYn=Y>), 검색일자: 2021. 2. 22.

<부록 3> 설문조사지

SQ1. 귀사는 **2018년도 이전에** 창업을 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을 시작한 연도)

- ① 예 ② 아니오 → **설문중단**

SQ2. 귀사는 **2019년** 당기순이익은 0보다 큼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설문중단**

I 기업 일반현황

1-1.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귀사의 **일반현황**을 응답해 주십시오.

1.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자		② 법인			
2. 창업시기	년	월	* 현재의 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연월을 기입			
3. 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4. 산업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신성장서비스업의 범위 ※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9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신성장서비스업* 해당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2. (2019.12.31. 기준) 귀사의 종업원 수는 50명 이상입니까?

- ① 예 → 2-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1-4번으로 이동

1-3. 귀사의 2019년 경영현황을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일
1. 총자산				억				만원
2. 매출액				억				만원
3. 당기순이익				억				만원

II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현황

■ 용어 정의 ■	
1) 상시근로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계약 연장으로 인하여 1년 이상 근무를 한 전일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해당 중소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2) 임시근로자	상시근로자가 아닌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외국인은 상시근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임시근로자입니다.
3) 청년	연령이 만15~29세 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자이지만, 귀사에서 근무하는데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가정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5) 경력단절여성	청년이 아닌 여성으로 결혼·출산·육아의 사유로 인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 가능한 사업체 또는 정규 교육기관 등으로부터의 소속이 종료된 지 3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의미합니다.

2-1. (해당연도 12.31 기준) 귀사의 2018년~2020년의 인력현황에 대하여 다음 표를 이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해당 없을 경우 0 입력

■ 작성 지침 ■	
* 근로자 수: 해당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1. 해당여부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 창립 이전 연도에는 ② '아니오'를 응답해 주세요.							
2. 총 근로자 수	상시		명		명		명
	임시		명		명		명
3. 청년(만 15~29세)	상시		명		명		명
	임시		명		명		명
4. 여성 근로자 수	상시		명		명		명
	임시		명		명		명

2-3. 귀사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있다 → 2-4번으로 이동
- ② 제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 2-4번으로 이동
- ③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른다 → 2-3-1번으로 이동

2-3-1. [2-3번에서 '③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기업만]

귀사에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조세특례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 ② 조세특례제도 중 혜택 규모가 큰 것들만 알고 있어서
- ③ 조세특례제도 중 주로 혜택 받는 것들만 알고 있어서
- ④ 중요 세무관련 업무는 외부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2-4. 귀사는 2020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2019년 발생 소득분) 신고 시 다음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구분	세액공제 여부	세액공제금액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① 있다 ② 없다	번
2.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① 있다 ② 없다	번
3.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5)	① 있다 ② 없다	번
4.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① 있다 ② 없다	번

금액 구간		
① 0~200만원 미만	② 200만~400만원 미만	③ 400만~600만원 미만
④ 600만~800만원 미만	⑤ 800만~1,000만원 미만	⑥ 1,000만~1,200만원 미만
⑦ 1,200만~1,400만원 미만	⑧ 1,400만~1,600만원 미만	⑨ 1,600만~1,800만원 미만
⑩ 1,800만~2,000만원 미만	⑪ 2,000만~2,500만원 미만	⑫ 2,500만~3,000만원 미만
⑬ 3,000만~3,500만원 미만	⑭ 3,500만~4,000만원 미만	⑮ 4,000만~4,500만원 미만
⑯ 4,500만~5,000만원 미만	⑰ 5,000만~6,000만원 미만	⑱ 6,000만~7,000만원 미만
⑲ 7,000만~8,000만원 미만	⑳ 8,000만~9,000만원 미만	㉑ 9,000만~1억원 미만
㉒ 1억~1억 5,000만원 미만	㉓ 1억 5,000만~2억원 미만	㉔ 2억~2억 5,000만원 미만
㉕ 2억 5,000만~3억원 미만	㉖ 3억원 이상	

2-4-1. [2-4번에서 1-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②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기업만]

귀사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2018년 대비 2019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 ② 2018년 대비 2019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여 신청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중복적용 배제로 혜택 규모가 더 큰 다른 조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 ③ 2018년 대비 2019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여 신청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본 조세특례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 ④ 2018년 대비 2019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여 신청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받은 지원금을 차감하였더니 세액공제금액이 산출되지 않아서
- ⑤ 기타(구체적으로:)

☞ 다음으로 아래 고용창출장려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		
<p>고용창출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p> <p>▼고용창출장려금의 종류와 지원수준</p>		
항목	개요	지원수준
일자리함께하기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10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국내복귀기업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신중년적합직무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	신규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신규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청년추가고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2-5. 귀사가 2019년에 수령한 총 고용창출장려금은 얼마입니까? (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구분	지원금 수령 여부	수령금액
고용창출장려금	① 있다 ② 없다	번

금액 구간		
① 0~200만원 미만	② 200만~400만원 미만	③ 400만~600만원 미만
④ 600만~800만원 미만	⑤ 800만~1,000만원 미만	⑥ 1,000만~1,200만원 미만
⑦ 1,200만~1,400만원 미만	⑧ 1,400만~1,600만원 미만	⑨ 1,600만~1,800만원 미만
⑩ 1,800만~2,000만원 미만	⑪ 2,000만~2,500만원 미만	⑫ 2,500만~3,000만원 미만
⑬ 3,000만~3,500만원 미만	⑭ 3,500만~4,000만원 미만	⑮ 4,000만~4,500만원 미만
⑯ 4,500만~5,000만원 미만	⑰ 5,000만~6,000만원 미만	⑱ 6,000만~7,000만원 미만
⑲ 7,000만~8,000만원 미만	⑳ 8,000만~9,000만원 미만	㉑ 9,000만~1억원 미만
㉒ 1억~1억 5,000만원 미만	㉓ 1억 5,000만~2억원 미만	㉔ 2억~2억 5,000만원 미만
㉕ 2억 5,000만~3억원 미만	㉖ 3억원 이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목적: 사회보험 가입 부담 완화, 사각지대 완화
- 수혜내용: 10인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합산 36개월까지 지원)
 - 단,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 자, 종합소득 3,800만원 이상인자 제외
 -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원

2-6. 귀사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원받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사업주지원금)은 총 얼마입니까?

구분	지원금 수령 여부	수령금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① 있다 ② 없다	번

금액 구간		
① 0~200만원 미만	② 200만~400만원 미만	③ 400만~600만원 미만
④ 600만~800만원 미만	⑤ 800만~1,000만원 미만	⑥ 1,000만~1,200만원 미만
⑦ 1,200만~1,400만원 미만	⑧ 1,400만~1,600만원 미만	⑨ 1,600만~1,800만원 미만
⑩ 1,800만~2,000만원 미만	⑪ 2,000만원 이상	

2-7. 귀사가 2019년에 청년의 채용규모에 대한 의사결정시, 다음의 제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영향 정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을 미쳤다	크게 영향을 미쳤다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①	②	③	④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①	②	③	④
3	고용창출장려금	①	②	③	④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①	②	③	④

2-7-1. 위 제도 중 청년 신규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1부터 4까지 순위를 매겨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	--	-----	--	-----	--	-----	--

- 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 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 ③ 고용창출장려금
- ④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2-7-2. [2-7번에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영향 정도를

① 또는 ②라고 응답한 기업만] 귀사에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청년의 채용규모를 의사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익이 발생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익이 발생할지 확실하지 않아서
- ② 인건비에 비하여 세액공제액이 적어서
- ③ 세액공제기간이 짧아서(현행 2년)
- ④ 이러한 조세특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 ⑤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있어 세금혜택은 중요한 고려요인이 아니어서
- ⑥ 기타 ()

2-8. 귀사가 2019년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채용규모에 대한 의사결정시, 다음의 제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영향 정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을 미쳤다	크게 영향을 미쳤다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①	②	③	④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①	②	③	④
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①	②	③	④
4	고용창출장려금	①	②	③	④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①	②	③	④

2-8-1. 위 제도 중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신규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는 무엇이었습니다? 영향이 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	-----	--	-----	--	-----	--	-----	--

- 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 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 ③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 ④ 고용창출장려금
- 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2-8-2. [2-8번에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영향 정도를

① 또는 ②라고 응답한 기업만] 귀사에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채용규모를 의사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익이 발생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익이 발생할지 확실하지 않아서
- ② 인건비에 비하여 세액공제액이 적어서
- ③ 세액공제기간이 짧아서(현행 2년)
- ④ 이러한 조세특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 ⑤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있어 세금혜택은 중요한 고려요인이 아니어서
- ⑥ 기타 ()

2-9. 귀사가 2019년에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채용규모에 대한 의사결정시, 다음의 제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영향 정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을 미쳤다	크게 영향을 미쳤다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①	②	③	④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①	②	③	④
3	고용창출장려금	①	②	③	④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①	②	③	④

2-9-1. 위 제도 중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신규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영향이 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	--	-----	--	-----	--	-----	--

- 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 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 ③ 고용창출장려금
- ④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2-9-2. [2-9번에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영향 정도를

① 또는 ②라고 응답한 기업만] 귀사에서「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채용규모를 의사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익이 발생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익이 발생할지 확실하지 않아서
- ② 인건비에 비하여 세액공제액이 적어서
- ③ 세액공제기간이 짧아서(현행 2년)
- ④ 이러한 조세특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 ⑤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있어 세금혜택은 중요한 고려요인이 아니어서
- ⑥ 기타 ()

2-1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가 귀사의 2021년 경영의사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 ① 채용규모 증가, 근로자 임금 유지
- ② 채용규모 유지, 근로자 임금 증가
- ③ 채용규모 증가, 근로자 임금 증가
- ④ 영향을 미치지 않음
- ⑤ 기타 ()

2-1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가 귀사의 2021년 신규 인력 채용규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채용규모 유지
- ② 청년의 채용규모만 증가
- ③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채용규모만 증가
- ④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증가
- ⑤ 청년,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 모두의 채용규모 증가
- ⑥ 영향을 미치지 않음

2-1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가 귀사의 2021년 근로자의 임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임금수준 유지
- ② 청년의 평균 임금만 증가
- ③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평균 임금만 증가
- ④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
- ⑤ 청년,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 모두의 평균 임금 증가

☞ 다음으로 아래 '급여비례방식'과 '정액비례방식'의 내용을 확인해주신 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비례방식과 정액비례방식의 구분 ■	
<p><급여비례방식>은 신규고용한 인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많을수록 세액공제액이 커집니다. 반면, <정액비례방식>은 신규고용한 인원에게 지급한 급여액에 관계없이 1인당 정액(예.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입니다.</p>	
구분	세액공제액 계산방식
(현행) 급여비례방식	고용증가 인원×고용증가 인원의 평균급여액×사회보험료율×공제율
(변경) 정액비례방식	고용증가 인원×정액(예.1인당 300만원)

2-1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는 신규고용한 인원의 급여액에 비례하여 세액공제액이 증가하는 <급여비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규고용한 인원의 급여액에 비례하여 세액공제액이 증가하는 <급여비례방식>과 고용증가 인원당 일정금액이 세액공제되는 <정액지원방식> 중 **대상별로** 어떤 형태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청년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급여비례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 ② 정액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 ③ 무차별하다

2-1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는 신규고용한 인원의 급여액에 비례하여 세액공제액이 증가하는 <급여비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규고용한 인원의 급여액에 비례하여 세액공제액이 증가하는 <급여비례방식>과 고용증가 인원당 일정금액이 세액공제되는 <정액지원방식> 중 어떤 형태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급여비례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 ② 정액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 ③ 무차별하다

2-1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는 신규고용한 인원의 급여액에 비례하여 세액공제액이 증가하는 <급여비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규고용한 인원의 급여액에 비례하여 세액공제액이 증가하는 <급여비례방식>과 고용증가 인원당 일정금액이 세액공제되는 <정액지원방식> 중 어떤 형태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급여비례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 ② 정액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 ③ 무차별하다

2-16. 정부는 2018년부터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기업에게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혜택기간(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2-17번으로 이동

<부록 4>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5.

Research  Research

<목 차>

I. 조사 개요	199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99
2. 조사 설계	199
3. 자료 처리	199
4. 조사 내용	200
5. 응답기업 특성	201
II. 조사 결과 요약	202
III. 세부 조사 결과	211
1. 기업 일반 현황	211
1) 일반 현황	211
2) 50인 미만 사업장 2019년도 재무 현황	213
3) 2018~2020년 3개년 인력 현황	214
4) 2019년도 대상별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 현황	216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인지 관련	218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인지 정도 ..	218
2)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	219
3. 2019년도 조세특례 제도 및 지원사업별 이용 현황	221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이용 현황 ..	221
2)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이용 현황	224
3)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이용 현황	226
4)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이용 현황	229
5)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이용 현황	232
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용 현황	235
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237
4. 2019년도 조세특례 제도별 영향 및 도움 정도	239

1)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조세특례 제도별 영향 정도	239
2)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조세특례 제도별 영향 정도 ...	244
3)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조세특례 제도별 영향 정도	249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253
5) 대상별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	258
5. 향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	263
1) 동 제도가 2021년 경영의사결정에 미칠 영향	263
2) 동 제도가 2021년 신규 인력 채용규모에 미칠 영향	265
3) 동 제도가 2021년 근로자의 임금에 미칠 영향	266
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세부 내용 관련 인식	268
1) 대상별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268
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기간 연장 효과 ..	271
3) 대상별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의 효과	272
4) 대상별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274
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관련 개선사항 ...	277
IV. 동 제도 관련 2015년 설문 결과와의 비교	280

< 표 목 차 >

<표 I-1> 조사 설계	199
<표 I-2> 주요 설문조사 세부 항목	200
<표 I-3> 응답기업 특성	201
<표 II-1> 3개년 상시근로자 현황(평균)	202
<표 II-2> 3개년 임시근로자 현황(평균)	202
<표 II-3> 상시근로자 및 대상별 상시근로자 채용 여부	203
<표 II-4> 대상별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 및 세전 월 평균 급여	203
<표 II-5> 제도 인지 정도	204
<표 II-6>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	204
<표 II-7> 2019년 제도별 이용 현황	204
<표 II-8>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205
<표 II-9>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제도별 영향 정도	206
<표 II-1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206
<표 II-11> 대상별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	207
<표 II-12> 2021년 경영의사결정에 미칠 영향	207
<표 II-13> 동 제도가 2021년 신규 인력 채용규모 및 근로자의 임금에 미칠 영향 ...	208
<표 II-14> 대상별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208
<표 II-1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기간 연장 사실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	209
<표 II-16> 대상별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의 효과성	209
<표 II-17> 대상별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210
<표 II-18>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관련 개선사항	210
<표 III-1> 2019년 기준 직원 수	211

<표 III-2> 기업 산업분류 현황	212
<표 III-3> 50인 미만 사업장 2019년 재무 현황(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213
<표 III-4> 2020년 근로자 현황(평균)	214
<표 III-5> 2019년 근로자 현황(평균)	215
<표 III-6> 2018년 근로자 현황(평균)	215
<표 III-7> 2019년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 여부 및 대상별 상시근로자 고용 비율 ...	216
<표 III-8> 2019년 대상별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 및 세전 월 평균 급여	217
<표 III-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인지 정도 ...	219
<표 III-10>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	220
<표 III-1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여부	222
<표 III-1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 금액 ...	223
<표 III-1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여부 ...	225
<표 III-14>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금액	225
<표 III-1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여부 ...	227
<표 III-16>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금액	228
<표 III-1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여부	230
<표 III-18>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금액	231
<표 III-19> 고용창출장려금 수령 경험 여부	233
<표 III-20> 고용창출장려금 수령 금액	234
<표 III-2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령 경험 여부	236
<표 III-2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령 금액	236
<표 III-2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238
<표 III-24>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240
<표 III-25>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241
<표 III-26>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영향 정도	242
<표 III-27>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영향 정도 ...	243

<표 III-28>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245
<표 III-29>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246
<표 III-30>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247
<표 III-31>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영향 정도	248
<표 III-32>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영향 정도	249
<표 III-33>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250
<표 III-34>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251
<표 III-35>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영향 정도	252
<표 III-36>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영향 정도	253
<표 III-37> 동 제도가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254
<표 III-38> 동 제도가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256
<표 III-39> 동 제도가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257
<표 III-40> 청년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1순위)	258
<표 III-41> 청년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1+2순위)	259
<표 III-42>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 ..	260
<표 III-43>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 (1+2순위)	261
<표 III-44> 그 외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1순위) ..	262
<표 III-45> 그 외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1+2순위) ..	263

<표 III-4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경영의사결정에 미칠 영향	264
<표 III-4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신규 인력 채용규모에 미칠 영향	266
<표 III-48>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근로자의 임금에 미칠 영향	267
<표 III-49> 청년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268
<표 III-50>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269
<표 III-51>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	270
<표 III-5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기간 연장 효과	272
<표 III-53> 대상별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의 효과성	273
<표 III-54> 청년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274
<표 III-55>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275
<표 III-56>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276
<표 III-5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관련 개선사항(1순위)	278
<표 III-58>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관련 개선사항(1+2순위)	279
<표 IV-1> 설문조사 개요(2015년, 2021년)	280
<표 IV-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인지도 (2015년, 2021년)	281
<표 IV-3>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2015년, 2021년)	281
<표 IV-4> 동 제도의 혜택 경험 여부(2021년 기준)	282
<표 IV-5> 동 제도의 혜택 경험 여부((2015년 기준)	282
<표 IV-6> 동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283
<표 IV-7> 동 제도가 경영의사결정에 미칠 영향(2015년, 2021년)	284

<표 IV-8> 동 제도가 신규 인력 채용규모에 미칠 영향(2015년, 2021년) 284
<표 IV-9> 동 제도가 근로자 임금에 미칠 영향(2015년, 2021년) 285

[그림 목 차]

[그림 III-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인지 정도	218
[그림 III-2]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	220
[그림 III-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여부	221
[그림 III-4]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여부	224
[그림 III-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여부	226
[그림 III-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여부	229
[그림 III-7] 고용창출장려금 수령 경험 여부	232
[그림 III-8]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령 경험 여부	235
[그림 III-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237
[그림 III-10]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239
[그림 III-11]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241
[그림 III-12]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영향 정도	242
[그림 III-13]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영향 정도	243
[그림 III-14]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244
[그림 III-15]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245
[그림 III-16]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246
[그림 III-17]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영향 정도	247
[그림 III-18]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영향 정도	248

[그림 III-19]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249
[그림 III-20]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250
[그림 III-21]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영향 정도	251
[그림 III-22]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영향 정도	252
[그림 III-23] 동 제도가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254
[그림 III-24] 동 제도가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255
[그림 III-25] 동 제도가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257
[그림 III-26] 청년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	258
[그림 III-27]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	260
[그림 III-28] 그 외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	262
[그림 III-2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경영의사결정에 미칠 영향	263
[그림 III-3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신규 인력 채용규모에 미칠 영향	265
[그림 III-3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근로자의 임금에 미칠 영향	267
[그림 III-32] 청년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268
[그림 III-33]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269
[그림 III-34]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270
[그림 III-3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기간 연장 효과	271
[그림 III-36] 대상별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의 효과성	273
[그림 III-37] 청년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274

[그림 III-38]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275
[그림 III-39]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276
[그림 III-4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관련 개선사항	277

I. 조사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성과저해 요인과 현 지원 범위가 적절한 지에 대해 파악하여 향후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현 정부가 운영 중인 다양한 조세특례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도를 평가하고자 실시됨

2.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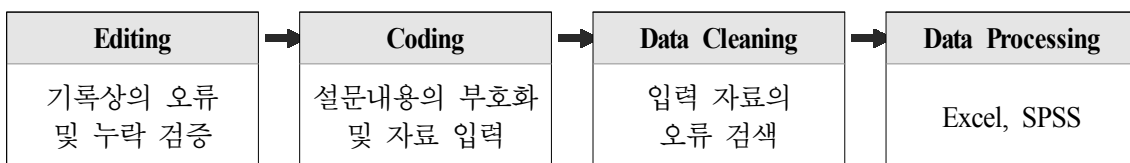
- 본 조사는 제도의 수혜 대상인 전국의 이익보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완료된 총 519개 업체 중 개인사업자 151곳, 법인사업자 368곳임

<표 I -1> 조사 설계

조사 대상	중소기업 519개 업체(개인사업자 151개, 법인사업자 368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컨택-온라인조사
조사 기간	2021년 5월 3일~2021년 5월 26일
조사 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3.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하였음



4. 조사 내용

□ 본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2〉 주요 설문조사 세부 항목

구분	세부 항목
기업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형태, 종사자 수, 창업 시기(업력), 사업장 소재지 산업분류 및 신성장서비스업 해당 여부 2019년도 경영 현황(50인 이하 사업장) 2018~2020년 3개년 인력 현황 대상별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 현황 및 평균 급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인지 정도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
조세특례 제도 및 지원사업별 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이용 현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이용 현황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이용 현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이용 현황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이용 현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도 이용 현황
2019년 조세특례 제도별 영향 및 도움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채용규모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제도별 영향 정도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제도별 영향 정도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제도별 영향 정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대상별 신규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향후 영향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제도가 2021년 경영의사결정에 미칠 영향 동 제도가 2021년 신규 인력 채용규모에 미칠 영향 동 제도가 2021년 근로자의 임금에 미칠 영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세부 내용 관련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별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공제기간 연장 인지 여부 및 효과 동 제도의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대상별 신규고용 유도에 미치는 효과 대상별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동 제도의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관련 개선사항

5. 응답기업 특성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519개 업체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I -3> 응답기업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519	100.0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151	29.1
	법인사업자	368	70.9
직원수	1~4명	114	22.0
	5~9명	88	17.0
	10~19명	89	17.1
	20~49명	88	17.0
	50~99명	61	11.8
	100~299명	51	9.8
	300~499명	13	2.5
	500~999명	12	2.3
	1000명 이상	3	0.6
업력	3년 이상~8년 미만	104	20.0
	8년 이상~12년 미만	103	19.8
	12년 이상~22년 미만	159	30.6
	22년 이상	153	29.5
소재지	수도권	283	54.5
	경상권	139	26.8
	전라권	38	7.3
	충청권	48	9.2
	강원권	9	1.7
	제주권	2	0.4
신성장여부	해당	127	24.5
	비해당	392	75.5

II. 조사 결과 요약

1. 기업 운영 현황

- 응답기업의 상시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2020년 3개년 간 총 상시근로자 수 평균은 약 6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같은 기간동안 청년 상시근로자 수 평균은 약 13명(전체 상시근로자 중 약 20%)이었으며, 여성 상시근로자 수 평균은 약 18명(약 27~28%)으로 나타남

<표 II -1> 3개년 상시근로자 현황(평균)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총 상시근로자 수 (A)	청년		여성	
		근로자 수 (B)	비율 (B/A)	근로자 수 (C)	비율 (C/A)
2020년	64.6	13.2	20.4	18.1	28.0
2019년	63.5	13.0	20.5	17.5	27.6
2018년	62.8	12.9	20.5	17.7	28.2

<표 II -2> 3개년 임시근로자 현황(평균)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총 임시근로자 수 (A)	청년		여성	
		근로자 수 (B)	비율 (B/A)	근로자 수 (C)	비율 (C/A)
2020년	6.2	0.9	14.5	1.3	21.0
2019년	6.4	0.9	14.1	1.3	20.3
2018년	6.1	0.9	14.8	1.2	19.7

- 2019년에 상시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중 65.5%이며, 채용대상별로는 청년(67.6%), 그 외 상시근로자(61.2%) 순으로 나타났으며,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 비율은 20.3%로 상대적으로 낮음
 - 청년 상시근로자 채용 경험이 있다는 기업의 평균 청년 고용 인원은 8.3명, 세전 월평균 급여는 221.53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채용 경험이라는 기업의 평균 고용 인원은 8.1명, 세전 월평균 급여는 215.91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 경험이라는 기업의 평균 청년 고용 인원은 16.8명으로 채용대상 중 가장 많았으며, 세전 월평균 급여는 역시 271.25만원으로 가장 높음

<표 II -3> 상시근로자 및 대상별 상시근로자 채용 여부

(Base1: 전체, Base2: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 여부 '예'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상시근로자 채용 여부	사례 수	대상별 채용 여부		
				청년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
전체	(519)	65.5	(340)	67.6	20.3	61.2

<표 II -4> 대상별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 및 세전 월 평균 급여

(Base: 대상별 2019년 채용 여부 '있음' 응답자, 단위: 명, 만원)

구분	청년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	월평균 급여	고용 인원	월평균 급여	고용 인원	월평균 급여
전체	8.3	221.53	8.1	215.91	16.8	271.25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인지도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인지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른다(34.1%)', '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있다(14.3%)' 순으로 나타남
- 동 제도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세무관련 업무는 회계, 세무사에 위임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해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39.0%로 높게 나타남

<표 II -5> 제도 인지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있다	제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른다
전체	(519)	14.3	51.6	34.1

<표 II -6>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

(Base: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비인지 응답자, n=177,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세무관련 업무는 회계, 세무사에 위임하기 때문에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해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도 중 주로 혜택 받는 것들만 알고 있어서	조세특례제도 중 혜택 규모가 큰 것들만 알고 있어서
전체	(177)	46.3	39.0	11.3	3.4

3. 2019년도 조세특례 제도 및 지원사업별 이용 현황

- 다른 고용관련 조세특례제도 및 지원사업별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이용 현황이 20.2%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 이용 현황이 18.3%로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각 제도의 이용 경험 비율은 20% 내외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경력 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이용 비율이 3.7%로 가장 낮음

<표 II -7> 2019년 제도별 이용 현황

(Base: 전체, n=519, 단위: %)

구분	이용 경험 ‘있다’	이용 경험 ‘없다’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8.3	81.7
(2)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3.7	96.3
(3)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5.2	84.8
(4)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5.6	84.4
(5)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20.2	79.8
(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4.3	85.7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2019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신청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본 조세특례 존재를 알지 못해서’가 20.0%로 높게 나타남
- 기타 응답으로는 대부분이 ‘동 제도 및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로 조사됨

〈표 II -8〉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Base: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없음’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2019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음	신청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본 조세특례 존재를 알지 못해서	신청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중복적용 배제로 타 조세특례 신청	신청요건은 충족되었으나, 타 공공기관의 지원금 차감으로 인해	기타
전체	(424)	55.4	20.0	9.0	3.8	11.8

4. 2019년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조세특례 제도별 영향 및 도움 정도

- 2019년도 대상별 채용규모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제도별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제도가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은 낮은 수준으로 조사된 한편, ‘청년’의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제도별로 살펴보면 청년과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영향 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 외 상시근로자의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영향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 -9>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제도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청년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	
	영향 '있음'	4점 평균	영향 '있음'	4점 평균	영향 '있음'	4점 평균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4.5	1.91	18.7	1.73	24.1	1.86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5.2	1.92	18.9	1.76	24.3	1.87
(3)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25.6	1.92	19.3	1.77	22.9	1.86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8.3	1.79	15.0	1.68	15.6	1.74
(5)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18.7	1.74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가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로는, 모든 대상에 대하여 ‘채용에 있어 세금혜택은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이러한 조세특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 -1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Base: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대해 동 제도의 ‘영향 없음’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채용에 있어 세금혜택은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	이러한 조세 특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인건비에 비하여 세액 공제액이 적어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이익발생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세액 공제기간이 짧아서 (현행 2년)	기타
청년	(392)	42.1	22.2	15.1	12.2	3.8	4.6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422)	45.5	23.0	10.2	12.3	3.8	5.2
그 외 상시근로자	(394)	48.2	20.3	13.5	11.9	2.5	3.6

- 대상별로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모든 대상에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 -11〉 대상별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

(Base: 전체, n=519, 단위: %)

구분	청년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3.4	61.8	46.6	60.7	51.8	66.9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5.4	68.0	13.9	61.3	15.6	73.8
(3)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25.4	45.1	19.3	34.5	20.2	39.9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5.8	25.0	14.5	21.8	12.3	19.5
(5)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5.8	21.8	-	-

5. 향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

- 향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경영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54.3%)으로 나타남
 - 채용규모와 근로자 임금이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10.2%로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 -12〉 2021년 경영의사결정에 미칠 영향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채용규모 증가, 근로자 임금 유지	채용규모 유지, 근로자 임금 증가	채용규모 증가, 근로자 임금 증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	기타
전체	(519)	12.3	21.8	10.2	54.3	1.3

- 향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신규 인력 채용규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46.6%), ‘채용규모 유지’(27.9%) 순으로 나타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함
- 또한, 2021년 근로자의 임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음’(41.8%), ‘임금수준 유지’(35.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모두의 채용규모 및 평균임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8.5%, 10.4%로 나타남

〈표 II -13〉 동 제도가 2021년 신규 인력 채용규모 및 근로자의 임금에 미칠 영향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채용규모	임금
채용규모/임금수준 유지	27.9	35.3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채용규모/임금만 증가	8.3	4.8
청년의 채용규모/임금만 증가	3.1	2.5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채용규모/임금 증가	5.6	5.2
모두의 채용규모/평균 임금 증가	8.5	10.4
영향을 미치지 않음	46.6	41.8

6. 향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세부 내용 관련 인식

- 향후 대상별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으로는, 모든 대상별 응답에서 ‘정액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 -14〉 대상별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급여비례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정액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무차별하다
청년 고용	33.9	48.2	17.9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	27.6	51.4	21.0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	28.7	48.0	23.3

- 동 제도의 세액공제 혜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9.7%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 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효과 있음’이라는 응답이 60.8%로, 효과 없다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남

〈표 II -1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기간 연장 사실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

(Base1: 전체, Base2: 혜택기간 연장 사실 ‘인지’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지율	전혀 효과가 없었다	효과가 없었다	효과가 있었다	매우 효과가 있었다	종합		4점 평균
							효과 없음	효과 있음	
전체	(519)	19.7	9.8	29.4	48.0	12.7	39.2	60.8	2.64

- 대상별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상별로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 청년의 경우 신규고용 유도에 ‘효과 없음’이 과반(50.1%)으로 나타났으며,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경우 ‘효과 있음’이 소폭 더 높게 나타남

〈표 II -16〉 대상별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의 효과성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년 신규고용 유도 효과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신규고용 유도 효과		그 외 상시근로자 신규고용 유도 효과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519)	49.9	50.1	50.5	49.5	54.5	45.5

- 신규고용 유도 효과가 없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상별로 ‘5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 -17> 대상별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Base: 대상별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 효과 ‘없음’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이상
청년	(260)	30.4	8.1	42.3	1.2	3.8	0.0	0.0	4.6	9.6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257)	26.8	7.8	45.1	1.2	2.7	0.4	0.0	5.8	10.1
그 외 상시근로자	(236)	25.8	8.1	44.9	0.8	3.4	0.4	0.0	5.1	11.4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1순위와 1+2순위 응답 모두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 -18>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관련 개선사항

(Base: 전체, n=519, 단위: %)

구분	1순위	1+2순위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	41.4	55.9
세액공제 혜택기간 (공제기간) 연장	18.3	48.7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와 통합하여 고용창출 지원세제 단순화	17.7	34.3
현행 급여비례방식을 정액지원방식으로 전환	14.8	40.1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와 동일하게 사후관리 규정 추가	5.6	13.3
동 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1.3	6.7
기타	0.8	1.0

III. 세부 조사 결과

1. 기업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 응답기업 519개 업체의 직원 수 분포를 살펴보면, ‘1~4명’이 22.0%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10~19명’(17.1%), ‘5~9명’, ‘20~49명’(각 17.0%) 순으로 나타나 전체 약 73.1%가 50인 미만 기업임
 - 조직형태별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1~4명’이 5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법인사업자는 ‘20~49명’이 2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III-1> 2019년 기준 직원 수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전체	(519)	22.0	17.0	17.1	17.0	11.8	9.8	2.5	2.3	0.6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50.3	21.2	15.2	6.0	6.0	0.7	0.7	0.0
	법인사업자	(368)	10.3	15.2	17.9	21.5	14.1	13.6	3.3	3.3
업력	3~8년 미만	(104)	43.3	20.2	17.3	12.5	3.8	1.9	0.0	1.0
	8~12년 미만	(103)	27.2	26.2	19.4	12.6	8.7	3.9	1.0	1.0
	12~22년 미만	(159)	15.7	13.8	23.9	17.6	13.8	9.4	1.9	2.5
	22년 이상	(153)	10.5	11.8	8.5	22.2	17.0	19.6	5.9	3.9
소재지	수도권	(283)	24.4	16.6	17.3	14.1	12.7	8.1	2.1	3.5
	경상권	(139)	16.5	16.5	14.4	20.9	12.2	15.1	2.9	1.4
	전라권	(38)	34.2	18.4	21.1	15.8	5.3	5.3	0.0	0.0
	충청권	(48)	14.6	18.8	16.7	25.0	8.3	10.4	6.3	0.0
	강원권	(9)	11.1	22.2	33.3	11.1	22.2	0.0	0.0	0.0
신성장 여부	제주권	(2)	50.0	0.0	50.0	0.0	0.0	0.0	0.0	0.0
	해당	(127)	26.0	22.8	14.2	11.0	15.0	6.3	1.6	3.1
	비해당	(392)	20.7	15.1	18.1	18.9	10.7	11.0	2.8	2.0

- 응답 기업의 산업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40.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도매 및 소매업’(12.9%), ‘건설업’(1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산업분류별로 ‘제조업’(2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8.1%)에서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2> 기업 산업분류 현황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519)	40.7	12.9	11.0	7.3	5.2	4.6	4.0	3.7	2.7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151)	33.8	15.9	5.3	8.6	0.7	2.0	9.3	1.3	7.3
	법인사업자	(368)	43.5	11.7	13.3	6.8	7.1	5.7	1.9	4.6	0.8
직원수	10인 미만	(202)	29.7	21.8	11.9	7.9	1.0	3.5	5.9	2.5	5.0
	10-50인 미만	(177)	50.8	5.6	13.6	5.1	2.8	5.1	4.0	4.5	1.7
	50-300인 미만	(112)	48.2	10.7	7.1	10.7	5.4	6.3	0.9	5.4	0.9
	300인 이상	(28)	25.0	3.6	3.6	3.6	50.0	3.6	3.6	0.0	0.0
소재지	수도권	(283)	32.9	16.3	9.9	8.8	5.7	4.9	5.7	4.2	2.8
	경상권	(139)	51.8	9.4	11.5	6.5	3.6	2.2	2.2	3.6	2.2
	전라권	(38)	39.5	5.3	21.1	2.6	7.9	5.3	2.6	2.6	2.6
	충청권	(48)	54.2	10.4	6.3	6.3	6.3	8.3	2.1	0.0	4.2
	강원권	(9)	44.4	11.1	11.1	0.0	0.0	11.1	0.0	11.1	0.0
신성장 여부	제주권	(2)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해당	(127)	21.3	15.0	5.5	18.1	2.4	15.0	11.8	1.6	3.9
	비해당	(392)	46.9	12.2	12.8	3.8	6.1	1.3	1.5	4.3	2.3

구분	사례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동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업 및 보험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전체	(519)	1.7	1.5	1.2	1.2	1.0	0.6	0.6	0.2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151)	3.3	4.0	1.3	4.0	2.0	0.7	0.7	0.0
	법인사업자	(368)	1.1	0.5	1.1	0.0	0.5	0.5	0.5	0.3
직원수	10인 미만	(202)	2.5	1.5	1.5	2.5	1.0	1.5	0.0	0.5
	10-50인 미만	(177)	0.6	2.8	1.1	0.0	1.1	0.0	1.1	0.0
	50-300인 미만	(112)	2.7	0.0	0.0	0.9	0.9	0.0	0.0	0.0
	300인 이상	(28)	0.0	0.0	3.6	0.0	0.0	0.0	3.6	0.0
소재지	수도권	(283)	1.8	2.5	0.4	1.4	1.8	0.4	0.7	0.0
	경상권	(139)	2.2	0.7	2.9	0.0	0.0	0.0	0.7	0.7
	전라권	(38)	2.6	0.0	2.6	2.6	0.0	2.6	0.0	0.0
	충청권	(48)	0.0	0.0	0.0	2.1	0.0	0.0	0.0	0.0
	강원권	(9)	0.0	0.0	0.0	0.0	0.0	11.1	0.0	0.0
신성장 여부	제주권	(2)	0.0	0.0	0.0	0.0	0.0	0.0	0.0	0.0
	해당	(127)	1.6	2.4	1.6	0.0	0.0	0.0	0.0	0.0
	비해당	(392)	1.8	1.3	1.0	1.5	1.3	0.8	0.8	0.3

2) 50인 미만 사업장 2019년도 재무 현황

- 직원 수 50인 미만 사업장 379개 업체의 2019년도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평균 320,245만원, 매출액 평균 436,447만원, 당기순이익 평균 36,175만원으로 조사된 한편, 기업별로 그 편차는 굉장히 큼
- 조직형태별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1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이 10~50인 미만 규모의 기업보다 재무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 50인 미만 사업장 2019년 재무 현황(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Base: 직원수 50인 미만 기업, n=379,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9)	320,245.6	637,849.0	436,447.0	992,502.8	36,175.7	123,631.7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40)	83,900.5	114,670.5	121,251.2	261,624.7	20,088.2	29,329.7
	법인사업자	(239)	458,690.4	765,761.3	621,080.6	1,196,604.1	45,599.3	153,401.6
직원수	10인 미만	(202)	112,602.2	165,113.2	146,621.4	201,299.0	15,898.8	25,751.0
	10~50인 미만	(177)	557,217.1	858,318.8	767,208.5	1,364,893.5	59,316.6	176,238.1
업력	3~8년 미만	(97)	174,958.5	554,437.3	223,446.7	405,642.0	20,573.5	41,723.1
	8~12년 미만	(88)	213,211.9	351,650.0	290,527.7	465,419.3	18,222.0	20,922.8
	12~22년 미만	(113)	442,384.9	785,411.4	620,498.0	1,181,790.9	41,410.7	70,565.8
	22년 이상	(81)	440,123.0	693,957.5	593,288.7	1,454,278.2	67,061.8	247,042.5
소재지	수도권	(205)	264,492.9	493,755.5	430,693.7	1,028,341.2	38,210.8	146,139.9
	경상권	(95)	427,549.0	910,211.0	442,184.0	839,111.5	28,329.1	47,763.7
	전라권	(34)	433,195.7	783,531.3	522,213.8	1,509,931.9	52,054.7	172,148.2
	충청권	(36)	296,508.5	302,515.8	410,402.1	624,298.3	31,932.3	74,263.0
	강원권	(7)	114,755.6	157,812.9	271,843.3	388,140.6	30,796.9	55,016.4
	제주권	(2)	164,317.5	192,445.5	340,546.0	407,436.3	25,550.5	30,304.5
신성장 여부	해당	(94)	123,619.8	139,308.7	146,421.8	169,107.2	23,472.4	31,948.6
	비해당	(285)	385,097.6	719,820.3	532,104.5	1,124,595.7	40,365.5	141,204.1

3) 2018~2020년 3개년 인력 현황

- 3개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총 근로자 중 상시 근로자는 평균 약 60명으로 나타났으며, 임시 근로자는 약 6명으로 나타남
- 근로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근로자 중 상시 근로자는 평균 약 13명, 임시 근로자는 약 1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근로자 중 상시 근로자는 평균 약 18명, 임시 근로자는 약 1명으로 나타남

〈표 III-4〉 2020년 근로자 현황(평균)

(Base: 전체, n=519,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총 근로자		청년 근로자		여성 근로자	
		상시	임시	상시	임시	상시	임시
전체	(519)	64.6	6.2	13.2	0.9	18.1	1.3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12.7	1.7	3.0	0.4	4.0	0.5
	법인사업자 (368)	85.8	8.0	17.4	1.1	23.8	1.6
직원수	10인 미만 (202)	4.5	2.7	0.7	0.3	1.5	0.3
	10~50인 미만 (177)	21.5	2.8	3.6	0.4	4.9	0.4
	50~300인 미만 (112)	107.8	13.9	19.3	1.7	25.7	2.1
	300인 이상 (28)	597.4	21.5	139.5	4.3	190.5	11.4
업력	3~8년 미만 (104)	18.5	3.6	4.9	0.6	4.2	0.3
	8~12년 미만 (103)	28.8	2.0	6.6	0.2	11.4	0.5
	12~22년 미만 (159)	73.8	6.4	12.0	1.3	20.2	2.4
	22년 이상 (153)	110.3	10.5	24.6	1.1	29.7	1.4
소재지	수도권 (283)	74.1	6.8	16.9	1.1	22.3	2.0
	경상권 (139)	61.3	7.8	8.8	0.7	14.8	0.6
	전라권 (38)	25.8	2.7	6.2	0.7	6.2	0.6
	충청권 (48)	57.9	0.5	12.0	0.1	13.6	0.1
	강원권 (9)	25.3	5.7	1.3	0.0	10.6	0.2
	제주권 (2)	9.0	5.5	0.0	0.0	1.5	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54.8	4.6	12.9	1.3	13.9	1.3
	비해당 (392)	67.7	6.7	13.3	0.7	19.4	1.3

<표 III-5> 2019년 근로자 현황(평균)

(Base: 전체, n=519,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총 근로자		청년 근로자		여성 근로자		
		상시	임시	상시	임시	상시	임시	
전체	(519)	63.5	6.4	13.0	0.9	17.5	1.3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12.5	1.6	3.2	0.4	3.9	0.4
	법인사업자	(368)	84.4	8.4	17.0	1.1	23.1	1.6
직원수	10인 미만	(202)	4.3	1.9	0.7	0.3	1.5	0.2
	10~50인 미만	(177)	21.5	2.9	3.5	0.3	4.9	0.4
	50~300인 미만	(112)	108.7	16.0	19.4	2.0	24.4	2.1
	300인 이상	(28)	575.0	22.8	135.4	3.9	185.4	11.3
업력	3~8년 미만	(104)	17.5	2.7	4.7	0.5	4.0	0.3
	8~12년 미만	(103)	28.9	1.9	6.3	0.3	11.3	0.5
	12~22년 미만	(159)	74.0	6.6	11.8	1.2	19.7	2.3
	22년 이상	(153)	107.1	11.8	24.2	1.1	28.7	1.4
소재지	수도권	(283)	72.5	7.4	16.5	1.2	21.6	1.8
	경상권	(139)	60.8	7.4	9.0	0.7	14.3	0.8
	전라권	(38)	25.8	2.7	6.2	0.7	6.2	0.7
	충청권	(48)	57.5	0.6	11.6	0.1	13.8	0.2
	강원권	(9)	25.2	6.8	0.9	0.0	10.2	0.2
	제주권	(2)	9.5	5.5	0.5	0.0	1.5	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52.2	4.5	12.4	1.2	12.3	1.1
	비해당	(392)	67.2	7.0	13.1	0.7	19.2	1.3

<표 III-6> 2018년 근로자 현황(평균)

(Base: 전체, n=519,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총 근로자		청년 근로자		여성 근로자		
		상시	임시	상시	임시	상시	임시	
전체	(519)	62.8	6.1	12.9	0.9	17.7	1.2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12.1	1.8	3.0	0.4	3.7	0.5
	법인사업자	(368)	83.6	7.8	17.0	1.1	23.5	1.5
직원수	10인 미만	(202)	4.4	1.7	0.7	0.3	1.5	0.2
	10~50인 미만	(177)	20.9	2.4	3.3	0.3	4.7	0.3
	50~300인 미만	(112)	105.8	15.4	18.8	2.0	23.5	2.1
	300인 이상	(28)	577.6	23.5	138.6	4.2	193.9	9.4
업력	3~8년 미만	(104)	16.6	2.5	4.4	0.5	3.6	0.3
	8~12년 미만	(103)	28.5	1.8	5.8	0.4	12.1	0.6
	12~22년 미만	(159)	71.3	6.7	12.0	1.2	18.0	2.0
	22년 이상	(153)	108.6	10.8	24.5	1.2	30.8	1.3
소재지	수도권	(283)	72.3	7.4	16.8	1.1	22.1	1.6
	경상권	(139)	59.2	6.2	8.3	0.8	14.3	0.8
	전라권	(38)	24.6	2.5	5.7	0.7	6.0	0.6
	충청권	(48)	57.1	0.6	12.0	0.0	13.5	0.2
	강원권	(9)	25.6	7.1	0.8	0.0	9.7	0.2
	제주권	(2)	9.5	4.0	0.5	0.0	1.5	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51.0	4.6	11.8	1.2	12.0	1.1
	비해당	(392)	66.7	6.6	13.3	0.8	19.6	1.2

4) 2019년도 대상별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 현황

- 2019년도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5.5%(340명)가 상시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응답기업 특성별로, 법인사업자, 직원 수 10인 이상, 전라 및 충청권 소재의 기업에서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2019년에 상시근로자를 신규 채용했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상별 채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채용 경험 ‘있다’ 응답에 대해 ‘청년 상시근로자’ 67.6%, ‘청년과 경력 단절여성이 아닌 상시근로자’ 61.2%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29세 이상 경력 단절여성 상시근로자’는 20.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I-7> 2019년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 여부 및 대상별 상시근로자 고용 비율

(Base1: 전체, Base2: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 여부 ‘예’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상시근로자 채용 비율	사례수	청년 상시근로자 채용 비율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채용 비율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 비율
전체	(519)	65.5	(340)	67.6	20.3	61.2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41.1	(62)	69.4	29.0	45.2
	법인사업자 (368)	75.5	(278)	67.3	18.3	64.7
직원수	10인 미만 (202)	42.1	(85)	49.4	15.3	55.3
	10~50인 미만 (177)	72.9	(129)	65.9	16.3	60.5
	50~300인 미만 (112)	92.9	(104)	79.8	23.1	65.4
	300인 이상 (28)	78.6	(22)	90.9	50.0	68.2
업력	3~8년 미만 (104)	58.7	(61)	63.9	18.0	55.7
	8~12년 미만 (103)	63.1	(65)	56.9	20.0	63.1
	12~22년 미만 (159)	68.6	(109)	73.4	22.9	64.2
	22년 이상 (153)	68.6	(105)	70.5	19.0	60.0
소재지	수도권 (283)	63.6	(180)	66.7	23.9	59.4
	경상권 (139)	66.9	(93)	74.2	18.3	63.4
	전라권 (38)	73.7	(28)	60.7	7.1	60.7
	충청권 (48)	72.9	(35)	62.9	17.1	62.9
	강원권 (9)	33.3	(3)	66.7	0.0	66.7
	제주권 (2)	50.0	(1)	0.0	100.0	10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67.7	(86)	70.9	26.7	60.5
	비해당 (392)	64.8	(254)	66.5	18.1	61.4

- 2019년 대상별 신규 채용 경험이 있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고용 인원 및 세전 월평균 급여를 조사한 결과,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상시근로자’의 경우 해당 고용인원과 월평균 급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청년 상시근로자’,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순으로 나타남
 - 신규 채용한 ‘청년 상시근로자’의 평균 고용인원은 8.3명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급여는 221.53만원으로 나타남
 - 이어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평균 고용인원은 8.1명, 월평균 급여는 215.91만원으로 나타남
 -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상시근로자’의 평균 고용인원은 16.8명, 월평균 급여는 271.25만원으로 나타남

<표 III-8> 2019년 대상별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 및 세전 월 평균 급여

(Base: 대상별 2019년 고용 여부 ‘있다’ 응답자, 단위: 명, 만원)

구분	청년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	월평균 급여	고용 인원	월평균 급여	고용 인원	월평균 급여	
전체	8.3	221.53	8.1	215.91	16.8	271.25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2.8	221.23	2.3	195.00	4.3	238.25
	법인사업자	9.6	221.60	10.1	223.29	18.7	276.38
직원수	10인 미만	1.2	216.64	1.1	198.08	1.8	253.04
	10~50인 미만	2.4	216.32	2.3	229.76	6.0	286.77
	50~300인 미만	9.3	229.25	5.0	216.17	20.0	274.37
	300인 이상	44.2	221.90	33.9	210.00	105.0	233.40
업력	3~8년 미만	2.7	224.90	3.2	206.82	8.0	277.09
	8~12년 미만	5.7	211.16	1.4	226.92	6.0	255.10
	12~22년 미만	7.6	221.51	13.2	216.04	23.4	272.47
	22년 이상	13.4	224.96	8.7	213.60	21.1	277.24
소재지	수도권	10.7	218.70	11.1	213.95	21.5	275.34
	경상권	5.3	222.41	3.0	213.12	14.9	267.08
	전라권	8.6	213.71	5.5	225.00	9.5	237.35
	충청권	4.9	242.68	2.3	245.83	6.5	301.59
	강원권	1.0	195.00	-	-	3.0	190.00
	제주권	-	-	1.0	150.00	1.0	150.00
신성장 여부	해당	5.9	216.97	5.9	212.61	9.4	263.46
	비해당	9.2	223.18	9.2	217.57	19.2	273.84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인지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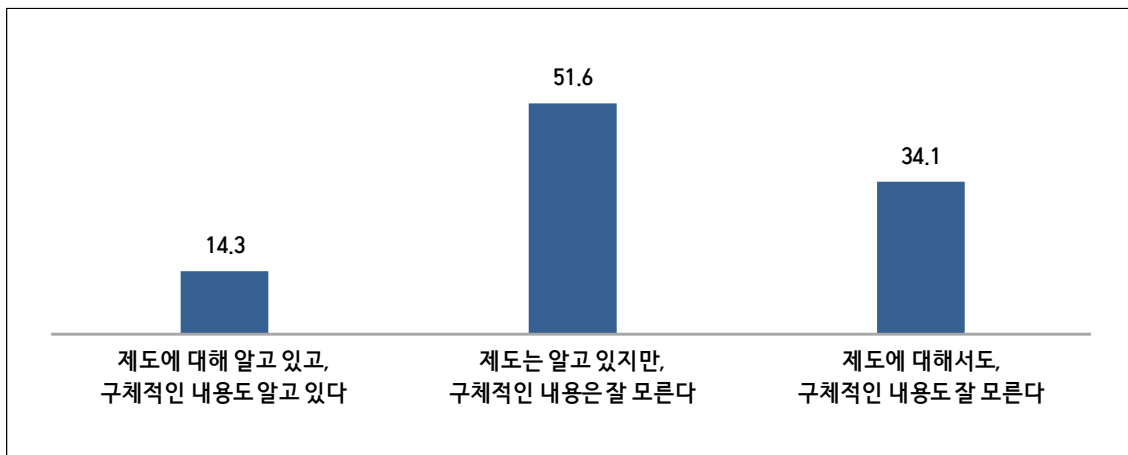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인지 정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인지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과반 이상이 ‘제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른다’ 역시 34.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응답기업 특성별로, ‘제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있다’는 응답에 대해 직원 수 50인 이상인 기업 및 업력이 22년 이상인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인지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인지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있다	제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른다
전체		(519)	14.3	51.6	34.1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151)	15.2	62.9	21.9
	법인사업자	(368)	13.9	47.0	39.1
직원수	10인 미만	(202)	9.9	57.9	32.2
	10~50인 미만	(177)	11.9	51.4	36.7
	50~300인 미만	(112)	25.0	39.3	35.7
	300인 이상	(28)	17.9	57.1	25.0
업력	3~8년 미만	(104)	10.6	52.9	36.5
	8~12년 미만	(103)	10.7	59.2	30.1
	12~22년 미만	(159)	13.2	49.1	37.7
	22년 이상	(153)	20.3	48.4	31.4
소재지	수도권	(283)	12.4	54.4	33.2
	경상권	(139)	23.0	43.9	33.1
	전라권	(38)	7.9	57.9	34.2
	충청권	(48)	6.3	52.1	41.7
	강원권	(9)	11.1	66.7	22.2
	제주권	(2)	0.0	0.0	10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20.5	54.3	25.2
	비해당	(392)	12.2	50.8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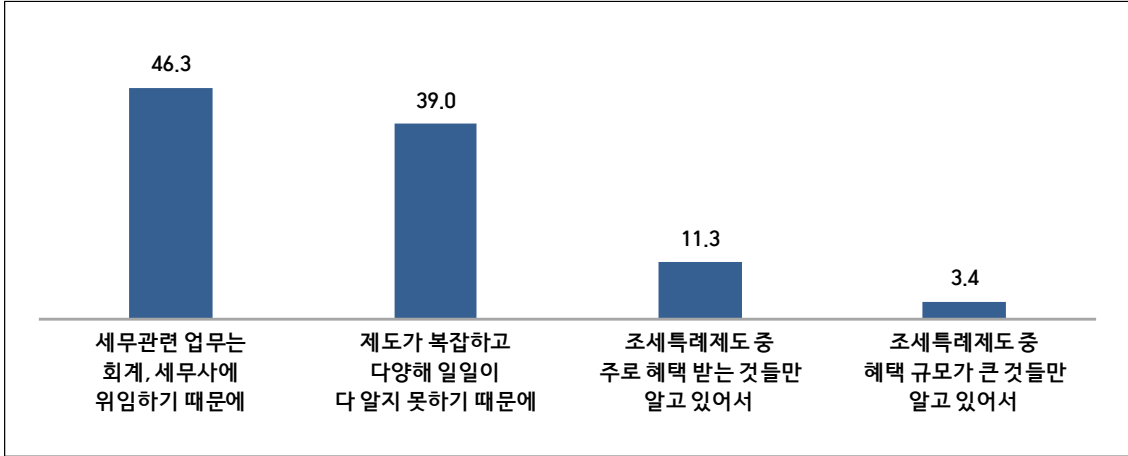
2)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

□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른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세무 관련 업무는 회계, 세무사에 위임하기 때문에’가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해 일일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가 39.0%로 높게 나타남

○ 응답기업 특성 전반에서 2순위까지의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법인사업자 및 직원 수 300인 이상의 경우 ‘세무관련 업무는 회계, 세무사에 위임하기 때문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해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림 III-2]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

(Base: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비인지 응답자, n=177, 단위: %)



<표 III-10>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

(Base: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비인지 응답자, n=177,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세무관련 업무는 회계, 세무사에 위임하기 때문에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해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도 중 주로 혜택 받는 것들만 알고 있어서	조세특례제도 중 혜택 규모가 큰 것들만 알고 있어서
전체	(177)	46.3	39.0	11.3	3.4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33) 42.4	48.5	0.0	9.1
	법인사업자	(144) 47.2	36.8	13.9	2.1
직원수	10인 미만	(65) 49.2	44.6	3.1	3.1
	10~50인 미만	(65) 47.7	33.8	15.4	3.1
	50~300인 미만	(40) 35.0	40.0	20.0	5.0
	300인 이상	(7) 71.4	28.6	0.0	0.0
업력	3~8년 미만	(38) 47.4	36.8	10.5	5.3
	8~12년 미만	(31) 54.8	41.9	3.2	0.0
	12~22년 미만	(60) 48.3	36.7	11.7	3.3
	22년 이상	(48) 37.5	41.7	16.7	4.2
소재지	수도권	(94) 45.7	38.3	11.7	4.3
	경상권	(46) 43.5	43.5	10.9	2.2
	전라권	(13) 38.5	46.2	7.7	7.7
	충청권	(20) 60.0	25.0	15.0	0.0
	강원권	(2) 50.0	50.0	0.0	0.0
	제주권	(2) 50.0	50.0	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32) 40.6	46.9	9.4	3.1
	비해당	(145) 47.6	37.2	11.7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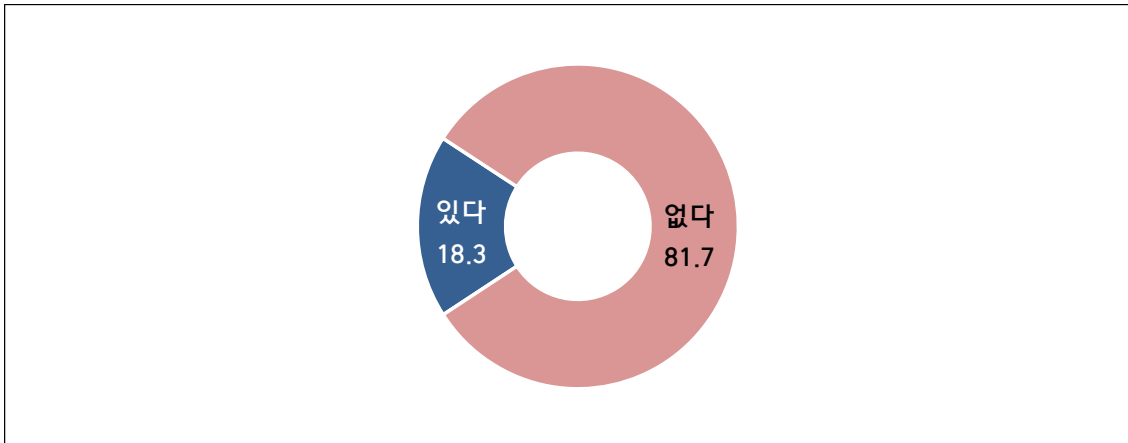
3. 2019년도 조세특례 제도 및 지원사업별 이용 현황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이용 현황

- 2019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 중 18.3%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험이 있다는 응답기업(n=95)의 세액공제 혜택 금액을 살펴보면, ‘0~200만원 미만’이 30.5%, ‘200~400만원 미만’이 15.8%로 나타났으며, 최대 3억원 미만까지 그 분포는 다양함
 - 모든 응답기업 특성별로 혜택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개인사업자 및 직원 수 규모가 클수록 경험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여부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1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여부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519)	18.3	81.7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151)	21.9	78.1
	법인사업자	(368)	16.8	83.2
직원수	10인 미만	(202)	14.4	85.6
	10~50인 미만	(177)	18.6	81.4
	50~300인 미만	(112)	22.3	77.7
	300인 이상	(28)	28.6	71.4
업력	3~8년 미만	(104)	20.2	79.8
	8~12년 미만	(103)	18.4	81.6
	12~22년 미만	(159)	19.5	80.5
	22년 이상	(153)	15.7	84.3
소재지	수도권	(283)	18.4	81.6
	경상권	(139)	20.9	79.1
	전라권	(38)	18.4	81.6
	충청권	(48)	14.6	85.4
	강원권	(9)	0.0	100.0
	제주권	(2)	0.0	10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26.8	73.2
	비해당	(392)	15.6	84.4

〈표 III-1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 금액

(Base: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있음'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0~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1,000만원 미만	1,000~1,200만원 미만	1,200~1,400만원 미만	1,400~1,600만원 미만	1,600~1,800만원 미만	
전체	(95)	30.5	15.8	6.3	5.3	5.3	2.1	3.2	4.2	3.2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33)	18.2	18.2	9.1	6.1	9.1	3.0	0.0	3.0	3.0
	법인사업자	(62)	37.1	14.5	4.8	4.8	3.2	1.6	4.8	4.8	3.2
직원수	10인 미만	(29)	41.4	24.1	3.4	0.0	3.4	0.0	0.0	3.4	6.9
	10~50인 미만	(33)	45.5	9.1	6.1	12.1	6.1	0.0	3.0	3.0	0.0
	50~300인 미만	(25)	8.0	16.0	12.0	4.0	8.0	8.0	4.0	8.0	0.0
	300인 이상	(8)	0.0	12.5	0.0	0.0	0.0	0.0	12.5	0.0	12.5
업력	3~8년 미만	(21)	28.6	14.3	4.8	4.8	9.5	0.0	0.0	4.8	0.0
	8~12년 미만	(19)	47.4	15.8	5.3	5.3	0.0	0.0	0.0	0.0	10.5
	12~22년 미만	(31)	25.8	19.4	3.2	3.2	6.5	6.5	0.0	6.5	3.2
	22년 이상	(24)	25.0	12.5	12.5	8.3	4.2	0.0	12.5	4.2	0.0
소재지	수도권	(52)	30.8	15.4	7.7	3.8	7.7	1.9	3.8	1.9	3.8
	경상권	(29)	24.1	10.3	3.4	6.9	3.4	3.4	3.4	10.3	3.4
	전라권	(7)	42.9	14.3	14.3	14.3	0.0	0.0	0.0	0.0	0.0
	충청권	(7)	42.9	42.9	0.0	0.0	0.0	0.0	0.0	0.0	0.0
	강원권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주권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34)	17.6	17.6	5.9	5.9	5.9	5.9	2.9	2.9	2.9
	비해당	(61)	37.7	14.8	6.6	4.9	4.9	0.0	3.3	4.9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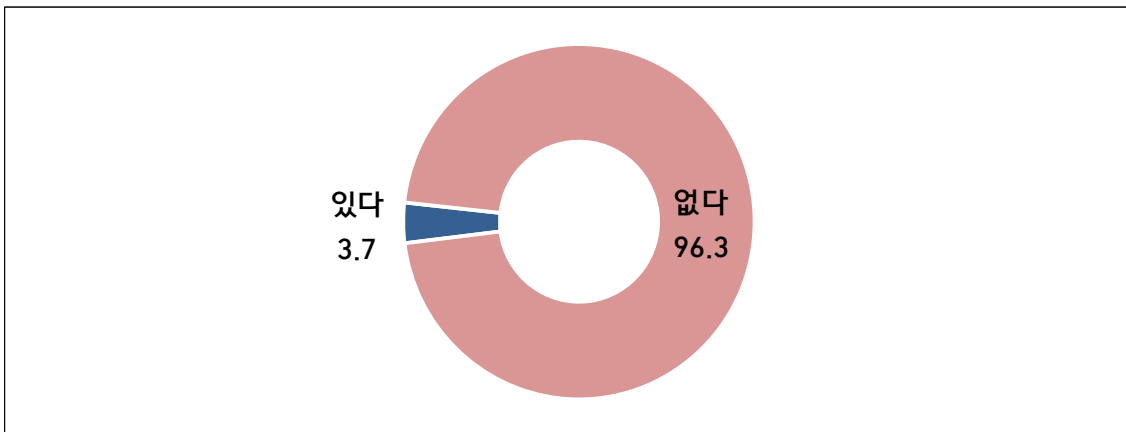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800~2,000만원 미만	2,000~2,500만원 미만	3,000~3,500만원 미만	3,500~4,000만원 미만	4,000~4,500만원 미만	9,000만원 ~1억원 미만	1억 5,000 ~2억원 미만	2억 5,000 ~3억원 미만	
전체	(95)	6.3	5.3	2.1	5.3	2.1	1.1	1.1	1.1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33)	12.1	3.0	3.0	9.1	3.0	0.0	0.0	0.0
	법인사업자	(62)	3.2	6.5	1.6	3.2	1.6	1.6	1.6	1.6
직원수	10인 미만	(29)	13.8	0.0	0.0	3.4	0.0	0.0	0.0	0.0
	10~50인 미만	(33)	0.0	3.0	3.0	6.1	3.0	0.0	0.0	0.0
	50~300인 미만	(25)	4.0	16.0	4.0	0.0	4.0	0.0	4.0	0.0
	300인 이상	(8)	12.5	0.0	0.0	25.0	0.0	12.5	0.0	12.5
업력	3~8년 미만	(21)	19.0	14.3	0.0	0.0	0.0	0.0	0.0	0.0
	8~12년 미만	(19)	0.0	0.0	5.3	10.5	0.0	0.0	0.0	0.0
	12~22년 미만	(31)	6.5	6.5	3.2	6.5	3.2	0.0	0.0	0.0
	22년 이상	(24)	0.0	0.0	0.0	4.2	4.2	4.2	4.2	4.2
소재지	수도권	(52)	5.8	5.8	1.9	5.8	0.0	1.9	1.9	0.0
	경상권	(29)	6.9	6.9	3.4	3.4	6.9	0.0	0.0	3.4
	전라권	(7)	14.3	0.0	0.0	0.0	0.0	0.0	0.0	0.0
	충청권	(7)	0.0	0.0	0.0	14.3	0.0	0.0	0.0	0.0
	강원권	(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주권	(0)	0.0	0.0	0.0	0.0	0.0	0.0	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34)	11.8	5.9	2.9	8.8	2.9	0.0	0.0	0.0
	비해당	(61)	3.3	4.9	1.6	3.3	1.6	1.6	1.6	1.6

2)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이용 현황

- 2019년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 중 3.7%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제도 혜택 경험이 있다는 응답기업(n=19)의 세액공제 혜택 금액을 살펴보면, ‘0~2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각 21.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 5,000만원 미만까지 응답이 나타남
 - 동 제도 역시 개인사업자 및 직원 수 규모가 클수록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직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 동 제도 세액공제 혜택 금액이 2,5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모두 법인사업자 및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나타남

[그림 III-4]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여부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1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여부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519)	3.7	96.3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151)	5.3	94.7
	법인사업자 (368)	3.0	97.0
직원수	10인 미만 (202)	1.5	98.5
	10~50인 미만 (177)	2.3	97.7
	50~300인 미만 (112)	8.0	92.0
	300인 이상 (28)	10.7	89.3
업력	3~8년 미만 (104)	1.0	99.0
	8~12년 미만 (103)	4.9	95.1
	12~22년 미만 (159)	5.7	94.3
	22년 이상 (153)	2.6	97.4
소재지	수도권 (283)	3.5	96.5
	경상권 (139)	5.0	95.0
	전라권 (38)	0.0	100.0
	충청권 (48)	4.2	95.8
	강원권 (9)	0.0	100.0
	제주권 (2)	0.0	10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8.7	91.3
	비해당 (392)	2.0	98.0

<표 III-14>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금액

(Base: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있음'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0~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1,000만원 미만	1,800~2,000만원 미만	2,500~3,000만원 미만	4,500~5,000만원 미만
전체	(19)	21.1	5.3	21.1	15.8	15.8	10.5	5.3	5.3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8)	12.5	12.5	25.0	0.0	25.0	25.0	0.0	0.0
	법인사업자 (11)	27.3	0.0	18.2	27.3	9.1	0.0	9.1	9.1
직원수	10인 미만 (3)	100.0	0.0	0.0	0.0	0.0	0.0	0.0	0.0
	10~50인 미만 (4)	0.0	25.0	0.0	25.0	25.0	25.0	0.0	0.0
	50~300인 미만 (9)	11.1	0.0	33.3	22.2	22.2	11.1	0.0	0.0
	300인 이상 (3)	0.0	0.0	33.3	0.0	0.0	0.0	33.3	33.3
업력	3~8년 미만 (1)	0.0	0.0	0.0	0.0	0.0	100.0	0.0	0.0
	8~12년 미만 (5)	60.0	0.0	20.0	0.0	0.0	20.0	0.0	0.0
	12~22년 미만 (9)	0.0	11.1	22.2	22.2	33.3	0.0	11.1	0.0
	22년 이상 (4)	25.0	0.0	25.0	25.0	0.0	0.0	0.0	25.0
소재지	수도권 (10)	10.0	0.0	30.0	30.0	10.0	10.0	0.0	10.0
	경상권 (7)	42.9	14.3	0.0	0.0	28.6	14.3	0.0	0.0
	전라권 (0)	0.0	0.0	0.0	0.0	0.0	0.0	0.0	0.0
	충청권 (2)	0.0	0.0	50.0	0.0	0.0	0.0	50.0	0.0
	강원권 (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주권 (0)	0.0	0.0	0.0	0.0	0.0	0.0	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11)	9.1	9.1	36.4	9.1	18.2	9.1	9.1	0.0
	비해당 (8)	37.5	0.0	0.0	25.0	12.5	12.5	0.0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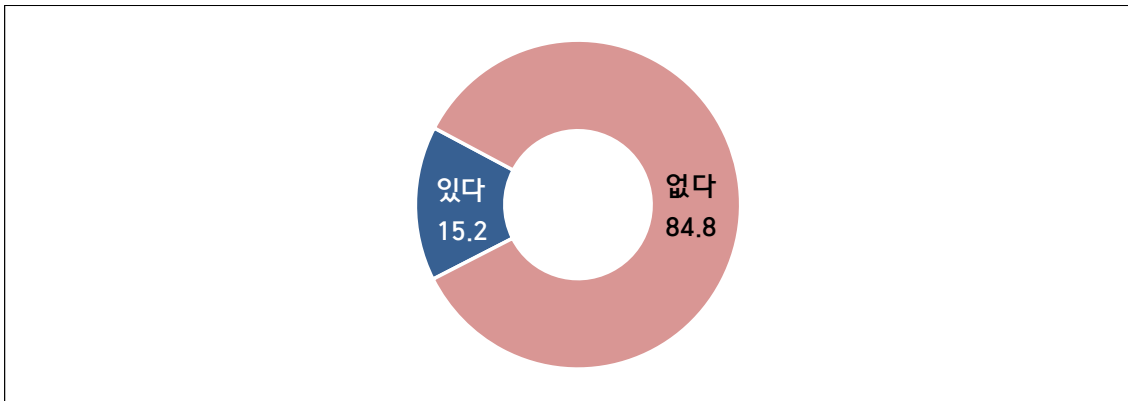
3)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이용 현황

- 2019년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 중 15.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제도 혜택 경험이 있다는 응답기업(n=79)의 세액공제 혜택 금액을 살펴보면, 역시 ‘0~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동 제도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경험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직원 수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 응답기업별 혜택 금액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80%가 소액 구간(4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며, 법인사업자는 금액 분포가 최대 2억원 미만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그림 III-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여부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1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여부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519)	15.2	84.8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13.2	86.8
	법인사업자	(368)	16.0	84.0
직원수	10인 미만	(202)	6.4	93.6
	10~50인 미만	(177)	18.6	81.4
	50~300인 미만	(112)	23.2	76.8
	300인 이상	(28)	25.0	75.0
업력	3~8년 미만	(104)	14.4	85.6
	8~12년 미만	(103)	8.7	91.3
	12~22년 미만	(159)	19.5	80.5
	22년 이상	(153)	15.7	84.3
소재지	수도권	(283)	14.1	85.9
	경상권	(139)	18.7	81.3
	전라권	(38)	10.5	89.5
	충청권	(48)	18.8	81.3
	강원권	(9)	0.0	100.0
	제주권	(2)	0.0	10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22.0	78.0
	비해당	(392)	13.0	87.0

<표 III-16>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금액

(Base: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있음'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0~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1,000만원 미만	1,000~1,200만원 미만	1,200~1,400만원 미만	1,400~1,600만원 미만
전체		(79)	34.2	21.5	3.8	11.4	7.6	2.5	3.8	1.3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20)	45.0	35.0	0.0	10.0	5.0	0.0	0.0	0.0
	법인사업자	(59)	30.5	16.9	5.1	11.9	8.5	3.4	5.1	1.7
직원수	10인 미만	(13)	53.8	38.5	0.0	0.0	0.0	0.0	0.0	0.0
	10~50인 미만	(33)	42.4	12.1	3.0	18.2	9.1	0.0	6.1	0.0
	50~300인 미만	(26)	19.2	23.1	3.8	11.5	11.5	7.7	3.8	3.8
	300인 이상	(7)	14.3	28.6	14.3	0.0	0.0	0.0	0.0	0.0
업력	3~8년 미만	(15)	40.0	13.3	0.0	20.0	0.0	0.0	0.0	0.0
	8~12년 미만	(9)	11.1	44.4	0.0	22.2	0.0	0.0	0.0	0.0
	12~22년 미만	(31)	48.4	22.6	0.0	6.5	12.9	0.0	3.2	3.2
	22년 이상	(24)	20.8	16.7	12.5	8.3	8.3	8.3	8.3	0.0
소재지	수도권	(40)	32.5	32.5	5.0	10.0	10.0	2.5	2.5	0.0
	경상권	(26)	34.6	7.7	3.8	15.4	3.8	3.8	3.8	3.8
	전라권	(4)	25.0	0.0	0.0	0.0	25.0	0.0	25.0	0.0
	충청권	(9)	44.4	22.2	0.0	11.1	0.0	0.0	0.0	0.0
	강원권	(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주권	(0)	0.0	0.0	0.0	0.0	0.0	0.0	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28)	50.0	28.6	3.6	7.1	3.6	0.0	0.0	0.0
	비해당	(51)	25.5	17.6	3.9	13.7	9.8	3.9	5.9	2.0

구분		사례수	1,800~2,000만원 미만	2,000~2,500만원 미만	2,500~3,000만원 미만	3,000~3,500만원 미만	3,500~4,000만원 미만	6,000~7,000만원 미만	1억 5,000~2억원 미만
전체		(79)	1.3	3.8	3.8	1.3	1.3	1.3	1.3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20)	0.0	0.0	5.0	0.0	0.0	0.0	0.0
	법인사업자	(59)	1.7	5.1	3.4	1.7	1.7	1.7	1.7
직원수	10인 미만	(13)	7.7	0.0	0.0	0.0	0.0	0.0	0.0
	10~50인 미만	(33)	0.0	3.0	3.0	3.0	0.0	0.0	0.0
	50~300인 미만	(26)	0.0	7.7	7.7	0.0	0.0	0.0	0.0
	300인 이상	(7)	0.0	0.0	0.0	0.0	14.3	14.3	14.3
업력	3~8년 미만	(15)	6.7	13.3	6.7	0.0	0.0	0.0	0.0
	8~12년 미만	(9)	0.0	0.0	11.1	11.1	0.0	0.0	0.0
	12~22년 미만	(31)	0.0	0.0	0.0	0.0	3.2	0.0	0.0
	22년 이상	(24)	0.0	4.2	4.2	0.0	0.0	4.2	4.2
소재지	수도권	(40)	0.0	0.0	2.5	0.0	2.5	0.0	0.0
	경상권	(26)	0.0	11.5	3.8	3.8	0.0	0.0	3.8
	전라권	(4)	25.0	0.0	0.0	0.0	0.0	0.0	0.0
	충청권	(9)	0.0	0.0	11.1	0.0	0.0	11.1	0.0
	강원권	(0)	0.0	0.0	0.0	0.0	0.0	0.0	0.0
	제주권	(0)	0.0	0.0	0.0	0.0	0.0	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28)	0.0	0.0	3.6	0.0	3.6	0.0	0.0
	비해당	(51)	2.0	5.9	3.9	2.0	0.0	2.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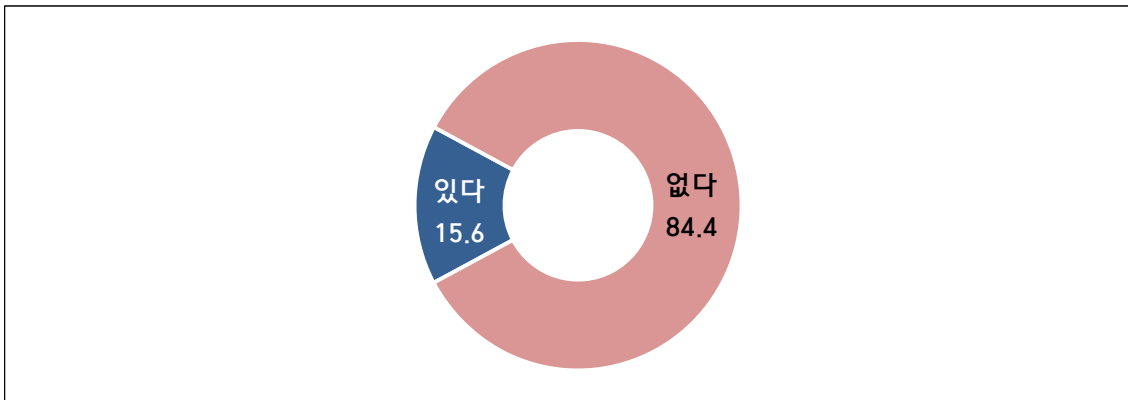
4)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이용 현황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 중 15.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혜택 경험이 있다는 응답기업(n=81)의 세액공제 혜택 금액을 살펴보면, ‘0~200만원’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세액공제 제도 대비 혜택 금액의 분포가 더 다양하게 나타남
 - 조직형태별로 경험 있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직원수 규모가 클수록 경험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32.1%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III-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여부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1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여부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519)	15.6	84.4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151)	16.6	83.4
	법인사업자	(368)	15.2	84.8
직원수	10인 미만	(202)	8.9	91.1
	10~50인 미만	(177)	18.1	81.9
	50~300인 미만	(112)	19.6	80.4
	300인 이상	(28)	32.1	67.9
업력	3~8년 미만	(104)	17.3	82.7
	8~12년 미만	(103)	8.7	91.3
	12~22년 미만	(159)	18.2	81.8
	22년 이상	(153)	16.3	83.7
소재지	수도권	(283)	15.5	84.5
	경상권	(139)	17.3	82.7
	전라권	(38)	7.9	92.1
	충청권	(48)	20.8	79.2
	강원권	(9)	0.0	100.0
	제주권	(2)	0.0	10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22.8	77.2
	비해당	(392)	13.3	86.7

〈표 III-18〉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금액

(Base: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있음'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0~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1,000만원 미만	1,000~1,200만원 미만	1,200~1,400만원 미만	1,400~1,600만원 미만	1,600~1,800만원 미만	1,800~2,000만원 미만	2,000~2,500만원 미만
전체	(81)	29.6	12.3	2.5	4.9	2.5	6.2	3.7	4.9	3.7	4.9	3.7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25)	28.0	8.0	0.0	8.0	4.0	8.0	4.0	8.0	4.0	4.0
	법인사업자	(56)	30.4	14.3	3.6	3.6	1.8	5.4	3.6	3.6	3.6	5.4
직원수	10인 미만	(18)	55.6	0.0	0.0	5.6	5.6	0.0	5.6	16.7	5.6	0.0
	10~50인 미만	(32)	31.3	21.9	3.1	9.4	3.1	6.3	6.3	0.0	3.1	3.1
	50~300인 미만	(22)	18.2	4.5	4.5	0.0	0.0	13.6	0.0	4.5	0.0	9.1
	300인 이상	(9)	0.0	22.2	0.0	0.0	0.0	0.0	0.0	0.0	11.1	0.0
업력	3~8년 미만	(18)	33.3	11.1	0.0	16.7	0.0	5.6	5.6	5.6	0.0	5.6
	8~12년 미만	(9)	55.6	0.0	0.0	0.0	11.1	0.0	0.0	11.1	11.1	0.0
	12~22년 미만	(29)	31.0	10.3	0.0	0.0	3.4	6.9	6.9	6.9	6.9	10.3
	22년 이상	(25)	16.0	20.0	8.0	4.0	0.0	8.0	0.0	0.0	0.0	0.0
소재지	수도권	(44)	34.1	13.6	2.3	2.3	4.5	6.8	0.0	4.5	4.5	6.8
	경상권	(24)	25.0	8.3	4.2	4.2	0.0	8.3	8.3	8.3	4.2	0.0
	전라권	(3)	33.3	0.0	0.0	33.3	0.0	0.0	0.0	0.0	0.0	33.3
	충청권	(10)	20.0	20.0	0.0	10.0	0.0	0.0	10.0	0.0	0.0	10.0
	강원권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신성장여부	해당	(29)	20.7	17.2	0.0	0.0	3.4	6.9	3.4	6.9	3.4	10.3
	비해당	(52)	34.6	9.6	3.8	7.7	1.9	5.8	3.8	3.8	3.8	1.9

구분	사례 수	2,500~3,000만원 미만	3,000~3,500만원 미만	3,500~4,000만원 미만	4,000~4,500만원 미만	4,500~5,000만원 미만	5,000~6,000만원 미만	6,000~9,000만원 미만	9,000만원~1억원 미만	1억원~1억5,000만원 미만	1억5,000만원~3억원 이상
전체	(81)	1.2	6.2	2.5	1.2	1.2	2.5	1.2	1.2	1.2	2.5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25)	4.0	12.0	0.0	0.0	0.0	0.0	4.0	0.0	0.0
	법인사업자	(56)	0.0	3.6	3.6	1.8	1.8	3.6	0.0	1.8	1.8
직원수	10인 미만	(18)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50인 미만	(32)	3.1	3.1	0.0	0.0	0.0	0.0	0.0	0.0	0.0
	50~300인 미만	(22)	0.0	13.6	9.1	4.5	0.0	4.5	4.5	4.5	4.5
	300인 이상	(9)	0.0	11.1	0.0	0.0	11.1	11.1	0.0	0.0	22.2
업력	3~8년 미만	(18)	0.0	11.1	0.0	0.0	0.0	0.0	0.0	0.0	0.0
	8~12년 미만	(9)	0.0	11.1	0.0	0.0	0.0	0.0	0.0	0.0	0.0
	12~22년 미만	(29)	3.4	3.4	3.4	0.0	0.0	3.4	0.0	0.0	0.0
	22년 이상	(25)	0.0	4.0	4.0	4.0	4.0	4.0	4.0	4.0	8.0
소재지	수도권	(44)	0.0	4.5	2.3	0.0	2.3	2.3	2.3	0.0	2.3
	경상권	(24)	4.2	4.2	4.2	4.2	0.0	0.0	0.0	4.2	0.0
	전라권	(3)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충청권	(10)	0.0	20.0	0.0	0.0	0.0	10.0	0.0	0.0	0.0
	강원권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신성장여부	해당	(29)	3.4	13.8	0.0	0.0	0.0	3.4	3.4	0.0	0.0
	비해당	(52)	0.0	1.9	3.8	1.9	1.9	1.9	0.0	1.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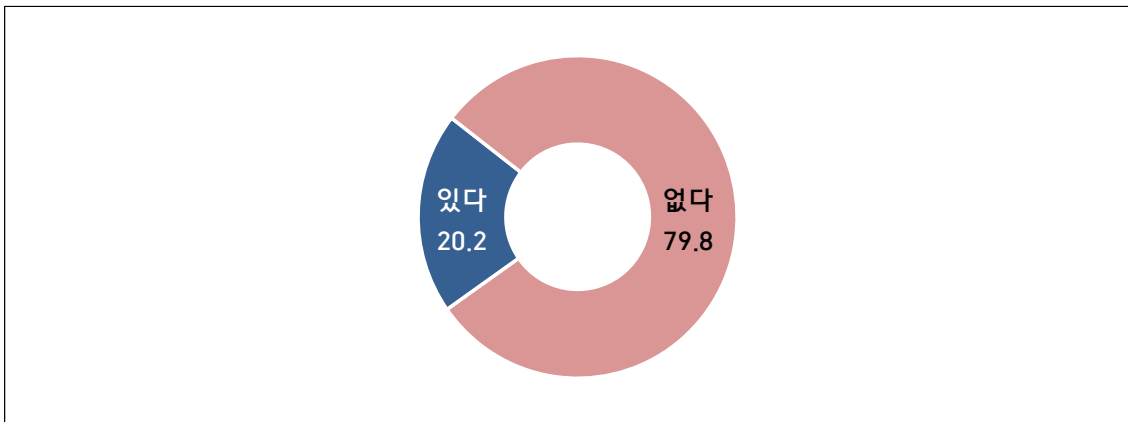
5)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이용 현황

- 고용창출장려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중 20.2%가 수령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창출장려금 수령 경험이 있는 응답기업(n=105)의 지원 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약 40%가 60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수령하였음
 - 응답기업 특성별로 법인사업자(23.4%)와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50~300인 미만 40.2%, 300인 이상 35.7%)에서 수령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7] 고용창출장려금 수령 경험 여부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19> 고용창출장려금 수령 경험 여부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519)	20.2	79.8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12.6	87.4
	법인사업자	(368)	23.4	76.6
직원수	10인 미만	(202)	7.9	92.1
	10~50인 미만	(177)	19.2	80.8
	50~300인 미만	(112)	40.2	59.8
	300인 이상	(28)	35.7	64.3
업력	3~8년 미만	(104)	15.4	84.6
	8~12년 미만	(103)	17.5	82.5
	12~22년 미만	(159)	25.2	74.8
	22년 이상	(153)	20.3	79.7
소재지	수도권	(283)	18.0	82.0
	경상권	(139)	24.5	75.5
	전라권	(38)	15.8	84.2
	충청권	(48)	27.1	72.9
	강원권	(9)	11.1	88.9
	제주권	(2)	0.0	10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26.8	73.2
	비해당	(392)	18.1	81.9

<표 III-20> 고용창출장려금 수령 금액

(Base: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경험 '있음'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0~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1,000만원 미만	1,000~1,200만원 미만	1,200~1,400만원 미만	1,400~1,600만원 미만	1,600~1,800만원 미만	1,800~2,000만원 미만	2,000~2,500만원 미만	2,500~3,000만원 미만	
전체	(105)	20.0	9.5	10.5	5.7	5.7	4.8	4.8	2.9	2.9	4.8	4.8	4.8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9)	10.5	10.5	10.5	5.3	5.3	0.0	10.5	5.3	5.3	15.8	10.5	10.5
	법인사업자	(86)	22.1	9.3	10.5	5.8	5.8	5.8	3.5	2.3	2.3	2.3	3.5	3.5
직원수	10인 미만	(16)	37.5	12.5	12.5	6.3	0.0	0.0	6.3	6.3	0.0	6.3	12.5	0.0
	10~50인 미만	(34)	26.5	11.8	11.8	11.8	5.9	8.8	5.9	0.0	0.0	0.0	5.9	2.9
	50~300인 미만	(45)	13.3	8.9	11.1	2.2	8.9	4.4	2.2	4.4	2.2	6.7	2.2	8.9
	300인 이상	(10)	0.0	0.0	0.0	0.0	0.0	0.0	10.0	0.0	20.0	10.0	0.0	0.0
업력	3~8년 미만	(16)	25.0	6.3	18.8	6.3	0.0	0.0	12.5	0.0	0.0	0.0	18.8	12.5
	8~12년 미만	(18)	27.8	27.8	11.1	0.0	0.0	11.1	0.0	0.0	0.0	0.0	5.6	5.6
	12~22년 미만	(40)	20.0	2.5	10.0	7.5	10.0	2.5	2.5	7.5	7.5	10.0	0.0	2.5
	22년 이상	(31)	12.9	9.7	6.5	6.5	6.5	6.5	6.5	0.0	0.0	3.2	3.2	3.2
소재지	수도권	(51)	17.6	7.8	13.7	3.9	3.9	3.9	5.9	2.0	3.9	7.8	3.9	2.0
	경상권	(34)	17.6	11.8	8.8	2.9	11.8	5.9	5.9	5.9	2.9	0.0	5.9	5.9
	전라권	(6)	50.0	0.0	0.0	16.7	0.0	16.7	0.0	0.0	0.0	0.0	16.7	0.0
	충청권	(13)	23.1	7.7	7.7	15.4	0.0	0.0	0.0	0.0	0.0	7.7	0.0	15.4
	강원권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주권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34)	5.9	8.8	11.8	2.9	5.9	5.9	11.8	5.9	5.9	14.7	5.9	5.9
	비해당	(71)	26.8	9.9	9.9	7.0	5.6	4.2	1.4	1.4	1.4	0.0	4.2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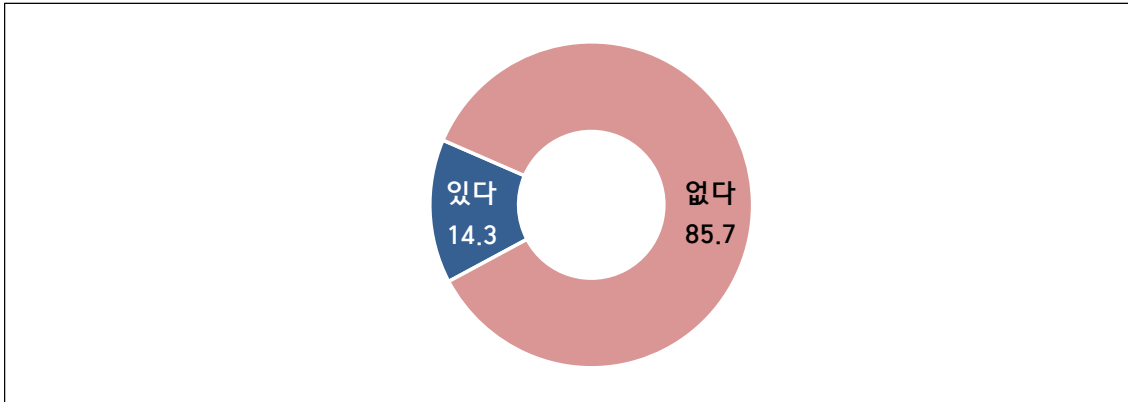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3,000~3,500만원 미만	3,500~4,000만원 미만	4,500~5,000만원 미만	5,000~6,000만원 미만	6,000~7,000만원 미만	8,000~9,000만원 미만	9,000만원~1억원 미만	1억원~1억5,000만원 미만	1억5,000~2억원 미만	2억원~5,000만원 미만	2억5,000~3억원 미만
전체	(105)	1.0	1.0	4.8	1.0	1.0	2.9	1.9	2.9	1.0	1.0	1.0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법인사업자	(86)	1.2	1.2	5.8	1.2	1.2	3.5	2.3	3.5	1.2	1.2
직원수	10인 미만	(1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50인 미만	(34)	2.9	2.9	0.0	2.9	0.0	0.0	0.0	0.0	0.0	0.0
	50~300인 미만	(45)	0.0	0.0	6.7	0.0	2.2	4.4	2.2	4.4	2.2	0.0
	300인 이상	(10)	0.0	0.0	20.0	0.0	0.0	10.0	10.0	10.0	0.0	10.0
업력	3~8년 미만	(1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8~12년 미만	(18)	0.0	0.0	5.6	5.6	0.0	0.0	0.0	0.0	0.0	0.0
	12~22년 미만	(40)	0.0	2.5	5.0	0.0	0.0	0.0	0.0	5.0	2.5	0.0
	22년 이상	(31)	3.2	0.0	6.5	0.0	3.2	9.7	6.5	3.2	0.0	3.2
소재지	수도권	(51)	0.0	0.0	7.8	0.0	0.0	5.9	2.0	3.9	0.0	2.0
	경상권	(34)	2.9	0.0	2.9	0.0	2.9	0.0	0.0	2.9	2.9	0.0
	전라권	(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충청권	(13)	0.0	7.7	0.0	7.7	0.0	0.0	7.7	0.0	0.0	0.0
	강원권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주권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34)	0.0	0.0	0.0	2.9	0.0	2.9	0.0	2.9	0.0	0.0
	비해당	(71)	1.4	1.4	7.0	0.0	1.4	2.8	2.8	2.8	1.4	1.4

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용 현황

-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령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중 14.3%의 기업이 수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령 경험이 있는 기업(n=74)의 지원 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0~200만원 미만'(81.1%)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8]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령 경험 여부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2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령 경험 여부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519)	14.3	85.7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17.9	82.1
	법인사업자	(368)	12.8	87.2
직원수	10인 미만	(202)	36.6	63.4
	10~50인 미만	(177)	0.0	100.0
	50~300인 미만	(112)	0.0	100.0
	300인 이상	(28)	0.0	100.0
업력	3~8년 미만	(104)	17.3	82.7
	8~12년 미만	(103)	17.5	82.5
	12~22년 미만	(159)	13.8	86.2
	22년 이상	(153)	10.5	89.5
소재지	수도권	(283)	12.4	87.6
	경상권	(139)	12.9	87.1
	전라권	(38)	34.2	65.8
	충청권	(48)	10.4	89.6
	강원권	(9)	22.2	77.8
	제주권	(2)	50.0	5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14.2	85.8
	비해당	(392)	14.3	85.7

<표 III-2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령 금액

(Base: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경험 '있음' 응답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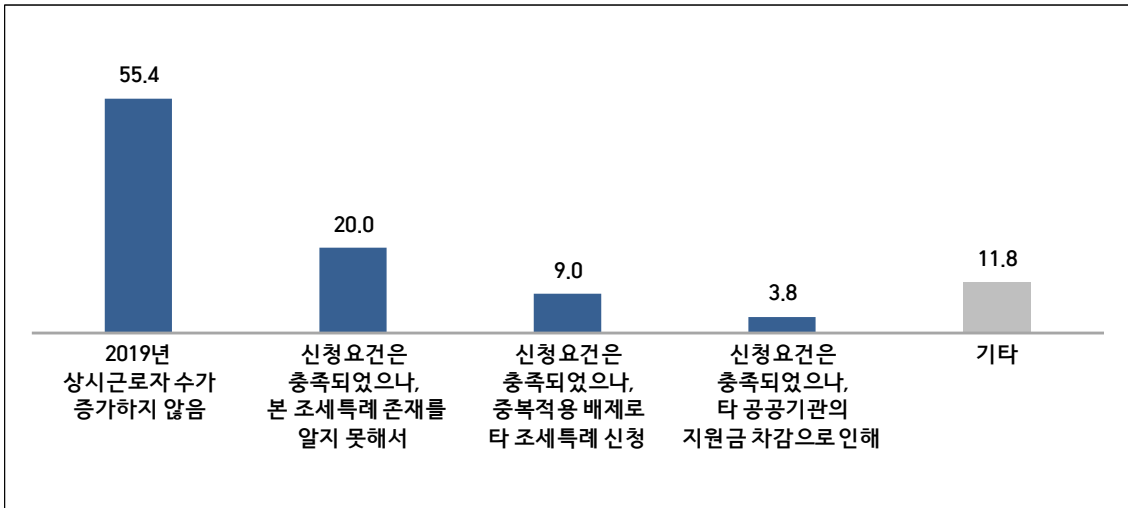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0~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800~1,000만원 미만
전체		(74)	81.1	14.9	2.7	1.4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27)	77.8	14.8	3.7	3.7
	법인사업자	(47)	83.0	14.9	2.1	0.0
직원수	10인 미만	(74)	81.1	14.9	2.7	1.4
	10~50인 미만	(0)	0.0	0.0	0.0	0.0
	50~300인 미만	(0)	0.0	0.0	0.0	0.0
	300인 이상	(0)	0.0	0.0	0.0	0.0
업력	3~8년 미만	(18)	55.6	38.9	5.6	0.0
	8~12년 미만	(18)	83.3	5.6	5.6	5.6
	12~22년 미만	(22)	86.4	13.6	0.0	0.0
	22년 이상	(16)	100.0	0.0	0.0	0.0
소재지	수도권	(35)	80.0	17.1	2.9	0.0
	경상권	(18)	83.3	16.7	0.0	0.0
	전라권	(13)	84.6	0.0	7.7	7.7
	충청권	(5)	80.0	20.0	0.0	0.0
	강원권	(2)	50.0	50.0	0.0	0.0
	제주권	(1)	100.0	0.0	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18)	61.1	33.3	5.6	0.0
	비해당	(56)	87.5	8.9	1.8	1.8

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 2019년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이용 경험이 없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9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신청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본 조세특례 제도를 알지 못해서’가 20.0%로 나타남
- 기타 응답 중 대부분이 ‘동 제도 및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응답기업 특성별로 ‘2019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Base: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없음’ 응답자, 단위: %)



〈표 III-2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Base: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혜택 경험 '없음'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2019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음	신청요건은 충족되었 으나, 본 조세특례 존재를 알지 못해서	신청요건은 충족되었 으나, 중복적용 배제로 타 조세특례 신청	신청요건은 충족되었 으나, 타 공공기관의 지원금 차감으로 인해	기타	
전체	(424)	55.4	20.0	9.0	3.8	11.8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18)	63.6	16.1	8.5	2.5	9.3
	법인사업자	(306)	52.3	21.6	9.2	4.2	12.7
직원수	10인 미만	(173)	67.1	13.9	4.0	3.5	11.6
	10~50인 미만	(144)	56.3	25.7	9.0	1.4	7.6
	50~300인 미만	(87)	31.0	24.1	18.4	5.7	20.7
	300인 이상	(20)	55.0	15.0	10.0	15.0	5.0
업력	3~8년 미만	(83)	54.2	25.3	7.2	1.2	12.0
	8~12년 미만	(84)	58.3	19.0	8.3	4.8	9.5
	12~22년 미만	(128)	47.7	24.2	10.2	5.5	12.5
	22년 이상	(129)	62.0	13.2	9.3	3.1	12.4
소재지	수도권	(231)	55.0	19.9	8.2	3.0	13.9
	경상권	(110)	53.6	17.3	9.1	8.2	11.8
	전라권	(31)	54.8	32.3	6.5	0.0	6.5
	충청권	(41)	53.7	24.4	17.1	0.0	4.9
	강원권	(9)	88.9	0.0	0.0	0.0	11.1
	제주권	(2)	100.0	0.0	0.0	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93)	49.5	23.7	10.8	2.2	14.0
	비해당	(331)	57.1	19.0	8.5	4.2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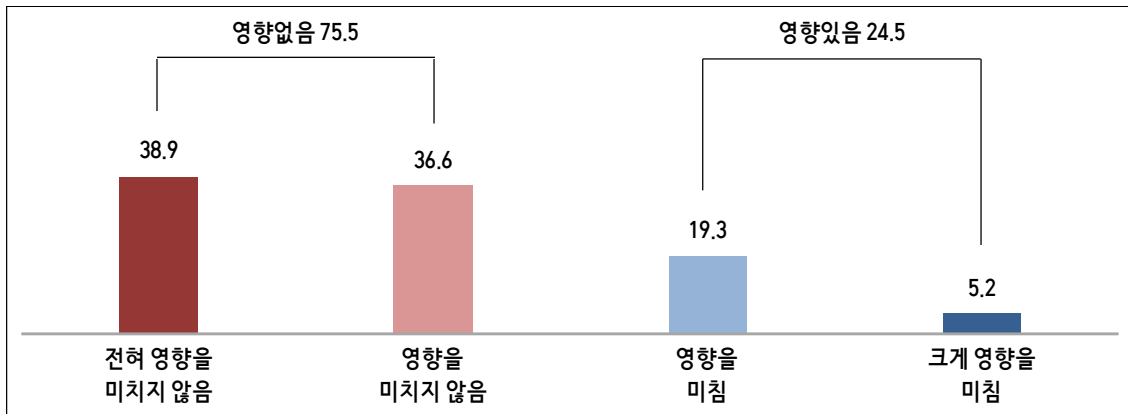
4. 2019년도 조세특례 제도별 영향 및 도움 정도

1)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조세특례 제도별 영향 정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동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 없다’가 75.5%로 ‘영향 있다’(24.5%) 대비 높게 나타남
 - 모든 응답기업 특성별로 영향 없다는 응답이 더 높은 가운데, 영향이 있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및 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10]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24〉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침	크게 영향을 미침	종합		4점 평균	
						영향 없음	영향 있음		
전체	(519)	38.9	36.6	19.3	5.2	75.5	24.5	1.91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26.5	44.4	19.9	9.3	70.9	29.1	2.12
	법인사업자	(368)	44.0	33.4	19.0	3.5	77.4	22.6	1.82
직원수	10인 미만	(202)	38.1	38.1	18.8	5.0	76.2	23.8	1.91
	10~50인 미만	(177)	40.7	33.3	21.5	4.5	74.0	26.0	1.90
	50~300인 미만	(112)	38.4	38.4	16.1	7.1	76.8	23.2	1.92
	300인 이상	(28)	35.7	39.3	21.4	3.6	75.0	25.0	1.93
업력	3~8년 미만	(104)	29.8	44.2	19.2	6.7	74.0	26.0	2.03
	8~12년 미만	(103)	40.8	35.0	19.4	4.9	75.7	24.3	1.88
	12~22년 미만	(159)	39.0	34.0	20.8	6.3	73.0	27.0	1.94
	22년 이상	(153)	43.8	35.3	17.6	3.3	79.1	20.9	1.80
소재지	수도권	(283)	39.6	35.7	18.0	6.7	75.3	24.7	1.92
	경상권	(139)	36.7	37.4	22.3	3.6	74.1	25.9	1.93
	전라권	(38)	42.1	42.1	15.8	0.0	84.2	15.8	1.74
	충청권	(48)	39.6	33.3	22.9	4.2	72.9	27.1	1.92
	강원권	(9)	22.2	55.6	11.1	11.1	77.8	22.2	2.11
	제주권	(2)	100.0	0.0	0.0	0.0	100.0	0.0	1.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26.8	37.0	24.4	11.8	63.8	36.2	2.21
	비해당	(392)	42.9	36.5	17.6	3.1	79.3	20.7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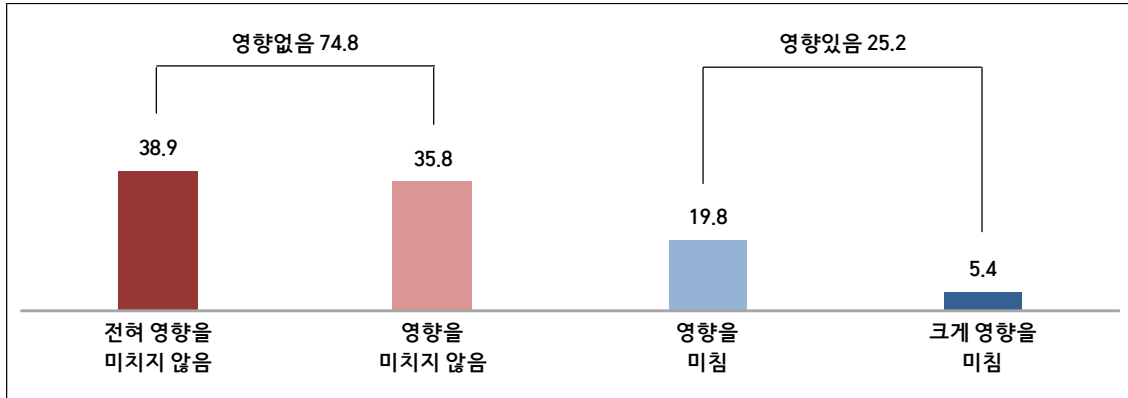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동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 없다’가 74.8%로 ‘영향 있다’(25.2%) 대비 높게 나타남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직원수 규모가 클수록(10인 미만 24.3%, 300인 이상 32.1%) 영향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역시 높게 나타남

[그림 III-11]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25>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침	크게 영향을 미침	종합		4점 평균
						영향 없음	영향 있음	
전체	(519)	38.9	35.8	19.8	5.4	74.8	25.2	1.92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27.2	43.7	19.9	9.3	70.9	29.1	2.11
	법인사업자 (368)	43.8	32.6	19.8	3.8	76.4	23.6	1.84
직원수	10인 미만 (202)	39.6	36.1	18.3	5.9	75.7	24.3	1.91
	10~50인 미만 (177)	38.4	36.7	19.2	5.6	75.1	24.9	1.92
	50~300인 미만 (112)	39.3	34.8	21.4	4.5	74.1	25.9	1.91
	300인 이상 (28)	35.7	32.1	28.6	3.6	67.9	32.1	2.00
업력	3~8년 미만 (104)	25.0	43.3	21.2	10.6	68.3	31.7	2.17
	8~12년 미만 (103)	41.7	35.9	17.5	4.9	77.7	22.3	1.85
	12~22년 미만 (159)	40.3	33.3	20.8	5.7	73.6	26.4	1.92
	22년 이상 (153)	45.1	33.3	19.6	2.0	78.4	21.6	1.78
소재지	수도권 (283)	39.6	33.9	20.8	5.7	73.5	26.5	1.93
	경상권 (139)	36.0	38.1	20.9	5.0	74.1	25.9	1.95
	전라권 (38)	42.1	44.7	10.5	2.6	86.8	13.2	1.74
	충청권 (48)	39.6	33.3	20.8	6.3	72.9	27.1	1.94
	강원권 (9)	33.3	44.4	11.1	11.1	77.8	22.2	2.00
	제주권 (2)	100.0	0.0	0.0	0.0	100.0	0.0	1.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24.4	37.0	26.0	12.6	61.4	38.6	2.27
	비해당 (392)	43.6	35.5	17.9	3.1	79.1	20.9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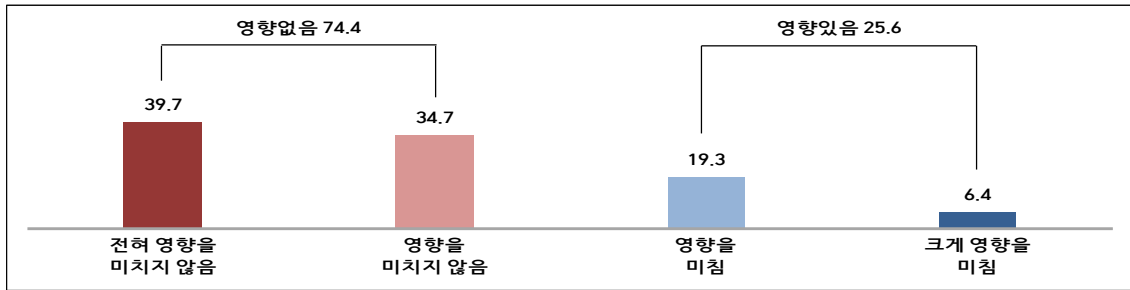
○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동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 없다’가 74.4%로 ‘영향 있다’(25.6%) 대비 높게 나타남

○ 응답기업 특성별로는 직원 수 50인 이상 및 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영향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12]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26>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침	크게 영향을 미침	종합		4점 평균	
						영향 없음	영향 있음		
전체	(519)	39.7	34.7	19.3	6.4	74.4	25.6	1.92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29.8	44.4	21.2	4.6	74.2	25.8	2.01
	법인사업자	(368)	43.8	30.7	18.5	7.1	74.5	25.5	1.89
직원수	10인 미만	(202)	40.6	34.7	19.8	5.0	75.2	24.8	1.89
	10~50인 미만	(177)	41.8	35.6	18.1	4.5	77.4	22.6	1.85
	50~300인 미만	(112)	37.5	33.9	19.6	8.9	71.4	28.6	2.00
	300인 이상	(28)	28.6	32.1	21.4	17.9	60.7	39.3	2.29
업력	3~8년 미만	(104)	31.7	42.3	18.3	7.7	74.0	26.0	2.02
	8~12년 미만	(103)	39.8	38.8	16.5	4.9	78.6	21.4	1.86
	12~22년 미만	(159)	42.1	28.9	23.3	5.7	71.1	28.9	1.92
	22년 이상	(153)	42.5	32.7	17.6	7.2	75.2	24.8	1.90
소재지	수도권	(283)	38.9	33.9	19.1	8.1	72.8	27.2	1.96
	경상권	(139)	38.1	36.0	21.6	4.3	74.1	25.9	1.92
	전라권	(38)	42.1	39.5	18.4	0.0	81.6	18.4	1.76
	충청권	(48)	43.8	31.3	18.8	6.3	75.0	25.0	1.88
	강원권	(9)	44.4	44.4	0.0	11.1	88.9	11.1	1.78
신성장 여부	제주권	(2)	100.0	0.0	0.0	0.0	100.0	0.0	1.00
	해당	(127)	28.3	34.6	26.8	10.2	63.0	37.0	2.19
	비해당	(392)	43.4	34.7	16.8	5.1	78.1	21.9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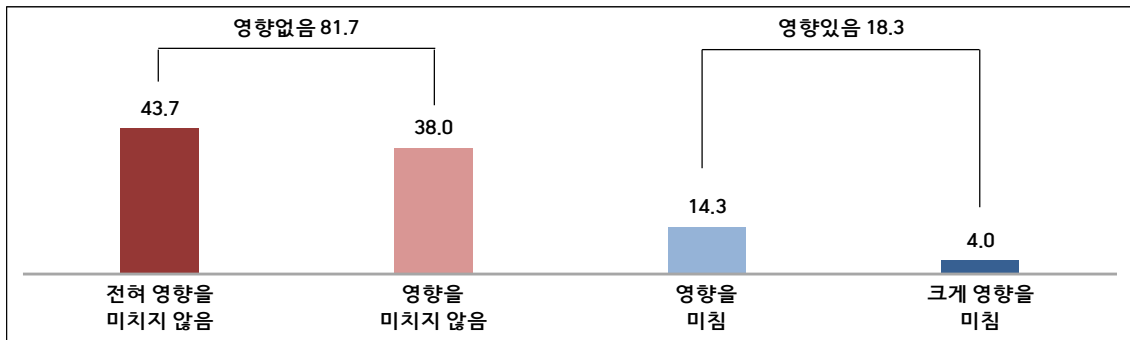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동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 없다’가 81.7%로 ‘영향 있다’(18.3%)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제도 중 가장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영향 있다는 응답에 대해 개인사업자 및 직원수 규모가 작을수록, 업력이 짧을수록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13]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27>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영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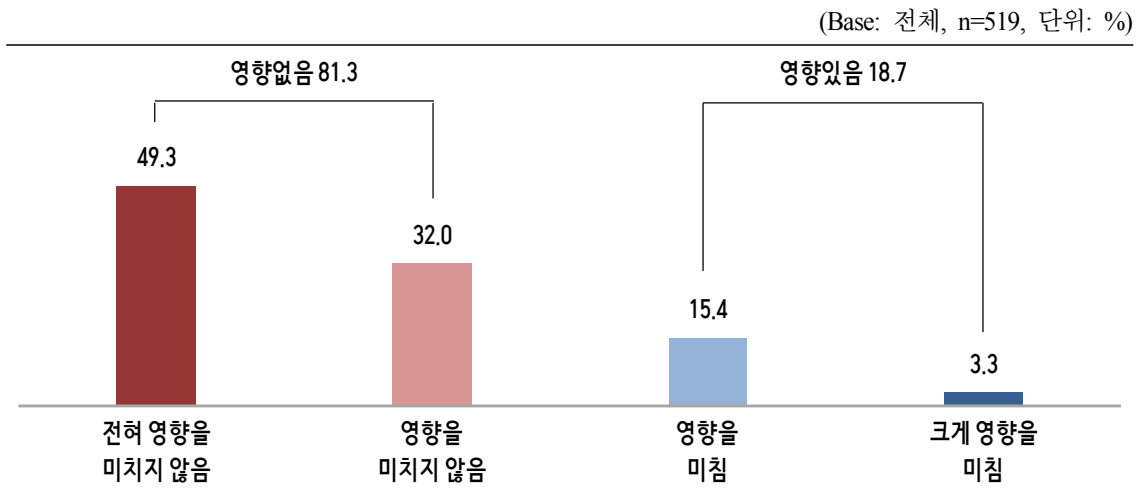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침	크게 영향을 미침	종합		4점 평균
						영향 없음	영향 있음	
전체	(519)	43.7	38.0	14.3	4.0	81.7	18.3	1.79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31.1	46.4	16.6	6.0	77.5	22.5	1.97
	법인사업자 (368)	48.9	34.5	13.3	3.3	83.4	16.6	1.71
직원수	10인 미만 (202)	37.1	32.7	22.3	7.9	69.8	30.2	2.01
	10~50인 미만 (177)	47.5	39.5	10.7	2.3	87.0	13.0	1.68
	50~300인 미만 (112)	50.9	40.2	8.0	0.9	91.1	8.9	1.59
	300인 이상 (28)	39.3	57.1	3.6	0.0	96.4	3.6	1.64
업력	3~8년 미만 (104)	30.8	43.3	18.3	7.7	74.0	26.0	2.03
	8~12년 미만 (103)	46.6	34.0	12.6	6.8	80.6	19.4	1.80
	12~22년 미만 (159)	43.4	39.6	14.5	2.5	83.0	17.0	1.76
	22년 이상 (153)	51.0	35.3	12.4	1.3	86.3	13.7	1.64
소재지	수도권 (283)	43.5	38.5	13.8	4.2	82.0	18.0	1.79
	경상권 (139)	46.0	35.3	15.8	2.9	81.3	18.7	1.76
	전라권 (38)	31.6	44.7	21.1	2.6	76.3	23.7	1.95
	충청권 (48)	47.9	39.6	8.3	4.2	87.5	12.5	1.69
	강원권 (9)	33.3	33.3	11.1	22.2	66.7	33.3	2.22
	제주권 (2)	100.0	0.0	0.0	0.0	100.0	0.0	1.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33.9	43.3	15.7	7.1	77.2	22.8	1.96
	비해당 (392)	46.9	36.2	13.8	3.1	83.2	16.8	1.73

2)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조세특례 제도별 영향 정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동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 없다’가 81.3%로 ‘영향 있다’(18.7%) 대비 높게 나타남
 - 모든 응답기업 특성별로 영향 없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영향 있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와 10인 미만 기업, 신성장서비스업 해당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14]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표 III-28>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침	크게 영향을 미침	종합		4점 평균
						영향 없음	영향 있음	
전체	(519)	49.3	32.0	15.4	3.3	81.3	18.7	1.73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34.4	38.4	20.5	6.6	72.8	27.2	1.99
	법인사업자 (368)	55.4	29.3	13.3	1.9	84.8	15.2	1.62
직원수	10인 미만 (202)	44.6	33.2	17.8	4.5	77.7	22.3	1.82
	10~50인 미만 (177)	52.0	32.8	13.0	2.3	84.7	15.3	1.66
	50~300인 미만 (112)	50.9	30.4	15.2	3.6	81.3	18.8	1.71
	300인 이상 (28)	60.7	25.0	14.3	0.0	85.7	14.3	1.54
업력	3~8년 미만 (104)	39.4	38.5	17.3	4.8	77.9	22.1	1.88
	8~12년 미만 (103)	50.5	33.0	12.6	3.9	83.5	16.5	1.70
	12~22년 미만 (159)	49.1	30.2	17.0	3.8	79.2	20.8	1.75
	22년 이상 (153)	55.6	28.8	14.4	1.3	84.3	15.7	1.61
소재지	수도권 (283)	47.3	30.0	18.7	3.9	77.4	22.6	1.79
	경상권 (139)	48.2	35.3	13.7	2.9	83.5	16.5	1.71
	전라권 (38)	60.5	34.2	5.3	0.0	94.7	5.3	1.45
	충청권 (48)	54.2	33.3	10.4	2.1	87.5	12.5	1.60
	강원권 (9)	44.4	33.3	11.1	11.1	77.8	22.2	1.89
신성장 여부	제주권 (2)	100.0	0.0	0.0	0.0	100.0	0.0	1.00
	해당 (127)	33.1	35.4	22.0	9.4	68.5	31.5	2.08
	비해당 (392)	54.6	30.9	13.3	1.3	85.5	14.5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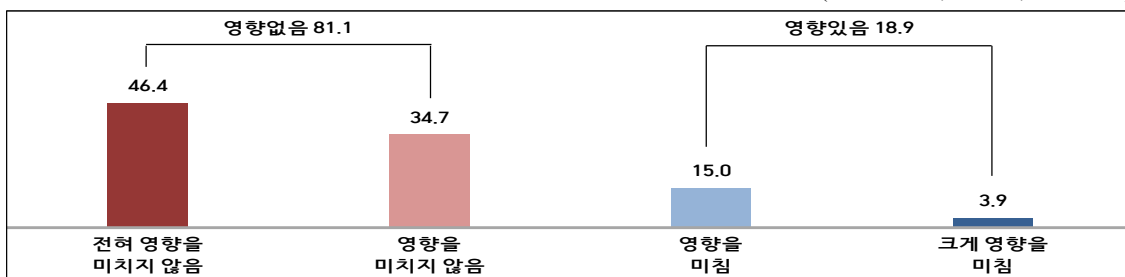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동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 없다’가 81.1%로 ‘영향 있다’(18.9%) 대비 높게 나타남

○ 모든 응답기업 특성별로 영향 없다는 응답이 역시 높은 가운데, 영향 있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와 10인 미만 기업, 신성장서비스업 해당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15]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29>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침	크게 영향을 미침	종합		4점 평균
						영향 없음	영향 있음	
전체	(519)	46.4	34.7	15.0	3.9	81.1	18.9	1.76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27.8	44.4	20.5	7.3	72.2	27.8	2.07
	법인사업자 (368)	54.1	30.7	12.8	2.4	84.8	15.2	1.64
직원수	10인 미만 (202)	41.1	35.1	18.8	5.0	76.2	23.8	1.88
	10~50인 미만 (177)	49.2	37.3	11.9	1.7	86.4	13.6	1.66
	50~300인 미만 (112)	49.1	30.4	14.3	6.3	79.5	20.5	1.78
	300인 이상 (28)	57.1	32.1	10.7	0.0	89.3	10.7	1.54
	업력	3~8년 미만 (104)	32.7	47.1	15.4	4.8	79.8	20.2
업력	8~12년 미만 (103)	48.5	34.0	14.6	2.9	82.5	17.5	1.72
	12~22년 미만 (159)	47.8	29.6	17.0	5.7	77.4	22.6	1.81
	22년 이상 (153)	52.9	32.0	13.1	2.0	85.0	15.0	1.64
소재지	수도권 (283)	43.1	35.3	17.0	4.6	78.4	21.6	1.83
	경상권 (139)	48.2	34.5	14.4	2.9	82.7	17.3	1.72
	전라권 (38)	52.6	36.8	10.5	0.0	89.5	10.5	1.58
	충청권 (48)	54.2	31.3	10.4	4.2	85.4	14.6	1.65
	강원권 (9)	44.4	33.3	11.1	11.1	77.8	22.2	1.89
	제주권 (2)	100.0	0.0	0.0	0.0	100.0	0.0	1.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27.6	40.2	22.0	10.2	67.7	32.3	2.15
	비해당 (392)	52.6	32.9	12.8	1.8	85.5	14.5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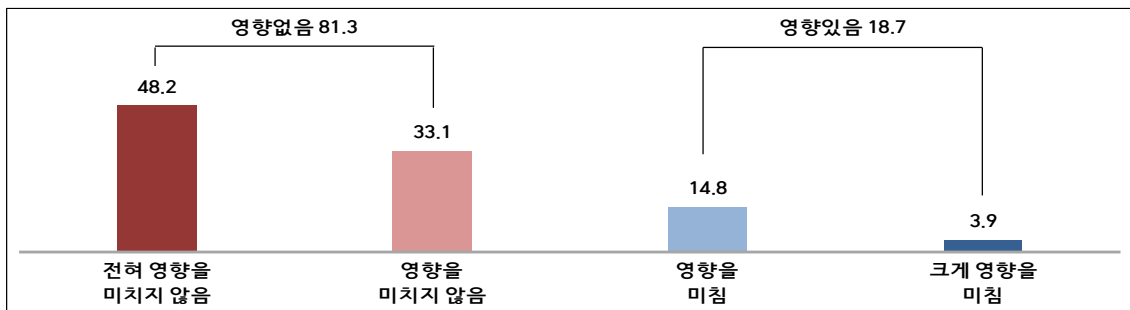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동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 없다’가 81.3%로 ‘영향 있다’(18.7%) 대비 높게 나타남

○ 응답기업 특성별로 개인사업자 및 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영향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III-16]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30>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침	크게 영향을 미침	종합		4점 평균	
						영향 없음	영향 있음		
전체	(519)	48.2	33.1	14.8	3.9	81.3	18.7	1.74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151)	33.1	37.7	24.5	4.6	70.9	29.1	2.01
	법인사업자	(368)	54.3	31.3	10.9	3.5	85.6	14.4	1.64
	10인 미만	(202)	44.1	33.2	18.3	4.5	77.2	22.8	1.83
직원수	10~50인 미만	(177)	50.8	34.5	11.3	3.4	85.3	14.7	1.67
	50~300인 미만	(112)	49.1	32.1	14.3	4.5	81.3	18.8	1.74
	300인 이상	(28)	57.1	28.6	14.3	0.0	85.7	14.3	1.57
업력	3~8년 미만	(104)	35.6	41.3	17.3	5.8	76.9	23.1	1.93
	8~12년 미만	(103)	49.5	34.0	13.6	2.9	83.5	16.5	1.70
	12~22년 미만	(159)	49.1	30.2	17.6	3.1	79.2	20.8	1.75
	22년 이상	(153)	54.9	30.1	11.1	3.9	85.0	15.0	1.64
소재지	수도권	(283)	44.9	33.2	17.3	4.6	78.1	21.9	1.82
	경상권	(139)	49.6	33.8	13.7	2.9	83.5	16.5	1.70
	전라권	(38)	55.3	36.8	5.3	2.6	92.1	7.9	1.55
	충청권	(48)	56.3	29.2	12.5	2.1	85.4	14.6	1.60
	강원권	(9)	44.4	33.3	11.1	11.1	77.8	22.2	1.89
	제주권	(2)	100.0	0.0	0.0	0.0	100.0	0.0	1.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29.1	37.8	26.0	7.1	66.9	33.1	2.11
	비해당	(392)	54.3	31.6	11.2	2.8	86.0	14.0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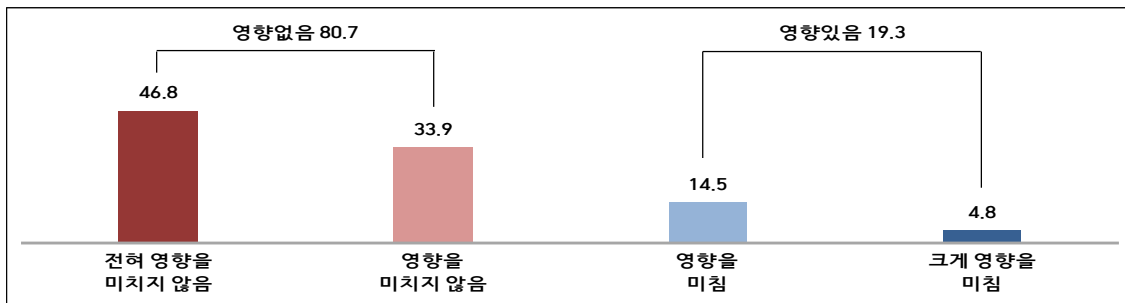
○ 고용창출장려금

□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동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 없다’가 80.7%로 ‘영향 있다’(19.3%) 대비 높게 나타남

○ 영향 있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와 10인 미만 기업, 신성장서비스업 해당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17]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31>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침	크게 영향을 미침	종합		4점 평균
						영향 없음	영향 있음	
전체	(519)	46.8	33.9	14.5	4.8	80.7	19.3	1.77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32.5	39.7	21.2	6.6	72.2	27.8	2.02
	법인사업자 (368)	52.7	31.5	11.7	4.1	84.2	15.8	1.67
직원수	10인 미만 (202)	44.1	33.2	17.3	5.4	77.2	22.8	1.84
	10~50인 미만 (177)	49.2	33.9	11.9	5.1	83.1	16.9	1.73
	50~300인 미만 (112)	47.3	33.0	15.2	4.5	80.4	19.6	1.77
	300인 이상 (28)	50.0	42.9	7.1	0.0	92.9	7.1	1.57
업력	38년 미만 (104)	32.7	45.2	14.4	7.7	77.9	22.1	1.97
	8~12년 미만 (103)	50.5	33.0	12.6	3.9	83.5	16.5	1.70
	12~22년 미만 (159)	47.2	30.8	18.2	3.8	78.0	22.0	1.79
	22년 이상 (153)	53.6	30.1	11.8	4.6	83.7	16.3	1.67
소재지	수도권 (283)	43.5	32.9	18.0	5.7	76.3	23.7	1.86
	경상권 (139)	49.6	33.8	12.9	3.6	83.5	16.5	1.71
	전라권 (38)	50.0	39.5	5.3	5.3	89.5	10.5	1.66
	충청권 (48)	54.2	35.4	8.3	2.1	89.6	10.4	1.58
	강원권 (9)	44.4	44.4	0.0	11.1	88.9	11.1	1.78
	제주권 (2)	100.0	0.0	0.0	0.0	100.0	0.0	1.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26.8	40.2	23.6	9.4	66.9	33.1	2.16
	비해당 (392)	53.3	31.9	11.5	3.3	85.2	14.8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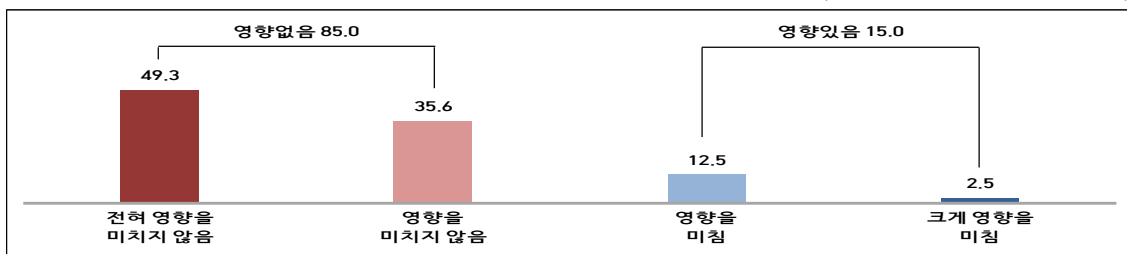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동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 없다’가 85.0%로 ‘영향 있다’(15.0%) 대비 높게 나타남

○ 응답기업 특성별로는 개인사업자, 직원 수 10인 미만 및 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타 응답기업보다 영향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18]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32>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침	크게 영향을 미침	종합		4점 평균
						영향 없음	영향 있음	
전체	(519)	49.3	35.6	12.5	2.5	85.0	15.0	1.68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34.4	43.0	19.9	2.6	77.5	22.5	1.91
	법인사업자 (368)	55.4	32.6	9.5	2.4	88.0	12.0	1.59
직원수	10인 미만 (202)	42.1	34.2	20.3	3.5	76.2	23.8	1.85
	10~50인 미만 (177)	53.7	37.3	6.8	2.3	91.0	9.0	1.58
	50~300인 미만 (112)	55.4	33.9	8.9	1.8	89.3	10.7	1.57
	300인 이상 (28)	50.0	42.9	7.1	0.0	92.9	7.1	1.57
업력	3~8년 미만 (104)	35.6	44.2	17.3	2.9	79.8	20.2	1.88
	8~12년 미만 (103)	53.4	35.0	8.7	2.9	88.3	11.7	1.61
	12~22년 미만 (159)	48.4	32.7	15.7	3.1	81.1	18.9	1.74
	22년 이상 (153)	56.9	33.3	8.5	1.3	90.2	9.8	1.54
소재지	수도권 (283)	47.7	36.0	14.1	2.1	83.7	16.3	1.71
	경상권 (139)	48.9	36.0	11.5	3.6	84.9	15.1	1.70
	전라권 (38)	52.6	39.5	7.9	0.0	92.1	7.9	1.55
	충청권 (48)	54.2	33.3	10.4	2.1	87.5	12.5	1.60
	강원권 (9)	55.6	22.2	11.1	11.1	77.8	22.2	1.78
	제주권 (2)	100.0	0.0	0.0	0.0	100.0	0.0	1.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34.6	44.1	17.3	3.9	78.7	21.3	1.91
	비해당 (392)	54.1	32.9	11.0	2.0	87.0	13.0	1.61

3)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조세특례 제도별 영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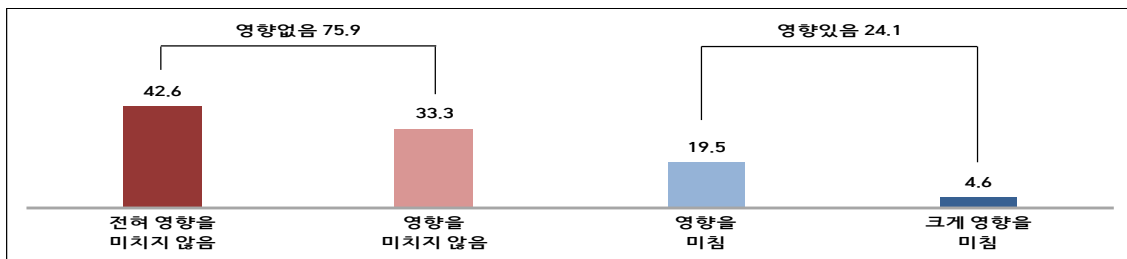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동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 없다’가 75.9%로 ‘영향 있다’(24.1%) 대비 높게 나타남

○ 이 중 영향 있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와 10인 미만 기업, 신성장서 비스업 해당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19]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33〉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침	크게 영향을 미침	종합		4점 평균	
						영향 없음	영향 있음		
전체	(519)	42.6	33.3	19.5	4.6	75.9	24.1	1.86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151)	30.5	34.4	26.5	8.6	64.9	35.1	2.13
	법인사업자	(368)	47.6	32.9	16.6	3.0	80.4	19.6	1.75
직원수	10인 미만	(202)	41.1	32.2	21.3	5.4	73.3	26.7	1.91
	10~50인 미만	(177)	41.8	33.9	21.5	2.8	75.7	24.3	1.85
	50~300인 미만	(112)	44.6	36.6	13.4	5.4	81.3	18.8	1.79
	300인 이상	(28)	50.0	25.0	17.9	7.1	75.0	25.0	1.82
업력	3~8년 미만	(104)	30.8	39.4	21.2	8.7	70.2	29.8	2.08
	8~12년 미만	(103)	44.7	35.9	17.5	1.9	80.6	19.4	1.77
	12~22년 미만	(159)	42.1	28.3	23.9	5.7	70.4	29.6	1.93
	22년 이상	(153)	49.7	32.7	15.0	2.6	82.4	17.6	1.71
소재지	수도권	(283)	42.8	29.3	21.9	6.0	72.1	27.9	1.91
	경상권	(139)	38.8	38.8	19.4	2.9	77.7	22.3	1.86
	전라권	(38)	47.4	44.7	5.3	2.6	92.1	7.9	1.63
	충청권	(48)	43.8	35.4	18.8	2.1	79.2	20.8	1.79
	강원권	(9)	55.6	22.2	11.1	11.1	77.8	22.2	1.78
신성장 여부	제주권	(2)	100.0	0.0	0.0	0.0	100.0	0.0	1.00
	해당	(127)	30.7	33.9	24.4	11.0	64.6	35.4	2.16
	비해당	(392)	46.4	33.2	17.9	2.6	79.6	20.4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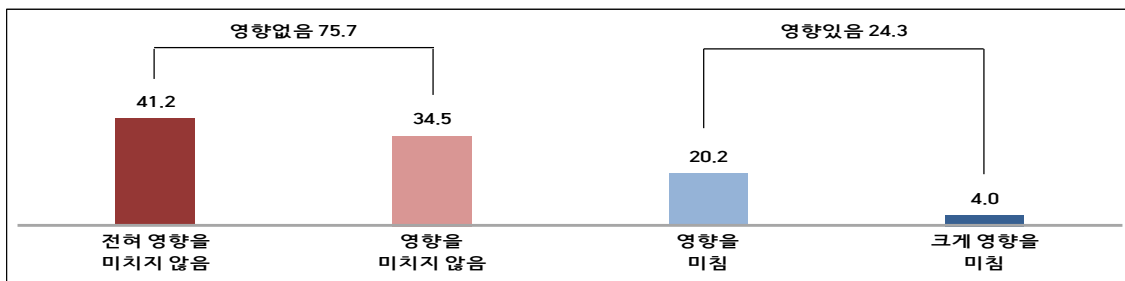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동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 없다’가 75.7%로 ‘영향 있다’(24.3%) 대비 높게 나타남

○ 영향 없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영향 있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와 300인 이상 기업, 신성장서비스업 해당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20]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34>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침	크게 영향을 미침	종합		4점 평균
						영향 없음	영향 있음	
전체	(519)	41.2	34.5	20.2	4.0	75.7	24.3	1.87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29.1	36.4	29.1	5.3	65.6	34.4	2.11
	법인사업자 (368)	46.2	33.7	16.6	3.5	79.9	20.1	1.77
직원수	10인 미만 (202)	40.6	33.7	21.3	4.5	74.3	25.7	1.90
	10~50인 미만 (177)	41.2	35.6	19.2	4.0	76.8	23.2	1.86
	50~300인 미만 (112)	42.0	36.6	17.0	4.5	78.6	21.4	1.84
	300인 이상 (28)	42.9	25.0	32.1	0.0	67.9	32.1	1.89
업력	3~8년 미만 (104)	28.8	39.4	26.9	4.8	68.3	31.7	2.08
	8~12년 미만 (103)	47.6	35.9	11.7	4.9	83.5	16.5	1.74
	12~22년 미만 (159)	39.6	32.7	23.9	3.8	72.3	27.7	1.92
	22년 이상 (153)	47.1	32.0	17.6	3.3	79.1	20.9	1.77
소재지	수도권 (283)	41.7	29.7	23.7	4.9	71.4	28.6	1.92
	경상권 (139)	38.1	41.0	18.0	2.9	79.1	20.9	1.86
	전라권 (38)	39.5	50.0	7.9	2.6	89.5	10.5	1.74
	충청권 (48)	41.7	37.5	18.8	2.1	79.2	20.8	1.81
	강원권 (9)	66.7	11.1	11.1	11.1	77.8	22.2	1.67
	제주권 (2)	100.0	0.0	0.0	0.0	100.0	0.0	1.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26.8	37.0	29.9	6.3	63.8	36.2	2.16
	비해당 (392)	45.9	33.7	17.1	3.3	79.6	20.4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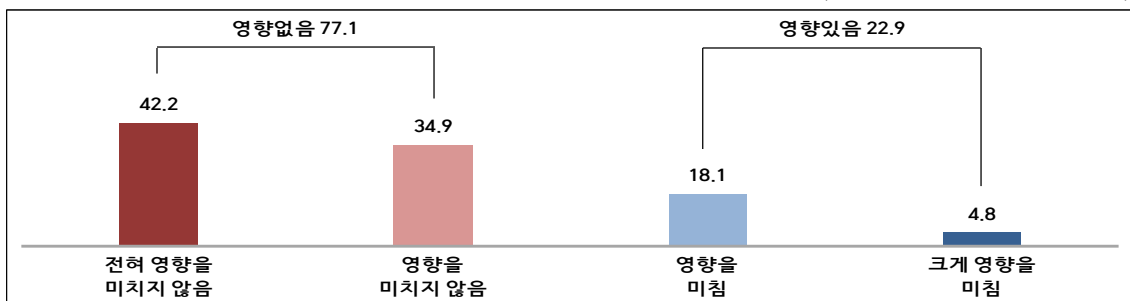
○ 고용창출장려금

□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동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 없다’가 77.1%로 ‘영향 있다’(22.9%) 대비 높게 나타남

○ 영향 있다는 응답 중 직원이 300인 이상인 기업을 제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개인사업자와 신성장서비스업 해당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21]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35>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침	크게 영향을 미침	종합		4점 평균
						영향 없음	영향 있음	
전체	(519)	42.2	34.9	18.1	4.8	77.1	22.9	1.86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151)	32.5	41.1	19.2	7.3	73.5	26.5	2.01
	법인사업자 (368)	46.2	32.3	17.7	3.8	78.5	21.5	1.79
직원수	10인 미만 (202)	42.1	34.2	17.8	5.9	76.2	23.8	1.88
	10~50인 미만 (177)	42.9	33.9	18.6	4.5	76.8	23.2	1.85
	50~300인 미만 (112)	41.1	35.7	18.8	4.5	76.8	23.2	1.87
	300인 이상 (28)	42.9	42.9	14.3	0.0	85.7	14.3	1.71
업력	3~8년 미만 (104)	29.8	46.2	19.2	4.8	76.0	24.0	1.99
	8~12년 미만 (103)	46.6	33.0	15.5	4.9	79.6	20.4	1.79
	12~22년 미만 (159)	40.3	32.7	22.0	5.0	73.0	27.0	1.92
	22년 이상 (153)	49.7	30.7	15.0	4.6	80.4	19.6	1.75
소재지	수도권 (283)	40.6	32.5	20.5	6.4	73.1	26.9	1.93
	경상권 (139)	40.3	40.3	17.3	2.2	80.6	19.4	1.81
	전라권 (38)	44.7	36.8	13.2	5.3	81.6	18.4	1.79
	충청권 (48)	47.9	35.4	14.6	2.1	83.3	16.7	1.71
	강원권 (9)	66.7	22.2	0.0	11.1	88.9	11.1	1.56
	제주권 (2)	100.0	0.0	0.0	0.0	100.0	0.0	1.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27.6	40.9	23.6	7.9	68.5	31.5	2.12
	비해당 (392)	46.9	32.9	16.3	3.8	79.8	20.2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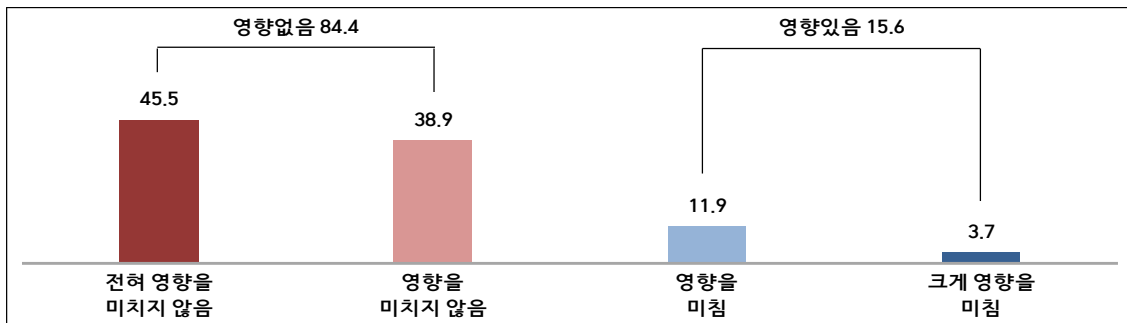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동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 없다’가 84.4%로 ‘영향 있다’(15.6%) 대비 높게 나타남

○ 응답기업 특성별로 직원이 10인 미만인 기업, 개인사업자 및 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영향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III-22]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36>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영향 정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칩	크게 영향을 미칩	종합		4점 평균	
						영향 없음	영향 있음		
전체	(519)	45.5	38.9	11.9	3.7	84.4	15.6	1.74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33.1	43.0	17.9	6.0	76.2	23.8	1.97
	법인사업자	(368)	50.5	37.2	9.5	2.7	87.8	12.2	1.64
직원수	10인 미만	(202)	38.6	33.7	19.8	7.9	72.3	27.7	1.97
	10~50인 미만	(177)	52.0	41.8	4.5	1.7	93.8	6.2	1.56
	50~300인 미만	(112)	45.5	42.0	12.5	0.0	87.5	12.5	1.67
	300인 이상	(28)	53.6	46.4	0.0	0.0	100.0	0.0	1.46
업력	3~8년 미만	(104)	29.8	47.1	14.4	8.7	76.9	23.1	2.02
	8~12년 미만	(103)	46.6	37.9	9.7	5.8	84.5	15.5	1.75
	12~22년 미만	(159)	47.2	36.5	14.5	1.9	83.6	16.4	1.71
	22년 이상	(153)	53.6	36.6	9.2	0.7	90.2	9.8	1.57
소재지	수도권	(283)	46.3	37.8	11.7	4.2	84.1	15.9	1.74
	경상권	(139)	43.2	41.0	14.4	1.4	84.2	15.8	1.74
	전라권	(38)	42.1	42.1	10.5	5.3	84.2	15.8	1.79
	충청권	(48)	45.8	41.7	10.4	2.1	87.5	12.5	1.69
	강원권	(9)	55.6	22.2	0.0	22.2	77.8	22.2	1.89
	제주권	(2)	100.0	0.0	0.0	0.0	100.0	0.0	1.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33.1	44.9	15.0	7.1	78.0	22.0	1.96
	비해당	(392)	49.5	37.0	11.0	2.6	86.5	13.5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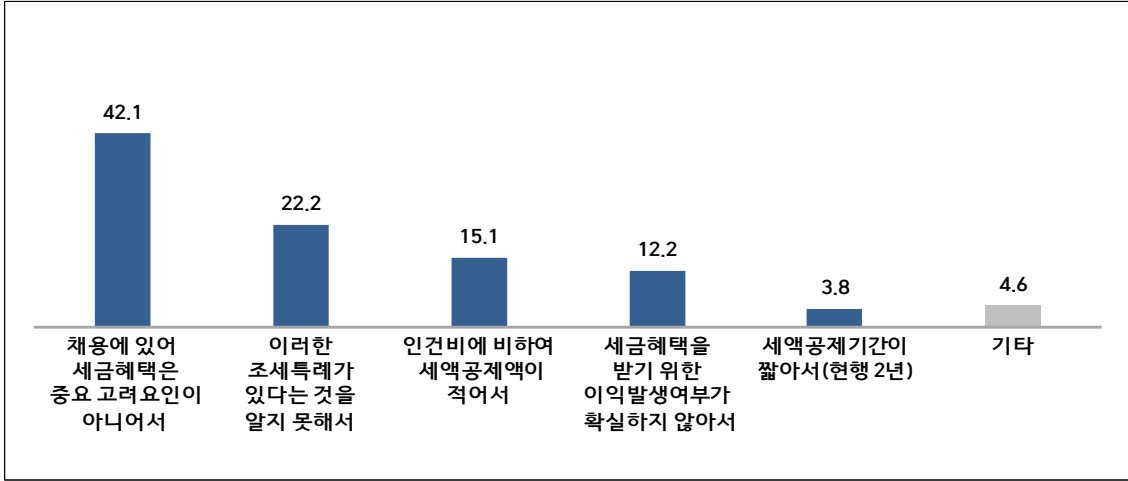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대상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채용에 있어 세금혜택은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이러한 조
세특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2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모든 응답기업 특성별로 ‘채용에 있어 세금혜택은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
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법인사업자 및 직원수 10인 이상, 업력 12년 이상의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한편, ‘인건비에 비하여 세액공제액이 적어서’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개인사업
자 및 직원수 10인 미만, 업력 12년 미만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23] 동 제도가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Base: 동 제도의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 없음’ 응답자, 단위: %)



<표 III-37> 동 제도가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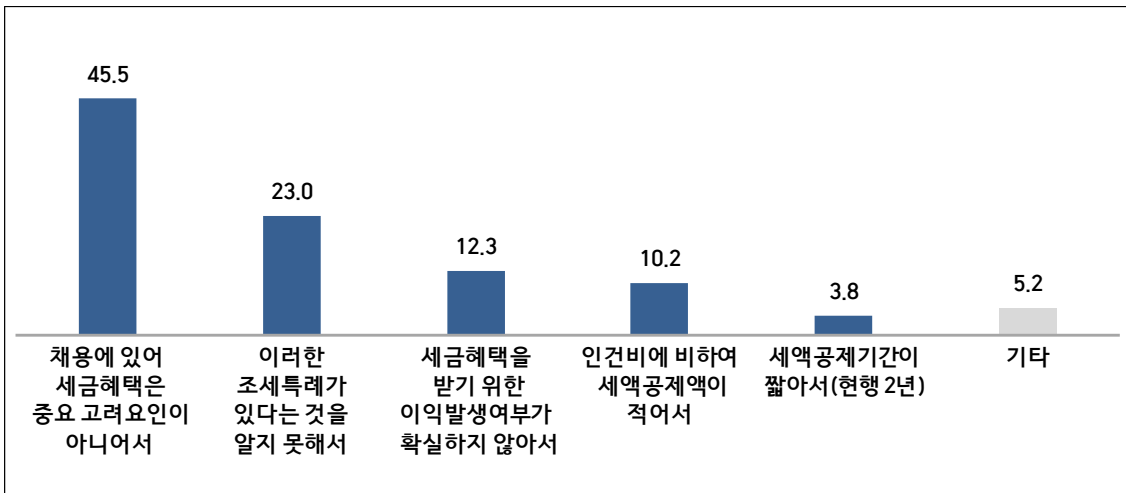
(Base: 동 제도의 청년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 없음’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채용에 있어 세금혜택은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	이러한 조세특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인건비에 비하여 세액공제액이 적어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이익발생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세액공제기간이 짧아서(현행 2년)	기타
전체	(392)	42.1	22.2	15.1	12.2	3.8	4.6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07)	29.9	18.7	21.5	18.7	5.6	5.6
	법인사업자 (285)	46.7	23.5	12.6	9.8	3.2	4.2
직원수	10인 미만 (154)	30.5	24.7	20.8	16.2	3.2	4.5
	10~50인 미만 (131)	49.6	19.1	13.0	10.7	3.8	3.8
	50~300인 미만 (86)	48.8	23.3	10.5	8.1	3.5	5.8
	300인 이상 (21)	52.4	19.0	4.8	9.5	9.5	4.8
업력	3~8년 미만 (77)	37.7	16.9	23.4	16.9	2.6	2.6
	8~12년 미만 (78)	35.9	29.5	16.7	10.3	2.6	5.1
	12~22년 미만 (116)	43.1	22.4	9.5	15.5	4.3	5.2
	22년 이상 (121)	47.9	20.7	14.0	7.4	5.0	5.0
소재지	수도권 (213)	39.9	24.4	15.0	12.2	4.7	3.8
	경상권 (103)	51.5	17.5	10.7	12.6	2.9	4.9
	전라권 (32)	34.4	25.0	18.8	15.6	3.1	3.1
	충청권 (35)	31.4	25.7	20.0	11.4	2.9	8.6
	강원권 (7)	57.1	0.0	28.6	0.0	0.0	14.3
	제주권 (2)	50.0	0.0	50.0	0.0	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81)	34.6	23.5	21.0	12.3	8.6	0.0
	비해당 (311)	44.1	21.9	13.5	12.2	2.6	5.8

-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동 제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대해서는 ‘채용에 있어 세금혜택은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이러한 조세특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23.0%)가 높게 나타남
 - 모든 응답기업 특성별로 역시 ‘채용에 있어 세금혜택은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법인사업자 및 직원수 10인 이상, 업력 8년 이상의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개인사업자 및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이익발생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인건비에 비하여 세액공제액이 적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Ⅲ-24] 동 제도가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Base: 동 제도의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 없음’ 응답자, 단위: %)



〈표 III-38〉 동 제도가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Base: 동 제도의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 없음’ 응답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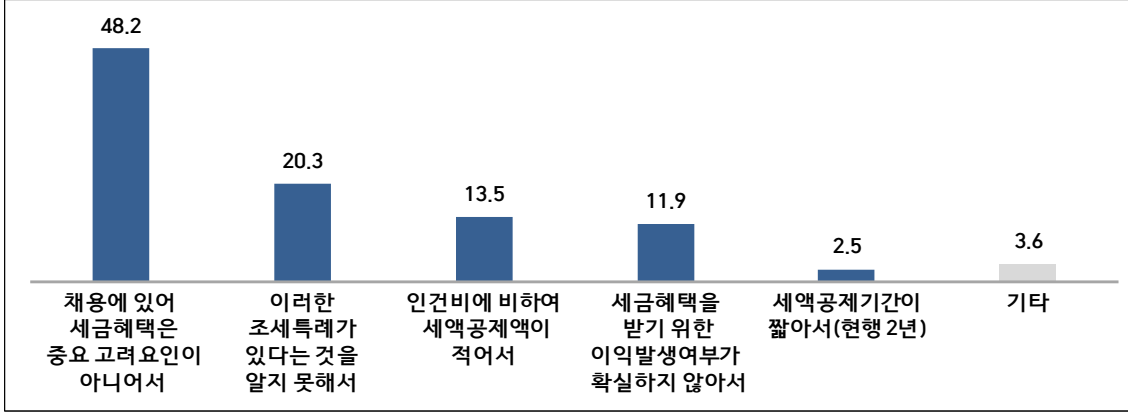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채용에 있어 세금 혜택은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	이러한 조세 특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이익발생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인건비에 비하여 세액공제액이 적어서	세액 공제 기간이 짧아서 (현행 2년)	기타	
전체	(422)	45.5	23.0	12.3	10.2	3.8	5.2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10)	30.0	17.3	21.8	19.1	5.5	6.4
	법인사업자	(312)	51.0	25.0	9.0	7.1	3.2	4.8
직원수	10인 미만	(157)	38.2	22.9	17.8	12.7	3.8	4.5
	10~50인 미만	(150)	48.7	26.0	10.7	8.0	2.7	4.0
	50~300인 미만	(91)	51.6	19.8	5.5	8.8	5.5	8.8
	300인 이상	(24)	50.0	16.7	12.5	12.5	4.2	4.2
업력	3~8년 미만	(81)	32.1	24.7	19.8	12.3	7.4	3.7
	8~12년 미만	(86)	44.2	26.7	10.5	11.6	2.3	4.7
	12~22년 미만	(126)	45.2	25.4	11.1	9.5	3.2	5.6
	22년 이상	(129)	55.0	17.1	10.1	8.5	3.1	6.2
소재지	수도권	(219)	46.1	21.0	13.2	11.0	5.0	3.7
	경상권	(116)	44.8	29.3	8.6	6.9	3.4	6.9
	전라권	(36)	41.7	25.0	19.4	11.1	0.0	2.8
	충청권	(42)	47.6	19.0	14.3	9.5	2.4	7.1
	강원권	(7)	42.9	0.0	0.0	28.6	0.0	28.6
	제주권	(2)	50.0	0.0	0.0	50.0	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87)	40.2	21.8	13.8	16.1	6.9	1.1
	비해당	(335)	46.9	23.3	11.9	8.7	3.0	6.3

□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동 제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채용에 있어 세금혜택은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가 48.2%로 나타나 채용대상 중 해당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모든 응답기업 특성별로 역시 ‘채용에 있어 세금혜택은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법인사업자 및 직원수 10인 이상, 업력 12년 이상 기업 등에서 과반 이상이 해당 이유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응답함

[그림 III-25] 동 제도가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Base: 동 제도의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 없음’ 응답자, 단위: %)



<표 III-39> 동 제도가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Base: 동 제도의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 없음’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채용에 있어 세금혜택은 중요 고려요인이 아니어서	이러한 조세특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인건비에 비하여 세액공제액이 적어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이익발생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세액공제기간이 짧아서(현행 2년)	기타
전체	(394)	48.2	20.3	13.5	11.9	2.5	3.6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98)	29.6	19.4	24.5	21.4	1.0	4.1
	법인사업자 (296)	54.4	20.6	9.8	8.8	3.0	3.4
직원수	10인 미만 (148)	33.8	23.0	17.6	18.9	3.4	3.4
	10~50인 미만 (134)	50.7	21.6	12.7	9.7	2.2	3.0
	50~300인 미만 (91)	63.7	15.4	9.9	4.4	2.2	4.4
	300인 이상 (21)	66.7	14.3	4.8	9.5	0.0	4.8
업력	3~8년 미만 (73)	37.0	20.5	16.4	20.5	2.7	2.7
	8~12년 미만 (83)	41.0	24.1	14.5	10.8	3.6	6.0
	12~22년 미만 (112)	50.9	24.1	12.5	8.9	0.9	2.7
	22년 이상 (126)	57.1	14.3	11.9	10.3	3.2	3.2
소재지	수도권 (204)	46.6	22.1	14.7	12.3	2.0	2.5
	경상권 (108)	55.6	19.4	8.3	9.3	3.7	3.7
	전라권 (35)	37.1	22.9	14.3	20.0	0.0	5.7
	충청권 (38)	44.7	15.8	13.2	13.2	5.3	7.9
	강원권 (7)	57.1	0.0	42.9	0.0	0.0	0.0
	제주권 (2)	50.0	0.0	50.0	0.0	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82)	39.0	26.8	18.3	12.2	3.7	0.0
	비해당 (312)	50.6	18.6	12.2	11.9	2.2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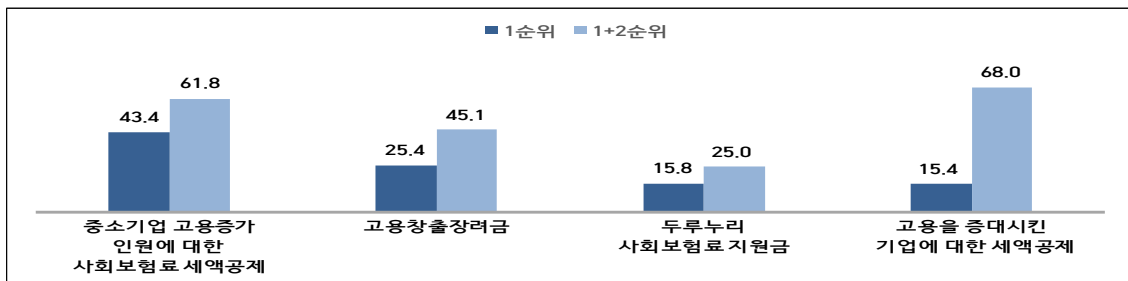
5) 대상별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

□ 청년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에 대해, 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가장 도움이 된 제도로 나타났으며, 1+2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모든 응답기업 특성별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제도를 살펴보면, 법인사업자 및 10인 이상 기업은 ‘고용창출장려금’이, 개인사업자 및 10인 미만의 기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높게 나타남

[그림 III-26] 청년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40> 청년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1순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창출장려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전체	(519)	43.4	25.4	15.8	15.4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151)	50.3	15.9	18.5	15.2
	법인사업자 (368)	40.5	29.3	14.7	15.5
직원수	10인 미만 (202)	40.1	20.8	28.7	10.4
	10~50인 미만 (177)	45.2	25.4	12.4	16.9
	50~300인 미만 (112)	43.8	32.1	0.9	23.2
	300인 이상 (28)	53.6	32.1	3.6	10.7
업력	3~8년 미만 (104)	43.3	22.1	23.1	11.5
	8~12년 미만 (103)	43.7	19.4	18.4	18.4
	12~22년 미만 (159)	40.9	31.4	15.1	12.6
	22년 이상 (153)	45.8	25.5	9.8	19.0
소재지	수도권 (283)	46.6	23.0	14.8	15.5
	경상권 (139)	38.8	31.7	12.2	17.3
	전라권 (38)	36.8	18.4	34.2	10.5
	충청권 (48)	41.7	27.1	14.6	16.7
	강원권 (9)	44.4	22.2	33.3	0.0
신성장 여부	제주권 (2)	50.0	50.0	0.0	0.0
	해당 (127)	51.2	23.6	12.6	12.6
	비해당 (392)	40.8	26.0	16.8	16.3

<표 III-41> 청년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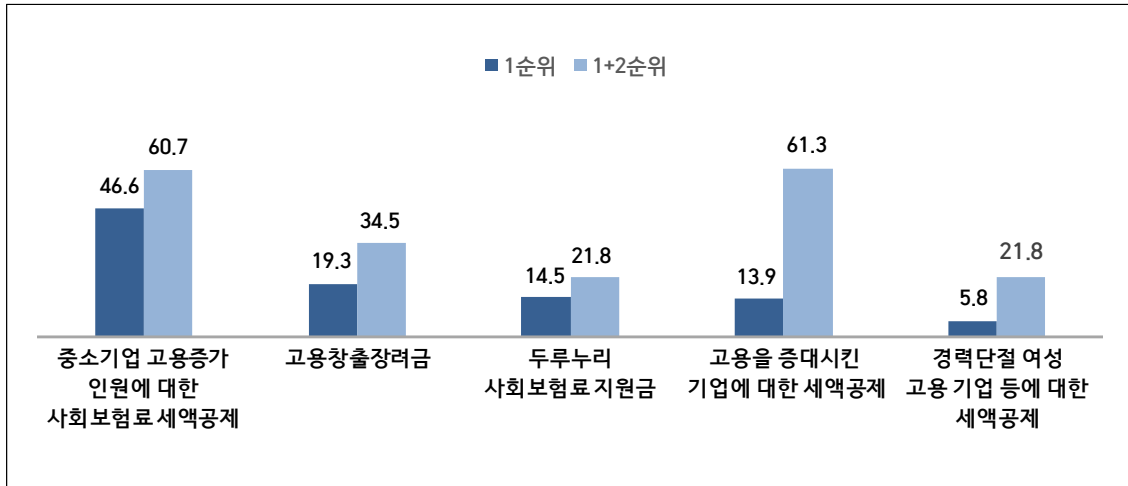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창출 장려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고용을 증대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전체		(519)	61.8	45.1	25.0	68.0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66.9	35.1	29.8	68.2
	법인사업자	(368)	59.8	49.2	23.1	67.9
직원수	10인 미만	(202)	55.0	45.5	42.6	56.9
	10~50인 미만	(177)	63.8	45.2	20.9	70.1
	50~300인 미만	(112)	67.9	44.6	3.6	83.9
	300인 이상	(28)	75.0	42.9	10.7	71.4
업력	3~8년 미만	(104)	56.7	43.3	40.4	59.6
	8~12년 미만	(103)	66.0	39.8	31.1	63.1
	12~22년 미만	(159)	60.4	50.3	22.6	66.7
	22년 이상	(153)	64.1	44.4	13.1	78.4
소재지	수도권	(283)	63.3	43.5	24.4	68.9
	경상권	(139)	60.4	48.9	22.3	68.3
	전라권	(38)	65.8	36.8	42.1	55.3
	충청권	(48)	58.3	50.0	18.8	72.9
	강원권	(9)	44.4	44.4	44.4	66.7
	제주권	(2)	50.0	50.0	50.0	5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69.3	40.9	24.4	65.4
	비해당	(392)	59.4	46.4	25.3	68.9

-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대부분의 응답기업 특성별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제도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와 10인 미만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법인사업자와 10인 이상의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이 높게 나타남

[그림 III-27]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42>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창출 장려금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	고용을 증대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전체	(519)	46.6	19.3	14.5	13.9	5.8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51.7	10.6	15.2	16.6	6.0
	법인사업자 (368)	44.6	22.8	14.1	12.8	5.7
직원수	10인 미만 (202)	43.6	16.3	24.8	9.9	5.4
	10~50인 미만 (177)	48.6	18.1	13.6	12.4	7.3
	50~300인 미만 (112)	44.6	26.8	0.9	23.2	4.5
	300인 이상 (28)	64.3	17.9	0.0	14.3	3.6
업력	3~8년 미만 (104)	47.1	15.4	18.3	11.5	7.7
	8~12년 미만 (103)	41.7	21.4	16.5	15.5	4.9
	12~22년 미만 (159)	49.7	20.8	13.8	12.6	3.1
	22년 이상 (153)	46.4	19.0	11.1	15.7	7.8
소재지	수도권 (283)	49.5	18.0	12.4	14.5	5.7
	경상권 (139)	39.6	25.2	11.5	15.8	7.9
	전라권 (38)	44.7	15.8	28.9	5.3	5.3
	충청권 (48)	52.1	10.4	20.8	14.6	2.1
	강원권 (9)	44.4	22.2	33.3	0.0	0.0
	제주권 (2)	50.0	50.0	0.0	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45.7	18.1	12.6	16.5	7.1
	비해당 (392)	46.9	19.6	15.1	13.0	5.4

<표 III-43>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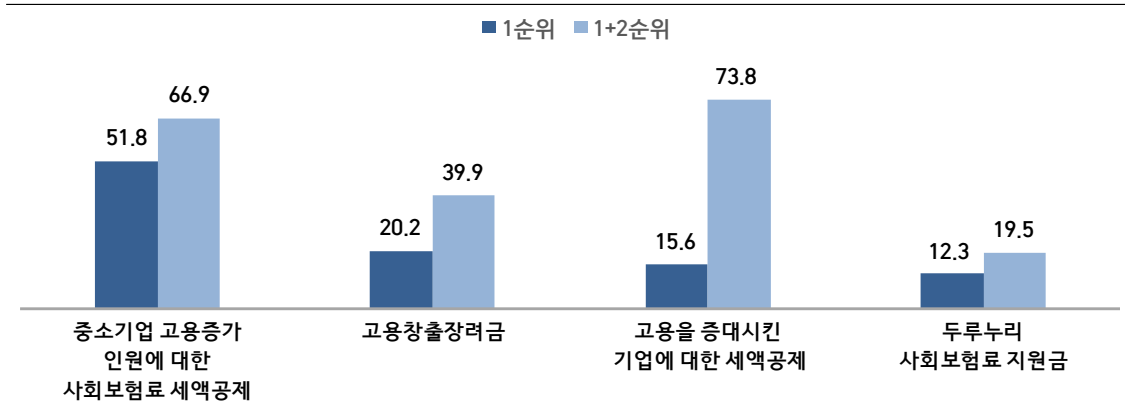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창출 장려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전체		(519)	60.7	34.5	21.8	61.3	21.8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66.9	29.8	22.5	60.9	19.9
	법인사업자	(368)	58.2	36.4	21.5	61.4	22.6
직원수	10인 미만	(202)	57.4	36.6	32.7	55.0	18.3
	10~50인 미만	(177)	59.3	35.0	20.9	61.0	23.7
	50~300인 미만	(112)	65.2	32.1	7.1	72.3	23.2
	300인 이상	(28)	75.0	25.0	7.1	64.3	28.6
업력	3~8년 미만	(104)	62.5	29.8	26.9	58.7	22.1
	8~12년 미만	(103)	61.2	38.8	26.2	56.3	17.5
	12~22년 미만	(159)	59.7	37.1	19.5	64.8	18.9
	22년 이상	(153)	60.1	32.0	17.6	62.7	27.5
소재지	수도권	(283)	63.3	32.5	18.0	64.3	21.9
	경상권	(139)	56.1	38.8	23.0	56.8	25.2
	전라권	(38)	57.9	36.8	34.2	55.3	15.8
	충청권	(48)	64.6	29.2	25.0	64.6	16.7
	강원권	(9)	44.4	44.4	44.4	44.4	22.2
	제주권	(2)	50.0	50.0	50.0	5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61.4	33.1	20.5	59.8	25.2
	비해당	(392)	60.5	34.9	22.2	61.7	20.7

- 그 외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에 대해,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채용 대상 중 해당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기업 특성 전반에서 1순위 기준으로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1+2순위 기준으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높음

[그림 III-28] 그 외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44> 그 외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1순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창출 장려금 (%)	고용을 증대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	
전체	(519)	51.8	20.2	15.6	12.3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151)	54.3	13.2	19.2	13.2
	법인사업자	(368)	50.8	23.1	14.1	12.0
직원수	10인 미만	(202)	47.0	17.8	12.4	22.8
	10~50인 미만	(177)	53.1	19.8	16.9	10.2
	50~300인 미만	(112)	56.3	25.0	18.8	0.0
	300인 이상	(28)	60.7	21.4	17.9	0.0
업력	3~8년 미만	(104)	55.8	16.3	9.6	18.3
	8~12년 미만	(103)	49.5	18.4	18.4	13.6
	12~22년 미만	(159)	45.3	22.6	18.9	13.2
	22년 이상	(153)	57.5	21.6	14.4	6.5
소재지	수도권	(283)	55.8	18.4	15.5	10.2
	경상권	(139)	47.5	23.7	18.0	10.8
	전라권	(38)	47.4	18.4	7.9	26.3
	충청권	(48)	50.0	20.8	14.6	14.6
	강원권	(9)	22.2	22.2	22.2	33.3
	제주권	(2)	50.0	50.0	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55.1	18.9	15.0	11.0
	비해당	(392)	50.8	20.7	15.8	12.8

<표 III-45> 그 외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제도(1+2순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을 증대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전체	(519)	66.9	39.9	73.8	19.5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151)	69.5	37.1	72.8	20.5
	법인사업자	(368)	65.8	41.0	74.2	19.0
직원수	10인 미만	(202)	60.4	39.1	66.8	33.7
	10~50인 미만	(177)	67.8	42.4	72.3	17.5
	50~300인 미만	(112)	73.2	39.3	86.6	0.9
	300인 이상	(28)	82.1	32.1	82.1	3.6
업력	3~8년 미만	(104)	66.3	38.5	69.2	26.0
	8~12년 미만	(103)	66.0	36.9	69.9	27.2
	12~22년 미만	(159)	62.3	45.9	73.0	18.9
	22년 이상	(153)	72.5	36.6	80.4	10.5
소재지	수도권	(283)	69.6	38.9	75.6	15.9
	경상권	(139)	68.3	37.4	74.8	19.4
	전라권	(38)	60.5	39.5	63.2	36.8
	충청권	(48)	60.4	47.9	70.8	20.8
	강원권	(9)	22.2	66.7	66.7	44.4
	제주권	(2)	50.0	50.0	50.0	5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69.3	40.2	72.4	18.1
	비해당	(392)	66.1	39.8	74.2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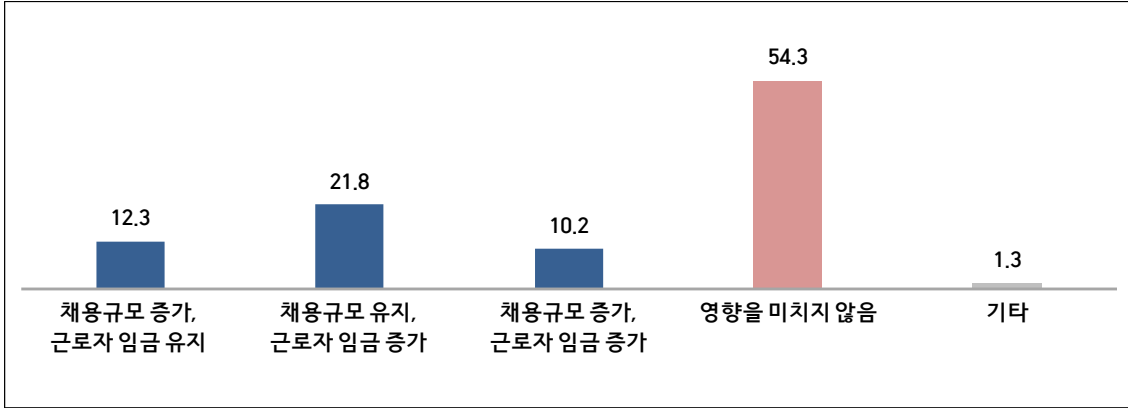
5. 향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

1) 동 제도가 2021년 경영의사결정에 미칠 영향

- 향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경영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중 54.3%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 ‘채용규모 유지, 근로자 임금 증가’가 21.8%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2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경영의사결정에 미칠 영향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4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경영의사결정에 미칠 영향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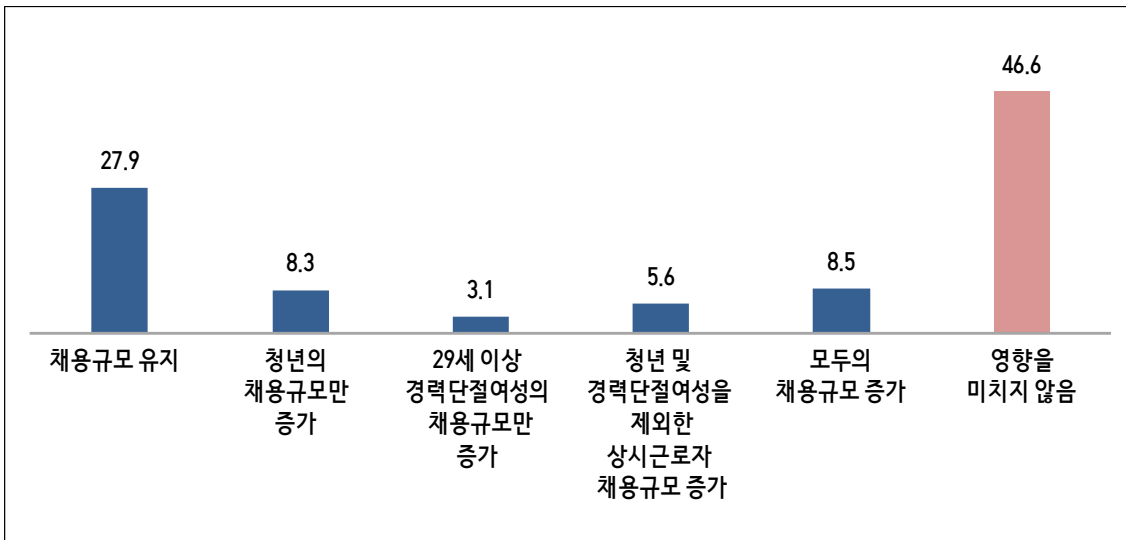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채용규모 증가, 근로자 임금 유지	채용규모 유지, 근로자 임금 증가	채용규모 증가, 근로자 임금 증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	기타
전체	(519)	12.3	21.8	10.2	54.3	1.3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151) 7.9	30.5	7.9	53.0	0.7
	법인사업자	(368) 14.1	18.2	11.1	54.9	1.6
직원수	10인 미만	(202) 11.9	22.8	10.4	54.5	0.5
	10~50인 미만	(177) 15.3	20.9	7.9	53.7	2.3
	50~300인 미만	(112) 8.9	22.3	14.3	52.7	1.8
	300인 이상	(28) 10.7	17.9	7.1	64.3	0.0
업력	3~8년 미만	(104) 13.5	25.0	12.5	48.1	1.0
	8~12년 미만	(103) 8.7	20.4	8.7	60.2	1.9
	12~22년 미만	(159) 15.7	23.9	9.4	50.9	0.0
	22년 이상	(153) 10.5	18.3	10.5	58.2	2.6
소재지	수도권	(283) 9.2	24.7	12.4	53.4	0.4
	경상권	(139) 17.3	17.3	8.6	53.2	3.6
	전라권	(38) 23.7	13.2	10.5	52.6	0.0
	충청권	(48) 8.3	27.1	4.2	58.3	2.1
	강원권	(9) 11.1	11.1	0.0	77.8	0.0
신성장 여부	제주권	(2) 0.0	0.0	0.0	100.0	0.0
	해당	(127) 15.7	27.6	14.2	42.5	0.0
	비해당	(392) 11.2	19.9	8.9	58.2	1.8

2) 동 제도가 2021년 신규 인력 채용규모에 미칠 영향

- 향후 동 제도가 2021년 신규 인력 채용규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채용규모 유지’가 27.9%로 높음
- 대상별로는 모두의 채용규모가 증가한다는 응답이 8.5%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청년의 채용규모만 증가’(8.3%),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증가’(5.6%),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채용규모만 증가’(3.1%)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3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신규 인력 채용규모에 미칠 영향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4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신규 인력 채용규모에 미칠 영향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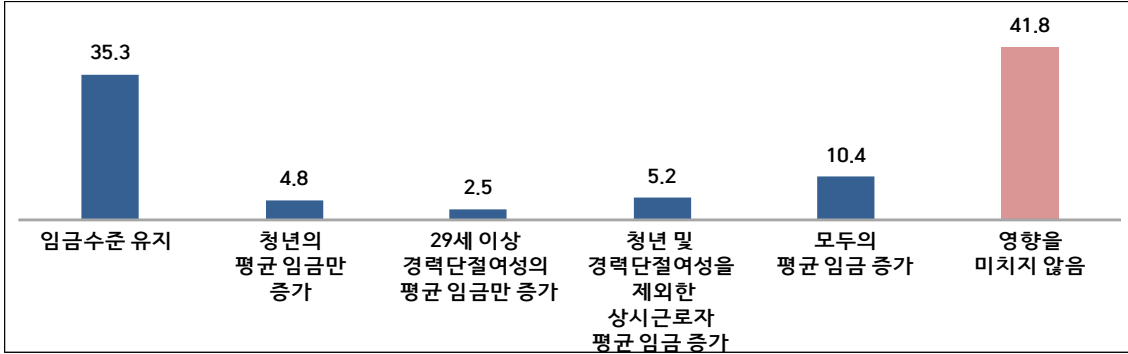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채용규모 유지	청년의 채용규모만 증가	29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규모만 증가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증가	모두의 채용규모 증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체	(519)	27.9	8.3	3.1	5.6	8.5	46.6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35.8	4.6	7.9	9.3	5.3	37.1
	법인사업자	(368)	24.7	9.8	1.1	4.1	9.8	50.5
직원수	10인 미만	(202)	34.2	4.0	3.0	5.0	9.9	44.1
	10~50인 미만	(177)	23.7	11.9	2.8	5.1	9.0	47.5
	50~300인 미만	(112)	25.0	10.7	3.6	7.1	4.5	49.1
	300인 이상	(28)	21.4	7.1	3.6	7.1	10.7	50.0
업력	3~8년 미만	(104)	31.7	5.8	6.7	4.8	10.6	40.4
	8~12년 미만	(103)	24.3	10.7	1.9	3.9	7.8	51.5
	12~22년 미만	(159)	32.1	8.8	2.5	6.9	8.2	41.5
	22년 이상	(153)	23.5	7.8	2.0	5.9	7.8	52.9
소재지	수도권	(283)	28.3	8.5	4.6	6.7	7.8	44.2
	경상권	(139)	32.4	6.5	1.4	5.8	8.6	45.3
	전라권	(38)	18.4	10.5	2.6	0.0	18.4	50.0
	충청권	(48)	18.8	12.5	0.0	4.2	6.3	58.3
	강원권	(9)	44.4	0.0	0.0	0.0	0.0	55.6
	제주권	(2)	0.0	0.0	0.0	0.0	0.0	10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29.9	7.1	8.7	10.2	6.3	37.8
	비해당	(392)	27.3	8.7	1.3	4.1	9.2	49.5

3) 동 제도가 2021년 근로자의 임금에 미칠 영향

- 향후 동 제도가 2021년 근로자의 임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임금수준 유지’가 35.3%로 높음
- 대상별로는 모두의 평균임금이 증가한다는 응답이 10.4%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평균임금 증가’(5.2%), ‘청년 채용규모 증가’(4.8%),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채용규모만 증가’(2.5%)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3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근로자의 임금에 미칠 영향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48>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근로자의 임금에 미칠 영향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임금수준 유지	청년의 평균 임금만 증가	29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의 평균 임금만 증가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	모두의 평균 임금 증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체	(519)	35.3	4.8	2.5	5.2	10.4	41.8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37.7	4.6	6.6	8.6	7.9	34.4
	법인사업자	(368)	34.2	4.9	0.8	3.8	11.4	44.8
직원수	10인 미만	(202)	37.6	3.5	2.0	5.4	13.9	37.6
	10~50인 미만	(177)	33.3	7.3	2.8	4.0	7.9	44.6
	50~300인 미만	(112)	30.4	4.5	3.6	5.4	9.8	46.4
	300인 이상	(28)	50.0	0.0	0.0	10.7	3.6	35.7
업력	3~8년 미만	(104)	41.3	5.8	3.8	5.8	10.6	32.7
	8~12년 미만	(103)	34.0	4.9	1.9	4.9	13.6	40.8
	12~22년 미만	(159)	38.4	3.1	3.8	4.4	8.8	41.5
	22년 이상	(153)	28.8	5.9	0.7	5.9	9.8	49.0
소재지	수도권	(283)	34.3	6.0	3.5	5.7	9.9	40.6
	경상권	(139)	41.0	2.2	1.4	5.0	8.6	41.7
	전라권	(38)	34.2	13.2	0.0	2.6	15.8	34.2
	충청권	(48)	29.2	0.0	0.0	6.3	14.6	50.0
	강원권	(9)	22.2	0.0	11.1	0.0	11.1	55.6
	제주권	(2)	0.0	0.0	0.0	0.0	0.0	10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32.3	6.3	7.1	12.6	8.7	33.1
	비해당	(392)	36.2	4.3	1.0	2.8	11.0	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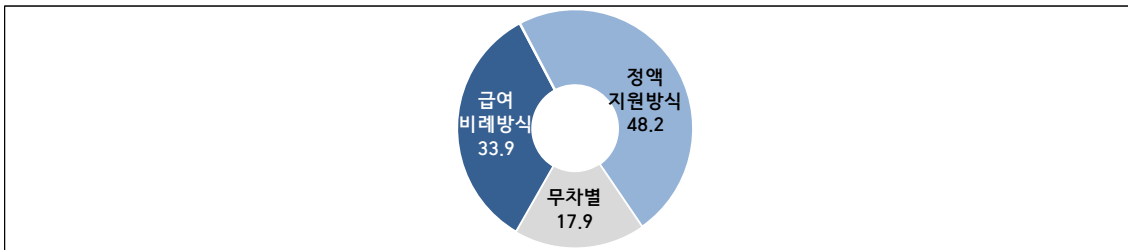
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세부 내용 관련 인식

1) 대상별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 채용 대상별로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을 조사한 결과, 청년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액지원방식’이 48.2%로 ‘급여비례방식’(33.9%)보다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응답기업 특성별로 ‘정액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한편, 전라권 소재 및 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급여비례방식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2] 청년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49> 청년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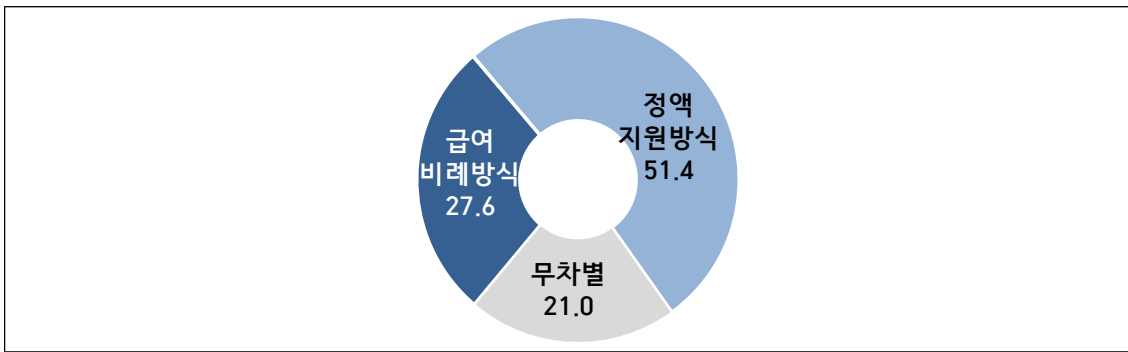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급여비례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정액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무차별하다
전체	(519)	33.9	48.2	17.9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39.7	43.7	16.6
	법인사업자	(368) 31.5	50.0	18.5
직원수	10인 미만	(202) 36.1	46.0	17.8
	10~50인 미만	(177) 35.0	46.9	18.1
	50~300인 미만	(112) 27.7	52.7	19.6
	300인 이상	(28) 35.7	53.6	10.7
업력	3~8년 미만	(104) 39.4	39.4	21.2
	8~12년 미만	(103) 35.9	47.6	16.5
	12~22년 미만	(159) 34.6	49.1	16.4
	22년 이상	(153) 28.1	53.6	18.3
소재지	수도권	(283) 32.2	48.4	19.4
	경상권	(139) 36.0	47.5	16.5
	전라권	(38) 57.9	28.9	13.2
	충청권	(48) 25.0	54.2	20.8
	강원권	(9) 11.1	88.9	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42.5	41.7	15.7
	비해당	(392) 31.1	50.3	18.6

□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방식 역시 ‘정액지원방식’이 51.4%로 ‘급여비례방식’(27.6%)보다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응답기업 특성별로 ‘정액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유일하게 전라권 소재 기업의 경우 ‘급여비례방식이 더 효과적이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3]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50>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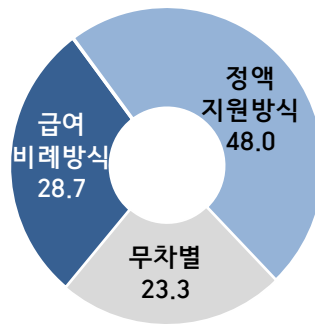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급여비례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정액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무차별하다
전체		(519)	27.6	51.4	21.0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28.5	53.6	17.9
	법인사업자	(368)	27.2	50.5	22.3
직원수	10인 미만	(202)	29.7	49.0	21.3
	10~50인 미만	(177)	26.6	50.3	23.2
	50~300인 미만	(112)	25.9	54.5	19.6
	300인 이상	(28)	25.0	64.3	10.7
업력	3~8년 미만	(104)	24.0	52.9	23.1
	8~12년 미만	(103)	35.9	45.6	18.4
	12~22년 미만	(159)	28.9	50.3	20.8
	22년 이상	(153)	22.9	55.6	21.6
소재지	수도권	(283)	25.4	53.0	21.6
	경상권	(139)	29.5	50.4	20.1
	전라권	(38)	47.4	36.8	15.8
	충청권	(48)	20.8	50.0	29.2
	강원권	(9)	22.2	77.8	0.0
	제주권	(2)	0.0	10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34.6	48.0	17.3
	비해당	(392)	25.3	52.6	22.2

□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액지원방식’이 48.0%로 ‘급여비례방식’(28.7%)보다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응답기업 특성별로 ‘정액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유일하게 전라권 소재 기업의 경우 ‘급여비례방식이 더 효과적이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4]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51>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에 더 효과적인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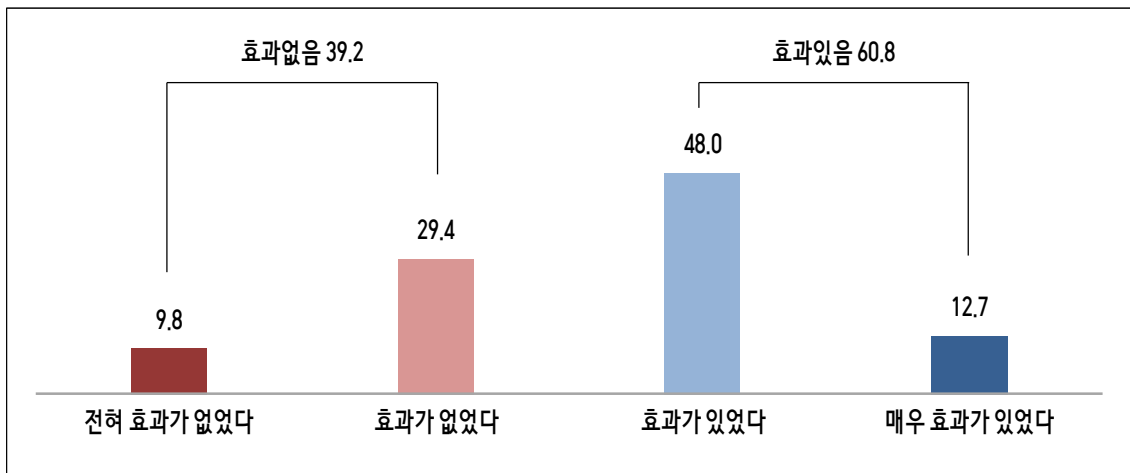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급여비례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정액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무차별하다
전체		(519)	28.7	48.0	23.3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29.1	45.7	25.2
	법인사업자	(368)	28.5	48.9	22.6
직원수	10인 미만	(202)	31.7	44.6	23.8
	10~50인 미만	(177)	28.8	46.3	24.9
	50~300인 미만	(112)	24.1	52.7	23.2
	300인 이상	(28)	25.0	64.3	10.7
업력	3~8년 미만	(104)	30.8	45.2	24.0
	8~12년 미만	(103)	34.0	41.7	24.3
	12~22년 미만	(159)	27.7	49.1	23.3
	22년 이상	(153)	24.8	52.9	22.2
소재지	수도권	(283)	24.7	50.5	24.7
	경상권	(139)	35.3	43.9	20.9
	전라권	(38)	52.6	34.2	13.2
	충청권	(48)	16.7	47.9	35.4
	강원권	(9)	22.2	77.8	0.0
	제주권	(2)	0.0	10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37.0	40.2	22.8
	비해당	(392)	26.0	50.5	23.5

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기간 연장 효과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중 19.7%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102개 업체를 대상으로 그 효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효과 있음’이 60.8%로 ‘효과 없음’(39.2%)보다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응답기업 특성별로 효과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사업자 및 직원수 50인 미만 기업과 업력이 짧을수록, 신성장서비스업 해당 기업의 경우 더 높음

[그림 III-3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기간 연장 효과

(Base1: 전체, n=519, Base2: 혜택기간 연장 사실 ‘인지’ 응답자, 단위: %)



〈표 III-5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기간 연장 효과

(Base1: 전체, n=519, Base2: 혜택기간 연장 사실 '인지' 응답자, n=102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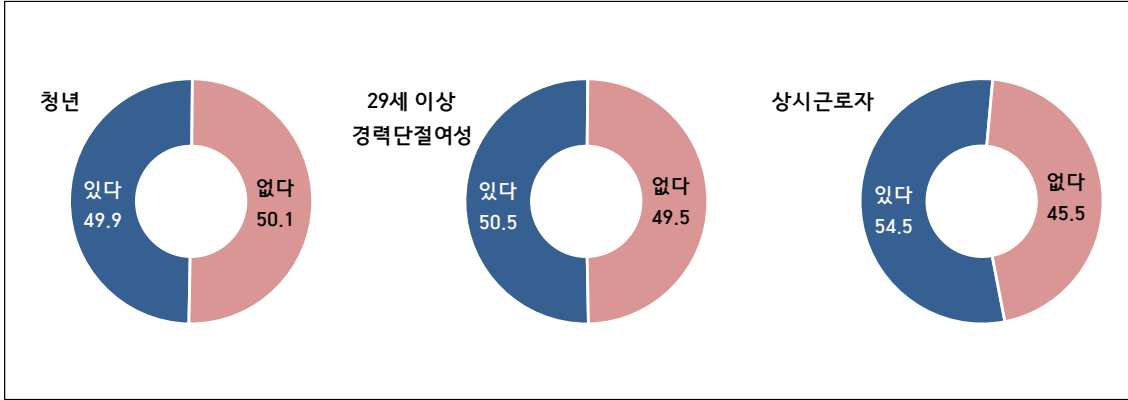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지율	전혀 효과가 없었다	효과가 없었다	효과가 있었다	매우 효과가 있었다	종합		4점 평균	
							효과 없음	효과 있음		
전체	(519)	19.7	9.8	29.4	48.0	12.7	39.2	60.8	2.64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21.9	6.1	24.2	57.6	12.1	30.3	69.7	2.76
	법인사업자	(368)	18.8	11.6	31.9	43.5	13.0	43.5	56.5	2.58
직원수	10인 미만	(202)	17.3	11.4	25.7	45.7	17.1	37.1	62.9	2.69
	10~50인 미만	(177)	14.1	16.0	16.0	64.0	4.0	32.0	68.0	2.56
	50~300인 미만	(112)	27.7	3.2	41.9	45.2	9.7	45.2	54.8	2.61
	300인 이상	(28)	39.3	9.1	36.4	27.3	27.3	45.5	54.5	2.73
업력	3~8년 미만	(104)	17.3	11.1	11.1	44.4	33.3	22.2	77.8	3.00
	8~12년 미만	(103)	17.5	5.6	33.3	44.4	16.7	38.9	61.1	2.72
	12~22년 미만	(159)	19.5	16.1	25.8	58.1	0.0	41.9	58.1	2.42
	22년 이상	(153)	22.9	5.7	40.0	42.9	11.4	45.7	54.3	2.60
소재지	수도권	(283)	20.8	11.9	27.1	45.8	15.3	39.0	61.0	2.64
	경상권	(139)	22.3	9.7	29.0	51.6	9.7	38.7	61.3	2.61
	전라권	(38)	7.9	0.0	66.7	33.3	0.0	66.7	33.3	2.33
	충청권	(48)	14.6	0.0	28.6	71.4	0.0	28.6	71.4	2.71
	강원권	(9)	22.2	0.0	50.0	0.0	50.0	50.0	50.0	3.00
	제주권	(2)	0.0	-	-	-	-	-	-	-
신성장 여부	해당	(127)	29.1	5.4	29.7	51.4	13.5	35.1	64.9	2.73
	비해당	(392)	16.6	12.3	29.2	46.2	12.3	41.5	58.5	2.58

3) 대상별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의 효과

- 대상별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2년)이 효과 있는지에 대해,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과 상시근로자의 경우 '효과 있다'는 응답이, 청년의 경우 '효과 없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응답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6] 대상별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의 효과성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53> 대상별 신규고용 유도에 있어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의 효과성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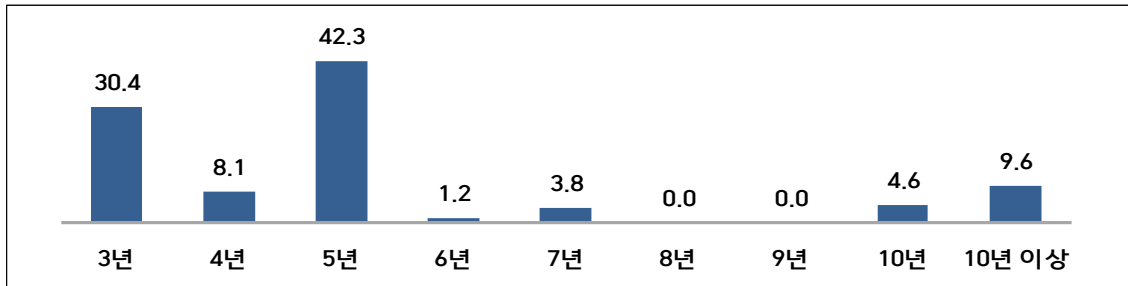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청년 신규고용 유도 효과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신규고용 유도 효과		그 외 상시근로자 신규고용 유도 효과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519)	49.9	50.1	50.5	49.5	54.5	45.5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49.7	50.3	52.3	47.7	57.6	42.4
	법인사업자 (368)	50.0	50.0	49.7	50.3	53.3	46.7
직원수	10인 미만 (202)	51.0	49.0	53.0	47.0	57.4	42.6
	10~50인 미만 (177)	48.6	51.4	50.8	49.2	55.9	44.1
	50~300인 미만 (112)	49.1	50.9	43.8	56.3	47.3	52.7
	300인 이상 (28)	53.6	46.4	57.1	42.9	53.6	46.4
업력	3~8년 미만 (104)	52.9	47.1	54.8	45.2	64.4	35.6
	8~12년 미만 (103)	48.5	51.5	55.3	44.7	61.2	38.8
	12~22년 미만 (159)	54.1	45.9	56.0	44.0	56.0	44.0
	22년 이상 (153)	44.4	55.6	38.6	61.4	41.8	58.2
소재지	수도권 (283)	49.1	50.9	51.9	48.1	54.8	45.2
	경상권 (139)	52.5	47.5	50.4	49.6	56.8	43.2
	전라권 (38)	50.0	50.0	42.1	57.9	44.7	55.3
	충청권 (48)	47.9	52.1	47.9	52.1	54.2	45.8
	강원권 (9)	55.6	44.4	66.7	33.3	66.7	33.3
	제주권 (2)	0.0	100.0	0.0	100.0	0.0	10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57.5	42.5	59.8	40.2	62.2	37.8
	비해당 (392)	47.4	52.6	47.4	52.6	52.0	48.0

4) 대상별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청년 고용에 효과 없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혜택 기간을 조사한 결과, ‘5년’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3년’(30.4%)으로 나타난 한편, ‘10년 이상’ 역시 14.2%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37] 청년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Base: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 효과 ‘없음’ 응답자, 단위: %)



<표 III-54> 청년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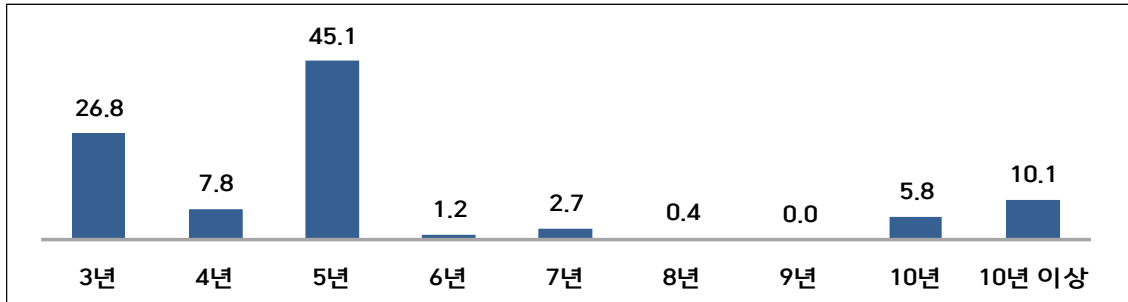
(Base: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 효과 ‘없다’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이상
전체	(260)	30.4	8.1	42.3	1.2	3.8	0.0	0.0	4.6	9.6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76)	28.9	11.8	38.2	1.3	7.9	0.0	0.0	1.3	10.5
	법인사업자 (184)	31.0	6.5	44.0	1.1	2.2	0.0	0.0	6.0	9.2
직원수	10인 미만 (99)	30.3	9.1	45.5	1.0	2.0	0.0	0.0	2.0	10.1
	10~50인 미만 (91)	31.9	8.8	38.5	1.1	4.4	0.0	0.0	4.4	11.0
	50~300인 미만 (57)	28.1	3.5	45.6	1.8	7.0	0.0	0.0	7.0	7.0
	300인 이상 (13)	30.8	15.4	30.8	0.0	0.0	0.0	0.0	15.4	7.7
업력	3~8년 미만 (49)	26.5	12.2	42.9	4.1	8.2	0.0	0.0	2.0	4.1
	8~12년 미만 (53)	30.2	9.4	34.0	0.0	3.8	0.0	0.0	3.8	18.9
	12~22년 미만 (73)	31.5	6.8	46.6	1.4	1.4	0.0	0.0	2.7	9.6
	22년 이상 (85)	31.8	5.9	43.5	0.0	3.5	0.0	0.0	8.2	7.1
소재지	수도권 (144)	28.5	10.4	42.4	2.1	5.6	0.0	0.0	3.5	7.6
	경상권 (66)	30.3	6.1	40.9	0.0	1.5	0.0	0.0	4.5	16.7
	전라권 (19)	36.8	5.3	47.4	0.0	0.0	0.0	0.0	5.3	5.3
	충청권 (25)	40.0	4.0	40.0	0.0	4.0	0.0	0.0	8.0	4.0
	강원권 (4)	25.0	0.0	50.0	0.0	0.0	0.0	0.0	0.0	25.0
	제주권 (2)	0.0	0.0	50.0	0.0	0.0	0.0	0.0	5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54)	35.2	16.7	29.6	3.7	5.6	0.0	0.0	3.7	5.6
	비해당 (206)	29.1	5.8	45.6	0.5	3.4	0.0	0.0	4.9	10.7

□ 이어,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에 효과 없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혜택 기간을 조사한 결과, ‘5년’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3년’(26.8%)으로 나타난 한편, ‘10년 이상’ 역시 15.9%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38]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Base: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 효과 ‘없음’ 응답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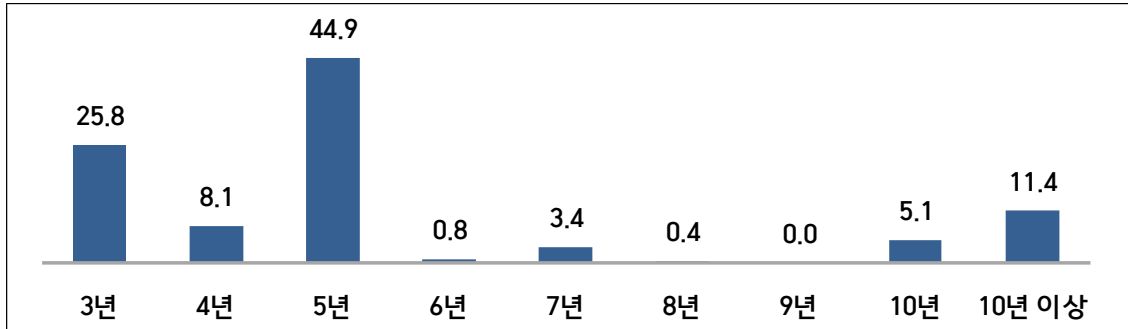
<표 III-55>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Base: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 효과 ‘없다’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이상
전체	(257)	26.8	7.8	45.1	1.2	2.7	0.4	0.0	5.8	10.1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72)	20.8	11.1	47.2	2.8	5.6	0.0	0.0	2.8	9.7
	법인사업자 (185)	29.2	6.5	44.3	0.5	1.6	0.5	0.0	7.0	10.3
직원수	10인 미만 (95)	21.1	9.5	48.4	2.1	4.2	0.0	0.0	2.1	12.6
	10~50인 미만 (87)	29.9	10.3	42.5	0.0	1.1	1.1	0.0	8.0	6.9
	50~300인 미만 (63)	30.2	1.6	42.9	1.6	3.2	0.0	0.0	9.5	11.1
	300인 이상 (12)	33.3	8.3	50.0	0.0	0.0	0.0	0.0	0.0	8.3
업력	3~8년 미만 (47)	21.3	14.9	46.8	2.1	2.1	0.0	0.0	6.4	6.4
	8~12년 미만 (46)	23.9	6.5	39.1	2.2	4.3	0.0	0.0	2.2	21.7
	12~22년 미만 (70)	28.6	4.3	50.0	1.4	4.3	0.0	0.0	5.7	5.7
	22년 이상 (94)	29.8	7.4	43.6	0.0	1.1	1.1	0.0	7.4	9.6
소재지	수도권 (136)	24.3	11.0	45.6	1.5	2.9	0.7	0.0	6.6	7.4
	경상권 (69)	29.0	4.3	39.1	0.0	2.9	0.0	0.0	5.8	18.8
	전라권 (22)	40.9	0.0	50.0	0.0	0.0	0.0	0.0	4.5	4.5
	충청권 (25)	24.0	8.0	52.0	4.0	4.0	0.0	0.0	4.0	4.0
	강원권 (3)	33.3	0.0	66.7	0.0	0.0	0.0	0.0	0.0	0.0
	제주권 (2)	0.0	0.0	50.0	0.0	0.0	0.0	0.0	0.0	50.0
신성장 여부	해당 (51)	29.4	9.8	43.1	3.9	5.9	0.0	0.0	5.9	2.0
	비해당 (206)	26.2	7.3	45.6	0.5	1.9	0.5	0.0	5.8	12.1

□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에 효과 없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혜택 기간을 조사한 결과, '5년'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 이어 '3년'(25.8%)으로 나타난 한편, '10년 이상' 역시 16.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39]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Base: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 효과 '없음' 응답자, 단위: %)



<표 III-56>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효과 발생을 위한 최소 세액공제 혜택 기간
(Base: 현 세액공제 혜택 기간 효과 '없다' 응답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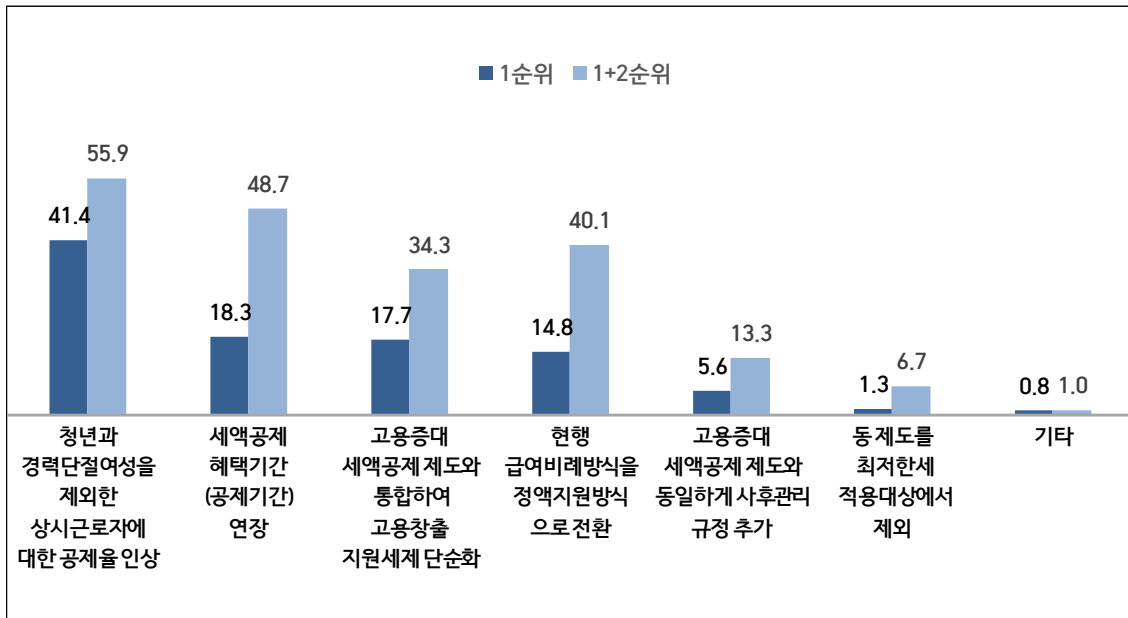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이상
전체	(236)	25.8	8.1	44.9	0.8	3.4	0.4	0.0	5.1	11.4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64)	17.2	14.1	39.1	0.0	9.4	1.6	0.0	4.7	14.1
	법인사업자 (172)	29.1	5.8	47.1	1.2	1.2	0.0	0.0	5.2	10.5
직원수	10인 미만 (86)	20.9	8.1	47.7	1.2	4.7	1.2	0.0	2.3	14.0
	10~50인 미만 (78)	28.2	10.3	42.3	0.0	2.6	0.0	0.0	6.4	10.3
	50~300인 미만 (59)	30.5	5.1	42.4	1.7	3.4	0.0	0.0	6.8	10.2
	300인 이상 (13)	23.1	7.7	53.8	0.0	0.0	0.0	0.0	7.7	7.7
업력	3~8년 미만 (37)	16.2	10.8	48.6	2.7	5.4	0.0	0.0	5.4	10.8
	8~12년 미만 (40)	22.5	10.0	35.0	0.0	2.5	2.5	0.0	2.5	25.0
	12~22년 미만 (70)	32.9	5.7	47.1	1.4	4.3	0.0	0.0	2.9	5.7
	22년 이상 (89)	25.8	7.9	46.1	0.0	2.2	0.0	0.0	7.9	10.1
소재지	수도권 (128)	23.4	10.2	45.3	0.8	5.5	0.8	0.0	3.9	10.2
	경상권 (60)	28.3	6.7	38.3	1.7	0.0	0.0	0.0	6.7	18.3
	전라권 (21)	33.3	4.8	52.4	0.0	0.0	0.0	0.0	4.8	4.8
	충청권 (22)	27.3	4.5	50.0	0.0	4.5	0.0	0.0	9.1	4.5
	강원권 (3)	33.3	0.0	66.7	0.0	0.0	0.0	0.0	0.0	0.0
	제주권 (2)	0.0	0.0	50.0	0.0	0.0	0.0	0.0	0.0	50.0
신성장 여부	해당 (48)	25.0	14.6	35.4	2.1	10.4	2.1	0.0	4.2	6.3
	비해당 (188)	26.1	6.4	47.3	0.5	1.6	0.0	0.0	5.3	12.8

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관련 개선사항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1순위와 1+2순위 모두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세액공제 혜택기간(공제기간) 연장’이 높게 나타남
-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대부분의 응답기업에서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한편, 두 번째로 높은 응답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기간(공제기간) 연장’, 법인사업자의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와 통합하여 고용창출 지원세제 단순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1+2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현행 급여비례 방식을 정액지원 방식으로 전환’이라는 응답 역시 약 3~40%대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4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관련 개선사항

(Base: 전체, n=519, 단위: %)



〈표 III-5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관련 개선사항(1순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	세액공제 혜택기간 (공제기간) 연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와 통합하여 고용창출 지원세제 단순화	현행 급여비례 방식을 정액지원 방식으로 전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와 동일하게 사후관리 규정 추가	동 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타	
전체	(519)	41.4	18.3	17.7	14.8	5.6	1.3	0.8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43.0	20.5	12.6	17.9	4.0	2.0	0.0
	법인사업자	(368)	40.8	17.4	19.8	13.6	6.3	1.1	1.1
직원수	10인 미만	(202)	39.1	23.3	13.9	16.3	5.9	1.5	0.0
	10~50인 미만	(177)	44.1	13.0	23.7	12.4	4.5	0.6	1.7
	50~300인 미만	(112)	36.6	19.6	17.9	17.0	5.4	2.7	0.9
	300인 이상	(28)	60.7	10.7	7.1	10.7	10.7	0.0	0.0
업력	3~8년 미만	(104)	51.9	17.3	12.5	15.4	1.9	1.0	0.0
	8~12년 미만	(103)	40.8	14.6	17.5	18.4	6.8	1.9	0.0
	12~22년 미만	(159)	40.3	20.1	19.5	10.1	6.9	1.9	1.3
	22년 이상	(153)	35.9	19.6	19.6	17.0	5.9	0.7	1.3
소재지	수도권	(283)	43.1	18.4	15.9	14.8	5.7	1.8	0.4
	경상권	(139)	38.8	18.0	24.5	10.8	5.0	0.7	2.2
	전라권	(38)	39.5	18.4	10.5	18.4	10.5	2.6	0.0
	충청권	(48)	41.7	18.8	16.7	20.8	2.1	0.0	0.0
	강원권	(9)	44.4	22.2	11.1	11.1	11.1	0.0	0.0
	제주권	(2)	0.0	0.0	0.0	100.0	0.0	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48.0	15.7	15.0	15.0	3.9	2.4	0.0
	비해당	(392)	39.3	19.1	18.6	14.8	6.1	1.0	1.0

〈표 III-58〉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관련
개선사항(1+2순위)

(Base: 전체, n=519,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	세액공제 혜택기간 (공제기간) 연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와 통합하여 고용창출 지원세제 단순화	현행 급여비례 방식을 정액지원 방식으로 전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와 동일하게 사후관리 규정 추가	동 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타	
전체	(519)	55.9	48.7	34.3	40.1	13.3	6.7	1.0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58.9	53.6	24.5	46.4	11.3	5.3	0.0
	법인사업자	(368)	54.6	46.7	38.3	37.5	14.1	7.3	1.4
직원수	10인 미만	(202)	56.4	55.0	29.7	42.6	11.4	5.0	0.0
	10~50인 미만	(177)	57.6	42.9	40.1	37.9	13.0	6.8	1.7
	50~300인 미만	(112)	50.0	47.3	33.9	38.4	17.9	10.7	1.8
	300인 이상	(28)	64.3	46.4	32.1	42.9	10.7	3.6	0.0
업력	3~8년 미만	(104)	62.5	57.7	24.0	41.3	8.7	5.8	0.0
	8~12년 미만	(103)	57.3	45.6	32.0	45.6	12.6	6.8	0.0
	12~22년 미만	(159)	54.1	50.3	35.8	35.2	15.7	6.9	1.9
	22년 이상	(153)	52.3	43.1	41.2	40.5	14.4	7.2	1.3
소재지	수도권	(283)	56.5	49.8	33.9	39.2	12.7	7.1	0.7
	경상권	(139)	54.7	46.0	36.7	40.3	12.9	7.2	2.2
	전라권	(38)	52.6	52.6	28.9	39.5	21.1	5.3	0.0
	충청권	(48)	56.3	47.9	35.4	43.8	10.4	6.3	0.0
	강원권	(9)	66.7	55.6	22.2	33.3	22.2	0.0	0.0
	제주권	(2)	50.0	0.0	50.0	100.0	0.0	0.0	0.0
신성장 여부	해당	(127)	65.4	52.8	31.5	35.4	7.9	7.1	0.0
	비해당	(392)	52.8	47.4	35.2	41.6	15.1	6.6	1.3

IV. 동 제도 관련 2015년 설문 결과와의 비교

- 2015년도에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효과성 분석의 일환으로 본 설문과 유사하게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및 고용증대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음
 - 2015년도 설문조사는 전국 중소기업 556개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개별면접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진행됨
 - 전체 556개의 응답 기업 중 143개의 업체는 개인사업자, 그 외 413개는 법인으로 나타나, 올해 설문 응답자보다 법인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조사되었으나 비슷한 수준임

〈표 IV-1〉 설문조사 개요(2015년, 2021년)

구분	2015년도 설문조사	2021년도 설문조사
조사 대상	전국 중소기업	
표본 수	556개	519개
- 개인사업자	143(25.7%)	151(29.1%)
- 법인	413(74.3%)	368(70.9%)
조사 방법	개별면접조사(Fax, 이메일 병행)	컨택-온라인조사
조사 기간	2015년 4~5월	2021년 5월 중

- 2015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실시된 두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먼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인지도는 2015년(47.0%) 대비 2021년(65.9%)에 약 18.9%p만큼 크게 증가함
 - 그 중 ‘제도 및 구체적인 내용 모두 알고 있다’는 응답은 소폭 증가한 한편, ‘제도는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법인의 인지율은 약 10.0%p 증가한 한편, 개인사업자의 인지도가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적임

<표 IV-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인지도
(2015년, 2021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있다 (A)	제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B)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른다	인지율 (A+B)
2021년 전체	(519)	14.3	51.6	34.1	65.9
2021년 개인사업자	(151)	15.2	62.9	21.9	78.1
2021년 법인	(368)	13.9	47.0	39.1	60.9
2015년 전체	(556)	11.9	35.1	53.1	47.0
2015년 개인사업자	(143)	9.8	25.9	64.3	35.7
2015년 법인	(413)	12.6	38.3	49.2	50.9

- 앞선 문항에서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기업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2015년과 2021년 모두 ‘세무관련 업무는 회계, 세무사에 위임하기 때문에’(각 56.3%, 46.3%)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해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각 33.2%, 39.0%)가 높게 나타남
- 한편, ‘조세특례제도 중 주로 혜택 받는 것들만 알고 있어서’라는 응답 비율은 2015년(6.1%) 대비 2021년(11.3%)에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유일하게 2021년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해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3>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2015년, 2021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해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도 중 혜택 규모가 큰 것들만 알고 있어서	조세특례제도 중 주로 혜택 받는 것들만 알고 있어서	세무관련 업무는 회계, 세무사에 위임하기 때문에
2021년 전체	(177)	39.0	3.4	11.3	46.3
2021년 개인사업자	(33)	48.5	9.1	0.0	42.4
2021년 법인	(144)	36.8	2.1	13.9	47.2
2015년 전체	(295)	33.2	4.4	6.1	56.3
2015년 개인사업자	(92)	39.1	2.2	2.2	56.5
2015년 법인	(203)	30.5	5.4	7.9	56.2

- 이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2021년 설문 응답자 중 18.3%가 2019년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015년 설문의 경우 2013년 소득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 받았다'(4.1%),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금액이 적어 일부만 세액공제 받았다'(1.3%)로 나타나 세액공제 혜택 경험이 있는 비율은 약 5.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15년도 설문의 경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 비율이 50.0%로 나타나, 이 중 제도의 혜택을 받은 비율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면 2021년도 설문 결과와의 정확한 비교는 어려움

<표 IV-4> 동 제도의 혜택 경험 여부(2021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2021년 전체	(519)	18.3	81.7
개인사업자	(151)	21.9	78.1
법인	(368)	16.8	83.2

<표 IV-5> 동 제도의 혜택 경험 여부(2015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액 세액공제 받았다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금액이 적어 일부만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는 이월하였다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금액이 적어 전액 이월하였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잘모르겠다
2015년 전체	(556)	4.1	1.3	0.2	44.4	50.0
개인사업자	(143)	2.1	0.0	0.0	54.5	43.4
법인	(413)	4.8	1.7	0.2	40.9	52.3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5년과 2021년도 모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음’(각 58.3%, 55.4%)이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신청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본 조세특례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각 21.5%, 20.0%)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2021년도 설문외의 경우 ‘신청요건은 충족되었으나, 타 공공기관의 지원금 차감으로 인해’라는 응답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3.8% 비율로 나타남

<표 IV-6> 동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2015년, 2021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음	신청요건은 충족되었으나, 타 조세특례 신청	신청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본 조세특례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신청요건은 충족되었으나, 타 공공기관의 지원금 차감으로 인해	기타
2021년 전체	(424)	55.4	9.0	20.0	3.8	11.8
2021년 개인사업자	(118)	63.6	8.5	16.1	2.5	9.3
2021년 법인	(306)	52.3	9.2	21.6	4.2	12.7
2015년 전체	(247)	58.3	9.7	21.5	-	10.5
2015년 개인사업자	(78)	79.5	1.3	11.5	-	7.7
2015년 법인	(169)	48.5	13.6	26.0	-	11.8

- 동 제도가 각 설문 시행연도의 경영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2015년과 2021년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2015년도 설문외의 경우, 동 제도가 근로자 임금보다 채용규모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난 한편, 2021년도는 채용규모보다 근로자 임금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다만, 2021년도의 경우 ‘채용규모와 근로자 임금 모두 증가’ 항목이 추가되는 등 2015년과 2021년의 설문 항목에 다소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움

<표 IV-7> 동 제도가 경영의사결정에 미칠 영향(2015년, 2021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채용규모 증가, 근로자 임금 유지	채용규모 유지, 근로자 임금 증가	채용규모 증가, 근로자 임금 증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	기타 ¹⁾
2021년 전체	(519)	12.3	21.8	10.2	54.3	1.3
2021년 개인사업자	(151)	7.9	30.5	7.9	53.0	0.7
2021년 법인	(368)	14.1	18.2	11.1	54.9	1.6
2015년 전체	(556)	13.1	7.2	-	58.5	21.3 ¹⁾
2015년 개인사업자	(143)	6.3	6.3		69.2	18.2 ¹⁾
2015년 법인	(413)	15.5	7.5		54.7	22.3 ¹⁾

주: 1) 2015년도 '기타' 항목의 경우, 설문 항목 중 '직원 교육 및 복지 등 근로환경 개선',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투자 증가'의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 다음으로, 동 제도가 각 설문 시행연도의 신규 인력 채용규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2021년 46.6%로 나타나, 2015년도(82.4%)에 비해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채용대상별 및 채용대상 모두의 채용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전반적으로 2015년에 비해 2021년에 모두 증가하였음
 - '청년의 채용규모만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2015년 5.2%, 2021년 8.3%로 나타났으며, '모든 채용대상의 채용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2015년 3.6%, 2021년 8.5%로 나타남

<표 IV-8> 동 제도가 신규 인력 채용규모에 미칠 영향(2015년, 2021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채용규모 유지	청년의 채용규모만 증가	29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규모만 증가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채용규모 증가	청년이 아닌 계층에 대한 채용 규모만 증가할 것이다 ¹⁾	모두의 채용규모 증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
2021년 전체	(519)	27.9	8.3	3.1	5.6	8.7*	8.5	46.6
2021년 개인사업자	(151)	35.8	4.6	7.9	9.3	17.2*	5.3	37.1
2021년 법인	(368)	24.7	9.8	1.1	4.1	5.2*	9.8	50.5
2015년 전체	(556)	-	5.2	-	-	2.0	3.6	82.4
2015년 개인사업자	(143)		3.5			1.4	2.1	86.0
2015년 법인	(413)		5.8			2.2	4.1	81.1

주: 1) 2021년 '청년이 아닌 계층에 대한 채용규모만 증가할 것이다' 항목의 경우, 2021년도 설문 항목 중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채용규모만 증가', '그 외 상시근로자 채용규모 증가'의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 동 제도가 각 설문 시행연도의 근로자 평균임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올해 41.8%로 나타나, 2015년도(83.3%)에 비해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대상별로 ‘청년이 아닌 계층에 대한 평균임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올해 2015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 한편, ‘청년의 평균임금만 증가’, ‘모두의 평균임금 증가’라는 응답은 2015년도와 올해 응답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IV-9> 동 제도가 근로자 임금에 미칠 영향(2015년, 2021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임금수준 유지	청년의 평균임금만 증가	29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의 평균임금만 증가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	청년이 아닌 계층에 대한 평균임금만 증가할 것이다 ¹⁾	모두의 평균임금 증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
2021년 전체	(519)	35.3	4.8	2.5	5.2	7.7 ¹⁾	10.4	41.8
2021년 개인사업자	(151)	37.7	4.6	6.6	8.6	15.2 ¹⁾	7.9	34.4
2021년 법인	(368)	34.2	4.9	0.8	3.8	4.6 ¹⁾	11.4	44.8
2015년 전체	(556)	-	4.1	-	-	2.5	10.1	83.3
2015년 개인사업자	(143)		1.4			2.8	8.4	87.4
2015년 법인	(413)		5.1			2.4	10.7	81.8

주: 1) 2021년 ‘청년이 아닌 계층에 대한 평균임금만 증가할 것이다’ 항목의 경우, 2021년도 설문 항목 중 ‘29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평균임금만 증가’, ‘그 외 상시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의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